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24호

2024. 11. 28.(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329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24-329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 고 시

제2024-566호 관악구 봉천동 464-8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26

제2024-567호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0

제2024-570호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 53

제2024-571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 결정 및 도면 고시 ····· 54

제2024-57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7

제2024-573호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안) ····· 69

제2024-5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 94

제2024-575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5

제2024-576호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A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31

제2024-577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 161

제2024-578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97

제2024-579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 ····· 212

제2024-58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215

제2024-581호 서울특별시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안 ····· 217

제2024-582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218

◈ 공 고

제2024-3237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221
제2024-323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222
제2024-323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23
제2024-324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 225
제2024-3249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226
제2024-325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227
제2024-3253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주)주한이엔씨] ····· 229
제2024-3256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 230
제2024-3259호 공인등록(청인) 공고 ····· 233
제2024-3263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34
제2024-326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36
제2024-328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238
제2024-3285호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공시송달 공고 ····· 240
제2024-328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41
제2024-3288호 측량업 등록 공고 ····· 257
제2024-3289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 ····· 258
제2024-3300호 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 293
제2024-8425호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유산 지정 해제 계획 공고 ····· 295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8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 297

◈ 구 고 시

제2024-136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 301
제2024-153호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 307
제2024-212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 314
제2024-213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320
제2024-12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배치계획” 결정 변경] (관악구) ····· 323

제2024-128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고시(관악구) ····· 325
제2024-254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강남구) ····· 326
제2024-2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강동구) ····· 329

◈ 구 공 고

제2024-1474호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용산구) ····· 345
제2024-17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성동구) ····· 367
제2024-20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372
제2024-21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374
제2024-215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375
제2024-21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376
제2024-217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열람 공고(동작구) ····· 377
제2024-25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 379

◈ 사업소고시

제2024-3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80
제2024-3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81
제2024-3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82

◈ 사업소공고

제2024-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금천소방서) ····· 383
제2024-5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금천소방서) ····· 384
제2024-6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안)(도봉소방서) ····· 385
제2024-40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 386

◈ 기 타

제2024-49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87

제2024-4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88
제2024-49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89
제2024-49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90
제2024-50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91
제2024-5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92
제2024-5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93
제2024-5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94
제2024-51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95
제2024-518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396

◈ 정 정

제2024-2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취소 고시[정정](강동구) ····· 397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9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관사무 및 직제순 조정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본부·국의 사업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관 사무 및 직제순 조정
- (기후환경본부) 시민참여형 인센티브 사업 통합 추진을 위하여 '환경마일리지(에코·승용차마일리지)사무'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로 이관(← 친환경건물과)하고, 친환경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색에너지과의 직제순 변경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 정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를 미래공간담당관 소관 사무로 이관 (←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미술관 개관 도래에 따라 '서서울미술관 운영·관리' 사무 신설
-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 관련 업무량 축소에 따라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관련 조문 정비

나. 규칙 상 소관사무 명시 및 조문 정비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서울연구원 지도·감독' 사무분장 명시
- (복지실) '디딤돌소득(←안심소득)' 명칭 변경에 따라 부서명 및 소관 사무 명칭 변경
- (문화본부) 서울시 미술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명시
- (평생교육국)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 사무분장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안심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를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디딤돌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디딤돌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소득과장”을 “디딤돌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안심소득”을 각각 “디딤돌소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를 “(기후환경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회수시설추진단·기후환경정책과·친환경건물과·친환경차량과·대기정책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생활환경과”를 “자원회수시설추진단·기후환경정책과·녹색에너지과·친환경건물과·친환경차량과·대기정책과·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생활환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친환경건물과장·친환경차량과장·대기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친환경건물과장·친환경차량과장·대기정책과장·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6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26.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제7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관광체육국에 두는 과)”를 “(관광체육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평생교육국에 두는 과)”를 “(평생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8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5항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19호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4호 중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를 “(물순환안전국)”으로 한다.

제10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1조제1항 중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로,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획조정실) ① ~ ⑦ (생략)	제10조(기획조정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창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지실) ① 복지실에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안심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를 둔다.	제12조(복지실) ① ------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디딤돌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
② 복지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돌봄·고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안심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	② ---------- 복지정책과장·디딤돌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

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안심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디딤돌소득과장----------.
1. 안심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디딤돌소득 ----------
2.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디딤돌소득 ----------
3. 안심소득 사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 디딤돌소득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안심소득 추진 관련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디딤돌소득 ----------
6. 안심소득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디딤돌소득 ----------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본부에 자원회수시설추진단·기후환경정책과·친환경건물과·친환경차량과·대기정책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생활환경과를 둔다.	제14조(기후환경본부) ① ---------- 자원회수시설추진단·기후환경정책과·녹색에너지과·친환경건물과·친환경차량과·대기정책과·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생활환경과-----.
②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자	② ----------

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친환경건물과장·친환경차량과장·대기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기후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친환경건물과장·친환경차량과장·대기정책과장·자원순환과·자원회수시설과장·생활환경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27.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생 략)	28. (현행 제26호와 같음)
⑤ 친환경건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9.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생 략)	⑤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5조(문화본부) ① ~ ⑥ (생략)	제15조(문화본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17조(평생교육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 17. (생 략)	7. ~ 18. (현행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⑥ (생 략)	제16조(관광체육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민건강국) ①·② (생 략)	제17조의2(시민건강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10. (현행 제5호와 같음)
6. ~ 10. (생 략)	5. ~ 9. (현행 제6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11.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 ① ~ ④ (생 략)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미래공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주택실) ① ~ ⑭ (생략)	제20조의2(주택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한옥건축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생 략)	19.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 ④ (생 략)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	1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

한 법률」 상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한 법률」에 따른 ----------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24조(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① ~ ⑥ (생 략)	제24조(물순환안전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08조(하부조직) ① ~ ③ (생략)	제108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	제131조(하부조직) ① ----------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녹지사무관-----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8.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9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 대응 및 재건축 · 재개발 공정관리 등 시정 주요사업의 실무인력 확보를 위한 직렬 · 직급 조정
- 5급 +5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1명, 9급 △33명

나. 소방업무 안전관리 총괄 · 지원 전담 인력 확보 및 119안전센터 현장 인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
- 소방령 +1명, 소방위 +33명, 소방사 △34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69	429	1,134	5,171	227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19	420	355	4,981	225

같은 표 서기관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기관	104	77	8	7	9	3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85	62	1		18	4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의무란, 행정또는보건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시설란, 공업또는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또는공업연구관란 아래 공업또는소방령란을 삭제한다.

5급 소계	1,626	1,085	56	58	369	58
행정	751	548	52	26	73	52
의무	73	4		4	65	
행정또는보건	7	7				

행정또는시설	77	62			12	3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3			12	
행정・공업또는시설	74	65		1	8	
공업또는시설	21	8	1	1	11	
공업또는환경	13	11			2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시설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33	1,959	177	106	1,392	99
행정	1,439	887	147	44	292	69
사회복지	28	24	1		3	
사서	19		1	4	14	
전산	103	77	3	3	18	2
공업	350	105	6	5	232	2
의료기술	47	2		3	42	
환경	49	30		12	7	
시설	612	350	3	2	238	19

시설관리	30	3			27	
운전	40	21	1	1	17	
행정또는녹지	12	5			7	
행정또는시설	52	49			3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9			17	
행정・공업 또는시설	82	73		1	7	1
기계운영	81	1			80	
사무운영	27	9	1	1	15	1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시설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녹지또는시설란, 행정・간호또는보건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공업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기계운영란 아래 화공운영란을 삭제한다.

7급 소계	3,290	1,312	122	131	1,668	57
행정	1,210	652	88	59	369	42
사회복지	34	25			8	1
사서	22	1	1	7	13	
전산	133	77	4	9	42	1
공업	402	19	6	10	365	2

녹지	93	13		2	78	
간호	140	12		3	125	
의료기술	42	2		1	39	
시설	546	233	3	5	297	8
시설관리	7	2			5	
운전	61	12	1	2	46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40	34			4	2
행정또는전산	14	7			7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5			21	
행정・공업 또는시설	44	40		2	2	
행정・녹지 또는시설	6	5			1	
행정・간호 또는보건	3				3	
행정・공업・ 시설・전산	13	11			2	
공업또는시설	12	4			8	
전기운영	37	1			36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전산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농업또는녹지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또는전산란 아래 행정또는공업란을 삭제하며, 농업또는녹지란 아래 토목운영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069	123	38	46	861	1
행정	95	13	7	10	65	
사서	6			2	4	
전산	18	5		5	8	
시설관리	215			2	213	
운전	84	13	3	11	57	
농업또는녹지	5				5	
전기운영	9	1			8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04	40	13	5	45	1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운전란, 시설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490	3	3	2	482	
행정	15		1		14	
사서	6			1	5	
운전	5				5	
시설관리	298	1		1	296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 환경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10	20		200	190	
연구사 소계	337	14		158	165	
학예연구	101	11		2	88	
환경연구	73			59	14	

같은 표 아래 “※ 2024년 8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298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1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령란, 소방위란, 소방장란,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434	164		7,270		
소방령	201	29		172		
소방위	515	38		477		
소방장	833	40		793		
소방사	3,616	25		3,59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54	429	1,146	5,174	227
(생략)						
일반직 계	10,700	4,700	420	368	4,987	225
(생략)						
4급 소계	269	164	19	8	71	7
서기관	105	77	9	7	9	3
(생략)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84	62			18	4
(생략)						
5급 소계	1,621	1,082	56	58	367	58
행정	756	552	52	26	74	52
(생략)						
의무	72	4		4	64	
(생략)						
행정또는보건	6	6				
(생략)						
행정또는시설	70	56			11	3
(생략)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4			11	
(생략)						
행정·공업또는시설	73	64		1	8	
(생략)						
공업또는시설	20	8	1	1	10	
(생략)						
공업또는공업연구관	1				1	
공업또는소방령	2				2	
(생략)						
공업또는환경	12	11			1	
(생략)						
6급 소계	3,729	1,953	176	110	1,391	99
행정	1,443	889	147	44	294	69
(생략)						
사회복지	27	24			3	
사서	19		1	7	11	
전산	102	76	3	3	18	2
(생략)						
공업	353	105	6	5	235	2
(생략)						
의료기술	46	2		3	41	
(생략)						
환경	49	29		13	7	
시설	609	348	3	2	237	19
(생략)						

개 정 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69	429	1,134	5,171	227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4,719	420	355	4,981	225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269	164	19	8	71	7
서기관	104	77	8	7	9	3
(현행과 같음)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85	62	1		18	4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1,626	1,085	56	58	369	58
행정	751	548	52	26	73	52
(현행과 같음)						
의무	73	4		4	65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보건	7	7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77	62			12	3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3			12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74	65		1	8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시설	21	8	1	1	11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공업연구관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환경	13	11			2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733	1,959	177	106	1,392	99
행정	1,439	887	147	44	292	69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	28	24	1		3	
사서	19		1	4	14	
전산	103	77	3	3	18	2
(현행과 같음)						
공업	350	105	6	5	232	2
(현행과 같음)						
의료기술	47	2		3	42	
(현행과 같음)						
환경	49	30		12	7	
시설	612	350	3	2	238	19
(현행과 같음)						

현 행						
시설관리	38	11			27	
운전	40	22	1	1	16	
(생략)						
행정또는녹지	10	3			7	
(생략)						
행정또는시설	48	45			3	
(생략)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5	8			17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9			6	1
(생략)						
기계운영	81				81	
(생략)						
사무운영	27	8	1	2	15	1
7급 소계	3,267	1,299	123	131	1657	57
행정	1,210	653	88	59	368	42
사회복지	35	25	1		8	1
(생략)						
사서	22	1	1	8	12	
전산	135	77	4	10	43	1
(생략)						
공업	405	20	6	10	367	2
(생략)						
녹지	92	12		2	78	
(생략)						
간호	141	12		3	126	
의료기술	41	2		1	38	
(생략)						
시설	542	230	3	5	296	8
(생략)						
시설관리	6	2			4	
운전	56	12	1	2	41	
(생략)						
행정또는공업	10	3		1	6	
행정또는시설	38	32			4	2
(생략)						
행정또는전산	13	6			7	
(생략)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3	4			19	
(생략)						
행정·공업또는시설	37	35			2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생략)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생략)						
공업또는시설	11	4			7	
(생략)						
전기운영	39	3			36	
(생략)						
기계운영	54	2	1	1	50	
화공운영	2				2	
(생략)						
8급 소계	1,068	125	38	56	848	1
행정	98	14	7	11	66	
(생략)						

개 정 안						
시설관리	30	3			27	
운전	40	21	1	1	17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녹지	12	5			7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52	49			3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9			17	
행정·공업또는시설	82	73		1	7	1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	81	1			80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27	9	1	1	15	1
7급 소계	3,290	1,312	122	131	1,668	57
행정	1,210	652	88	59	369	42
사회복지	34	25			8	1
(현행과 같음)						
사서	22	1	1	7	13	
전산	133	77	4	9	42	1
(현행과 같음)						
공업	402	19	6	10	365	2
(현행과 같음)						
녹지	93	13		2	78	
(현행과 같음)						
간호	140	12		3	125	
의료기술	42	2		1	39	
(현행과 같음)						
시설	546	233	3	5	297	8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7	2			5	
운전	61	12	1	2	46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40	34			4	2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전산	14	7			7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5			21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44	40		2	2	
행정·녹지또는시설	6	5			1	
행정·간호또는보건	3				3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1			2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시설	12	4			8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37	1			36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1,069	123	38	46	861	1
행정	95	13	7	10	65	
(현행과 같음)						

현 행

사서	6			1	5	
전산	19	5		5	9	
(생략)						
시설관리	175			2	173	
운전	89	13	3	11	62	
(생략)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공업	1	1				
(생략)						
농업또는녹지	6				6	
토목운영	1				1	
(생략)						
전기운영	14	1			13	
기계운영	12	1			11	
(생략)						
사무운영	116	39	13	15	48	1
9급 소계	523	4	3	1	515	
행정	16	1	1		14	
사서	6				6	
(생략)						
운전	6				6	
시설관리	329	1		1	327	
(생략)						
연구직 계	410	24		199	187	
(생략)						
연구사 소계	337	18		157	162	
학예연구	101	14		2	85	
(생략)						
환경연구	73	1		58	14	
(생략)						

※ 2024년 8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298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1으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60		7,274		
(생략)						
소방령	200	28		172		
(생략)						
소방위	482	38		444		
소방장	833	37		796		
(생략)						
소방사	3,650	25		3,625		

개 정 안

사서	6			2	4	
전산	18	5		5	8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215			2	213	
운전	84	13	3	11	57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전산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농업또는녹지	5				5	
<삭 제>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9	1			8	
기계운영	2				2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104	40	13	5	45	1
9급 소계	490	3	3	2	482	
행정	15		1		14	
사서	6			1	5	
(현행과 같음)						
운전	5				5	
시설관리	298	1		1	296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410	20		200	190	
(현행과 같음)						
연구사 소계	337	14		158	165	
학예연구	101	11		2	88	
(현행과 같음)						
환경연구	73			59	14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64		7,270		
(현행과 같음)						
소방령	201	29		172		
(현행과 같음)						
소방위	515	38		477		
소방장	833	40		793		
(현행과 같음)						
소방사	3,616	25		3,591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6호

관악구 봉천동 464-8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에 대한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 면적 : 1,173㎡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4년 11월 28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삼두디앤씨(주), 김봉흠
○ 대표자 성명 : 김기수, 김봉흠
○ 소재지[삼두디앤씨(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46, 1층 104호(봉천동, 메카플러스)
소재지[김봉흠] : 경기도 의왕시 오매기중간길 30-10(오전동)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삼두디앤씨(주) 110111-4692376, 김봉흠 540115-xxxxxx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본번	부번										
1	관악구 봉천동	464	8	대	1,173	1,173	[위탁자] 삼두디앤씨(주), 김봉흠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46, 1층 1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16, 신영증권빌딩 8층	100%	-	-	-	-

2) 물건조서

건축물 철거 및 완전멸소로 인해 물건조서 부재
해당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은천 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봉천동 502, 464번지 일대	12,062 (1,173)	-	12,062 (1,173)	서고195호(96.05.28.)	-

※ ( )는 사업대상지(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면적임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 및 관악구청 6층 건축과(☎02-879-64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 면 적 : 1,173㎡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결정하여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삼두디앤씨(주), 김봉흠

○ 대표자 성명 : 김기수, 김봉흠

○ 소재지[삼두디앤씨(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46, 1층 104호(봉천동, 메카플러스)
소재지[김봉흠] : 경기도 의왕시 오매기중간길 30-10(오전동)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삼두디앤씨(주) 110111-4692376, 김봉흠 540115-xxxxxx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7년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기자본, 기금융자, 민간대출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주택건설용지	1,173	100.0	임대주택
합 계	1,173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 · 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184인

2) 주택건설계획 : 100세대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임대주택	23㎡ type	2	2.0	2	1.09	청년안심주택 건설 · 공급
	50㎡-B type	11	11.0	29	15.85	
	소 계	13	13.0	31	16.94	
공공임대주택 (SH 선매입)	23㎡ type	4	4.0	4	2.19	
	50㎡-B type	2	2.0	5	2.19	
	소 계	6	6.0	9	4.37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3㎡ type	23	23.0	23	12.57	
	27㎡ type	8	8.0	8	4.37	
	50㎡-A type	29	29.0	58	31.69	
	50㎡-B type	21	21.0	55	30.05	
	소계	81	81.0	144	78.68	
합계		100	100.0	184	100.0	

※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지 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임
- 토양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면은 지양하고, 우수 · 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을 실시하여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 · 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 충분한 녹지 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시설계 시 에너지 효율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하고,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1. 도시 · 군관리계획(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은천 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봉천동 502, 464번지 일대	12,062 (1,173)	-	12,062 (1,173)	서고195호(96.05.28.)	-

※ ( )는 사업대상지(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면적임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2,062	-	12,062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062 (1,173)	-	12,062 (1,173)	100.0	

※ ( )는 사업대상지(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면적임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및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신설 및 변경

가) 건축물의 지정용도 계획 : 신설

(1) 지정용도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지정용도	봉천동 464-8 필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주거복합)(주1) 비주거용도 : 지상1층 ~ 지상2층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용도 신설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 제2호의 청년안심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봉천동 464-8번지	지정용도 신설	-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나)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 : 변경

(2) 불허용도

구분		분류	불허용도
기정	간선변	A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공장, 창고시설
변경	간선변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성기구 취급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 성인전용 전화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유사 성인전용업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	불허용도(변경)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불허용도를 결정(변경)하고자함

다) 건축물의 권장용도 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접도조건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8m 이상 (간선변, 8m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8m 미만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250% 이하	300% 이하

▮ 변경

구분	접도조건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8m 이상 (간선변, 8m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8m 미만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250% 이하	300% 이하
	8m 이상 (간선변, 8m 도로변, 청년안심주택 사업지)	500% 이하	575% 이하

주1) 기정 용적률은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주2)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250%/300% 적용

– 변경사유서

구분	대지위치	결정사유
-	봉천동 464-8번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준용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계획 수립하고자함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1)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적용지역	최고높이	완화높이	비고
준주거지역	간선변(현대시장주변)	50m 이하	70m 이하	「건축법」 제60조 제3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간선변	50m 이하	-	
	이면부	50m 이하	-	

주1) 최고높이의 완화는 공동개장지정/권장 모두 준수하고, 탑상형 개발시 적용
주2)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 계단실 · 승강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 변경

구분	적용지역	최고높이	완화높이	비고
준주거지역	간선변(현대시장주변)	50m 이하	70m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어있는 최고높이' 는 심의를 거쳐 완화
	간선변	70m 이하	-	
	이면부	50m 이하	-	

주1) 최고높이의 완화는 공동개장지정/권장 모두 준수하고, 탑상형 개발시 적용
주2)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 계단실 · 승강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사유
-	높이(변경) 기정 : 50m 이하 변경 : 70m 이하	-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 높이 계획 수립

4)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 신설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공공 기여율	기본 공공 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6% 이상 - 1,173㎡ X 6% = 70.38㎡(부속토지면적)	- 기본기여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총 7세대 (부속토지면적 75.09㎡) 23㎡ TYPE 2세대 50㎡-B TYPE 5세대 - 75.09㎡(6.40%) ≥ 70.38㎡(6.00%)	기본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573.98% 부여
	상한 공공 기여율	- 기본용적률 5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73.98%의 1/2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573.98% - 500%)/2 = 36.99% - 1,173㎡ X 36.99% = 433.88㎡ 이상	- 상한기여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총 6세대 50㎡-B TYPE 6세대 -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급면적 : 444.49㎡(37.89%) - 444.49㎡(37.89%) ≥ 433.88㎡(36.99%)	
건축물 용도 구분	주거 /비주거 비율 (용적률 기준)	- 비주거 비율 5%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비율 85% 이상	- 주거비율 : 비주거비율 = 88.80% : 11.20%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건설규모 23㎡ ~ 60㎡ 내외 - 1인세대 : 전용면적 23㎡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40㎡ 이상	- 공공임대 : 총 13세대 23㎡ TYPE 2세대 50㎡-B TYPE 11세대 - SH 선매입 : 총 6세대 23㎡ TYPE 4세대 50㎡-B TYPE 2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총 81세대 23㎡ TYPE 23세대 27㎡ TYPE 8세대 50㎡-A TYPE 29세대 50㎡-B TYPE 21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상생형 임차시설	- 친환경 건축물 - 상생형 임차시설 (지상 2층 75.95㎡ 설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시설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커뮤니티시설 150㎡ 이상	- 지상 2층 커뮤니티시설 150.07㎡ 설치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24.08.06.) 준용

5) 공공기여계획 : 신설

가) 기본용적률 공공기여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500%	부지면적의 6% 이상 (70.38㎡ 이상)	- 공공임대주택 : 총 7세대 23㎡ TYPE 2세대 50㎡-B TYPE 5세대 -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전용면적 : 298.42㎡ - 공공임대 부속토지 면적 산식 : $1{,}173\,\mathrm{m}^2 \times \frac{7{,}457.88\,\mathrm{m}^2}{8{,}549.0\,\mathrm{m}^2} \times \frac{298.42\,\mathrm{m}^2}{4{,}066.91\,\mathrm{m}^2}$ = 75.09㎡(6.40%) - 75.09㎡(6.40%) ≥ 70.38㎡(6.00%)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나) 상한용적률 공공기여

구분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573.98%	- 기존용적률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 - (573.98% - 500%)= 36.99% - 1,173㎡ X 36.99% = 433.88㎡	- 공공임대주택 : 총 6세대 50㎡-B TYPE 6세대 -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공급면적 : 444.49㎡(37.89%) - 444.49㎡(37.89%) ≥ 433.88㎡(36.99%)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 신설사유서

구분	결정(신설)내용	결정사유
관악구 봉천동 464-8 번지	청년안심주택의 용적률 적용기준 신설	- 청년안심주택 건립을 위해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에 한해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신설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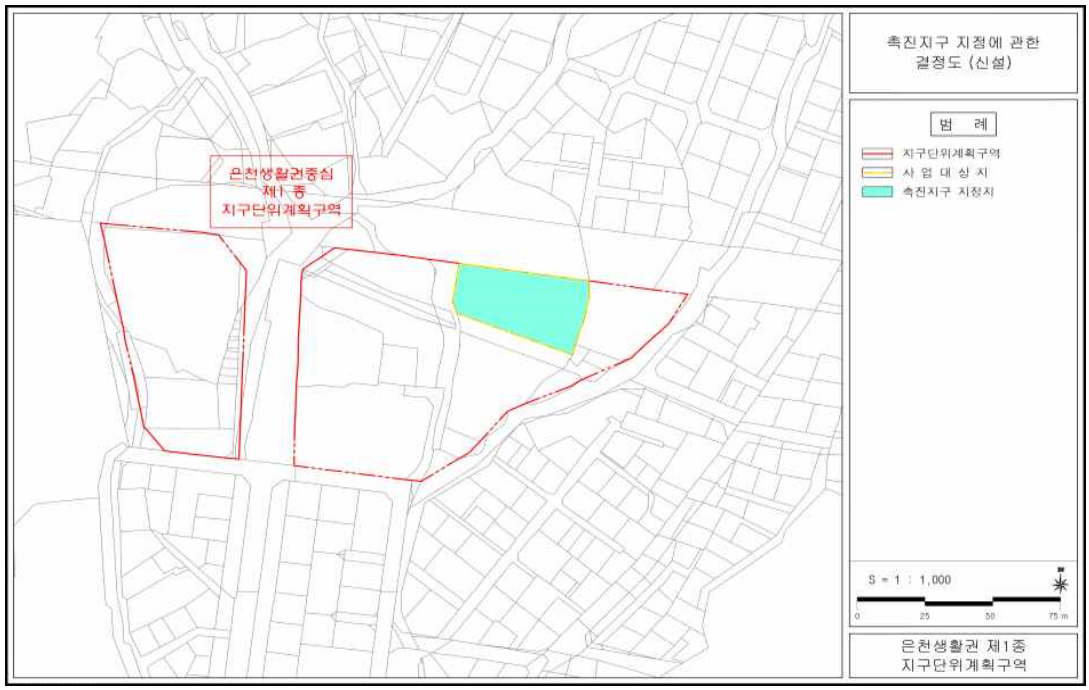
2.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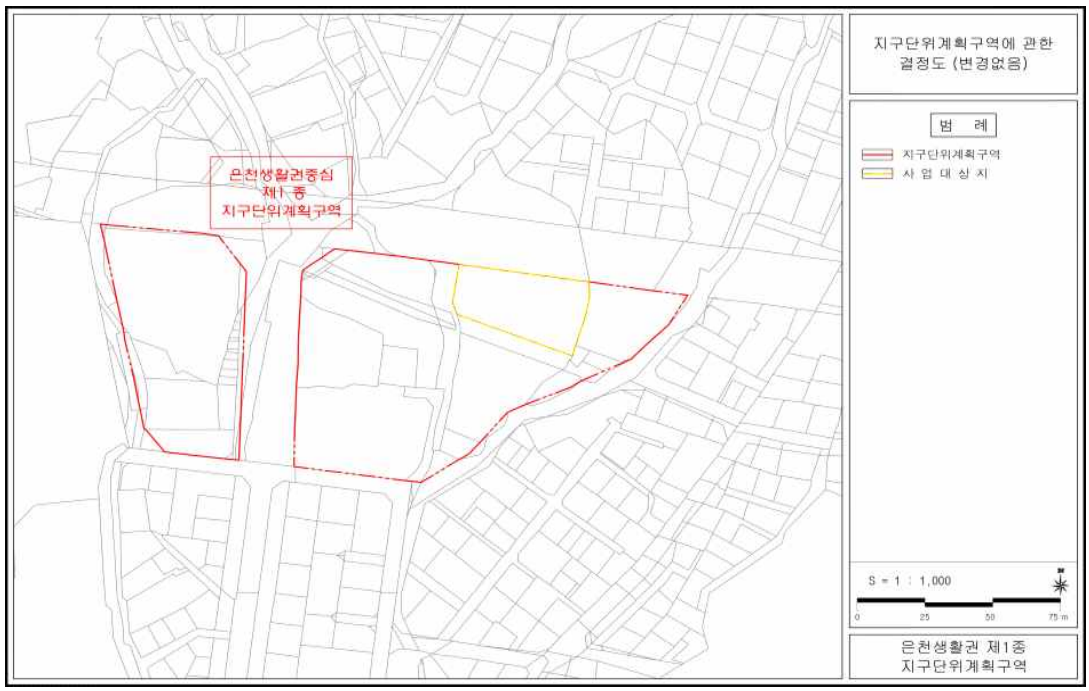
[붙임 2]

지 형 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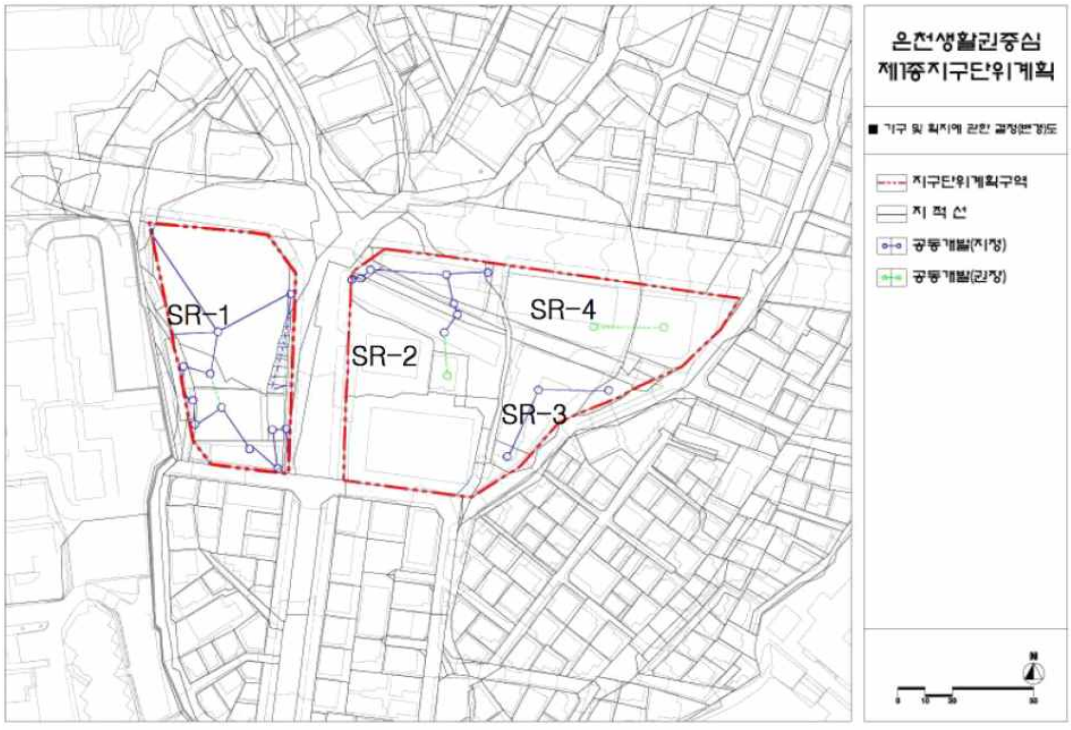
■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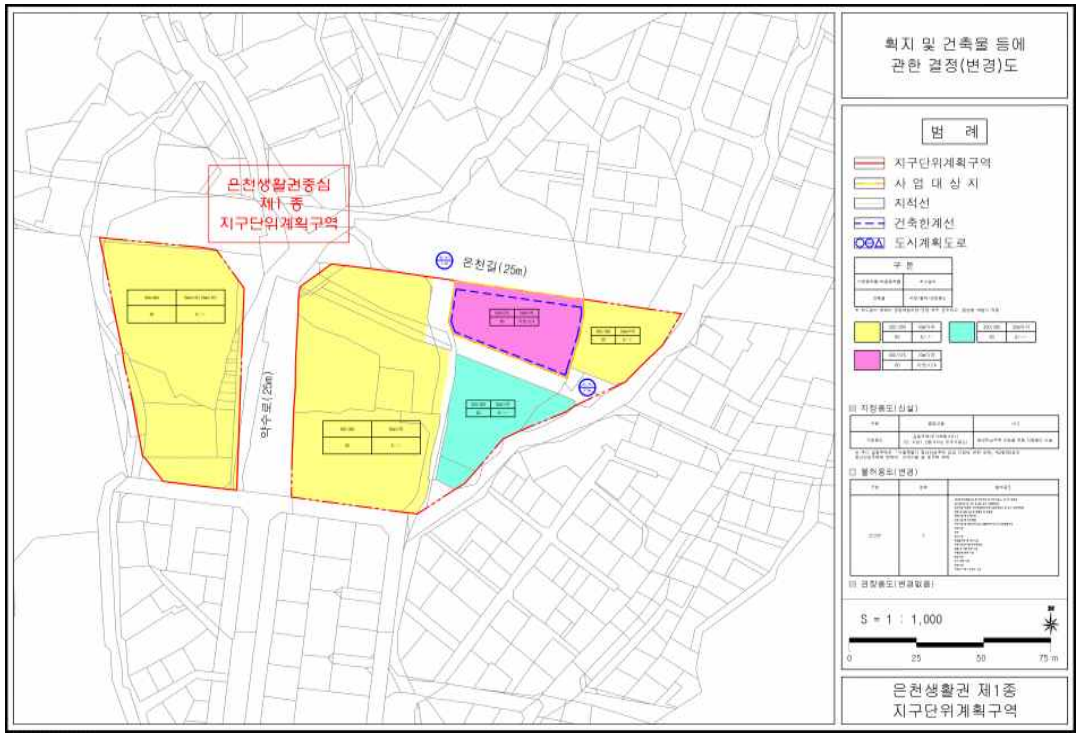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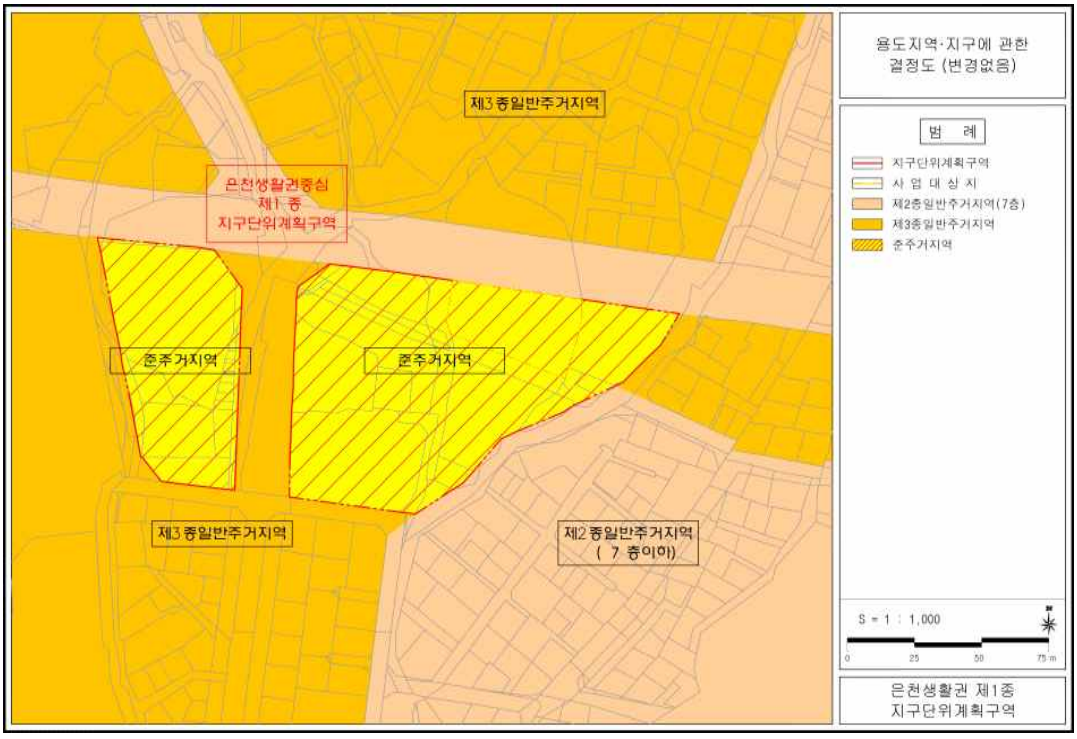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7호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372호(2004.11.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09호(2014.11.27.)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천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천왕근린공원 내 실내놀이터(공원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276번지 일원
3. 공원면적 : 33,677.1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6) 및 구로구 공원녹지과(☎02-860-3088)에서 관련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천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3,677.10	6,642.60				132	33,677.10	7,364.65	2	485.99	485.11	139	증) 722.05
기반시설	소 계	5,328.00	5,328.00					5,265.76	5,265.76					감) 62.24
	도 로	2,714.20	2,714.20					4,203.96	4,203.96					증) 1,489.76
	광 장	2,613.80	2,613.80					1,061.80	1,061.80					감) 1,552.00
조경시설		628.90	628.90				24	321.00	321.00				18	감) 307.90
휴양시설		359.70	359.70				57	256.40	256.40				60	감)103.30
유희시설								1,195.15	1,195.15	1	295.15	295.15	9	증) 1,195.15
운동시설		73.60	73.60				6	73.60	73.60				6	
교양시설														
편익시설								61.90	61.90					증) 61.90
관리시설		252.40	252.40				45	190.84	190.84	1	190.84	189.96	46	감) 61.56
녹지 및 기타		27,034.50						26,312.45						감) 722.05
시설률(법정40%이하)		6,642.60 / 33,677.10x 100 = 19.72%						7,364.65 / 33,677.10 x 100 = 21.87%						증) 2.14%
건폐율(법정10%이하)		-						485.99 / 33,677.10x 100 = 1.44%						증) 1.44%

1.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33,677.10	6,642.60					132			33,677.10	7,364.65	중목구조, 경량목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2	485.99	485.11	139	증) 722.05
기반시설	소계			5,328.00	5,328.00								5,265.76	5,265.76						감) 62.24
	도로(소계)			2,714.20	2,714.20								4,203.96	4,203.96						증) 1,489.76
	광장(소계)			2,613.80	2,613.80								1,061.80	1,061.80						감)1,552.00
	광장-1	가-1	천왕동 276	213.30	213.30						가-1	천왕동 276	213.30	213.30						
	광장-2	가-2	천왕동 276	760.40	760.40															폐지
	광장-3	가-3	천왕동 276	1,035.00	1,035.00															폐지
	광장-4	가-4	천왕동 276	300.60	300.60						가-4	천왕동 276	300.60	300.60						
	광장-5	가-5	천왕동 276	304.50	304.50						가-5	천왕동 276	304.50	304.50						
	광장-6										가-6	천왕동 276	61.00	61.00						신설
	광장-7										가-7	천왕동 276	60.00	60.00						신설
	광장-8										가-8	천왕동 276	122.40	122.40						신설
조경	소계			628.90	628.90					24			321.00	321.00					18	감) 307.9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시설	저류지램프	나-1	천왕동 276	279.50	279.50															폐지
	저류지램프	나-2	천왕동 276	193.90	193.90															폐지
	램프	나-3	천왕동 276	59.30	59.30															폐지
	데크쉼터-1										사-1	천왕동 276	100.00	100.00						신설
	데크쉼터-2										사-2	천왕동 276	121.00	121.00						신설
	데크쉼터-3										사-3	천왕동 276	100.00	100.00						신설
	장식벽	①	천왕동 276	8.00	8.00						①	천왕동 276							4	변경
	조명열주	②	천왕동 276							5	②	천왕동 276							5	
	장식열주	③	천왕동 276							6										폐지
조경시설	진입계단A	④	천왕동 276	20.10	20.10					1										폐지
	데크진입계단	⑤	천왕동 276	48.00	48.00					1										폐지
	자연석놓기	⑥	천왕동 276							9	⑥	천왕동 276							9	
	음수전	⑦	천왕동 276							1										폐지
	진입계단B	⑧	천왕동 276	20.10	20.10					1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계			359.70	359.70					57			256.40	256.40					60	감) 103.30
	휴게소1	다-1	천왕동 276	179.00	179.00															폐지
	휴게소2	다-2	천왕동 276	57.70	57.70															폐지
	휴게소3	다-3	천왕동 276	104.00	104.00						다-3	천왕동 276	104.00	104.00						
	스탠드-1										아-1	천왕동 276	76.20	76.20						신설
	스탠드-2										아-2	천왕동 276	76.20	76.20						신설
	평의자B	⑨	천왕동 276							12										폐지
	앉음벽	⑩	천왕동 276	19.00	19.00						⑩	천왕동 276							2	변경
	파고라	⑪	천왕동 276							4										폐지
	야외탁자	⑫	천왕동 276							5	⑫	천왕동 276							5	
	화강석통석의자	⑬	천왕동 276							2	⑬	천왕동 276							2	
	식수대	⑭	천왕동 276							1	⑭	천왕동 276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친수데크	⑮	천왕동 276							1										폐지
	조형마운딩	⑯	천왕동 276							2										폐지
	등의자	⑰	천왕동 276							30	⑰	천왕동 276							30	
	평상										㉛	천왕동 276							20	신설
유희시설	소계												1,195.15	1,195.15	중목구조, 경량목구조	1	295.15	295.15	9	증) 1,195.15
	물놀이장										자	천왕동 276	900.00	900.00						신설
	실내놀이터										2	천왕동 276	295.15	295.15	중목구조, 경량목구조	1	295.15	295.15		신설
	조합놀이대										㉜	천왕동 276							1	신설
	분수놀이시설										㉝	천왕동 276							8	신설
운동시설	소계			73.60	73.60					6			73.60	73.60					6	
	체력단련장-1	라-1	천왕동 276	25.20	25.20						라-1	천왕동 276	25.20	25.20						
	체력단련장-2	라-2	천왕동 276	48.40	48.40						라-2	천왕동 276	48.40	48.4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동)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동)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관리시설	체력단련시설E	⑱	천왕동 276							1										폐지
	체력단련시설F	⑲	천왕동 276							1										폐지
	체력단련시설G	⑳	천왕동 276							1										폐지
	체력단련시설H	㉑	천왕동 276							1										폐지
	체력단련시설I	㉒	천왕동 276							1										폐지
	체력단련시설J	㉓	천왕동 276							1										폐지
	체력단련시설										㉔	천왕동 276							6	신설
편익시설	소계												61.90	61.90						증) 61.90
	주차장										마-2	천왕동 276	61.90	61.90						시설변경 (관리시설 → 편익시설) (주차장 5대)
관리시설	소계			252.40	252.40					45			190.84	190.84	철근콘크리트 구조	1	190.84	189.96	46	감) 61.56
	관리사무소	마-1	천왕동 276	190.50	190.50						1	천왕동 276	190.84	190.84	철근콘크리트 구조	1	190.84	189.96		부호변경 (마-1→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주차장	마-2	천왕동 276	61.90	61.90															
	종합안내판	㉔	천왕동 276							1										폐지
	공원이용안내판	㉕	천왕동 276							2										폐지
	저류지안내판	㉖	천왕동 276							2										폐지
관리시설	수목보호홀덮개	㉗	천왕동 276							16	㉗	천왕동 276							16	
	안전휀스	㉘	천왕동 276				522m				㉘	천왕동 276							1	522.00m
	수질정화장치	㉙	천왕동 276							3	㉙	천왕동 276							3	
	잔디등	㉛	천왕동 276							21	㉛	천왕동 276							21	
	안내판										㉟	천왕동 276							5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27,034.50									26,312.45							감) 722.05
	녹지			20,634.50									26,312.45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저류지	바		6,400.00							바		(6,400.00)							(유수지와 중복결정/시설면적 미포함)

2.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86.10	2,714.20				
변경					1,174.60	4,203.96				
당초	소로	계			986.10	2,714.20				
변경					217.60	1,641.60				
폐지		3류	연-1	4.5	23.00	101.80	연결로	진-1	가-2	
폐지		3류	연-2	4.5	20.50	98.60	연결로	진-1	가-2	
폐지		3류	연-3	2.0	10.70	21.60	연결로	나-1	나-2	
폐지		3류	연-4	3.0~5.0	9.40	28.80	연결로	산-1	진입계단	
폐지		3류	산-1	3.0	34.80	403.80	산책로	가-3	가-4	
폐지		3류	산-2	3.0	100.90	313.00	산책로	산-1	산-1	
폐지		3류	산-3	2.0	65.80	139.20	산책로	가-3	연-4	
폐지		3류	산-4	2.0	116.10	223.20	산책로	연-4	다-3	
폐지		3류	산-5	2.0	49.10	110.00	산책로	산-7	다-3	
폐지		3류	산-6	3.0	52.50	158.90	산책로	다-3	가-4	
폐지		3류	산-7	3.0	225.90	678.70	산책로	가-3	다-3	
폐지		3류	산-8	2.0	48.50	101.10	산책로	나-1	산-7	
폐지		3류	진-1	1.0~1.5	228.90	335.50	진입로	중로2-3	가-3	
신설		3류	1	6.0	55.00	337.40	진입로	공원경계	물놀이장	
신설		3류	2	4.5	20.50	98.60	연결로	소로-1	소로-4	
신설		3류	3	2.0	10.70	21.60	연결로	소로-1	소로-4	
신설		3류	4	10.0	56.90	569.00	산책로	광장-1	물놀이장	
신설		3류	5	6.0	32.50	195.00	산책로	물놀이장	소로-6	
신설		3류	6	10.0	42.00	420.00	산책로	물놀이장	저류지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계			-	-				
변경					957.00	2,562.36				
신설		3류	1	3.0	53.00	159.00	산책로	광장-4	휴게소3	
신설		3류	2	3.0	226.00	678.00	산책로	휴게소3	광장-7	
신설		3류	3	2.0	48.70	101.70	산책로	산책로-2	소로-5	
신설		3류	4	2.0	11.00	22.00	산책로	소로-5	소로-6	
신설		3류	5	2.0	69.50	139.50	산책로	소로-6	산책로-6	
신설		3류	6	3.0	16.00	48.00	산책로	산책로-14	데크쉼터-3	
신설		3류	7	2.0	112.00	224.00	산책로	산책로-6	휴게소3	
신설		3류	8	3.0~4.0	11.00	38.00	산책로	휴게소3	데크쉼터-1	
신설		3류	9	2.0	49.30	102.00	산책로	휴게소3	산책로-2	
신설		3류	10	2.4	26.50	63.60	산책로	산책로-9	데크쉼터-1	데크로드
신설		3류	11	2.4	18.40	44.16	산책로	데크쉼터-1	데크쉼터-2	데크로드
신설		3류	12	2.4	24.00	57.60	산책로	데크쉼터-2	데크쉼터-3	데크로드
신설		3류	13	2.4~6.0	46.30	123.60	산책로	데크쉼터-3	소로3-6	데크로드
신설		3류	14	3.0	135.00	405.00	산책로	광장-4	광장-6	
신설		3류	15	3.0	102.00	314.00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14	
신설		3류	16	5.0	8.30	42.20	산책로	산책로-14	실내놀이터	

조성계획도 [변경전]

천왕근린공원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33,677.10	6,642.60	-	522m	-	-	132	
기반시설	소계		5,328.00	5,328.00	-	-	-	-	-	
	도로(소계)		2,714.20	2,714.20	-	-	-	-	-	
	광장(소계)		2,613.80	2,613.80	-	-	-	-	-	
	광장-1	가-1	213.30	213.30	-	-	-	-	-	
	광장-2	가-2	760.40	760.40	-	-	-	-	-	
	광장-3	가-3	1,035.00	1,035.00	-	-	-	-	-	
	광장-4	가-4	300.60	300.60	-	-	-	-	-	
	광장-5	가-5	304.50	304.50	-	-	-	-	-	
조경시설	소계		628.90	628.90	-	-	-	-	24	
	저류지램프	나-1	279.50	279.50	-	-	-	-	-	
	저류지램프	나-2	193.90	193.90	-	-	-	-	-	
	램프	나-3	59.30	59.30	-	-	-	-	-	
	장식벽	①	8.00	8.00	-	-	-	-	-	
	초형열주	②	-	-	-	-	-	-	5	
	장식열주	③	-	-	-	-	-	-	6	
	직입계단A	④	20.10	20.10	-	-	-	-	1	
	데크진입계단	⑤	48.00	48.00	-	-	-	-	1	
	사연석놀기	⑥	-	-	-	-	-	-	9	
	옹수전	⑦	-	-	-	-	-	-	1	
	직입계단B	⑧	20.10	20.10	-	-	-	-	1	
휴양시설	소계		359.70	359.70	-	-	-	-	57	
	휴게소1	다-1	179.00	179.00	-	-	-	-	-	
	휴게소2	다-2	57.70	57.70	-	-	-	-	-	
	휴게소3	다-3	104.00	104.00	-	-	-	-	-	
	평의자B	⑨	-	-	-	-	-	-	12	
	앉을벽	⑩	19.00	19.00	-	-	-	-	-	
	파고라	⑪	-	-	-	-	-	-	4	
	아의탁자	⑫	-	-	-	-	-	-	5	
	파장식휴식의자	⑬	-	-	-	-	-	-	2	
	식수대	⑭	-	-	-	-	-	-	1	
	친수데크	⑮	-	-	-	-	-	-	1	
	조형마운딩	⑯	-	-	-	-	-	-	2	
	등의자	⑰	-	-	-	-	-	-	30	
운동시설	소계		73.60	73.60	-	-	-	-	6	
	체적단련장-1	라-1	25.20	25.20	-	-	-	-	-	
	체적단련장-2	라-2	48.40	48.40	-	-	-	-	-	
	체적단련시설E	⑱	-	-	-	-	-	-	1	
	체적단련시설F	⑲	-	-	-	-	-	-	1	
	체적단련시설G	⑳	-	-	-	-	-	-	1	
	체적단련시설H	㉑	-	-	-	-	-	-	1	
	체적단련시설I	㉒	-	-	-	-	-	-	1	
	체적단련시설J	㉓	-	-	-	-	-	-	1	
관리시설	소계		252.40	252.40	-	522m	-	-	45	
	관리사무소	마-1	190.50	190.50	-	-	-	-	-	
	주차장	마-2	61.90	61.90	-	-	-	-	-	
	종합안내판	㉔	-	-	-	-	-	-	1	
	출입이용안내판	㉕	-	-	-	-	-	-	2	
	저류지안내판	㉖	-	-	-	-	-	-	2	
	수목보호덮개	㉗	-	-	-	-	-	-	16	
	안전펜스	㉘	-	-	-	522m	-	-	-	
	수질정화장치	㉙	-	-	-	-	-	-	3	
	잔디등	㉚	-	-	-	-	-	-	21	
녹지 및 기타	소계		27,034.50	-	-	-	-	-	-	
	녹지		20,634.50	-	-	-	-	-	-	
	저류지	바	6,400.00	-	-	-	-	-	-	

Scale=1:800

0 10 20 40 80

조성계획도 [변경후]

천왕근린공원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	비고
합계			33,677.10	7,364.65	-	2	485.99	485.11	139	
기반시설	소계		5,265.76	5,265.76	-	-	-	-	-	
	도로(소계)		4,203.96	4,203.96	-	-	-	-	-	
	광장(소계)		1,061.80	1,061.80	-	-	-	-	-	
	광장-1	가-1	213.30	213.30	-	-	-	-	-	
	광장-4	가-4	300.60	300.60	-	-	-	-	-	
	광장-5	가-5	304.50	304.50	-	-	-	-	-	
	광장-6	가-6	61.00	61.00	-	-	-	-	-	
	광장-7	가-7	60.00	60.00	-	-	-	-	-	
	광장-8	가-8	122.40	122.40	-	-	-	-	-	
조경시설	소계		321.00	321.00	-	-	-	-	18	
	데크일타-1	사-1	100.00	100.00	-	-	-	-	-	
	데크일타-2	사-2	121.00	121.00	-	-	-	-	-	
	데크일타-3	사-3	100.00	100.00	-	-	-	-	-	
	장식벽	①	-	-	-	-	-	-	4	
	조명등주	②	-	-	-	-	-	-	5	
	자연석놀기	⑧	-	-	-	-	-	-	9	
휴양시설	소계		256.40	256.40	-	-	-	-	60	
	휴게소3	다-3	104.00	104.00	-	-	-	-	-	
	스탠드-1	아-1	76.20	76.20	-	-	-	-	-	
	스탠드-2	아-2	76.20	76.20	-	-	-	-	-	
	강좌벤	⑨	-	-	-	-	-	-	2	
	야외탁자	⑩	-	-	-	-	-	-	5	
	화장실용의자	⑬	-	-	-	-	-	-	2	
	식수대	⑭	-	-	-	-	-	-	1	
	등의자	⑰	-	-	-	-	-	-	30	
	평상	㉑	-	-	-	-	-	-	20	
유희시설	소계		1,195.15	1,195.15	철근콘크리트조	1	295.15	295.15	9	
	물놀이장	자	900.00	900.00	-	-	-	-	-	
	실내놀이터	2	295.15	295.15	철근콘크리트조	1	295.15	295.15	-	
	조합놀이대	㉜	-	-	-	-	-	-	1	
	분수놀이시설	㉝	-	-	-	-	-	-	8	
운동시설	소계		73.60	73.60	-	-	-	-	6	
	체력단련장-1	라-1	25.20	25.20	-	-	-	-	-	
	체력단련장-2	라-2	48.40	48.40	-	-	-	-	-	
	체력단련시설	㊱	-	-	-	-	-	-	6	
녹지시설	소계		61.90	61.90	-	-	-	-	-	
	주차장	마-2	61.90	61.90	-	-	-	-	-	
관리시설	소계		190.84	190.84	철근콘크리트조	1	190.84	189.96	46	
	관리사무소	1	190.84	190.84	철근콘크리트조	1	190.84	189.96	-	
	수목보호울타리	㉗	-	-	-	-	-	-	16	
	안전펜스	㉘	-	-	-	-	-	-	1	522.00m
	수질정화장치	㉙	-	-	-	-	-	-	3	
	전신등	㉚	-	-	-	-	-	-	21	
	인니판	㉟	-	-	-	-	-	-	5	
녹지 및 기타	소계		26,312.45	-	-	-	-	-	-	
	녹지		26,312.45	-	-	-	-	-	-	
	저류지	바	(6,400.00)	-	-	-	-	-	-	조성시에 홍수량을 저장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입안 및 결정권자			확인자	
	작성자				
직위	주무관	공원정책팀장	공원녹지과장	주 무 관	추계공원팀장
직급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성명	양 예 지	윤 정 화	손 환 날	가 덕 율	장 창 수
확인인					

Scale=1:800

0 10 20 40 8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0호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7호(2020.4.1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7호(2023.4.20.)로 변경 고시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번지 일대	524,409㎡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기 정	변 경	변 경 사 유
2018년 ~ 2024년	2018년 ~ 2025년	공사 여건으로 인한 마중물사업 추진 지연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관련 도면 : 변경사항 없음

4. 관련 서류 열람
 관련 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2133-8640) 및 영등포구 주택과(☎2670-3668)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1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 결정 및 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를 정비하고 변경 결정 내용과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시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결정

연번	도면번호	지 번		지목	비고
1	2024-3-01	노원구	공릉동 산211-13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면적 감소 (경계 변경)
2	2024-3-02	노원구	공릉동 산215-1	임야	필지 내 비오톱1등급 면적 감소 (경계 변경)

2. 관계도면 : 첨부 #1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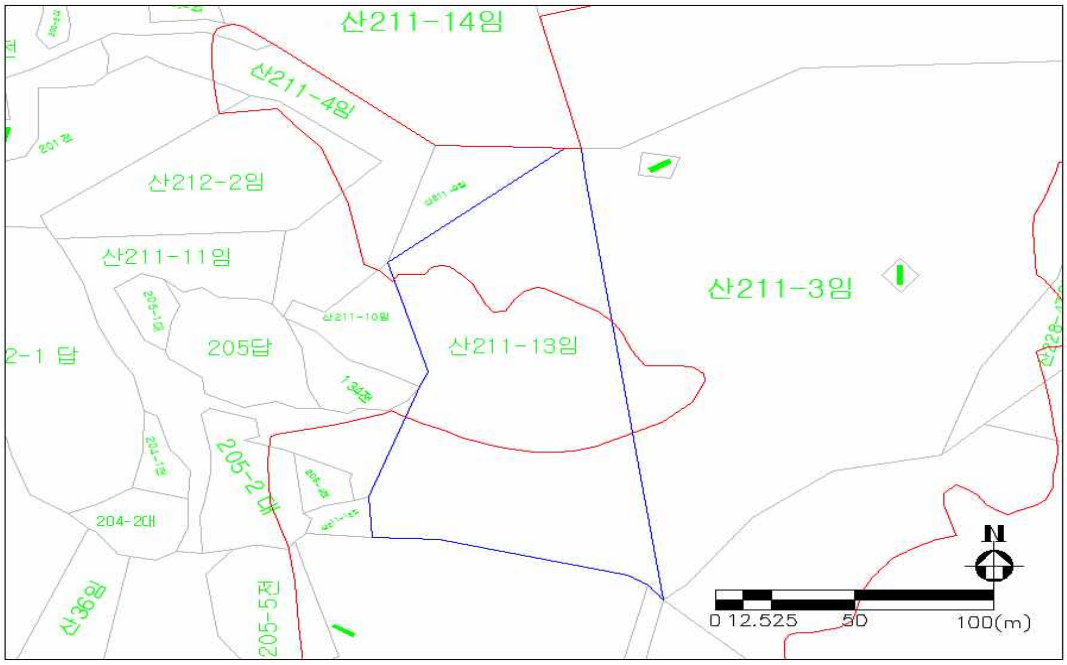
3.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20)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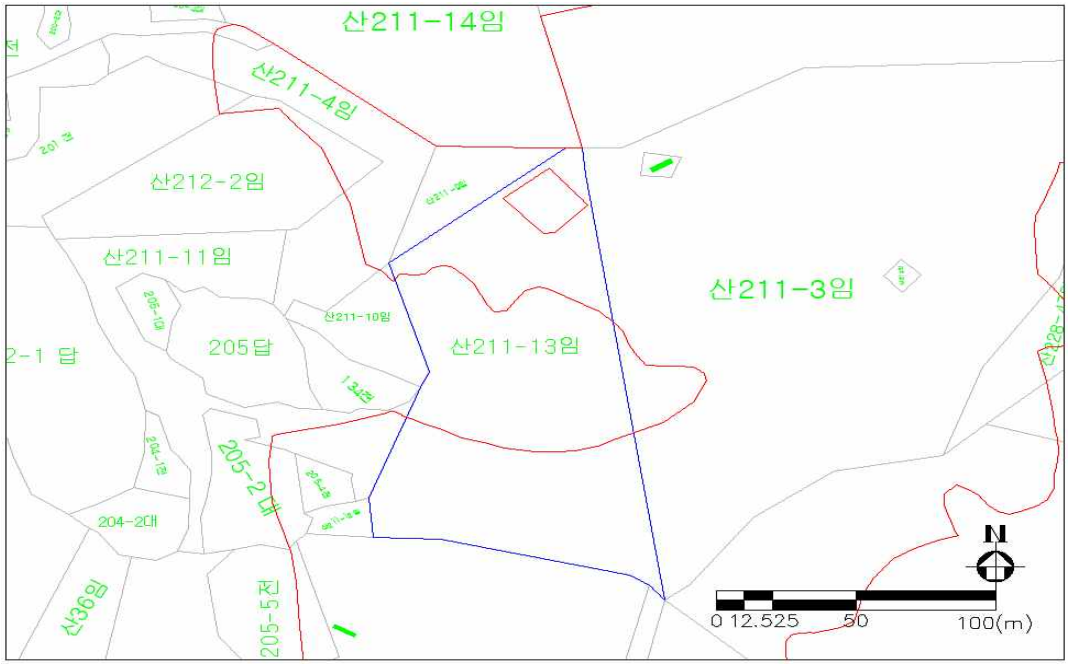
비오톱1등급 토지 경계 변경에 따른 도면

도면 2024-3-01. 노원구 공릉동 산211-13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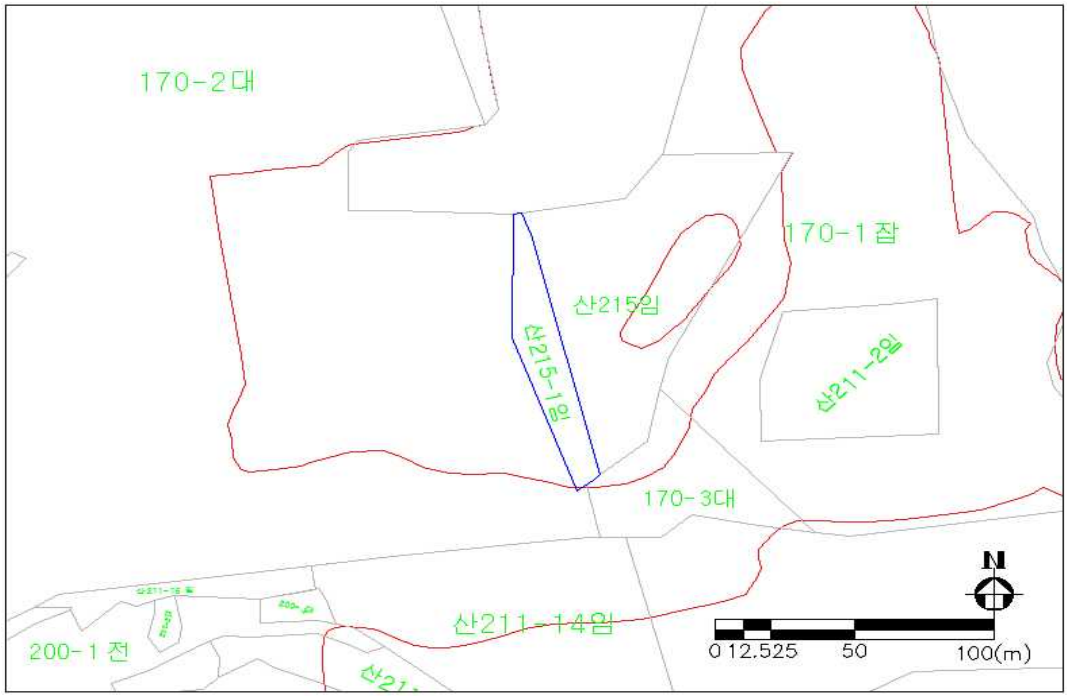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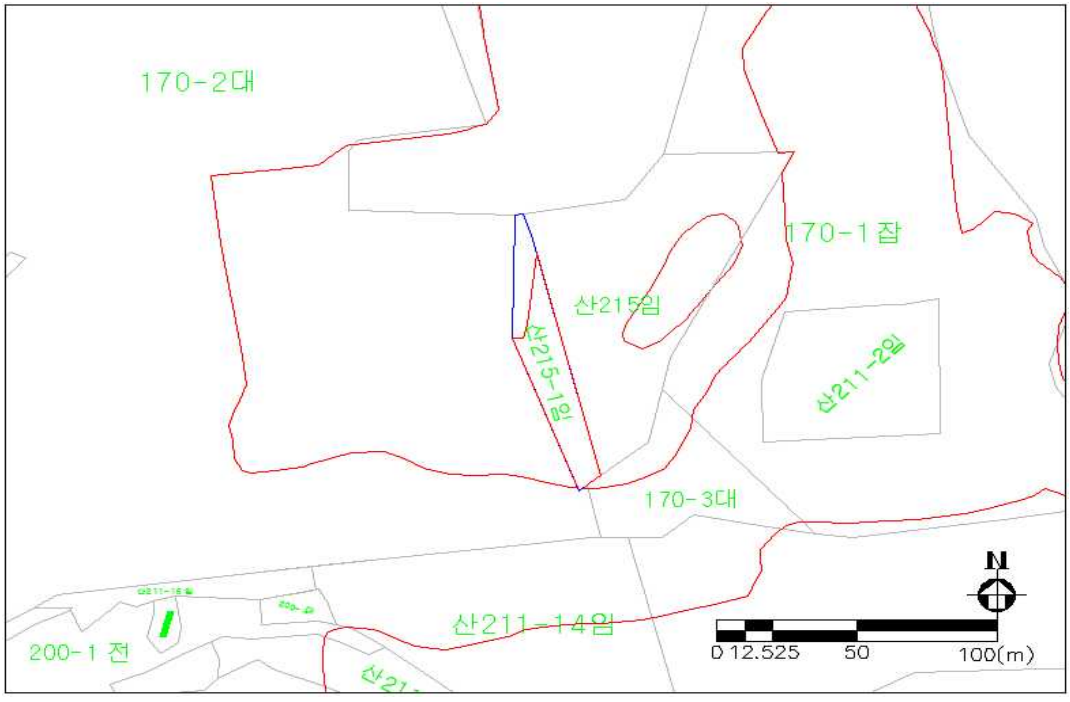


도면 2024-3-02. 노원구 공릉동 산215-1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1975.5.1.)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86호(2002.3.2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6호(2010.11.11.) 및 제2012-30호(2012.2.9.) 및 제2017-471호(2017.12.28.) 및 제2018-302호(2018.9.21.) 및 제2020-563호(2020.12.24.) 및 제2021-727호(2021.12.30.) 및 제2023-173호(2023.5.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교사2관, 교사3관, 박화영음악관)의 확충을 위해 건축계획 등을 반영한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세부시설조성계획 (기본계획)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학 (한양대학교)	제1 캠퍼스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356	-	411,356	1975.5.1. (서고시 제60호)	2021.12.30. (서고 제727호)
		제2 캠퍼스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일대	108,906	-	108,906		
		합계		520,262	-	520,262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구분		구역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캠퍼스	일반관리구역	1	93,909	-	93,909	-
		2	16,118	-	16,118	-
		3	97,387	-	97,387	-
		4	70,610	-	70,610	-
		5	57,374	-	57,374	-
	상징경관구역	6	11,403	-	11,403	-
	외부활동구역	7	5,847	-	5,847	-
		8	20,241	-	20,241	-
		9	4,835	-	4,835	-
	녹지보존구역	10	18,095*	-	18,095*	*비오톱 1등급지 11,588㎡
		11	15,537	-	15,537	-
	소계		411,356	-	411,356	-
2캠퍼스	일반관리구역	12	13,068	-	13,068	-
		13	31,406	-	31,406	-
		14	25,468	-	25,468	-
	외부활동구역	15	9,090	-	9,090	-
	녹지보존구역	16	26,213	-	26,213	-
		17	3,661	-	3,661	-
	소계		108,906	-	108,906	-
합계			520,262	-	520,262	-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	조례 건폐율 (%)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	비고
				기정	변경		
1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0	30.00	27.75	27.48	30	· 비오톱 1등급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내 11,588㎡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3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64,709.0	60.00	33.75	33.72	35	
2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0	30.00	4.28	4.04	20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 3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89,921.0	60.00	16.05	16.21	20	

※ 제1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246,647㎡)에서 비오톱1등급지(11,588㎡)를 제외한 면적(235,059㎡)을 대지면적으로 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3) 밀도계획(용적률)

구분		면적 (㎡)	비오톱 1등급지 (㎡)	공원 (㎡)	산정면적 (㎡)	조례 용적률 (%)	사용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1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46,647	11,588	-	235,059	150	146.45	146.67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64,709	-	-	164,709	200	198.21	198.13	200
2캠퍼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	18,985	150	22.06	20.81	88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89,921	-	-	89,921	200	79.70	80.67	88

※ 제1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246,647㎡)에서 비오톱1등급지(11,588㎡)를 제외한 면적(235,059㎡)을 대지면적으로 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4)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

구분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1 캠퍼스	1	177.49	202.93	202.93	+25.77	203.26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2	157.89	190.99	190.99	+74.20	232.09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3	157.82	181.67	182.06	+24.36	182.18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4	197.43	223.11	223.11	+25.87	223.31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5	158.96	172.84	172.84	+19.93	178.89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일반관리구역
	6	151.32	116.96	116.96	-34.36	116.96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상징경관구역
	7	150.00	8.03	8.03	-141.97	8.03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외부활동구역
	8	163.91	7.01	7.01	-155.92	7.99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9	200.00	4.31	4.31	-195.69	4.31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10	150.00	-	-	-150.00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1	173.41	1.86	1.86	-171.55	1.86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2 캠퍼스	12	195.48	197.54	197.54	+9.52	205.00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일반관리구역
	13	200.00	74.54	74.54	-	125.0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4	199.32	103.85	106.35	-	115.0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15	200.00	-	-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외부활동구역

구분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16	166.70	0.69	0.69	-4.75	0.69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17	200.00	-	-	-	-	•건축배치불가	녹지보존구역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 현황 건축물에 한해 유지

5) 변경 건축물 조서

- 1캠퍼스

구역 구분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	99	박화영음악관	1,042.91	399.27	48.51	-	3,420.84	2,765.32	191.63	-	1,879.67	2,397.36	133.29	-	3(2)	7(1)	2021년(안) 계획 취소 후 2007년(안) 계획 복원
14	B	교사(교사2관)	-	-	823.66	910.50	-	-	3,919.41	4,933.77	-	-	3,919.41	4,933.77	5(-)	6(-)	철거 후 신축
	C	교사(교사3관)	44.11	-	651.56	925.65	237.57	-	3,509.57	3,617.23	237.57	-	3,509.57	3,498.00	6(-)	6(1)	철거 후 신축
	M	기계실	-	-	94.38	-	-	-	94.38	-	-	-	-	-	-(1)	-	철거
	N	연결통로	-	-	116.28		-		129.22	-	-	-	129.22	-	2(-)	-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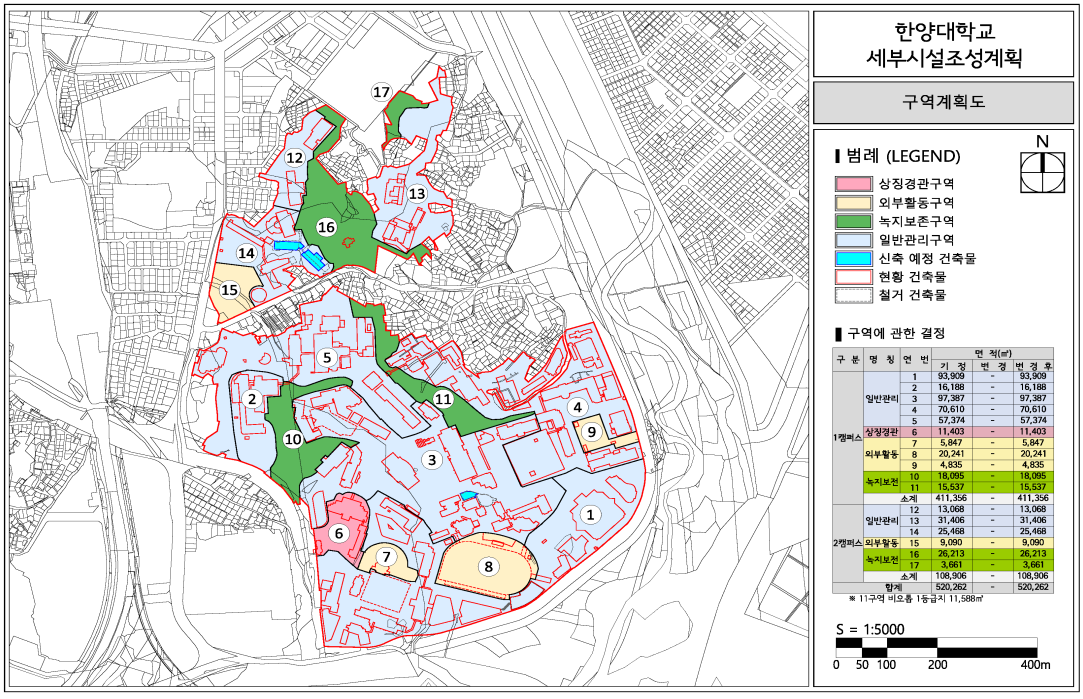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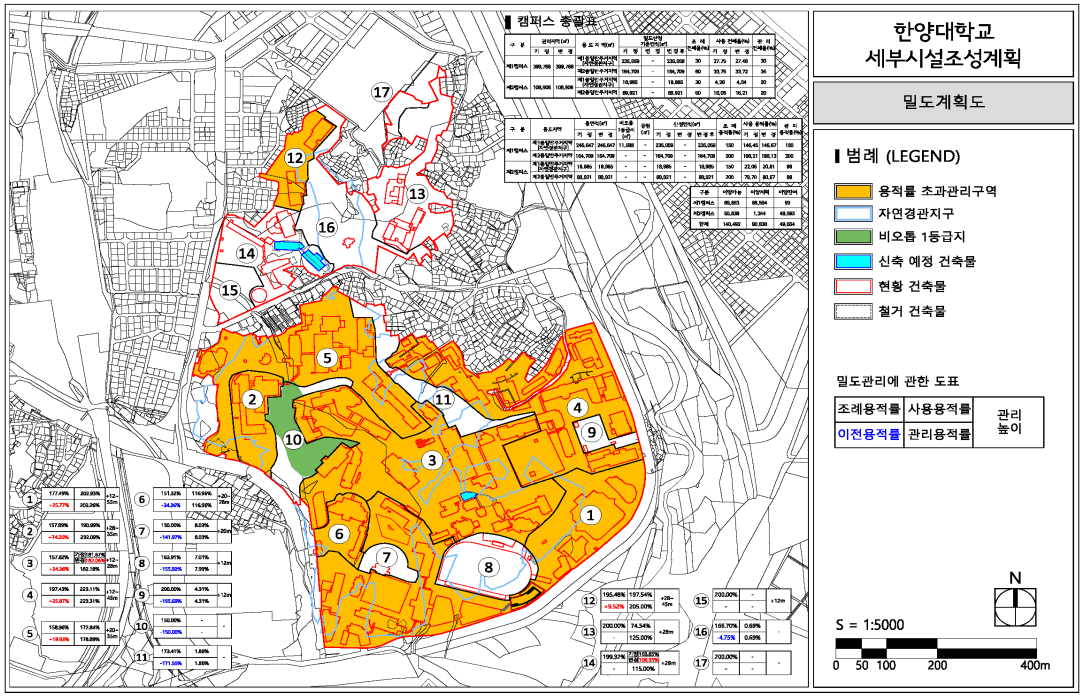
4. 관계도서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2133-8413)
- 성동구 도시계획과: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270, 11층(☏2286-5553)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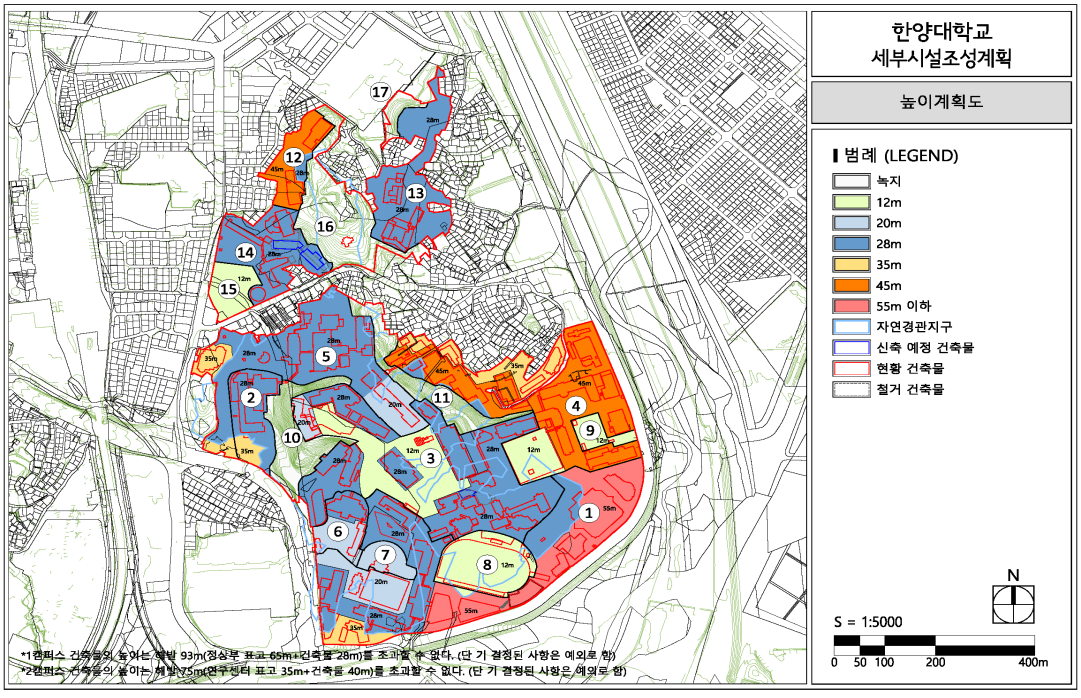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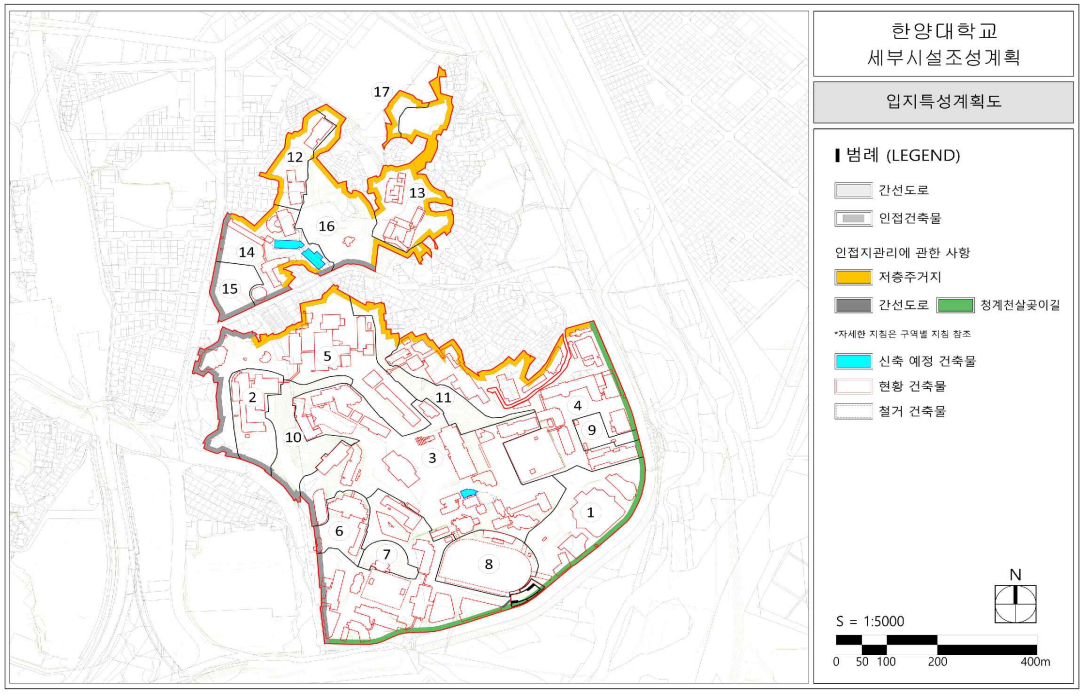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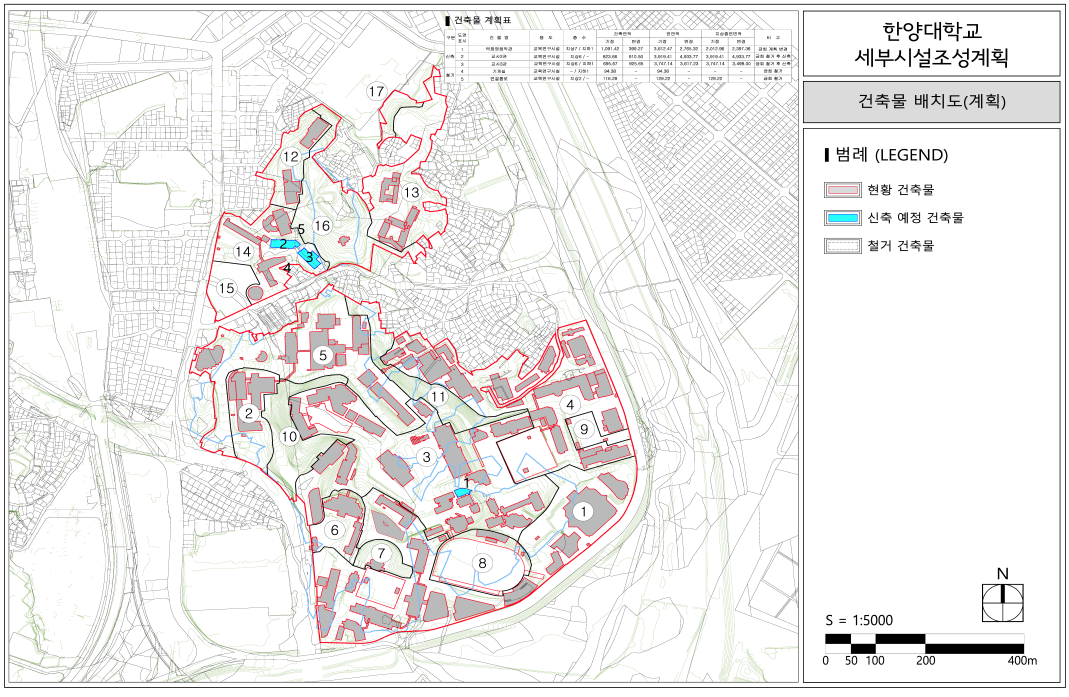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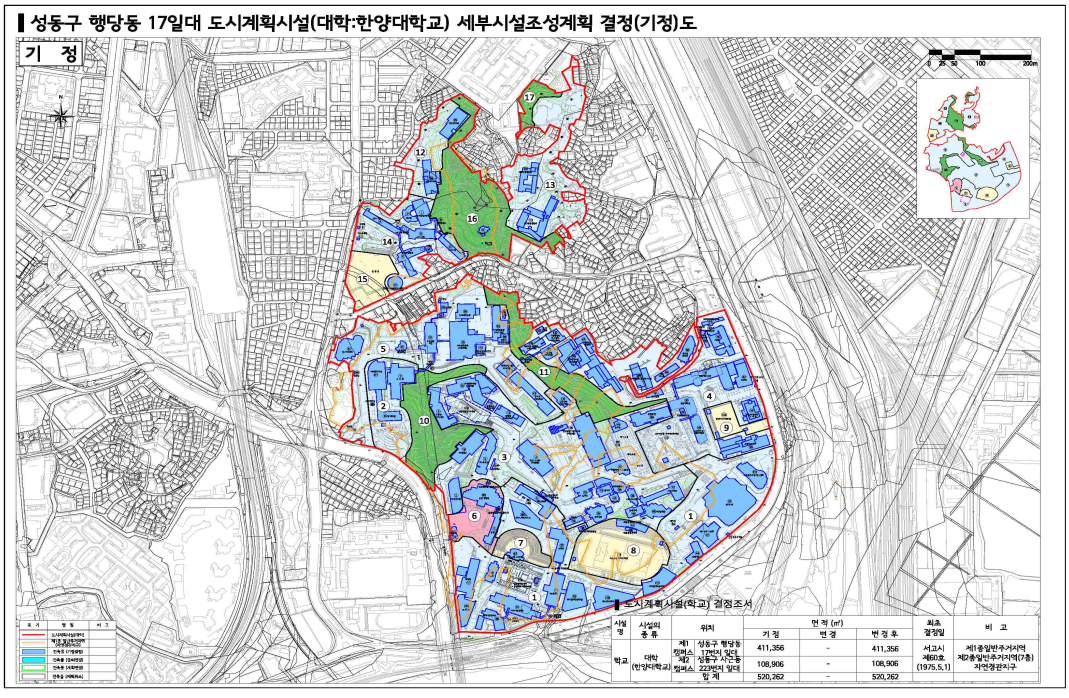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도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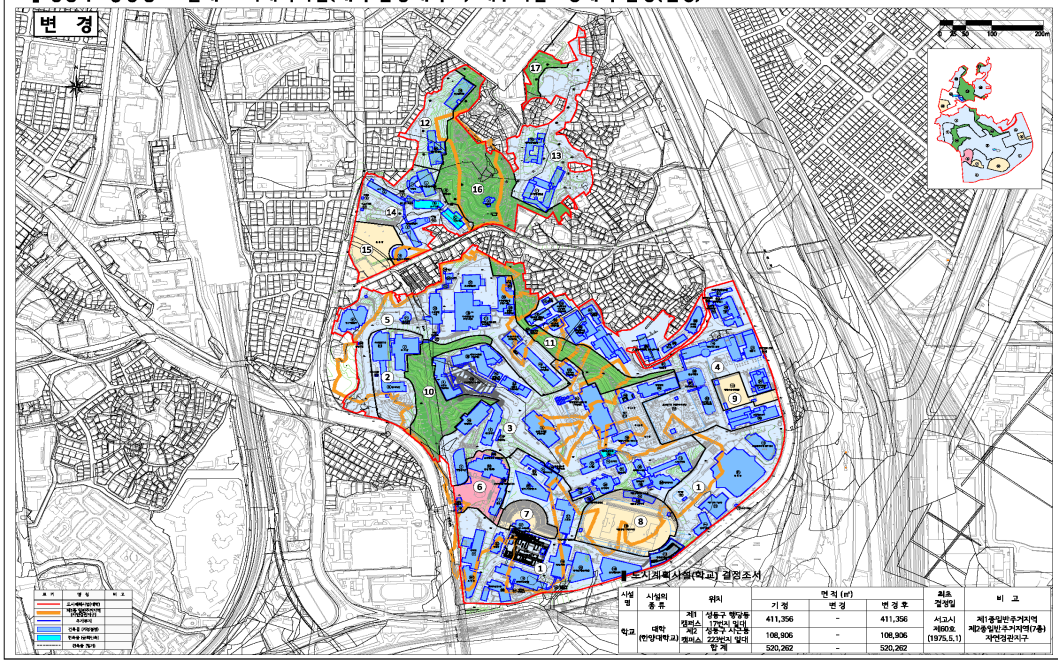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기정)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변경)

▌성동구 행당동 17일대 도시계획시설(대학: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기정	면적 (㎡) 변경	면적 (㎡)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학교	대학 (한양대학교)	제1캠퍼스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356	-	411,356	서고시 제60호 (1975.5.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
		제2캠퍼스	성동구 사근동 222번지 일대	108,906	-	108,906		
		합계		520,262	-	520,26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기 정	면 적 (㎡) 변 경	면 적 (㎡) 변 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학교	대학 (한양대학교)	제1 캠퍼스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411,356	-	411,356	서고시 제60호 (1975.5.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
		제2 캠퍼스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일대	108,906	-	108,906		
		합 계	520,262	-	520,262		

▌건폐율에 관한 결정

구 분	관리지역 (㎡)	용 도 지 역(㎡)		조 례 건폐율(%)	사용 건폐율(%) 기 정	사용 건폐율(%) 변 경	관 리 건폐율(%)
제1캠퍼스	399,76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35,059	30	27.75	27.48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4,709	60	33.75	33.72	35
제2캠퍼스	108,906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30	4.28	4.04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89,921	60	16.05	16.21	20

▌밀도에 관한 결정

구 분	용도지역	총면적 (㎡)	비오톱 1등급지 (㎡)	공원 (㎡)	산정면적 (㎡)	조 례 용적률(%)	사용 용적률(%) 기 정	사용 용적률(%) 변 경	관 리 용적률(%)
제1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46,647	11,588	-	235,059	150	146.45	146.67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4,709	-	-	164,709	200	198.21	198.13	200
제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8,985	-	-	18,985	150	22.06	20.81	88
	제2종일반주거지역	89,921	-	-	89,921	200	79.70	80.67	88

▌구역결정조서 및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및 높이) 조서

구분	명칭	연번	면적(㎡) 기 정	면적(㎡) 변 경	밀도산정 기준면적(㎡) 기 정	밀도산정 기준면적(㎡) 변 경	용적률(%) 조례 기 정	조례 변 경	사용 기 정	사용 변 경	이전 기 정	이전 변 경	관리 기 정	관리 변 경	높이
1캠퍼스	일반관리	1	93,909	93,909	93,909	93,909	177.49	177.49	202.93	202.93	+25.77	+25.77	203.26	203.26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2	16,118	16,118	16,118	16,118	157.89	157.89	190.99	190.99	+74.20	+74.20	232.09	232.09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3	97,387	97,387	97,387	97,387	157.82	157.82	181.67	182.06	+24.36	+24.36	182.18	182.18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4	70,610	70,610	70,610	70,610	197.43	197.43	223.11	223.11	+25.87	+25.87	223.31	223.31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5	57,374	57,374	57,374	57,374	158.96	158.96	172.84	172.84	+19.93	+19.93	178.89	178.89	•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상징경관	6	11,403	11,403	11,403	11,403	151.32	151.32	116.96	116.96	-34.36	-34.36	116.96	116.96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외부활동	7	5,847	5,847	5,847	5,847	150.00	150.00	8.03	8.03	-141.97	-141.97	8.03	8.03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8	20,241	20,241	20,241	20,241	163.91	163.91	7.01	7.01	-155.92	-155.92	7.99	7.99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9	4,835	4,835	4,835	4,835	200.00	200.00	4.31	4.31	-195.69	-195.69	4.31	4.31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녹지보전	10	18,095	18,095	6,507	6,507	150.00	150.00	-	-	-150.00	-150.00	-	-	• 건축배치불가
		11	15,537	15,537	15,537	15,537	173.41	173.41	1.86	1.86	-171.55	-171.55	1.86	1.86	• 건축배치불가(기존건축물에 한해 허용)
2캠퍼스	일반관리	12	13,068	13,068	13,068	13,068	195.48	195.48	197.54	197.54	+9.52	+9.52	205.00	205.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13	31,406	31,406	31,406	31,406	200.00	200.00	74.54	74.54	-	-	125.00	125.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14	25,468	25,468	25,468	25,468	199.32	199.32	103.85	106.35	-	-	115.00	115.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외부활동	15	9,090	9,090	9,090	9,090	200.00	200.00	-	-	-	-	-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녹지보전	16	26,213	26,213	26,213	26,213	166.70	166.70	0.69	0.69	-4.75	-4.75	0.69	0.69	• 건축배치불가(기존건축물에 한해 허용)
		17	3,661	3,661	3,661	3,661	200.00	200.00	-	-	-	-	-	-	• 건축배치불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변경)

▌1캠퍼스 건축물 조서

구역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기정	건축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변경	건축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기정	건축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변경	연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기정	연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변경	연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기정	연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변경	지상층연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기정	지상층연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변경	지상층연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기정	지상층연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변경	층수(기정) 지상	층수(기정) 지하	층수(변경) 지상	층수(변경) 지하	비고
1	5	제2교육관	1,575.00	1,575.00	136.58	136.58	9,096.33	9,096.33	788.83	788.83	9,096.33	9,096.33	788.83	788.83	-	6	-	6	
	11	대학원	1,967.12	1,967.12	-	-	13,665.17	13,665.17	-	-	13,042.73	13,042.73	-	-	1	7	1	7	
	13	제2공학관	1,239.09	1,239.09	401.90	401.90	7,916.43	7,916.43	3,627.93	3,627.93	7,916.43	7,916.43	3,627.93	3,627.93	-	7	-	7	
	14	과학기술관B동	2,100.42	2,100.42	430.21	430.21	17,544.71	17,544.71	3,593.49	3,593.49	12,426.76	12,426.76	2,545.23	2,545.23	3	7	3	7	
	22	박물관	590.62	590.62	407.73	407.73	2,512.11	2,512.11	1,734.18	1,734.18	2,160.67	2,160.67	1,491.57	1,491.57	1	5	1	5	
	27	교육관	1,637.80	1,637.80	-	-	10,364.60	10,364.60	-	-	8,818.60	8,818.60	-	-	2	6	2	6	
	31	체육관	882.80	882.80	6,208.00	6,208.00	3,887.44	3,887.44	27,337.01	27,337.01	2,751.55	2,751.55	19,349.30	19,349.30	2	5	2	5	
	32	제5공학관	-	-	1,817.87	1,817.87	-	-	13,212.39	13,212.39	-	-	12,595.80	12,595.80	1	9	1	9	
	39	과학기술관A동	41.65	41.65	1,458.92	1,458.92	374.85	374.85	13,431.27	13,431.27	249.90	249.90	9,948.58	9,948.58	3	9	3	9	
	44	산학기술관	-	-	930.99	930.99	-	-	6,237.23	6,237.23	-	-	5,470.44	5,470.44	1	7	1	7	
	60	기계실	9.90	9.90	-	-	343.99	343.99	-	-	9.90	9.90	-	-	1	1	1	1	
	64	과학관연결통로	77.12	77.12	-	-	77.12	77.12	-	-	77.12	77.12	-	-	-	1	-	1	
	65	공업센터연결통로	108.99	108.99	-	-	108.99	108.99	-	-	108.99	108.99	-	-	-	1	-	1	
	72	운문스위실	-	-	26.29	26.29	-	-	26.29	26.29	-	-	26.29	26.29	-	1	-	1	
	77	제2산학기술관	-	-	1,713.31	1,713.31	-	-	19,012.23	19,012.23	-	-	17,458.22	17,458.22	1	12	1	12	
	78	자동차공학과실습실	119.97	119.97	-	-	180.00	180.00	-	-	180.00	180.00	-	-	-	2	-	2	
	80	엔지어링하우스	2,527.56	2,527.56	7.16	7.16	12,644.32	12,644.32	80.71	80.71	9,455.33	9,455.33	26.71	26.71	1	5	1	5	
	85	전기실	25.53	25.53	-	-	486.03	486.03	-	-	25.53	25.53	-	-	1	1	1	1	
	100	퓨전테크센터	-	-	2,349.11	2,349.11			25,669.07	25,669.07	-	-	24,268.21	24,268.21	1	12	1	12	
	101	토건관	933.96	933.96	354.26	354.26	6,497.75	6,497.75	790.48	790.48	4,953.77	4,953.77	415.13	415.13	2	7	2	7	
	116	체육관추차장 연구센터	-	-	1,592.18	1,592.18	-	-	10,471.93	10,471.93	-	-	9,347.93	9,347.93	1	7	1	7	
	117	제4공학관	-	-	1,812.65	1,812.65	-	-	14,530.89	14,530.89	-	-	11,774.60	11,774.60	2	10	2	10	
	118	공업센터 지하주차장	89.82	89.82	73.54	73.54	14,754.06	14,754.06	3,137.30	3,137.30	89.82	89.82	73.54	73.54	4	1	4	1	
		소 계	13,927.35	13,927.35	19,720.70	19,720.70	100,453.90	100,453.90	143,681.23	143,681.23	71,363.43	71,363.43	119,208.31	119,208.31					
2	7	도서관	2,187.66	2,187.66	-	-	12,284.66	12,284.66	-	-	12,074.31	12,074.31	-	-	1	6	1	6	
	8	제1의학관	1,550.98	1,550.98	-	-	9,180.35	9,180.35	-	-	9,180.35	9,180.35	-	-	-	6	-	6	
	9-1	의생명연구동	2,094.80	2,094.80	-	-	11,783.80	11,783.80	-	-	9,529.80	9,529.80	-	-	1	7	1	7	
		소 계	5,833.44	5,833.44		-	33,248.81	33,248.81	-	-	30,784.46	30,784.46	-	-					
3	2	학생복지관	1,454.27	1,454.27	-	-	10,399.46	10,399.46	-	-	10,179.89	10,179.89	-	-	1	7	1	7	
	3	중앙도서관	2,376.87	2,376.87	267.33	267.33	18,422.15	18,422.15	2,071.95	2,071.95	12,361.50	12,361.50	1,390.30	1,390.30	3	6	3	6	
	4	제1교육관	1,710.33	1,710.33	-	-	9,440.38	9,440.38	-	-	9,440.38	9,440.38	-	-	-	7	-	7	
	6	어문관	1,738.45	1,738.45	-	-	8,810.96	8,810.96	-	-	7,753.77	7,753.77	-	-	1	5	1	5	
	10	음악관	625.50	625.50	-	-	3,901.37	3,901.37	-	-	3,901.37	3,901.37	-	-	1	7	1	7	
	12	사범대	1,120.34	1,120.34	-	-	7,089.51	7,089.51	-	-	6,169.77	6,169.77	-	-	1	6	1	6	
	16	학문단	412.92	412.92	-	-	2,279.01	2,279.01	-	-	2,279.01	2,279.01	-	-	-	7	-	7	
	17	사회과학관	1,528.27	1,528.27	-	-	12,112.40	12,112.40	-	-	11,327.94	11,327.94	-	-	1	10	1	10	
	18	학생회관	2,120.77	2,120.77	-	-	11,038.00	11,038.00	-	-	10,420.26	10,420.26	-	-	1	7	1	7	
	21	음악대학	258.84	258.84	-	-	1,318.01	1,318.01	-	-	1,318.01	1,318.01	-	-	1	5	-	5	
	26	음악대학	1,327.73	1,327.73	-	-	4,644.00	4,644.00	-	-	4,116.57	4,116.57	-	-	1	5	1	5	
	33	도서관	1,020.96	1,020.96	-	-	8,102.82	8,102.82	-	-	7,080.36	7,080.36	-	-	1	7	1	7	
	35	자연대과학관	3,114.34	3,114.34	-	-	23,404.52	23,404.52	-	-	20,081.44	20,081.44	-	-	2	7	2	7	
	36	사회대도서관	503.92	503.92	-	-	4,005.00	4,005.00	-	-	3,527.44	3,527.44	-	-	3	7	3	7	
	42	폴랫크동	356.18	356.18	-	-	1,547.39	1,547.39	-	-	1,039.96	1,039.96	-	-	2	4	2	4	
	45	법과대학	641.99	641.99	-	-	4,117.79	4,117.79	-	-	3,859.01	3,859.01	-	-	1	7	1	7	
	46	한양종합기술연구원	3,477.51	3,477.51	1,025.19	1,025.19	22,765.13	22,765.13	16,640.75	16,640.75	11,243.46	11,243.46	12,816.57	12,816.57	2	6	2	6	
	48	연구동	60.62	60.62	630.74	630.74	458.74	458.74	5,834.97	5,834.97	401.88	401.88	5,246.32	5,246.32	1	9	1	9	
	51	보일러실	293.88	293.88	-	-	293.88	293.88	-	-	293.88	293.88	-	-	1	1	-	1	
	74	학술정보관멀의점	199.50	199.50	-	-	321.20	321.20	-	-	221.45	221.45	-	-	1	2	1	2	
	75	한양사이버대제2교사	683.25	683.25	288.22	288.22	4,759.74	4,759.74	2,029.22	2,029.22	4,191.52	4,191.52	1,785.70	1,785.70	1	7	1	7	
	88	제3법학관	1,230.75	1,230.75	-	-	7,225.89	7,225.89	-	-	6,307.89	6,307.89	-	-	1	7	1	7	
	89	경영관(2)	-	-	1,750.96	1,750.96	-	-	15,868.58	15,868.58	-	-	12,597.06	12,597.06	2	7	2	7	
	99	박화영음악관	1,042.91	399.27	48.51	-	3,420.84	2,765.32	191.63	-	1,879.67	2,397.36	133.29	-	2	3	1	7	2021년(안) 계획취소 후 2007년(안) 계획 복원
	114	창고	-	-	-	-	61.86	61.86	115.16	115.16	-	-	-	-	-	1	-	1	
	122	간호대학	662.03	662.03	7.32	7.32	4,116.01	4,116.01	51.24	51.24	3,504.69	3,504.69	43.92	43.92	1	6	1	6	
	119	인문대 광장 주차장	6.00	6.00	-	-	3,050.00	3,050.00	-	-	6.00	6.00	-	-	1	1	1	1	
		소 계	27,968.13	27,324.49	4,018.27	3,969.76	177,106.06	176,450.54	42,803.50	42,611.87	142,907.12	143,424.81	34,013.16	33,879.87					
4	19	한양여대본관	-	-	3,054.60	3,054.60	-	-	37,428.44	37,428.44	-	-	28,322.46	28,322.46	3	10	3	10	
	20	초등학교교사	-	-	5,460.50	5,460.50	-	-	10,010.43	10,010.43	-	-	9,726.93	9,726.93	1	6	1	6	
	24	제단교실	354.81	354.81	236.54	236.54	1,840.20	1,840.20	1,127.86	1,127.86	1,412.31	1,412.31	941.54	941.54	1	4	1	4	
	28	유치원보육원	-	-	985.78	985.78	-	-	3,364.56	3,364.56	-	-	2,409.90	2,409.90	1	3	1	3	
	30	전문대학교	-	-	1,435.22	1,435.22	-	-	8,428.64	8,428.64	-	-	8,262.95	8,262.95	1	7	1	7	
	34	한양여자대학도서관	-	-	1,296.57	1,296.57	-	-	8,812.76	8,812.76	-	-	7,066.92	7,066.92	2	7	2	7	
	37	선문대	-	-	1,377.83	1,377.83	-	-	14,070.63	14,070.63	-	-	12,814.66	12,814.66	1	10	1	10	
	38	기숙사	-	-	2,124.32	2,124.32	-	-	14,755.92	14,755.92	-	-	12,633.48	12,633.48	1	10	1	10	
	40	전문대박물관(교수연구동)	-	-	1,228.89	1,228.89	-	-	10,912.66	10,912.66	-	-	10,449.35	10,449.35	1	10	1	10	
	47	제3학생생활관	-	-	661.68	661.68	-	-	3,390.74	3,390.74	-	-	2,734.82	2,734.82	1	5	1	5	
	55	온실관리동	-	-	162.48	162.48	-	-	162.48	162.48	-	-	162.48	162.48	-	1	-	1	
	59	교육연구시설	-	-	5,439.37	5,439.37	-	-	38,761.13	38,761.13	-	-	33,366.98	33,366.98	1	9	1	9	
	61	연선공장	-	-	295.05	295.05	-	-	295.05	295.05	-	-	295.05	295.05	-	1	-	1	
	69	실험연구동	-	-	598.50	598.50	-	-	2,906.10	2,906.10	-	-	2,330.20	2,330.20	1	4	1	4	
	81	한양여대운동실	-	-	112.32	112.32	-	-	112.32	112.32	-	-	112.32	112.32	1	1	-	1	
	86	한양여자대학 교육연구시설	-	-	1,533.68	1,533.68	-	-	11,702.26	11,702.26	-	-	8,807.98	8,807.98	2	12	2	12	
	91	제2학생생활관A동	-	-	384.29	384.29	-	-	3,009.64	3,009.64	-	-	2,634.59	2,634.59	1	7	1	7	
	92	제2학생생활관B동	-	-	362.97	362.97	-	-	2,416.96	2,416.96	-	-	2,163.84	2,163.84	1	7	1	7	
	104	한양여대수위실	-	-	23.21	23.21	-	-	23.21	23.21	-	-	23.21	23.21	-	1	-	1	
	107	용역원실(1)	-	-	7.84	7.84	-	-	7.84	7.84	-	-	7.84	7.84	-	1	-	1	
	108	용역원실(2)	-	-	6.58	6.58	-	-	6.58	6.58	-	-	6.58	6.58	-	1	-	1	
	110	제5학생생활관	-	-	967.02	967.02	-	-	9,561.00	9,561.00	-	-	8,477.46	8,477.46	1	12	1	12	
	123	의생명융합 연구센터	-	-	618.32	618.32	-	-	3,722.85	3,722.85	-	-	2,381.41	2,381.41	2	6	2	6	
		소 계	354.81	354.81	28,373.56	28,373.56	1,840.20	1,840.20	184,990.06	184,990.06	1,412.31	1,412.31	156,132.95	156,132.95					
5	15	병원(본관)	3,619.62	3,619.62	-	-	42,005.58	42,005.58	-	-	35,717.55	35,717.55	-	-	3	18	3	18	
	25	병원(동관)	1,347.14	1,347.14	114.28	114.28	13,625.77	13,625.77	1,155.93	1,155.93	13,625.77	13,625.77	1,155.93	1,155.93	-	13	-	13	
	29	병원(신관)	987.52	987.52	-	-	4,671.49		-	-	4,358.10	4,358.10	-	-	1	5	1	5	
	41	연구지원센터	-	-	2,156.03	2,156.03			14,766.87	14,766.87	-	-	11,956.56	11,956.56	2	7	2	7	
	43	주차장	1,863.62	1,863.62	302.68	302.68	10,230.12	10,230.12	1,816.08	1,816.08	10,230.12	10,230.12	1,816.08	1,816.08	-	6	-	6	
	49	물탱크실	-	-	-	-	721.65	721.65	-	-	-	-	-	-	1	-	1	-	
	50	시체실	267.44	267.44	-	-	572.57	572.57	-	-	572.57	572.57	-	-	-	3	-	3	
	53	폐수처리장(병원)	124.74	124.74	-	-	124.74	124.74	-	-	-	-	-	-	-	1	-	1	
	56	창고	9.92	9.92	-	-	9.92	9.92	-	-	9.92	9.92	-	-	-	1	-	1	
	63	병원연결통로	197.65	197.65	-	-	197.65	197.65	-	-	197.65	197.65	-	-	-	1	-	1	
	68	중환자보호대기실	794.18	794.18	-	-	2,802.55	2,802.55	-	-	1,982.69	1,982.69	-	-	2	5	2	5	
	70	부속병원시관	1,780.29	1,780.29	-	-	10,948.87	10,948.87	-	-	9,557.94	9,557.94	-	-	2	7	2	7	
	71	부속병원제2주차동	354.09	354.09	-	-	5,473.54	5,473.54	-	-	346.17	346.17	-	-	3	2	3	2	
	87	폐수처리장	-	-	-	-	115.20	115.20	-	-	-	-	-	-	-	1	-	1	
	93	방인실	100.35	100.35	-	-	100.35	100.35	-	-	100.35	100.35	-	-	1	-	1	-	
	111	권역응급의료센터	458.46	458.46	-	-	2,453.46	2,453.46	-	-	2,453.46	2,453.46	-	-	-	7	-	7	
	124	의대신축건물	601.22	601.22	200.41	200.41	5,346.36	5,346.36	1,782.12	1,782.12	3,812.55	3,812.55	1,270.85	1,270.85	3	7	3	7	
		소 계	12,506.24	12,506.24	2,773.40	2,773.40	99,399.82	99,399.82	19,521.00	19,521.00	82,964.84	82,964.84	16,199.42	16,199.42					
6	1	보관	950.18	950.18	-	-	3,613.91	3,613.91	-	-	3,613.91	3,613.91	-	-	-	4	-	4	
	52	교수연구동등의지하주차장	95.33	95.33	193.35	193.35	3,597.52	3,597.52	20,751.57	20,751.57	88.83	88.83	159.69	159.69	3	1	3	1	
	73	지하철연결통로	35.27	35.27	120.58	120.58	65.58	65.58	224.23	224.23	27.68	27.68	94.65	94.65	1	1	1	1	
	90	본관행정동	2,053.44	2,053.44	-	-	11,342.02	11,342.02	-	-	9,197.31	9,197.31	-	-	1	6	1	6	
	105	본관행정동연결통로(1)	76.34	76.34	-	-	76.34	76.34	-	-	76.34	76.34	-	-	-	1	-	1	
	106	본관행정동연결통로(2)	78.93	78.93	-	-	78.93	78.93	-	-	78.93	78.93	-	-	-	1	-	1	
		소 계	3,289.49	3,289.49	313.93	313.93	18,774.30	18,774.30	20,975.80	20,975.80	13,083.00	13,083.00	254.34	254.34					
7	67	노천극장스테이지	498.75	498.75	-	-	1,286.20	1,286.20	-	-	469.24	469.24	-	-	1	1	1	1	
8	57	대운동장차광구조물	862.40	862.40	-	-	1,252.40	1,252.40	-	-	1,252.40	1,252.40	-	-	-	2	-	2	
	115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	-	57.42	57.42	-	-	30,823.16	30,823.16	-	-	167.50	167.50	2	1	2	1	
		소 계	862.40	862.40	57.42	57.42	1,252.40	1,252.40	30,823.16	30,823.16	1,252.40	1,252.40	167.50	167.50					
9	102	한양여대지하개발	-	-	155.51	155.51			21,833.56	21,833.56	-	-	208.59	208.59	3	2	3	2	
11	62	의과대학연결통로	-	-	183.27	183.27			289.02	289.02	-	-	289.02	289.02	-	3	-	3	
합 계			65,240.61	64,596.97	55,596.06	55,547.55	433,361.69	432,706.17	464,917.33	464,725.70	344,236.80	344,754.49	326,473.29	326,340.00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도(변경)

▌2캠퍼스 건축물 조서

구역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총수(기정)		총수(변경)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지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1종일반주거지역(지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1종일반주거지역(지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12	79	연구센터(5)	-	-	1,527.94	1,527.94	-	-	11,635.14	11,635.14	-	-	10,188.18	10,188.18	1	7	1	7	
	84	연구센터(4)	-	-	1,704.06	1,704.06	-	-	17,311.55	17,311.55	-	-	15,625.77	15,625.77	1	10	1	10	
		소 계	-	-	3,232.00	3,232.00	-	-	28,946.69	28,946.69	-	-	25,813.95	25,813.95					
13	83	제6생활관	-	-	1,631.00	1,631.00		-	15,118.69	15,118.69	-	-	10,078.20	10,078.20	3	7	3	7	
	121	제7생활관	-	-	2,754.00	2,754.00	-	-	20,405.00	20,405.00	-	-	13,333.00	13,333.00	2	7	2	7	
		소 계	-	-	4,385.00	4,385.00	-	-	35,523.69	35,523.69	-	-	23,411.20	23,411.20					
14	A	교사(교사1관)	-	-	1,359.93	1,359.93	-	-	3,207.17	3,207.17	-	-	3,207.17	3,207.17	-	4	-	4	
	B	교사(교사2관)	-	-	823.66	910.50	-	-	3,919.41	4,933.77	-	-	3,919.41	4,933.77	-	5	-	6	철거 후 신축
	C	교사(교사3관)	44.11	-	651.56	925.65	237.57	-	3,509.57	3,617.23	237.57	-	3,509.57	3,498.00	-	6	1	6	철거 후 신축
	E-1	연고수영실	-	-	12.36	12.36	-	-	12.36	12.36	-	-	12.36	12.36	-	1	-	1	
	F	인쇄실	-	-	82.80	82.80	-	-	82.80	82.80	-	-	82.80	82.80	-	1	-	1	
	G	수위실	-	-	15.75	15.75	-	-	15.75	15.75	-	-	15.75	15.75	-	1	-	1	
	H	한양부속고등학교생활관	587.31	587.31	108.26	108.26	4,344.22	4,344.22	625.76	625.76	3,770.27	3,770.27	523.69	523.69	1	7	1	7	
	I	1관2관화장실	-	-	151.87	151.87	-	-	448.07	448.07	-	-	448.07	448.07	-	3	-	3	
	J	식당동	-	-	641.76	641.76	-	-	2,331.12	2,331.12	-	-	2,331.12	2,331.12	-	4	-	4	
	K	정보종합센타	-	-	1,514.64	1,514.64	-	-	6,171.97	6,171.97	-	-	5,433.73	5,433.73	1	4	1	4	
	L	다목적강당(체육관)	-	-	1,238.25	1,238.25	-	-	2,842.73	2,842.73	-	-	2,827.61	2,827.61	1	4	1	4	
	M	기계실	-	-	94.38	-	-	-	94.38	-	-	-	-	-	1	-	-	-	철거
	N	연결통로	-	-	116.28	-	-	-	129.22	-	-	-	129.22	-	-	2	-	-	철거
		소 계	631.42	587.31	6,811.50	6,961.77	4,581.79	4,344.22	23,390.31	24,288.73	4,007.84	3,770.27	22,440.50	23,314.07					
16	D	생활관	180.23	180.23	-	-	191.11	191.11	-	-	180.23	180.23	-	-	1	1	1	1	
		합 계	811.65	767.54	14,428.50	14,578.77	4,772.90	4,535.33	87,860.69	88,759.11	4,188.07	3,950.50	71,665.65	72,539.22					
합 계			66,052.26	65,364.51	70,024.56	70,126.32	438,134.59	437,241.50	552,778.02	553,484.81	348,424.87	348,704.99	398,138.94	398,879.2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3호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번지 일대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5,377.10	층 수	지하 3층, 지상 20층
건축면적(㎡)	3,207.89	건폐율(%)	59.66
연면적(㎡)	38,866.88	용적률(%)	499.91
주 용 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대수	270
동 수	1	세 대 수	276

4. 사업기간 : 2019.~ 2028.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다.「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Ⅰ. 결정취지

○ 관악구 신림동 544 일대 공공주택 복합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1998.3.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0호(2002.7.2.)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2014.7.24.)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5호(2023.7.27.)로 변경결정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림동 1474일대	158,693	-	158,69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8,693	-	158,693	100.0	
일반상업지역		57,943	-	57,943	36.5	
준주거지역		-	증) 5,480.3	5,480.3	3.5	
일반주거지역		100,750	-	95,269.7	6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2,236	감) 5,480.3	46,755.7	29.5	
	제2종일반주거지역	8,797	-	8,797	5.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072	-	7,072	4.4	
	제1종일반주거지역	32,645	-	32,645	20.6	

주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도로 부분임
주2) 해당 변경사항은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림동 544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480.3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 도로외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광로	2	19	40~50	주간선	35,306 (714)	삼전동	방화동	순환도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503호 (1969.8.27.)	남부 순환로
기 정	대로	3	218	20~49	보조 간선	3,010 (556)	신림동 산104-8	신림동 527-21 (광1-4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94호 (1998.3.13.)	난곡로
기 정	대로	3	225	12~34	보조 간선	4,801 (628)	신림동 566 (광로2-19)	봉천동 256 (대로3-208)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도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6호 (2010.4.1.)	입체적 결정 공원 일부 중복
신설	소로	3	A	8	국지도로	(49)	신림동 564-3	신림동 564-1	일반도로	-	난곡1 특별계획구역 일부포함

주1) ( )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주2) 해당 변경사항은 난곡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소로 신설(일부포함)에 대한 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림동 544	도로 신설 - 폭원 : 8m, 연장 : 49m - 기점 : 신림동 564-3 - 종점 : 신림동 564-1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교통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도로신설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난곡1 특별계획구역	신림동 544	5,480.3	-	5,480.3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기정	난곡2 특별계획구역	신림동 1485-1 일대	4,182.2	-	4,182.2	제이타워웨딩홀 부지
기정	난곡3 특별계획구역	신림동 1484-1 일대	3,235.1	-	3,235.1	런던웨딩홀 부지 일대
기정	난곡4 특별계획구역	신림동1569-10 일대	5,212.1	-	5,212.1	신봉터널상부 유휴부지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난곡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기정

구 분		내 용	비 고
면 적		5,480.3㎡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공공기여		순부담률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및 건축물 기부채납 가능: 공공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생활권 계획상 지역필요시설 우선 확충 권장)	
용도	권장용도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놀이형시설 운동시설 중 놀이형시설	-
	전략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저층부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가로활성화 용도 (2층 이하)

구 분		내 용	비 고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밀도	건폐율	60% 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250%이하 / 35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높 이		80m이하	-
건축한계선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
공개공지		건축계획 시 주출입구 전면(간선가로변)에 조성	-
차량출입불허구간		남부순환로변 및 남부순환로와 맞닿은 가각부에 지정	-
기타		비주거용도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 설치

주1) 전략용도는 일반 권장용도 보다 용적률 인센티브 1.2배 가중치 적용함
주2)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밀도, 높이, 공공기여 등) 및 별도 지침 적용함
주3)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시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면 적		5,480.3㎡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50% 이상 공공용도 조성 - 권장용도 및 생활권 계획상 지역필요시설 우선 확충 권장	
용도	권장용도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구 분		내 용	비 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놀이형시설 운동시설 중 놀이형시설	
	전략용도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과 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저층부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가로활성화용도 (2층이하)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밀도	건폐율	7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1항에 따른 특례 적용
	용적률	500%이하	
높 이		80m이하	-
건축한계선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
공개공지		남부순환로 간선가로변 공개공지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남부순환로변 및 남부순환로와 맞닿은 가각부에 지정	-
기타		비주거용도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 설치

주1) 전략용도는 일반 권장용도 보다 용적률 인센티브 1.2배 가중치 적용함
주2)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밀도, 높이, 공공기여 등) 및 별도 지침 적용함
주3)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시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사항	결 정 사 유	비 고
공공기여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의 주체(기부자) 미성립 ※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동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

변경사항	결 정 사 유	비 고
	• 변경내용 - (당초) 순부담률15%이상 기부채납 - (변경)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50%이상 공공용도로 조성	
용도	•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 추진에 따라 주택건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기정) 전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변경) 전략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
밀도	•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 추진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1항에 따른 특례 적용 • 변경내용 - 건폐율 : 60%→70% - 용적률(기준/허용/상한) : 250%/350%/400%→500%이하 ※ (기정)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주2) :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밀도, 높이, 공공기여 등) 및 별도 지침 적용함	-
공개공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계획에 따른 공개공지 위치조정 • 변경내용 - (기정) 건축계획 시 주출입구 전면(간선가로변)에 조성 - (변경) 남부순환로 간선가로변 공개공지 설치 ※ (기정)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주3)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시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2) 난곡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3) 난곡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4) 난곡4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나. 친환경계획 : 변경없음
다. 가설건축물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난곡1 특별계획구역	신림동 544	5,480.3	-	5,480.3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480.3	-	5,480.3	100.0	
	소 계	5,480.3	-	5,480.3	100.0	
	준주거지역	-	증) 5,480.3	5,480.3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감) 5,480.3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림동 544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480.3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 신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A	8	국지도로	(49)	신림동 564-3	신림동 564-1	일반도로	-	난곡1 특별계획구역 일부포함

주1) ( )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주2) 해당 변경사항은 난곡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소로 신설(일부포함)에 대한 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림동 544	• 도로 신설 - 폭원 : 8m, 연장 : 49m - 기점 : 신림동 564-3 - 종점 : 신림동 564-1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교통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도로신설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내용	비고	내용	비고
권장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놀이형시설 • 운동시설 중 놀이형시설	-	• 좌동(변경없음)	-
전략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과 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저층부 권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가로활성화 용도 (2층 이하)	• 좌동(변경없음)	가로활성화 용도 (2층 이하)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좌동(변경없음)	-

2) 건축물 밀도계획 :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1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허용 용적률	• 250%이하 / 350%이하	-	
	상한용적률	• 400%이하	• 500%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1항에 따른 특례 적용

3)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높 이	• 80m이하	• 좌동(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계획

① 건축물 배치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 좌동(변경없음)

②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 건축계획 시 주출입구 전면(간선가로변)에 조성	• 남부순환로 간선가로변 공개공지 설치

주1)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시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5.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6. 기타사항 - 변경없음

7. 공공기여계획

가. 공공기여 및 시설계획 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의 주체(기부자) 미성립

※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동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 변경내용 : (당초) 순부담률 15%이상 기부채납
(변경)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50%이상 공공용도로 조성

구 분		비 고
용도지역 변경사항	• 제3종일반주거지역(250%) → 준주거지역(400%)	-
증가용적률 50% 비율	• (400% - 250%) / 2 = 75%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기준
공공용도 조성 필요 연면적	• 4,032.8㎡ (증가용적률의 50%)	• 실사용대지면적 5,377.1㎡x 75%
공공용도(도서관) 계획 연면적	• 4,693.9㎡ (증가용적률의 58.2%)	-

8.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내 용	비 고	내 용	비 고
면 적		• 5,480.3㎡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 좌동(변경없음)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좌동(변경없음)	
공공기여		• 순부담률15%이상 기부채납 - 도로 및 건축물 기부채납 가능 : 공공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생활권계획상 지역필요시설 우선 확충 권장)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50% 이상 공공용도로 조성 - 권장용도 및 생활권 계획상 지역필요시설 우선 확충 권장	
용도	권장 용도	•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놀이형시설 • 운동시설 중 놀이형시설	-	• 좌동(변경없음)	-
	전략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과 복합된 통합공공임대 주택
	저층부 권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가로활성화 용도 (2층이하)	• 좌동(변경없음)	• 좌동 (변경없음)
	불허 용도	•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 좌동(변경없음)	-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내 용	비 고	내 용	비 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 70%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35조 1항에 따른 특례 적용
	용적률	• 기준 250%이하 / 허용 350%이하 / 상한 400%	-	• 500%이하	
높 이		• 80m이하	-	• 좌동(변경없음)	-
건축 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 이면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5m	-	• 좌동(변경없음)	-
공개공지		• 건축계획 시 주출입구 전면(간선가로변)에 조성	-	• 남부순환로 간선가로변 공개공지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남부순환로변 및 남부순환 로와 맞닿은 가각부에 지정	-	• 좌동(변경없음)	-
기타		• 비주거용도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지상층 설치	• 좌동(변경없음)	• 지상층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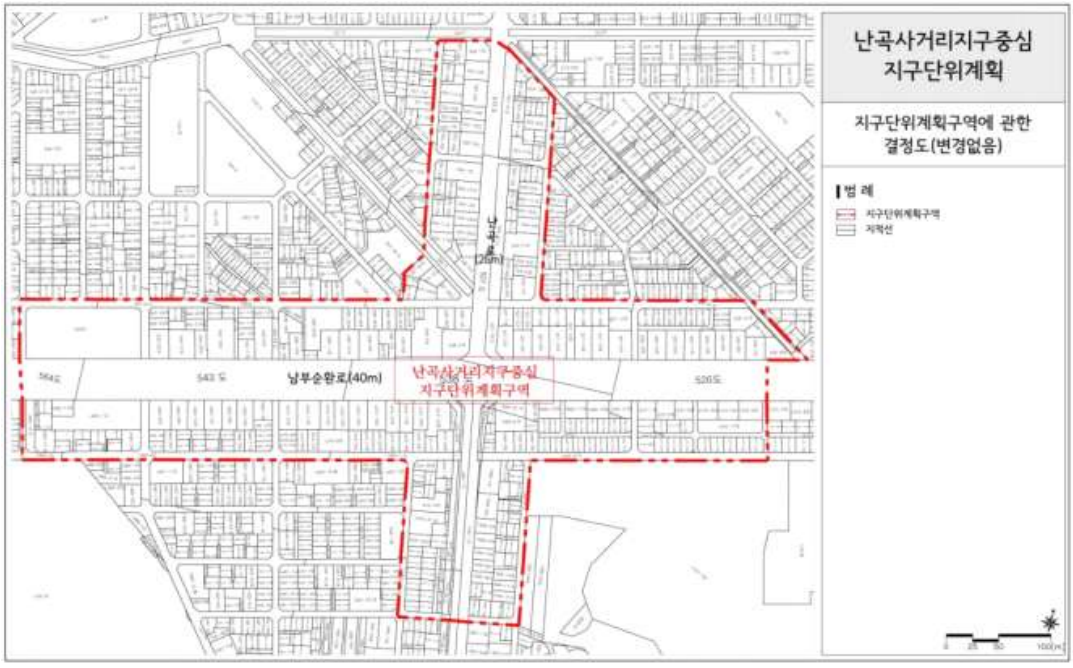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74)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 02-3410-794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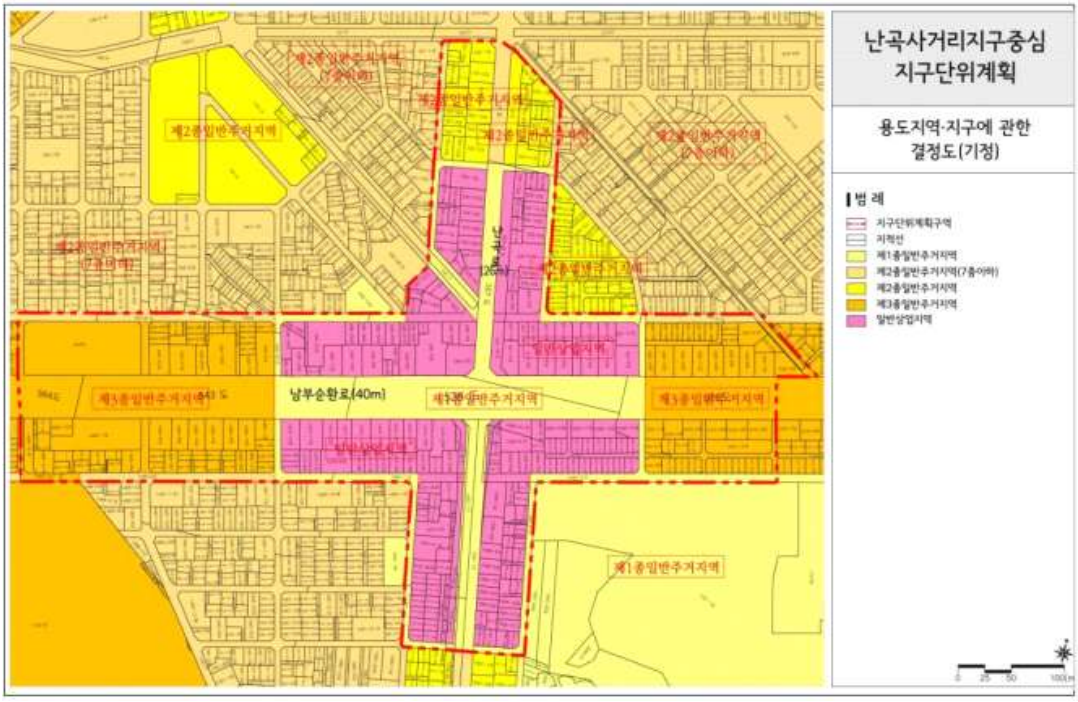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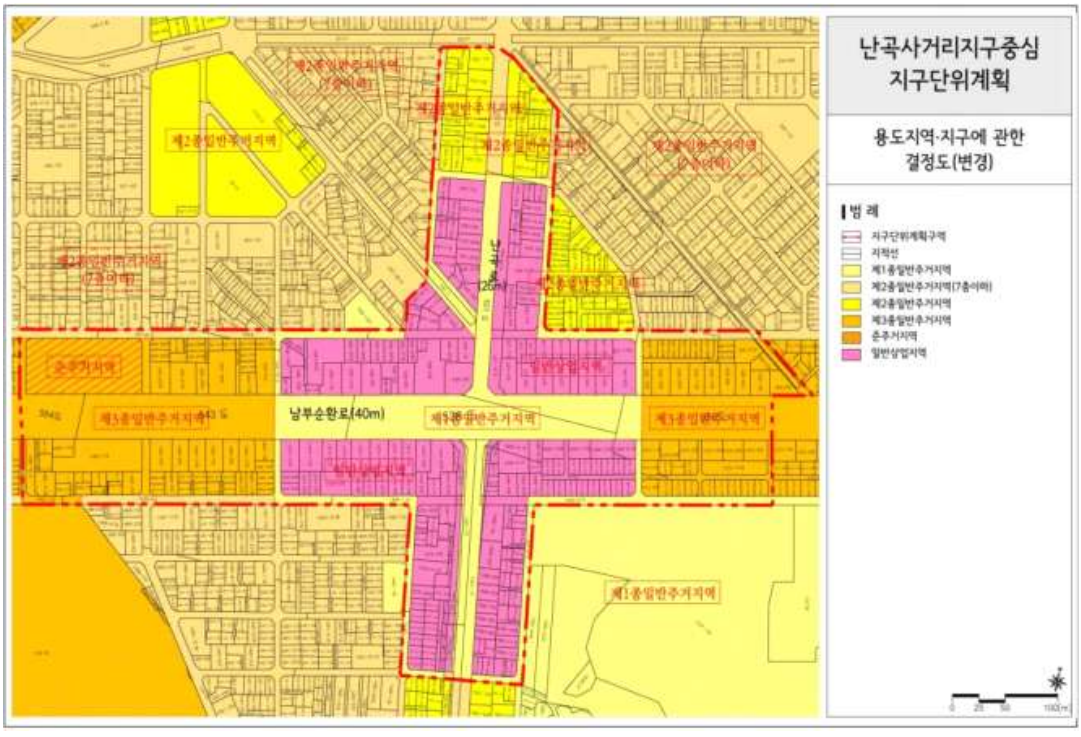
이하여백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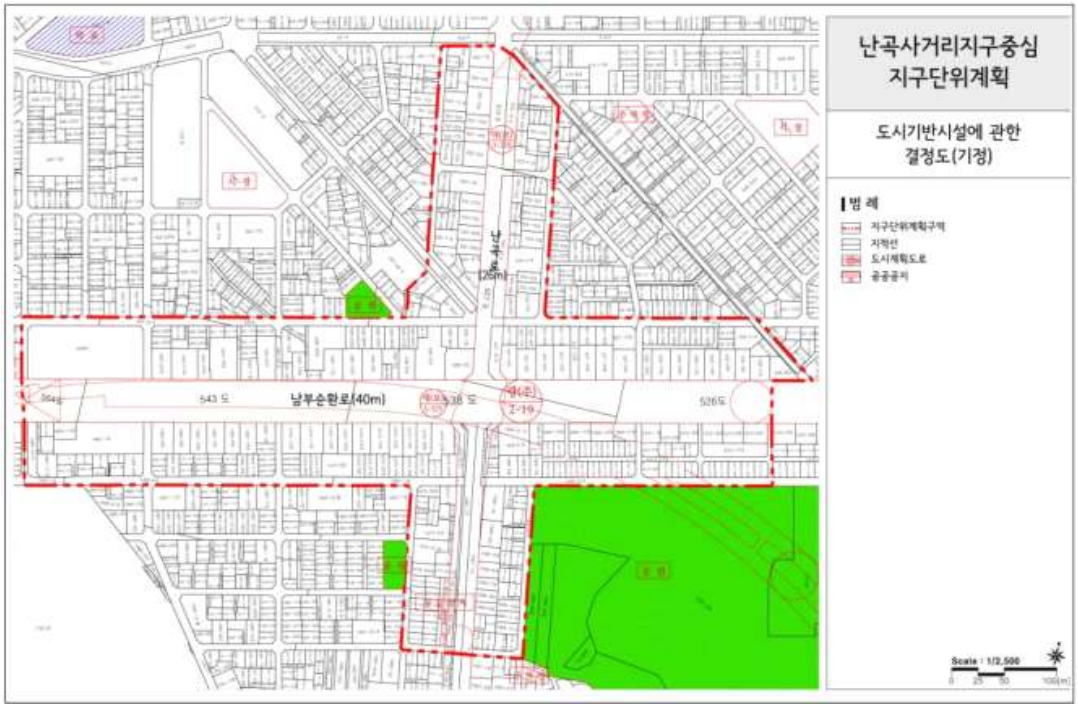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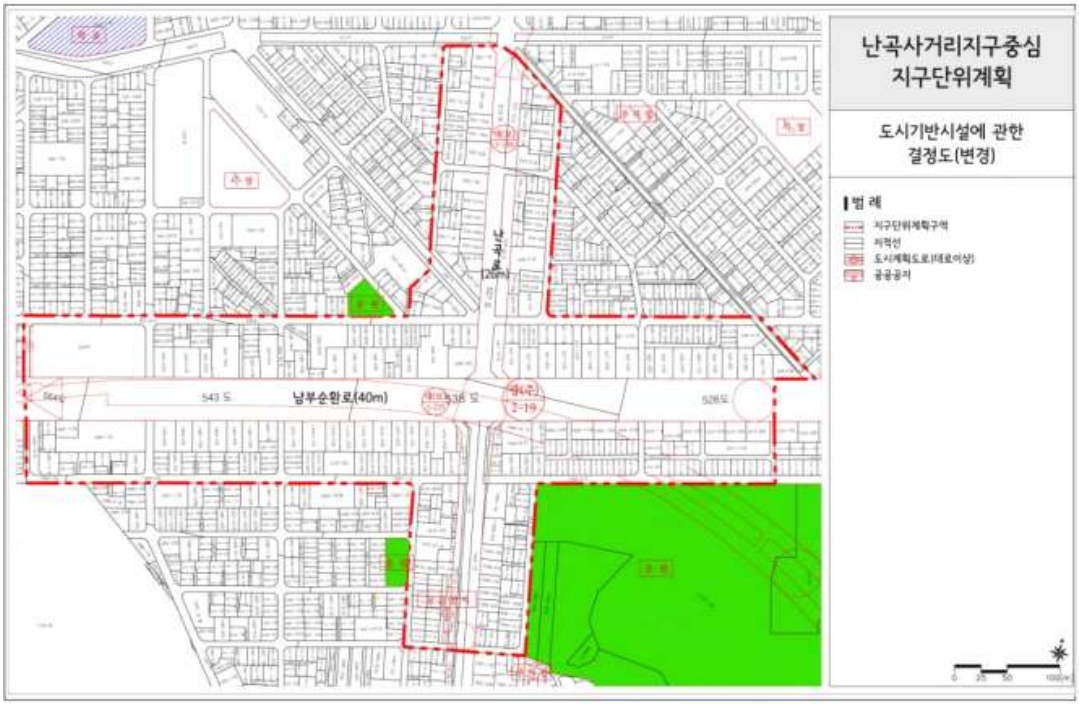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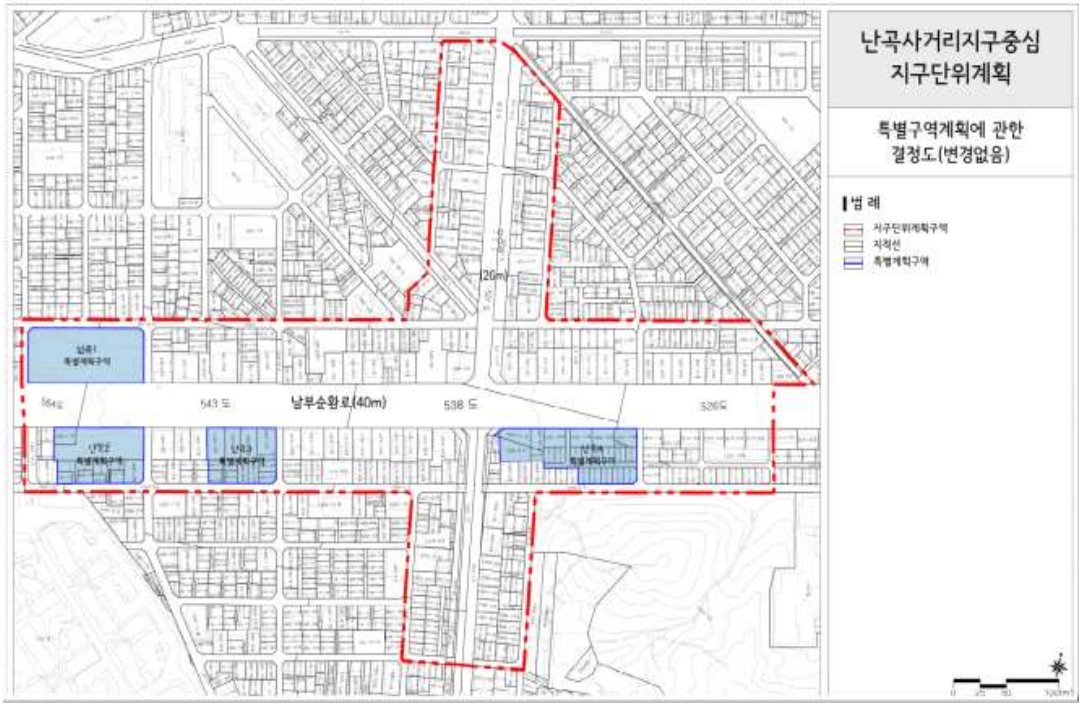
– 기정



–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이하여백)

■ 난곡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기정



– 변경



붙임2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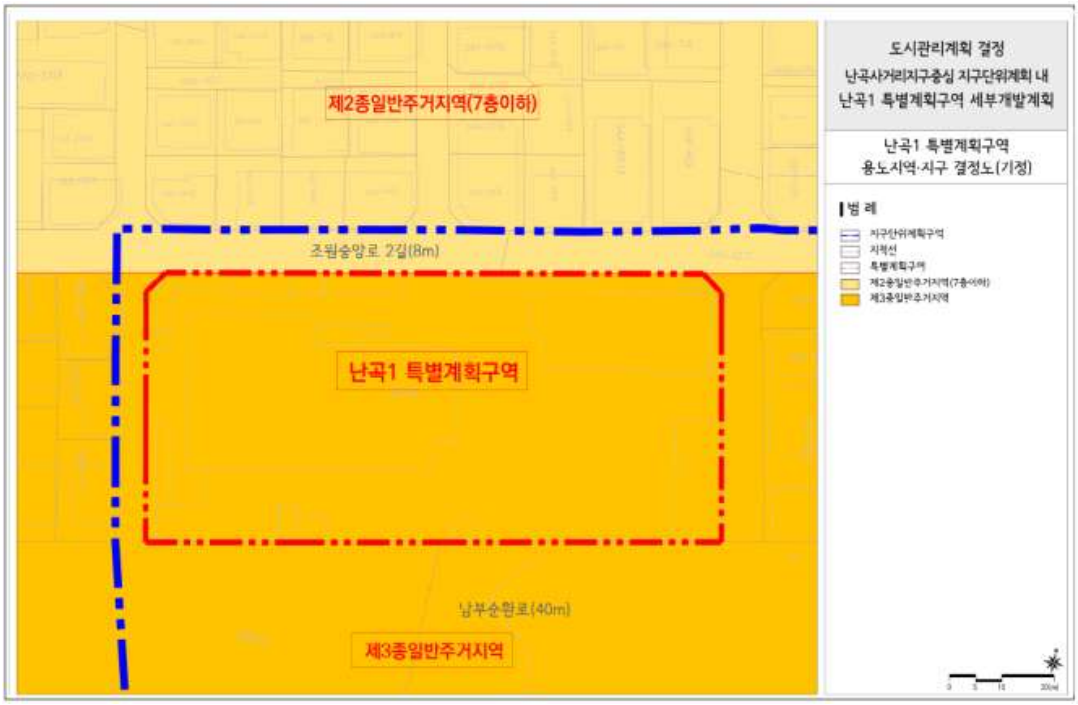
■ 난곡1 특별계획구역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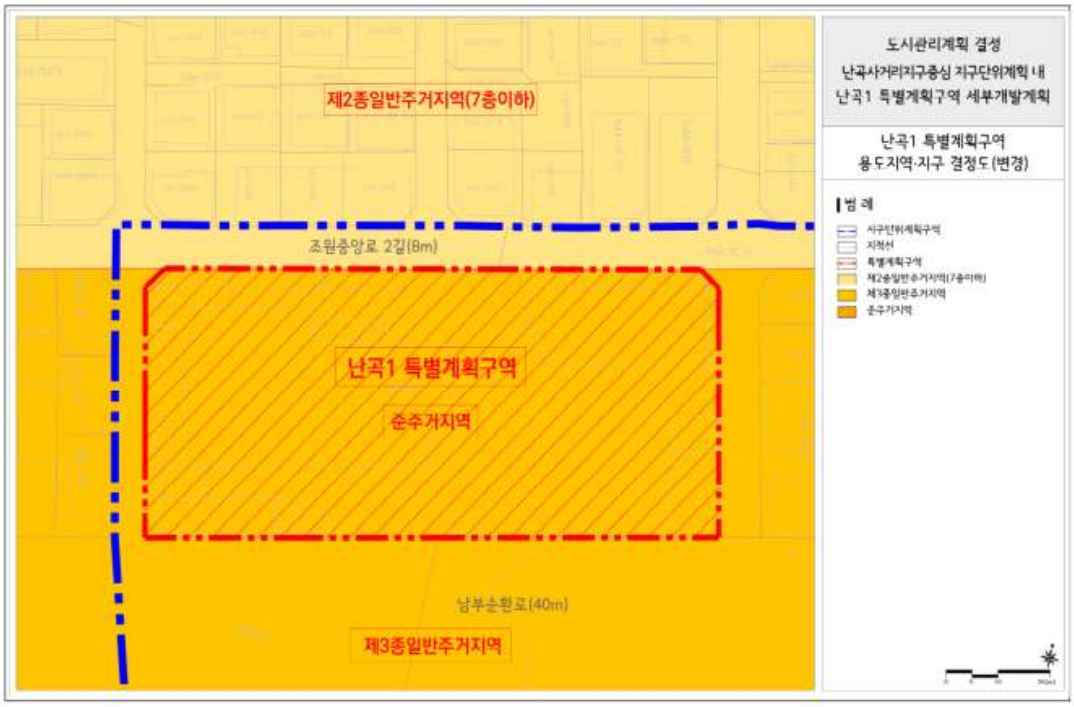
(이하여백)

■ 난곡1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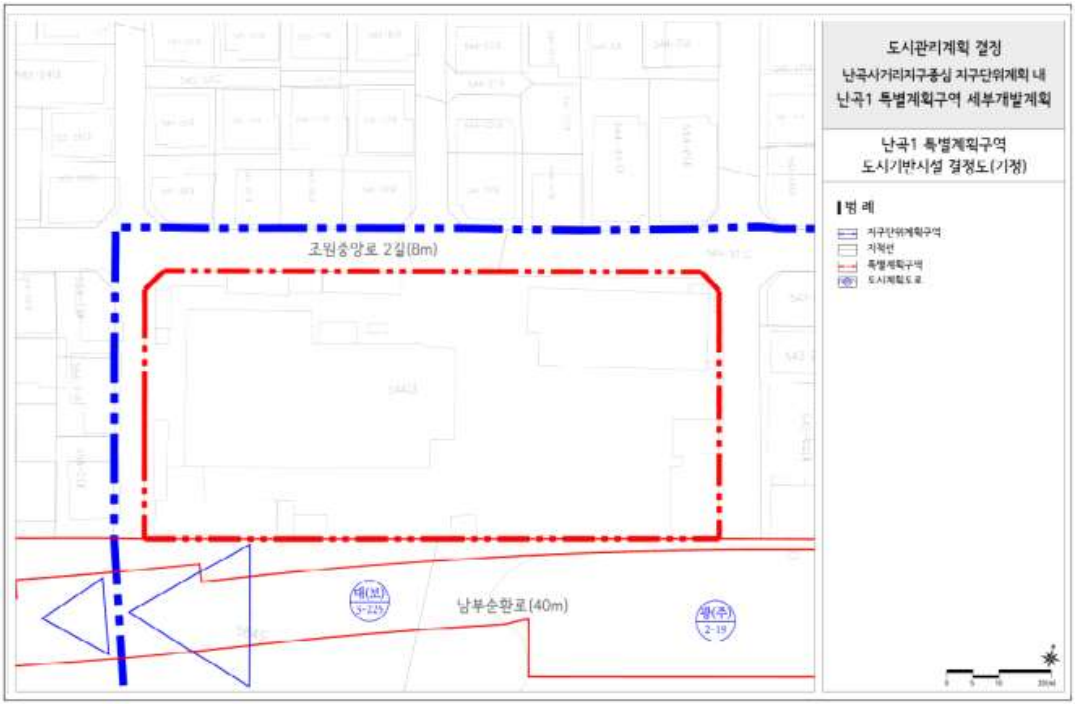


– 변경



■ 난곡1 특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기정



– 변경



■ 난곡1 특별계획구역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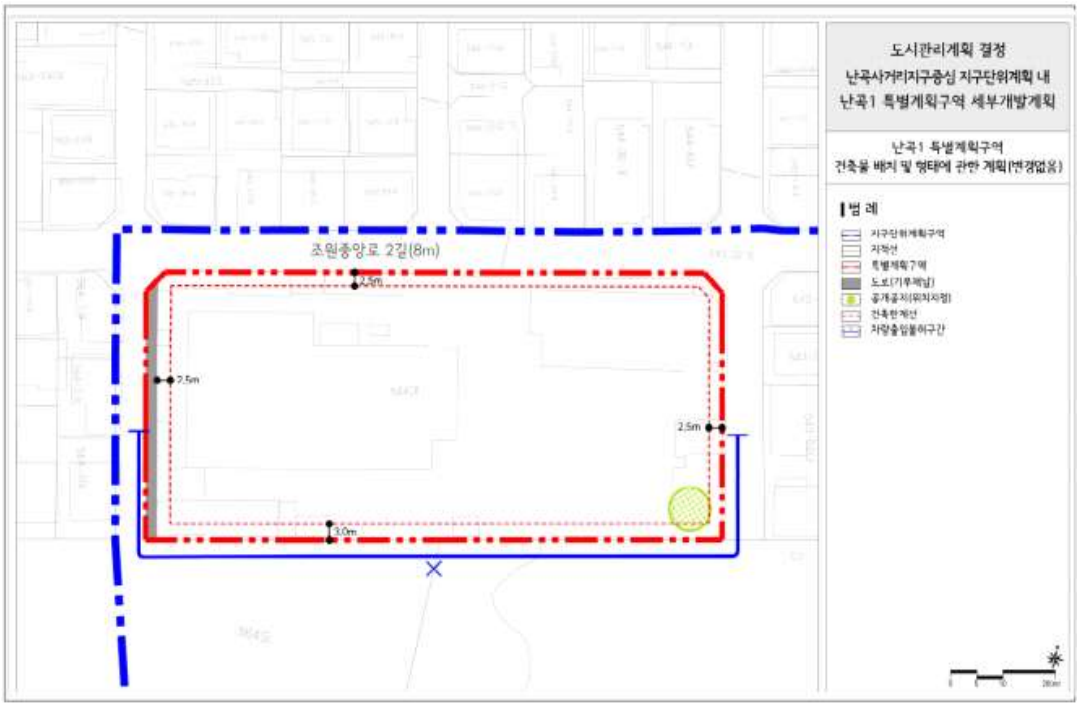
– 기정



– 변경



■ 난곡1 특별계획구역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이하여백)

■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기정



– 변경



붙임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	
② 대 지 면 적 (㎡)			5,377.10㎡	제척면적:103.2㎡
③ 건 축 면 적 (㎡)			3,207.89	
④ 건축 연면적 (㎡)			38,866.88	
⑤ 건 폐 율 (%)			59.66	
⑥ 용 적 률 (%)			499.91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통합공공임대주택 1동 276세대 (지하3층, 지상1~20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 31A형㎡ : 40세대	
			전용 31B형㎡ : 24세대	
			전용 31C형㎡ : 20세대	
			전용 46A형㎡ : 99세대	
			전용 46B형㎡ : 15세대	
			전용 46C형㎡ : 24세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전용 57A형㎡ : 42세대	
			전용 57B형㎡ : 12세대	
		계	총 27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9. ~ 2028.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9,466.51㎡	지하공용 포함
	기계/전기실		951.12㎡	
	연료전지실		52.25㎡	
	ESS실		54.59㎡	
	제연휀룸		76.51㎡	
	정화조/우수조 점검층		266.38㎡	
	창고		246.26㎡	
	방재센터		99.72㎡	
	MDF실		46.37㎡	
	관리사무소		40.40㎡	
	무인택배함		16.32㎡	
	경비실		14.08㎡	
	주민회의실/용역원휴게실		83.08㎡	
	무인카페		83.08㎡	
	세미나홀		83.08㎡	
	공유주방		44.85㎡	
	세탁실		54.17㎡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경로당		72.38㎡						
	휘트니스센터		171.14㎡						
⑩ 단위세대 면적	공공임대	타 입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1A	40	31.99㎡	20.48㎡	52.47㎡	26.00㎡	78.47㎡	
		31B	24	31.96㎡	20.47㎡	52.43㎡	25.97㎡	78.40㎡	
		31C	20	31.14㎡	19.97㎡	51.11㎡	25.31㎡	76.42㎡	
		46A	99	46.99㎡	29.31㎡	76.30㎡	38.19㎡	114.49㎡	
		46B	15	46.06㎡	29.39㎡	75.45㎡	37.43㎡	112.88㎡	
		46C	24	46.46㎡	29.76㎡	76.22㎡	37.76㎡	113.98㎡	
		57A	42	57.68㎡	35.51㎡	93.19㎡	46.88㎡	140.06㎡	
		57B	12	57.40㎡	35.41㎡	92.81㎡	46.64㎡	139.46㎡	
⑪ 교육연구시설	지하1층 도서관		전용 : 619.83㎡ / 공용 : 299.19㎡						
	지상1층 도서관		전용 : 858.92㎡ / 공용 : 240.71㎡						
	지상2층 도서관		전용 : 963.49㎡ / 공용 : 331.67㎡						
	지상3층 도서관		전용 : 936.03㎡ / 공용 : 308.94㎡						
⑫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공용 : 120.49㎡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전용 : 580.35㎡ / 공용 : 158.32㎡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전용 : 562.69㎡ / 공용 : 246.01㎡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전용 : 562.69㎡ / 공용 : 246.0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건고-310호(1987. 7. 8.)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20호(2021. 5.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천구 화곡고가 사거리∽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연장 6.38㎞(지하차도 신설: 2.87km, 도로다이어트: 3.51km)(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7. 위치도 : 생략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088),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02-6438-2411, 2414)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기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03.27.) 심의 및 2024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09.25.) 보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2,3,4 및 목동 900번지에 대하여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개방형녹지 등을 신설하여 광역녹지축 연계성 강화와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	4,371,097.4	-	4,371,097.4	최초결정일 (199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71,097.4	-	4,371,097.4	100.0	
주거지역	소계	3,171,522.3	-	3,171,522.3	72.6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261,315.2	-	261,315.2	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4,953.8	-	234,953.8	5.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6,609.2	-	606,609.2	13.9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8,644.1	-	2,068,644.1	47.3	
중심지역	소계	568,384.8	-	568,384.8	13.0	
	일반상업지역	568,384.8	-	568,384.8	13.0	
공업지역	소계	73,561.2	-	73,561.2	1.7	
	준공업지역	73,561.2	-	73,561.2	1.7	
녹지지역	소계	557,629.1	-	557,629.1	12.7	
	자연녹지지역	557,629.1	-	557,629.1	12.7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에 따라 미관지구 일괄 폐지
 나. 고도지구
  ※ 서울특별고시 제2019-133호(2019.04.25.)에 따라 고도지구 일괄 폐지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사.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선 계획 :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 분	도변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고
건축한계선	Ⅰ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
	Ⅱ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8길,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Ⅲ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Ⅳ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Ⅴ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 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변경

구 분	도변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고
건축한계선	Ⅰ	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 오목로변	획지선으로부터 4m		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
	Ⅱ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중앙로32길, 목동로3길 10·11·12단지 간 목동동로, 오목로, 목동동로4길, 목동동로8길, 목동서로10길, 목동서로12길,	획지선으로부터 6m		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

구 분	도변 표시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고
		그 외 이면부, 7단지 서측경계부, 9단지 북측경계부, 14단지 구역경계부	획지선으로부터 6m	-	
		안양천로변, 신월로,	-	획지선으로부터 6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II	목동 900-4 안양천로변, 신정 313-1 목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
	IV	목동서로2길, 오목로52길, 신정 329-12 목동동로변, 목동로8길,	-	획지선으로부터 1m	기타지역 변 가로
	V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0m	획지선으로부터 6m	광역 통경축
고층부 벽면한계선 (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		국회대로, 목동로	획지선으로부터 13m	-	

※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2층이하)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
※ 특별계획구역 1~3 내 개방형녹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배치 및 형태·색채 등 계획 : 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다. 대지 안의 공지 계획 :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기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고
전면공지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 획지와 건축선 사이의 구간에 단지내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보행공간 조성		결정도 참고
공공보행통로	목동 900-4 안양천로변	-	• 폭원 4m : 1개소	결정도 참고
공개공지	목동 900-4	-	• 1개소 위치지정	결정도 참고 :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기준		
		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기타지역	비고
전면공지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	• 획지와 건축선 사이의 구간에 단지내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보행공간 조성		결정도 참고
공공보행통로	목동 900-4 안양천로변	-	• 폭원 4m : 1개소	결정도 참고
공개공지	목동 900-4	-	• 1개소 위치지정	결정도 참고 : 서고시 제2020-239호 (20.06.11)
	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4)	• 1개소 위치지정 - 목동서로변 : 폭 15m	-	신설
	기타지역 (목동 900번지)	-	• 1개소 위치지정 - 목동서로변 : 폭 15m	신설
개방형녹지	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1~3)	• 목동서로변 : 폭 15m • 목동중앙로변 : 폭 8m • 목동서로2길변 : 폭 8m • 학교 및 공원주변 : 폭 8m		신설

※ 특별계획구역 1~3내 개방형녹지가 설치되는 구간 및 목동서로변 특별계획구역 4내 전면공지 삭제
※ 특별계획구역 1~3내 설치되는 개방형녹지의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개방형녹지 조성 및 형태에 관한 계획 변경 가능
※ 특별계획구역 4 및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개공지 조성 및 형태에 관한 계획 변경 가능
※ 개방형녹지 설치 시 공중의 상시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또는 지상권 등을 설정하여 관리

■ 대지 안의 공지 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전면공지	• 특별계획구역 1~3내 개방형녹지가 설치되는 구간 전면공지 삭제 • 목동서로변 특별계획구역 4내 전면공지 삭제	•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전면공지 삭제
공개공지	• 목동서로변 특별계획구역 4내 1개소 폭 15m 신설 • 목동서로변 기타지역(목동 900번지)내 1개소 폭 15m 신설	• 새로이 설치되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신설
개방형녹지	• 특별계획구역 1~3내 신설 - 목동서로변 : 폭 15m - 목동중앙로변, 목동서로2길변, 학교 및 공원주변 : 폭 8m	•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안양천으로의 광역녹지축과 수변축 연계 및 단지 내 학교, 공원 등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방형녹지 신설

2)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1)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 변경

■ 특별계획구역1 - 목동1단지 : 기정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3">• 양천구 목동 901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165,496.9㎡</td><td></td></tr>
<tr><td colspan="3">획지 면적</td><td colspan="3">• 152,570.1㎡ (92.2%)</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 colspan="3" rowspan="2">기반시설 면적</td><td rowspan="2">• 12,926.8㎡ (7.8%)</td><td>소공원</td><td>8,324.0㎡ (5.0%)</td><td></td></tr>
<tr><td>도로</td><td>4,602.8㎡ (2.8%)</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용도지역</td><td colspan="3">•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 colspan="3">• 세부개발계획 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화 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라 한다)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3">•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2길 : 18m (구역내 3m 확보)
- 목동서로4길 : 18m (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소공원 신설</td><td></td></tr>
<tr><td rowspan="6">건축물의 용도밀도</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d></td></tr>
<tr><td>지정용도
a</td><td colspan="3">[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td><td>[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폐율</td><td colspan="3">• 60% 이하</td><td></td></tr>
<tr><td colspan="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용적률</td><td colspan="3">•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td><td></td></tr>
<tr><td colspan="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td><td>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폭4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td><td></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1 - 목동1단지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1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65,496.9㎡			
획지 면적			• 152,570.1㎡ (92.2%)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 면적			• 12,926.8㎡ (7.8%)	소공원	8,324.0㎡ (5.0%)	
				도로	4,602.8㎡ (2.8%)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세부개발계획 시, 녹지공간의 확충 및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개방형녹지를 (구역면적의 4%이상) 설치하고 민간부문 시행지침 내 개방형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경우 완화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적용 및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2길 : 18m(구역내 3m 확보) - 목동서로4길 : 18m(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건폐율	• 60% 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구역 면적의 4%이상
	높 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공공보행통로변 폭 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5m / 목동중앙로변 폭 22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2층 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목동중앙로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목동서로2길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목동서로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개방형녹지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5m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2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 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5)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개방형녹지 조성 및 형태에 관한 계획은 변경 가능
6)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방형녹지를 구역면적의 4%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공공성 확보

■ 특별계획구역2 – 목동2단지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2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59,252.5㎡			
획지면적	• 146,674.8㎡ (92.1%)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2,577.7㎡ (7.9%)	소공원	8,978.7㎡ (5.6%)	
		도로	3,599.0㎡ (2.3%)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세부개발계획 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화 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라 한다)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4길 : 1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서로6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
	높 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4길, 목동서로6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2길, 목동서로4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4길, 목동서로6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2 – 목동2단지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2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59,252.5㎡			
획지면적	• 146,674.8㎡ (92.1%)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2,577.7㎡ (7.9%)	소공원	8,978.7㎡ (5.6%)	
		도로	3,599.0㎡ (2.3%)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세부개발계획 시, 녹지공간의 확충 및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개방형녹지를 (구역면적의 4% 이상) 설치하고 민간부문 시행지침 내 개방형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경우 완화 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적용 및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4길 : 18m (구역내 1.5~3m 확폭) - 목동서로6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구역 면적의 4%이상
	높 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공공보행통로변 폭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5m / 목동중앙로변 폭 22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2층 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목동중앙로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학교 및 공원주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목동서로4길, 목동서로6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4길, 목동서로6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개방형녹지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5m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학교 및 공원주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교통처리	차량출입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4길, 목동서로6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3)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4)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5)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개방형녹지 조성 및 형태에 관한 계획은 변경 가능
6)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방형녹지를 구역면적의 4%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공공성 확보

■ 특별계획구역3 - 목동3단지 : 기정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3">계 획 지 침</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3">• 양천구 목동 903 일대</td><td></td></tr>
<tr><td colspan="3">특별계획구역 면적</td><td colspan="3">• 150,543.5㎡</td><td></td></tr>
<tr><td colspan="3">획지면적</td><td colspan="3">• 137,318.1㎡ (91.2%)</td><td>공동주택부지</td></tr>
<tr><td colspan="3" rowspan="3">기반시설면적</td><td rowspan="3">• 13,225.4㎡ (8.8%)</td><td>사회복지시설</td><td>2,591.5㎡ (1.7%)</td><td></td></tr>
<tr><td>소공원</td><td>7,820.1㎡ (5.2%)</td><td></td></tr>
<tr><td>도로</td><td>2,813.8㎡ (1.9%)</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용도지역</td><td colspan="3">•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td></tr>
<tr><td colspan="3">• 세부개발계획 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화 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라 한다)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 설치</td><td colspan="3">•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6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목동서로8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td><td></td></tr>
<tr><td rowspan="7">건축물의 용도·밀도</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
A</td><td colspan="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td><td></td></tr>
<tr><td>지정용도
a</td><td colspan="3">[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td><td>[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폐율</td><td colspan="3">• 60% 이하</td><td></td></tr>
<tr><td colspan="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용적률</td><td colspan="3">•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td><td></td></tr>
<tr><td colspan="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td><td>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이상 설치</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3">•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td><td></td></tr>
</tabl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사회복지시설 부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 부지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변경 가능
5)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6)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3 – 목동3단지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3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50,543.5㎡			
획지면적	• 137,318.1㎡ (91.2%)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13,225.4㎡ (8.8%)	사회복지시설	2,591.5㎡ (1.7%)	
		소공원	7,820.1㎡ (5.2%)	
		도로	2,813.8㎡ (1.9%)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세부개발계획 시, 녹지공간의 확충 및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개방형녹지를 (구역면적의 4%이상) 설치하고 민간부문 시행지침 내 개방형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경우 완화받은 허용용적률 40% 중 20% 적용 및 용도지역 변경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6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목동서로8길 : 18m (구역내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5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00%이하 / 250%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 / 허용 / 상한 용적률 : 190%이하 / 230%이하 / 250%이하	구역 면적의 4%이상
	높 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 저층배치구간(공공보행통로변 폭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5m / 목동중앙로변 폭 22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2층 이하	
			• 개방형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배 치	건축한계선		• 목동서로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목동중앙로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학교 및 공원주변 : 개방형녹지로부터 2m •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사회복지시설부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부지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25m,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개방형녹지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5m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학교 및 공원주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목동서로6길, 목동서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6)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개방형녹지 조성 및 형태에 관한 계획은 변경 가능
7)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방형녹지를 구역면적의 4%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공공성 확보

■ 특별계획구역4 - 목동4단지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4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2,825.3㎡			
획지면적			• 96,046.4㎡ (78.2%)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26,778.9㎡ (21.8%)	사회복지시설	2,957.3㎡ (2.4%)	
				소공원	8,577.6㎡ (7.0%)	
				녹지	12,944.1㎡ (10.5%)	
				도로	2,299.9㎡ (1.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 확폭) - 목동서로8길 : 18m (구역내 획지1 1.5m 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일부 변경 / • 사회복지시설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16m/공공보행통로변 폭5m/목동중앙로변 폭6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0m/목동중앙로변 폭 26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배 치	저층부 건축지정선 (2층 이하)		• 목동서로(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 목동중앙로변(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획지선으로부터 4m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3층 이상 공동주택)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8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사회복지시설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국회대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4m) • 목동서로8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국회대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국회대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권장)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국회대로, 목동서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4 - 목동4단지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양천구 목동 904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 122,825.3㎡			
획지면적			• 96,046.4㎡ (78.2%)			공동주택부지
기반시설면적			• 26,778.9㎡ (21.8%)	사회복지시설	2,957.3㎡ (2.4%)	
				소공원	8,577.6㎡ (7.0%)	
				녹지	12,944.1㎡ (10.5%)	
				도로	2,299.9㎡ (1.9%)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획지) ※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			
기반시설 설치			• 도로 폭원확장 : - 목동서로 : 28m (구역내 3m확폭) - 목동중앙로 : 28m (구역내 3m확폭) - 목동서로8길 : 18m (구역내 획지1 1.5m확폭) • 소공원 신설, 녹지(폭원 20m) 일부 변경 / • 사회복지시설 신설			
건축물의 용도·밀도	용도	불허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지정용도 a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2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 작은도서관(독서실),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전층]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210%이하/230%이하/25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5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저층배치구간(공공보행통로변 폭5m) - 아파트 : 7층 이하 / 커뮤니티활성화용도 : 2층 이하 • 중저층배치구간(목동서로변 폭 45m / 목동중앙로변 폭 22m) - 15층 이하 - 목동중앙로에 연접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2층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0m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 목동서로8길, 소공원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 목동중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4m	사회복지시설 부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고층부 벽면한계선	• 국회대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국회대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8m) • 목동서로8길,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공동주택부지
		• 국회대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6m) •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4m)	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 폭 15m ※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도로(기반시설)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 ※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	
	공개공지	• 목동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5m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국회대로,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서비스 포함)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	
	단지내 보행동선	•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권장)	
배치구간 설정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목동서로변 • 목동중앙로변 • 국회대로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기타사항	경 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가로경관특화방안” 을 수립	
	주택의 규모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1~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소형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 등)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함 –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국회대로, 목동서로8길변 (폭 1.5m 이상, 부득이한 경우 1.2m 가능)	

※ 1)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의 용도·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녹지면적을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확보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5)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
6)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 및 형태에 관한 계획은 변경 가능

■ 특별계획구역5 - 목동5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6 - 목동6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7 - 목동7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8 - 목동8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9 - 목동9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0 - 목동10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1 - 목동11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2 - 목동12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3 - 목동13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4 - 목동14단지 : 변경없음

2) 중심지역 (목동중심지구)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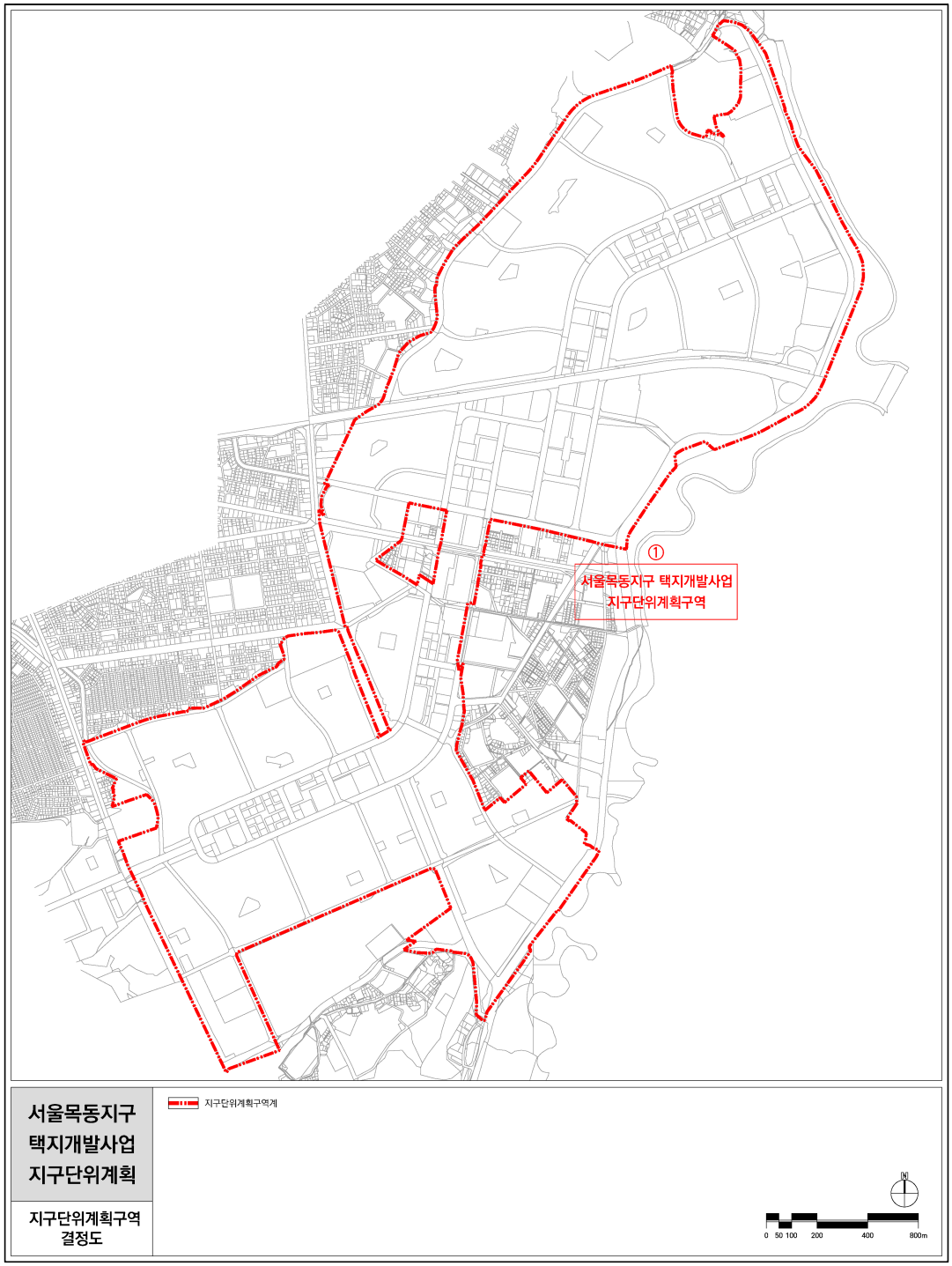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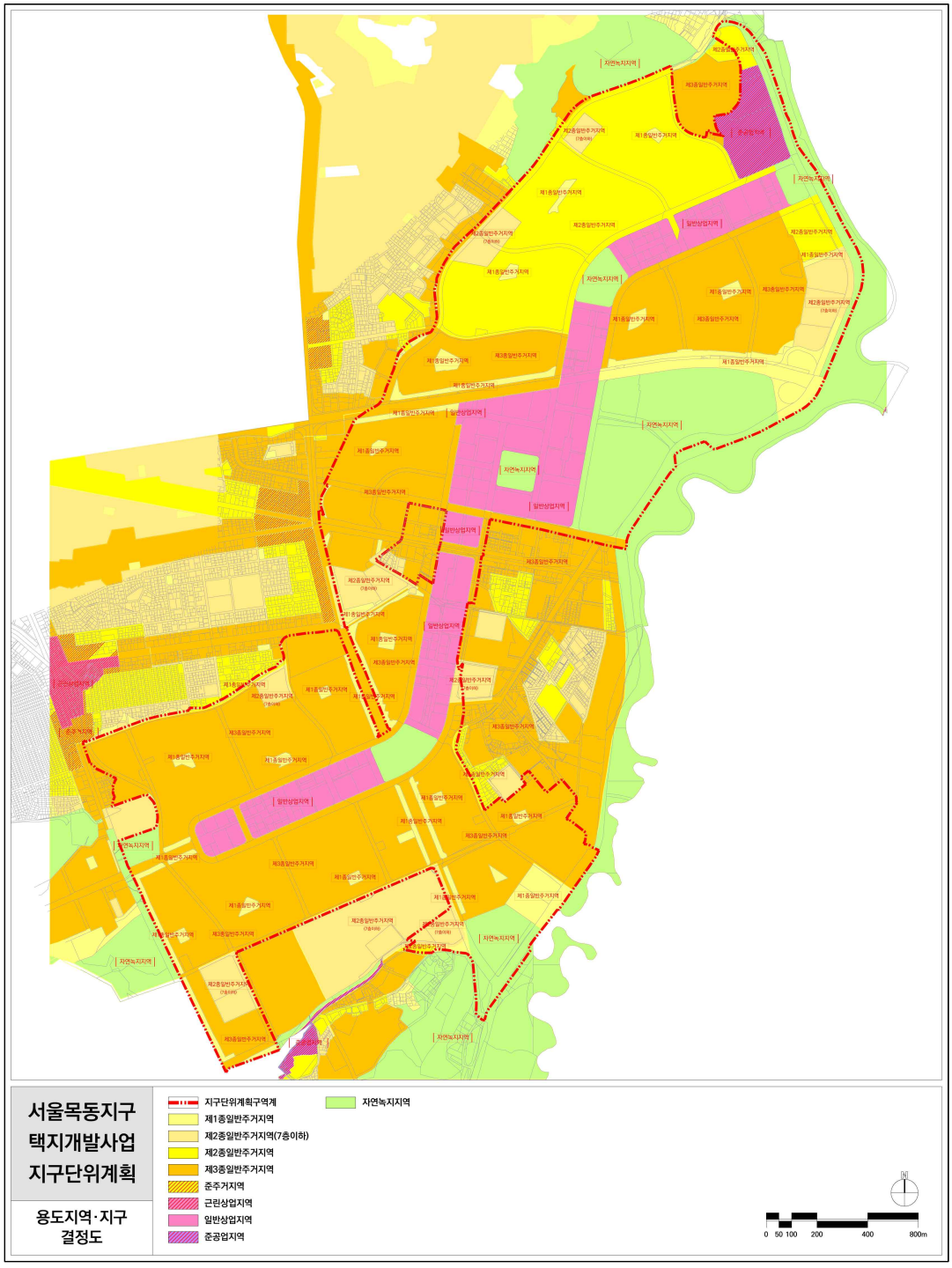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7),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07)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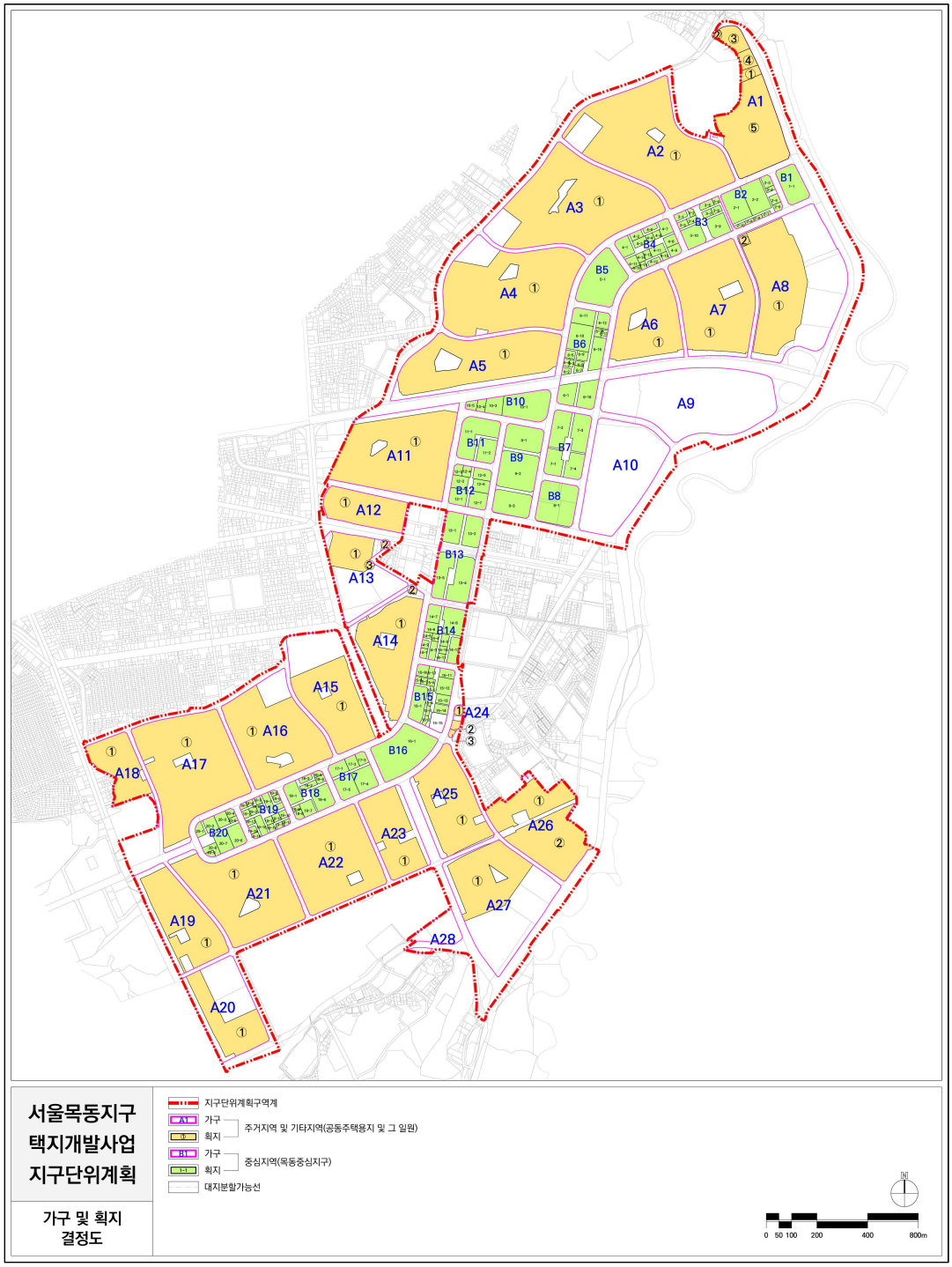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0 50 100 200 400 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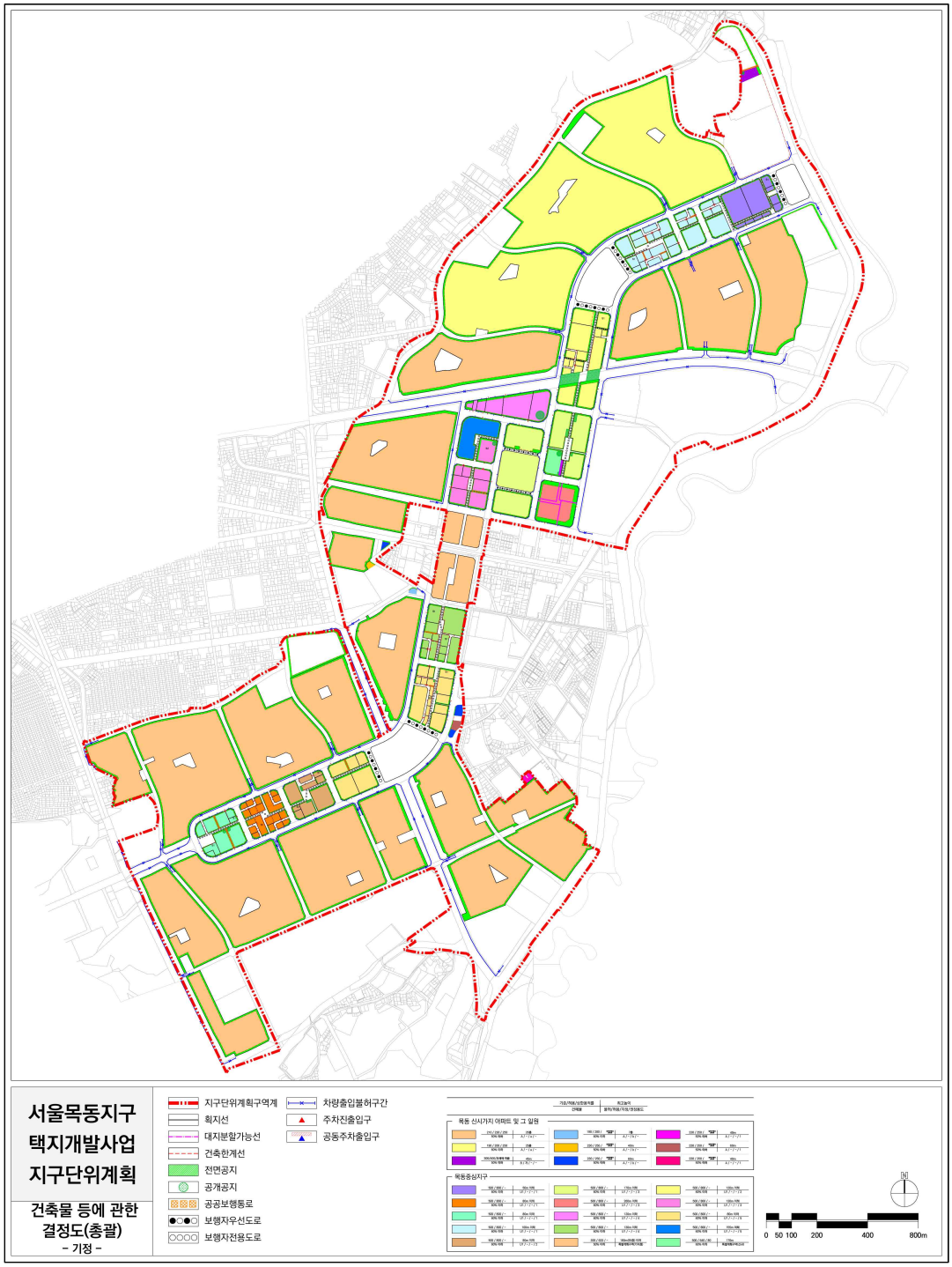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도시계획시설선
도로(대로 이상)
도로(중로 이하)
공원
녹지
체육시설
학교
유수지
주차장
그외 도시계획시설
(철도, 수도공급설비, 환기구, 전기공급설비, 운동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체방,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N
0 50 100 200 400 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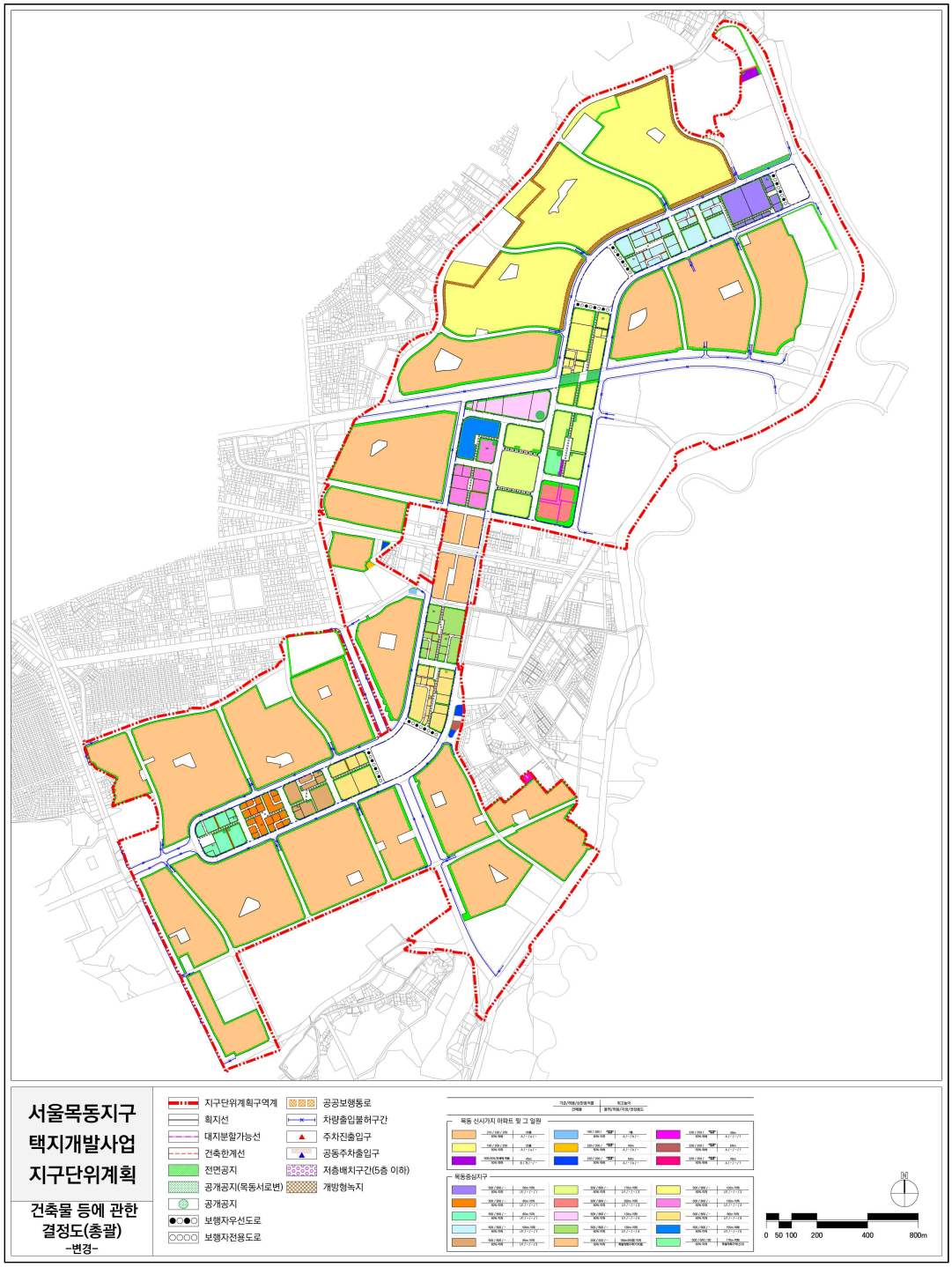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결정도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
A21
A22
A23
A24
A25
A26
A27
A28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B14
B15
B16
B17
B18
B19
B20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가구
획지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그 일원)
가구
획지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대지분할가능선
0 50 100 200 400 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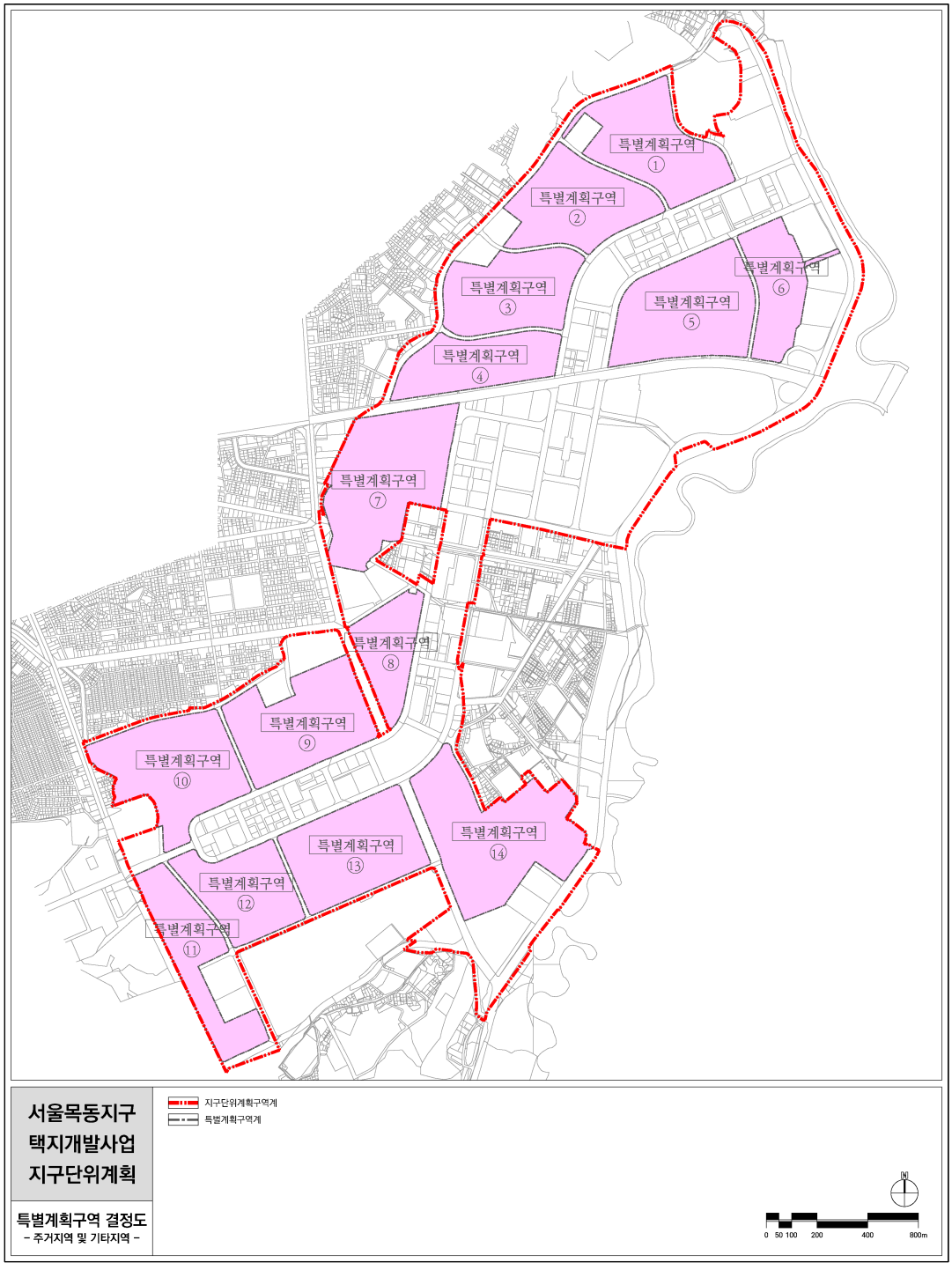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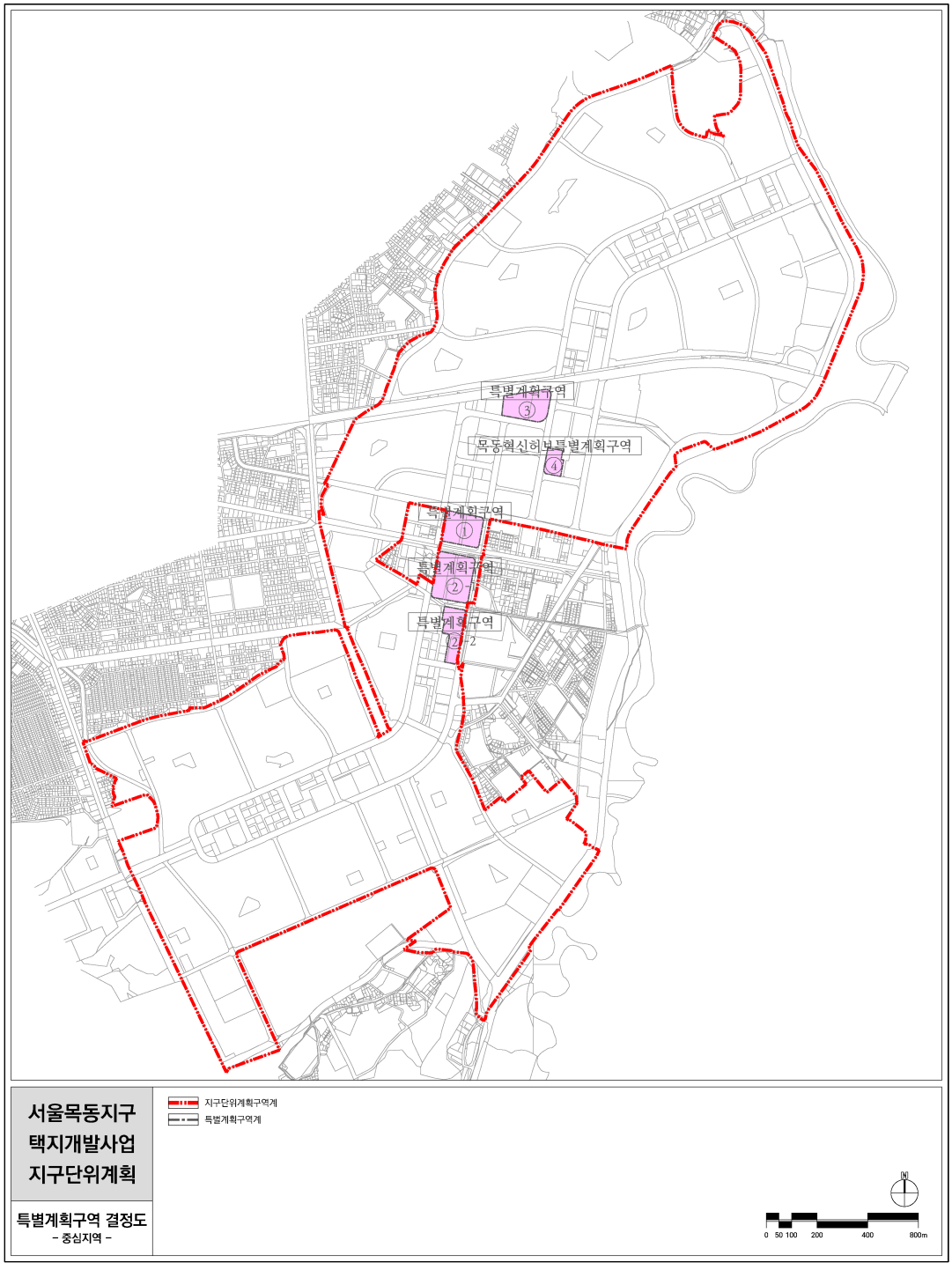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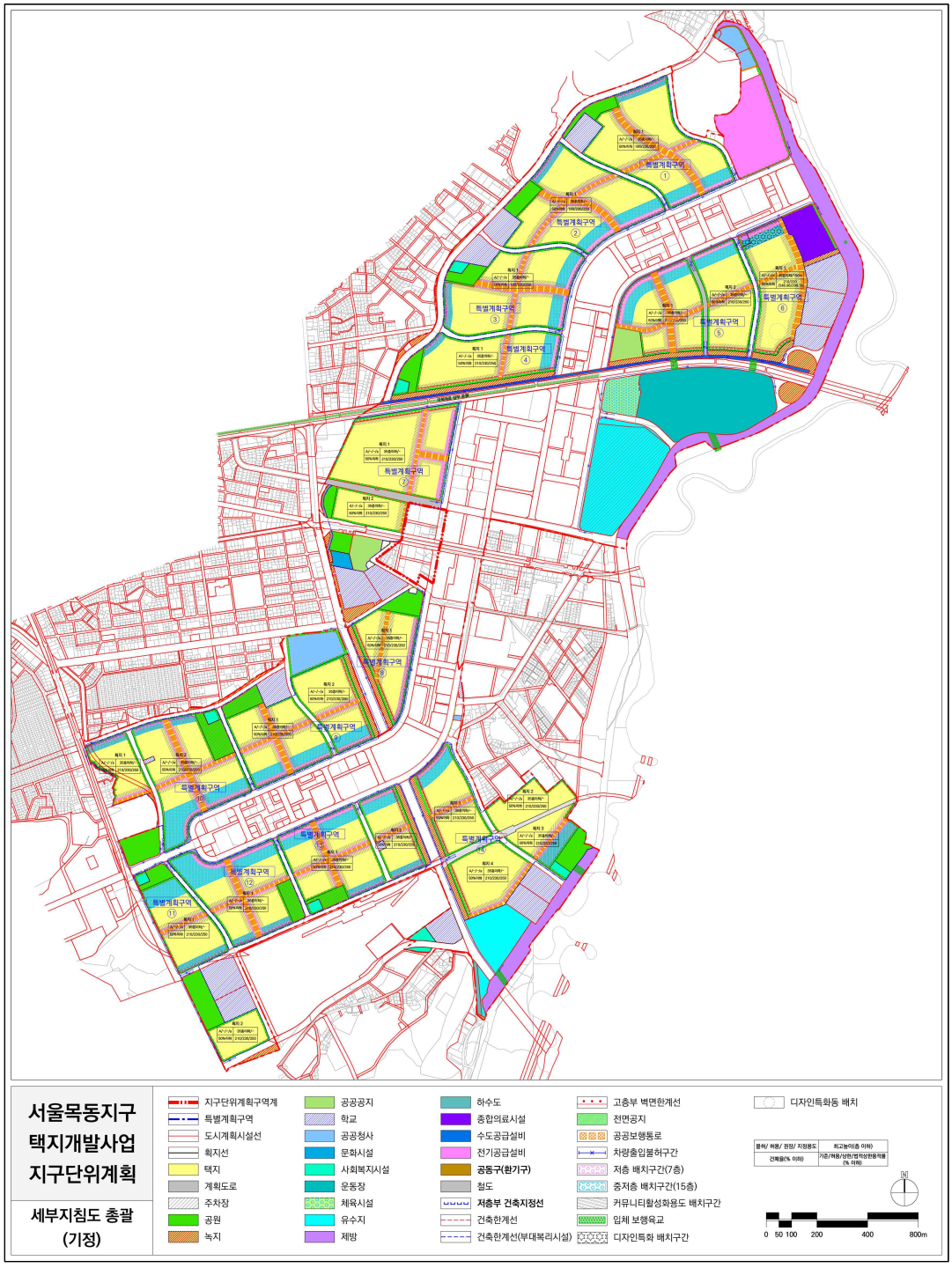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주거지역(공동주택용지) 및 기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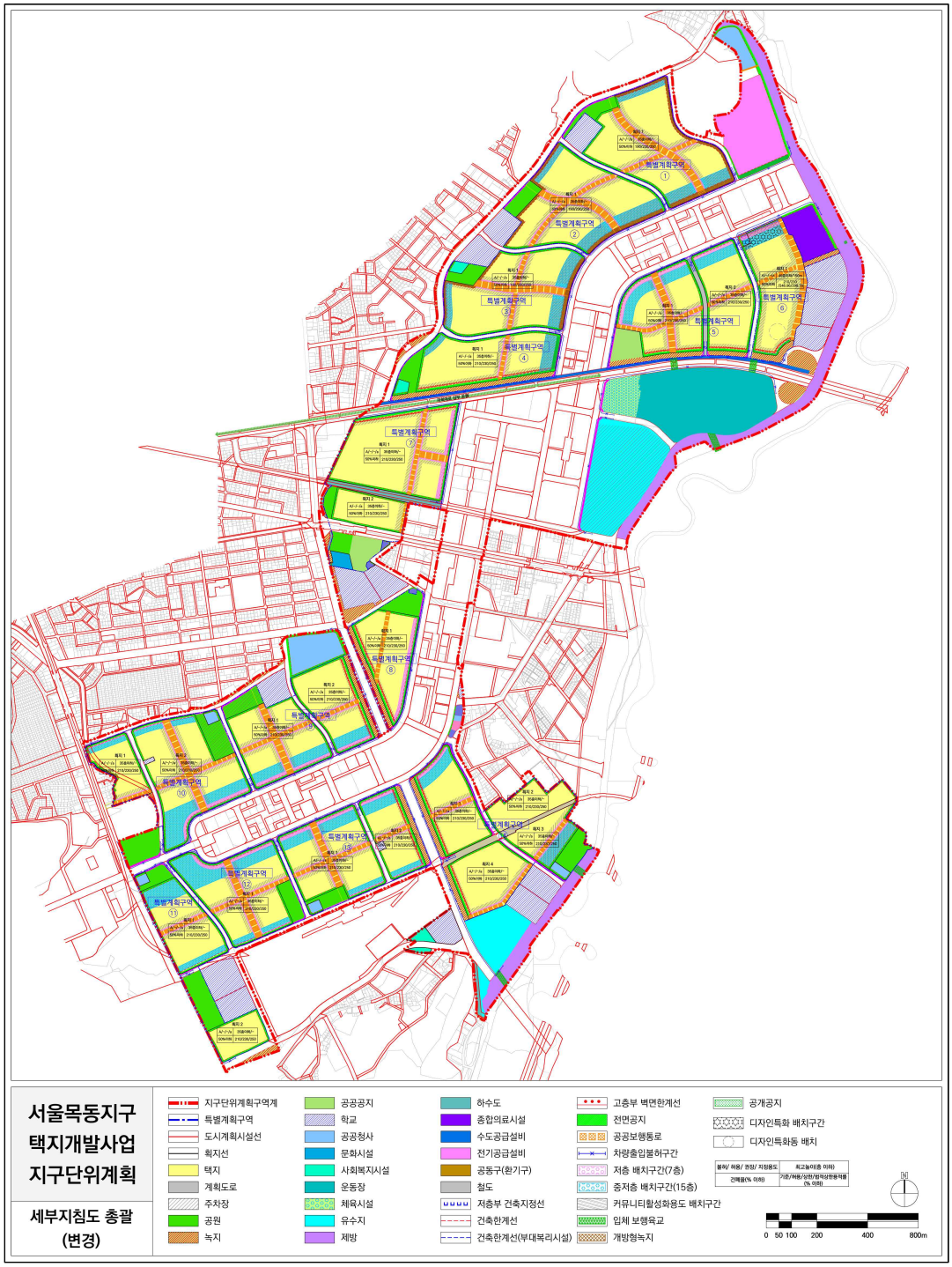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중심지역(목동중심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총괄(기정)



■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도 총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6호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A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이하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4.09.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 계획[A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	증) 26,548.97	26,548.97	-

▪ 구역 지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내 용	사 유	비 고
신설	천호A1-1구역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26,548.97	26,548.97	100.0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5,389.25	5,389.25	20.3	
	도 로	-	증)5,389.25	5,389.25	20.3	
획 지	소 계	-	증)21,159.72	21,159.72	79.7	
	공동주택용지	-	증)21,159.72	21,159.72	79.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6,548.97	-	26,548.9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757.93	증) 791.04	26,548.97	100.0	
준주거지역	791.04	감) 791.04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천호A1-1구역	제3종	제3종	25,757.93	•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구역 내 신설 계획 도로에 포함된 준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준주거	제3종	791.04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 101%

- 비례율 = [총수입(52,751,124만원) - 총지출(33,989,768만원)] / 종전자산추정액 (18,514,028만원)

1) 수입

항 목			금액(만원)	비 고
분양주택	소유자	214호	18,709,580	
	일 반	266호	23,101,999	
임대주택	재개발임대	140호	4,150,850	
	국민주택규모임대	76호	1,050,163	
	공공지원민간임대	51호	4,117,909	
기타시설	판매시설	소유자	-	
		일 반	1,620,623	
합 계			52,751,124	

2) 지출

항 목	금액(만원)	비 고
공사비	26,799,507	
보상비	1,425,812	
관리비	142,120	
설계비	336,916	
감리비	344,935	
부대경비	4,940,478	
합 계	33,989,768	

3) 종전자산 추정액 : 18,514,028 만원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기준)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천원/3.3㎡)	6,300	6,650	7,000	7,350	7,700
분양가 (84형 일반 분양가 기준)	10%	31,922	144%	137%	130%	123%	116%
	5%	30,471	129%	123%	116%	109%	102%
	0%(기준)	29,020	115%	108%	101%	94%	87%
	-5%	27,569	101%	94%	87%	80%	73%
	-10%	26,118	87%	80%	73%	66%	59%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53	주간선 도로	7,200 (137)	천호대교	상일동시계	일반 도로	-	1971.4.7. (건고시 제198호)	일부 구간 확폭
변경	광로	2	5	50~53	주간선 도로	7,200 (137)	천호대교	상일동시계	일반 도로	-	1971.4.7. (건고시 제198호)	
기정	중로	3	A	12	집산 도로	214	광로2-5 천호동 461-153	중로1-389 천호동 461-62	일반 도로	-	-	회전 교차로포함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153	천호동 467-35	중로1-389 천호동 461-11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06	천호동 480-43	천호동 460-34	일반 도로	-	2001.6.5. (서고시 제178호)	-
변경	소로	3	4	4	국지 도로	138	천호동 462-96	천호동 467-60	일반 도로	-	2001.6.5. (서고시 제178호)	-

※ 연장 내 ( )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5	광로2-5	• 일부 구간 확폭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일부 구간 확폭
-	소로2-A	• 도로 신설 - B = 8m, L = 153m	•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4	소로3-4	• 도로 변경 - B = 4m, L = 138m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길이 연장 및 폭원 변경

나.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 일대	L=47,400	1990.10.19. (건설부고시 제695호)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43,278.53	43,278.53	
주민공동시설	소 계	-	-	증)3,934.15	3,934.15	기준 2,334.38㎡ 이상
	경로당	-	-	증)250.00	250.00	지상 1층
	어린이놀이터	-	-	증)977.00	977.00	지상 1층
	어린이집	-	-	증)400.00	400.00	지상 1층
	주민운동시설	-	-	증)436.00	436.00	지상 1층
	다함께돌봄센터	-	-	증)112.00	112.00	지상 1층
	작은도서관	-	-	증)175.00	175.00	지상 1층
	피트니스센터	-	-	증)584.15	584.15	지 하
	재가노인복지시설	-	-	증)1,000.00	1,000.00	지상 1~2층
부대시설	소 계	-	-	증)39,344.38	39,344.38	
	관리사무실	-	-	증)105.00	105.00	지 상
	경비실	-	-	증)40.00	40.00	지 상
	방재실	-	-	증)51.95	51.95	지 상
	MDF	-	-	증)40.00	40.00	지 상
	전기, 기계, 발전실	-	-	증)1,250.20	1,250.20	지 하
	지하주차장	-	-	증)36,032.20	36,032.20	지 하
	근린생활시설	-	-	증)1,825.03	1,825.03	지 상

※ 향후 건축위원회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향후 민간위탁운영 또는 강동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에 위탁

7.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26,548.97	획지1	21,159.72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139	-	-	139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정상한초과		
신설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26,548.97	획지1	21,159.72	천호동 467-6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89.27 이하	359.94 이하	125.25m 이하 (40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공동주택 747세대
- 세대수 747세대
- 분양 480세대, 임대 267세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심의에서 최종결정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전체 747세대 중 토지등소유자 214세대, 토지등소유자 외 533세대
- 초과용적률(법적상한초과-상한)에 따른 세대수 168세대
※ 168세대 = 일반분양 92세대 + 국민주택규모 임대 76세대

(단위: 세대, %)

구 분			전체 세대수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공적주택			비 율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재개발 임대	국민주택 규모임대		
합 계			747	214	266	140	76	51	100.0
60㎡ 이하	40㎡ 이하	39	46	2	4	39	1	-	6.2
	40㎡~50㎡	-	-	-	-	-	-	-	-
	50㎡~60㎡	59	369	10	173	101	35	50	49.4
60㎡~85㎡		84	254	124	89	-	40	1	34.0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정상한초과		
	85㎡ 초과		94	39	39	-	-	-	-	5.2	
			104	39	39	-	-	-	-	5.2	

• 주택확보 관련 규정

관련규정		기 준	적합여부	비 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고시 제2024-26호, 서고시 제2022-493호)	제4조 제1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적합	747×80% =598≤669세대
	제4조 제6항 및 제7항	-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임대 주택으로 건설(서고시 제2022-493호) * 주택 전체 세대수·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시 초과용적률로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제외	적합	579×15% =87≤140세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관련규정		기 준	적합여부	비 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국고시 제2024-26호, 서고시 제2022-493호)	제4조 제6항 및 제7항	-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 * 주택 전체 세대수·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시 초과용적률로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제외	적합	579×10%=58≥140-87 =53세대 53÷579=9.2% 15%→15%+9.2% 상향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 제외)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54조제4항 제외) 으로 건설	적합	747×5%=38≤39세대
	제6조	-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20%	적합	747×20% =150≤216세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23.7.18 개정 이전 적용	-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건설	적합	747-214=533 533×50% =267≤267세대
	공적주택 계획	- 구역내 공공임대 = (재개발임대 + 국민주택규모임대 + 기부채납임대) ≥ 세입자의 50%으로 완화	적합	140+76+0=216≥216 (세입자 432명×50%)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
(최고
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h>상한</th><th>법정
상한
초과</th></tr>
<tr><td></td><td colspan="12">
<table>
<tr><th colspan="2">관련규정</th><th>기 준</th><th>적합
여부</th><th>비 고</th></tr>
<tr><td></td><td>가이드
(서울시
주거
정비과
-8551호)</td><td></td><td></td><td></td></tr>
<tr><td></td><td></td><td>- 공공지원민간임대 = 공적주택 의무 확보량 - 구역내 공공임대 계획 물량</td><td>적합</td><td>(747-214)/2=267
267-216=51</td></tr>
<tr><td colspan="2">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
및 도시정비 조례
제30조제3항</td><td>-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주택으로 건설</td><td>적합</td><td>(359.94%-289.27%)
×50%=35.34%
21,159.72㎡×35.34%
=7,477㎡≤7,501㎡</td></tr>
</table>
※ 기준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50%, 정비계획용적률 289.27%,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계획용적률) 359.94%, 법적상한초과용적률(법정) 360%
</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2">• 기준용적률 : 210% → 230%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설치 시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
• 법적상한초과용적률 : 300% → 360%
-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1항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음
-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건축한계선
- 한강변 3m, 천호대로변 10m, 중로3-A변 3~8m, 구천면로변 3m
※ 상세 위치는 도면 참고</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전면공지(보도부속형)
- 한강변 3m, 천호대로변 3m, 중로3-A변 3~8m, 구천면로변 3m
※ 중로3-A변은 천호A1-2구역과 사업시기가 다를시 일시적으로 차도로 사용 후, 천호A1-2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도부속형으로 사용
• 공공보행통로 1개소
- 대상지 내 보행로 및 한강변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1개소 배치(8m)
- 인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공공에 개방을 원칙으로 함. 단지 중심부 저층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
①</td><td rowspan="2">획지
면적
②</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면적
③</td><td colspan="2">국공유지</td></tr>
<tr><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④</td><td>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⑤</td></tr>
<tr><td>26,548.97㎡</td><td>21,159.72㎡</td><td>5,389.25㎡</td><td>1,376.48㎡</td><td>1,538.49㎡</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의무비율 없음</td><td colspan="5">• 순부담면적
= ③-④-⑤ = 5,389.25㎡ - 1,376.48㎡ - 1,538.49㎡ = 2,474.28㎡
• 순부담률
= (③-④-⑤)/① = 2,474.28㎡ / 26,548.97㎡ = 9.32%
※ 용도지역 상향 없으므로 의무비율 없으며, 전체 구역면적으로 순부담률을 산정함</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210% → 230%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설치 시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인센티브 20.0%
= 230.00% + 20.00% = 250.00%
• 세부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 10%, 방재안전 5%, 돌봄시설 5%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td></tr>
<tr><td>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가중치×α토지)
가중치
= 기반시설(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 대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258.31% / 250.00% = 1.033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③-④-⑤) / ② = 2,474.28㎡ / 21,159.72㎡ = 0.116933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50.00% × (1+1.3×1.033×0.116933)
= 289.27%</td></tr>
<tr><td>법적상한
초과용적률</td><td colspan="5">• 법적상한초과용적률(법정) : 300% → 360%
-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1항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음
-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계획용적률) : 359.94%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는 국민주택규모주택(공공주택)으로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 = (359.94%-289.27%) × 50% = 35.34%</td></tr>
</table>

다. 허용용적률 계획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적용 여부	허용용적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α = 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10%p 이내	적용 10%p	20% (20% ≦ 20%)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5%p	-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 X α ※ α = 1이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5%p 이내	-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 · 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 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적용 5%p	
방재안전	▸화재 · 소방 ·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	적용 5%p	
기반시설 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 정비 (도로, 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 : 기준용적률 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X α ※ α = 1이하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	
지역특화 인센티브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기준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0%p 이내 (합산)	-	
인센티브 적용 계		20%		최대 20%p이내

라.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까지 완화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 또한 이때 건설·공급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0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공급해야함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계획기준</td><td>•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주택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td></tr>
<tr><td>산출근거</td><td>• 전체 세대 수 : 579세대 (법적상한초과 증가분 168세대 제외)
• 재개발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주택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로 건설계획
<table>
<tr><th>기 준</th><th>검토내용</th></tr>
<tr><td>• 전체 세대수(법 제54조 적용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td><td>• 579 × 15% = 87 ≤ 계획 140세대</td></tr>
<tr><td>• 전체 임대주택(법 54조 적용제외)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법 54조 적용 제외)로 건설</td><td>• 747 × 5% = 38 ≤ 계획 39세대</td></tr>
</table></td></tr>
</table>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40	18.74%	100.00%
전용 39.95㎡	39	5.22%	27.86%
전용 59.98㎡	101	13.52%	72.14%

※ 산정기준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2022.12.12.))

2)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4">내 용</td></tr>
<tr><td>계획기준</td><td colspan="4">•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고시 제2024-26호, 서고시 제2022-493호) 제6조
• 공적주택 계획가이드(서울시 주거정비과-8551호)</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
<table>
<tr><td>기 준</td><td>검토내용</td></tr>
<tr><td>•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20%</td><td>• 747 × 20% = 150 ≤ 216세대</td></tr>
<tr><td>• 공공지원민간임대 = 공적주택 의무 확보량 -
구역내 공공임대 계획 물량</td><td>• (747 - 214) / 2 = 267
• 267 - 216 = 51</td></tr>
</table>
※ 공적주택 의무 확보량 = (재개발임대+국민주택규모임대+기부채납임대)≥세입자의 50%
= 140 + 76 + 0 = 216 ≥ (세입자 432명×50%)
</td></tr>
<tr><td>건립규모</td><td>세대수</td><td>전체 비율</td><td>임대주택 비율</td></tr>
<tr><td>합 계</td><td>51</td><td>6.82%</td><td>100.00%</td></tr>
<tr><td>전용 59.98㎡</td><td>50</td><td>6.69%</td><td>98.04%</td></tr>
<tr><td>전용 84.97㎡</td><td>1</td><td>0.13%</td><td>1.96%</td></tr>
</table>

3)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5">내 용</td></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초과용적률
(건축계획)</td><td colspan="5">• 359.94%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5">• 289.27%</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359.94% - 289.27% = 70.67%</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70.67% × 50% = 35.34%
• 21,159.72㎡ × 35.34% = 7,477.85㎡</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7,477.85㎡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 고</td></tr>
<tr><td>39.95㎡</td><td>54.11㎡</td><td>1</td><td>54.11㎡</td><td rowspan="3">획지 1</td></tr>
<tr><td>59.98㎡</td><td>81.24㎡</td><td>35</td><td>2,843.45㎡</td></tr>
<tr><td>84.97㎡</td><td>115.09㎡</td><td>40</td><td>4,603.60㎡</td></tr>
<tr><td colspan="2">합 계</td><td>76</td><td>7,501.16㎡</td><td>≥ 7,477.85㎡</td></tr>
</table>

※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녹지면적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현 지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 생태면적률 30%이상 수립	
	생활환경	• 주변의 공원과 연결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 • 절전형 LED 등 도입 계획 •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야간 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투입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재난방지	수재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 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화 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나. 환경성 검토결과

환경성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5등급 • 개별비오톱평가:평가제외	• 녹지면적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서측으로 한강, 광나루한강공원, 남측으로 풍납토성, 북동측으로 천호근린공원, 광나루공원이 녹지축을 형성	• 사업대상지 내·외부 녹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녹지 확보	
3	동 · 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현존식생:시가화지역 • 생태자연도:3등급	•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 야간공사 지양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X	• 해당 사항 없음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지목:대지, 도로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6	토 양	토양오염 최소화	X	• 해당 사항 없음	-	
7	지형 · 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지형변화 일부 발생 • 지하굴착	• 현지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8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기준:30% • 빗물분담량 5.5㎜/hr	• 생태면적률 30%이상 수립 • 필요대책량 146.0㎥/hr	
9	수 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우수유출량:0.369㎥/sec • 운영시 오수량:378.6㎥/일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탄천물재생센터로 오수 연계 처리	
10	바 람	바람길 확보	○	• 주풍량:서(W)풍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배치 계획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기반시설지, 공원 등 조경수목 식재지로 주변대비 온도가 높은 지역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 환경 개선 • 옥상녹화, 쿨루프로 인한 건물표면 온도 상승 억제 • 공공보행통로의 교목2열식재 및 시종점에 그늘목쉼터(쿨존) 조성	
12	대기질 · 미세먼지 ·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	•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13	악 취	악취공해 해결	X	• 해당 사항 없음	-	
14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 재활용 및 위탁처리 • 강동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15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 계획 수립	○	• 에너지 사용 예상	• 절전형 LED 등 도입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6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야간 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	
17	경 관	주변 경관과의 조화	○	• 서측 올림픽대로, 동측 올림픽로, 남측 천호대로와 인접 • 한강조망확보, 상위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높이규제와 층수 계획의 한계	• 주변 환경 및 색상과 조화로운 경관 디자인(색채 등) 적용 • 최대 40층, 입체적 배치 등을 통한 한강 조망 극대화 • 외부 공간 및 건축물 등의 야간 경관 계획 수립	
18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 주변에 근린공원 등 휴식 및 여가공간 충분	• 주변의 공원과 연결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19	일 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장해 예상	•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20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좁은 폭, 보차혼용도로, 불법 주차 등 한강·천호역 접근로 열악 • 사업지 진출입 도로연결 문제	• 한강공원과 천호역을 잇고, 생활·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한 활기찬 보행환경 조성 – 공공보행통로(폭 8m) 계획	
21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x	• 해당 사항 없음	–	
22	인 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x	• 해당 사항 없음	–	
23	주 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x	• 해당 사항 없음	–	
24	산 업	산업 고려한 계획 수립	x	• 해당 사항 없음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신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현황) 581세대 계획) 747세대	증) 166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안전 및 범죄예방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656,383.6	-	656,383.6	-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1-1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	증)26,548.97	26,548.97	-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A1-1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26,548.97	•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66호 참조)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획지침
위 치	• 천호동 467-61번지 일원
면 적	• 26,548.97㎡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지침
기반시설		• 도로 - 광로 2-5 (폭원 50~53m, 변경) - 중로 3-A (폭원 12m, 기정) - 소로 2-A (폭원 8m, 신설) - 소로 3-4 (폭원 4m, 변경)
가구 및 획지		• 획지1 : 21,159.7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의 부대시설, 14호의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불허용도[공통사항, 일반주거지역(5)] 포함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 기준용적률 : 230.00% (210%→230%)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설치 시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 • 허용용적률 : 25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0.00% 이하 • 상한용적률 : 3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00% 이하 • 법적상한초과용적률 : 360.00% -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1항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음 -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높 이	• 최고 높이 125.25m 이하(40층 이하) - 최고 높이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 변경 가능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 경관계획 - 한강변 및 천호대로변 다채로운 경관 조성 -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의 판상형, 타워형, 클러스터형의 조합으로 일조권, 경관자원, 조망 및 조경 공간을 함께 공유하도록 배치 계획 - 천호대로변 풍납토성에 대응하는 계단형 중저층(15층 이하)배치로 '조화로운 도심경관 창출 도모' - 한강변에서 보이는 중층 및 중앙부 고층(초고층)부분에 디자인 특화를 통하여 '조화롭고 다채로운 입면 및 수변경관 창출 도모 • 대지조성계획 - 주 출입구 및 공공보행통로 입구 주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세대당 2.4㎡ 정도의 적정한 상가 면적 확보 -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산정하고, 남향 세대 및 일조 만족 세대 최대화 등 주거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 • 단지내상가 배치구간(권장) - 구역 내 생활가로변(중로3-A, 12m)에 대응하여 가로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상가 계획 • 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권장) - 단지 중심부 저층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 중저층 배치구간(권장)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 준수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변연접부 첫 건물을 15층 이하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경 관		• 특별건축구역 지정 - 특별건축구역의 완화 가능 규정 적용, 단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단지 외부와의 이격거리 완화적용은 배제 • 특화디자인 - 한강변은 근경을 고려하여 7층에서 15층 이하 중저층의 변화와 리듬이 있는 디자인 도입 - 동별층수를 변경하여 한강변 및 천호대로 수직 부분을 세분화 - 향후 한강변 주거단지 정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요소를 도입 -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한 창의적인 건축물디자인을 목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제로 계획 - 저층부옥상 및 공동주택 옥상에 휴게 및 조망을 위한 조경과 텃밭 등을 조성하여 '주민이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계획 - 단지주변의 도로변은 중저층(15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건물 하부에 피로티 및 상가 등 활용 - 단지 중앙부는 고층 및 초고층 타워형(40층 이하)으로 배치하여 천호대로변 및 한강변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원경을 고려하여 중저층과 어우러진 탑상형에 안정감이 있는 디자인과 도약하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디자인 가이드에 반영
기 타	건축 한계선	• 한강변 3m, 천호대로변 10m, 중로3-A변 3~8m, 구천면로변 3m ※ 상세 위치는 도면 참고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보도부속형) - 한강변 3m, 천호대로변 3m, 중로3-A변 3~8m, 구천면로변 3m ※ 중로3-A변은 천호A1-2구역과 사업시기가 다를시 일시적으로 차도로 사용 후, 천호A1-2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도부속형으로 사용
	공공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 1개소 - 대상지 내 보행로 및 한강변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1개소 배치(8m) - 인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공공에 개방을 원칙으로 함 - 단지 중심부 저층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보 행	• 단지 내 보행동선 - 주동 연계 및 비상차량 동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 • 보행 및 이동수단 관련 계획 - 단지 내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스마트기술요소 배치(한강 가는 길, 공공보행통로) - 기존 도로(옛길)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지속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 세대수 기준으로 주출입구 1개소 계획, 사업지 북측 완충녹지로의 출구 부근에 부출입구 및 지하주차 출입구를 1개소 추가 설치하여 비상차량 이용 및 교통분산 기여
	차 량	•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 상세 위치는 도면 참고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6,548.97	-	26,548.9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757.93	증) 791.04	26,548.97	100.0	
준주거지역	791.04	감) 791.04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천호A1-1구역	제3종	제3종	25,757.93	•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구역 내 신설 계획 도로에 포함된 준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준주거	제3종	791.04	

2)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 해당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53	주간선 도로	7,200 (137)	천호대교	상일동시계	일반 도로	-	1971.4.7. (건고시 제198호)	일부 구간 확폭
변경	광로	2	5	50~53	주간선 도로	7,200 (137)	천호대교	상일동시계	일반 도로	-	1971.4.7. (건고시 제198호)	
기정	중로	3	A	12	집산 도로	214	광로2-5 천호동 461-153	중로1-389 천호동 461-62	일반 도로	-	-	회전 교차로포함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153	천호동 467-35	중로1-389 천호동 461-11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06	천호동 480-43	천호동 460-34	일반 도로	-	2001.6.5. (서고시 제178호)	-
변경	소로	3	4	4	국지 도로	138	천호동 462-96	천호동 467-60	일반 도로	-	2001.6.5. (서고시 제178호)	-

※ 연장 내 ( )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5	광로2-5	• 일부 구간 확폭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일부 구간 확폭
-	소로2-A	• 도로 신설 - B = 8m, L = 153m	•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4	소로3-4	• 도로 변경 - B = 4m, L = 138m	•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길이 연장 및 폭원 변경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 일대	L=47,400	1990.10.19. (건설부고시 제695호)	-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구	획지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1-1	획지1	21,159.72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21,159.72	A1-1구역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

구 분	위 치	건폐율	비 고
신설	(A1-1)획지1	5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용적률 계획

구분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신설	(A1-1)획지1	230%이하	250%이하	289.27%이하	359.94% 이하	

※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210%→230%)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최대 20.0%)
※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은 향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함

▪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위 치	인센티브			비 고
		공공보행통로	돌봄시설	방재안전	
신설	(A1-1)획지1	10%	5%	5%	층: 20% (최대20%이내)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 2023.03.23.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개선 보도자료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신설	39.27%	토지 기부채납(도로)

▪ 높이계획

구 분	위 치	높이 기준	비 고
신설	(A1-1)획지1	최고높이 125.25m이하(40층 이하)	최고 높이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 변경 가능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신설	(A1-1)획지1	한강변	• 3m
		천호대로변	• 10m
		중로3-A변	• 3~8m
		구천면로변	• 3m

※ 상세 위치는 도면 참고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신설	(A1-1) 획지1	단지배치계획	• 천호대로변 통경축에 접하여 (광역통경축-천호*)건축물 조성시, 건축물의 전면이 통경축으로 설정된 가로를 향하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를 유도 * 한강변관리기본계획(2015) • 통경축변 경관형성을 위해 10m(저층부 부대복리시설5m) 이상 건축선 후퇴 • 대지조성계획 - 주 출입구 및 공공보행통로 입구 주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세대당 2.4㎡ 정도의 적정한 상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가 면적 확보 -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산정하고, 남향 세대 및 일조 만족 세대 최대화 등 주거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 •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완화 가능 규정 적용, 단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단지 외부와의 이격거리 완화적용은 배제 • 단지의 주출입구는 과도한 디자인을 금지하고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보행 및 이동수단 관련계획	• 단지 내 보행동선 - 주동 연계 및 비상차량 동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 • 보행 및 이동수단 관련 계획 - 단지 내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스마트기술요소 배치(한강 가는 길, 공공보행통로) - 기존 도로(옛길)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주민공동 시설 등 '지속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 세대 수 기준으로 주출입구 1개소 계획, 사업지 북측 완충녹지로의 출구 부근에 부출입구 및 지하주차 출입구를 1개소 추가 설치하여 비상차량 이용 및 교통분산 기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배치 구간 - 구역 내 생활가로변(중로3-A, 12m)에 대응하여 가로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상가 계획 • 공동이용시설 배치 구간 - 단지 중심부 저층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5)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신설	(A1-1) 획지1	특화 디자인	• 한강변은 근경을 고려하여 7층에서 15층 이하 중저층의 변화와 리듬이 있는 디자인 도입 • 동별층수를 변경하여 한강변 및 천호대로 수직 부분을 세분화 • 향후 한강변 주거단지 정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요소를 도입 •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한 창의적인 건축물디자인을 목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제로 계획 • 저층부 옥상 및 공동주택 옥상에 휴게 및 조망을 위한 조경과 텃밭 등을 조성하여 '주민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를 계획 • 단지 주변의 도로변은 중저층(15층 이하)으로 배치하고 건물 하부에 필로티 및 상가 등 활용 • 단지 중앙부는 고층 및 초고층 타워형(40층 이하)으로 배치하여 천호대로변 및 한강변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원경을 고려하여 중저층과 어우러진 탑상형에 안정감이 있는 디자인과 도약하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디자인 가이드에 반영
		건축물의 외부형태	• 획일적인 입면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동의 다양한 층수 변화와 배치, 교차 등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특색있고 입체적인 주동형태 계획 • 옥탑부가 건물 전체와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의 최고층 형태를 주변과 조화되도록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저층부 외관	• 자연소재 마감으로 휴먼스케일을 고려 • 저층부 보행자공간의 시각회랑 확보와 고층건축물에 의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티 설치 권장
		재료 및 색채	• 주변 환경 및 맥락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우며,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하도록 함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보고서” 내에 경관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대상지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와 조화될 수 있는 편안한 이미지의 색채배색 적용
		진입구 처리	• 낙하물에 의한 안전을 고려하여 캐노피 설치 권장 • 진입 시인성을 고려한 주출입구에 동호수 표기

6)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신설	(A1-1) 획지1	스카이라인 및 경관	• 한강변 및 천호대로변 다채로운 경관 조성 •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의 판상형, 타워형, 클러스터형의 조합으로 일조권, 경관자원, 조망 및 조경 공간을 함께 공유하도록 배치 계획 • 천호대로변 풍납토성에 대응하는 계단형 중저층(15층 이하) 배치로 ‘조화로운 도심경관 창출 도모’ • 한강변에서 보이는 중층 및 중앙부 고층(초고층)부분에 디자인 특화를 통하여 조화롭고 다채로운 입면 및 수변 경관 창출 도모 • 대상지 주변의 저층의 주거시설 및 연접한 한강, 풍납토성에서의 조망 및 문화재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개방감	• 공동주택 주동간 충분한 인동거리 및 통경축 확보로 단지내 개방감 향상 • 인공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요소(가로수, 완충녹지, 공원 등)의 조성을 통해 주거민이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편안한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
		조명계획	• 건축물 투광조명 등 인위적인 조명을 배제하고 실내의 조명으로 연출하는 자연스러운 조명계획 수립 • CPTED(범죄예방디자인)를 고려하여 보행로에 충분한 조도의 확보를 하되, 주거 공간으로의 조명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 공원 및 녹지의 경우 자연성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조명시설 설치

7)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연도형상가 배치구간(권장)	중로3-A변	• 구역 내 생활가로변(중로3-A, 12m)에 대응하여 가로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상가 계획	
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권장)	부지 중앙 공공보행통로변	• 단지 중심부 저층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중저층 배치구간(권장)	한강변 및 천호대로변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 준수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변 연접부 첫 건물을 15층 이하로 계획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8)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획지1	• 전면공지(보도부속형) - 한강변 3m, 천호대로변 3m, 중로3-A변 3~8m, 구천면로변 3m ※ 중로3-A변은 천호A1-2구역과 사업시기가 다를시 일시적으로 차도로 사용 후, 천호A1-2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도부속형으로 사용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9)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구간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1개소 - 대상지 내 보행로 및 한강변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1개소 배치(8m) - 인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공공에 개방을 원칙으로 함. 단지 중심부 저층 주민 공동시설 조성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4.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9.11.)
  -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내 용	조치 계획	비고
조건사항	• 세대수 : 전체 747세대(임대 267세대 포함) - 임대 : 재개발의무 140세대(10,315.74㎡), 국민주택규모 76세대(7,501.16㎡), 공공지원민간임대 51세대(4,177.17㎡)	• 기반영함	기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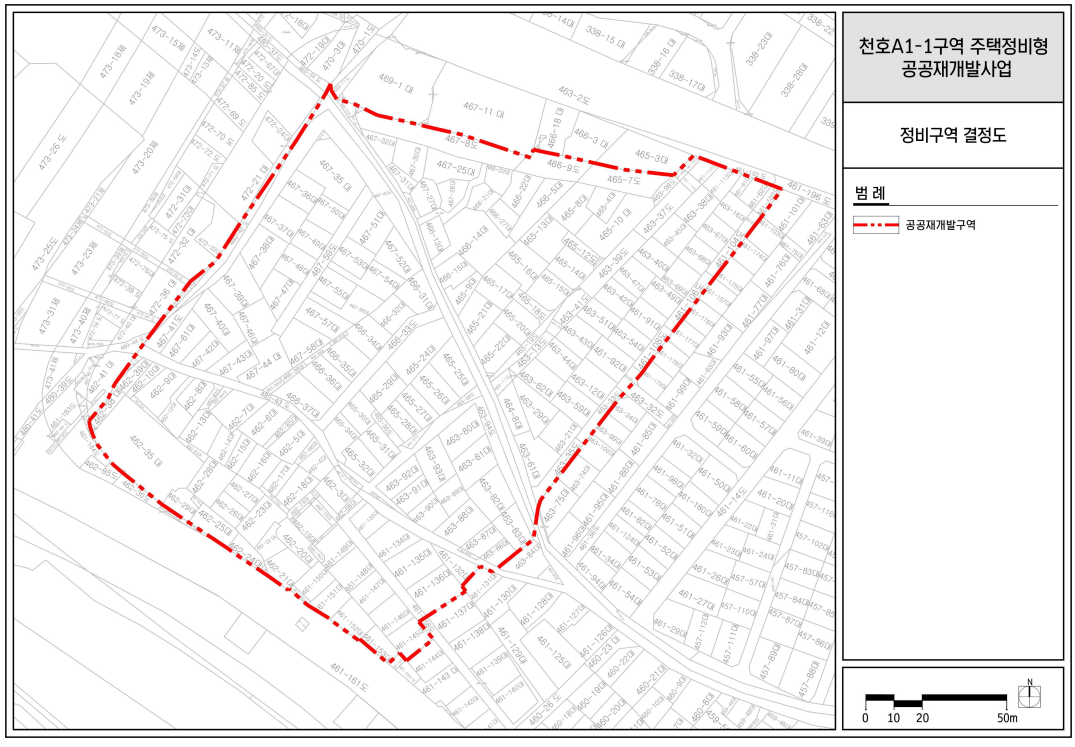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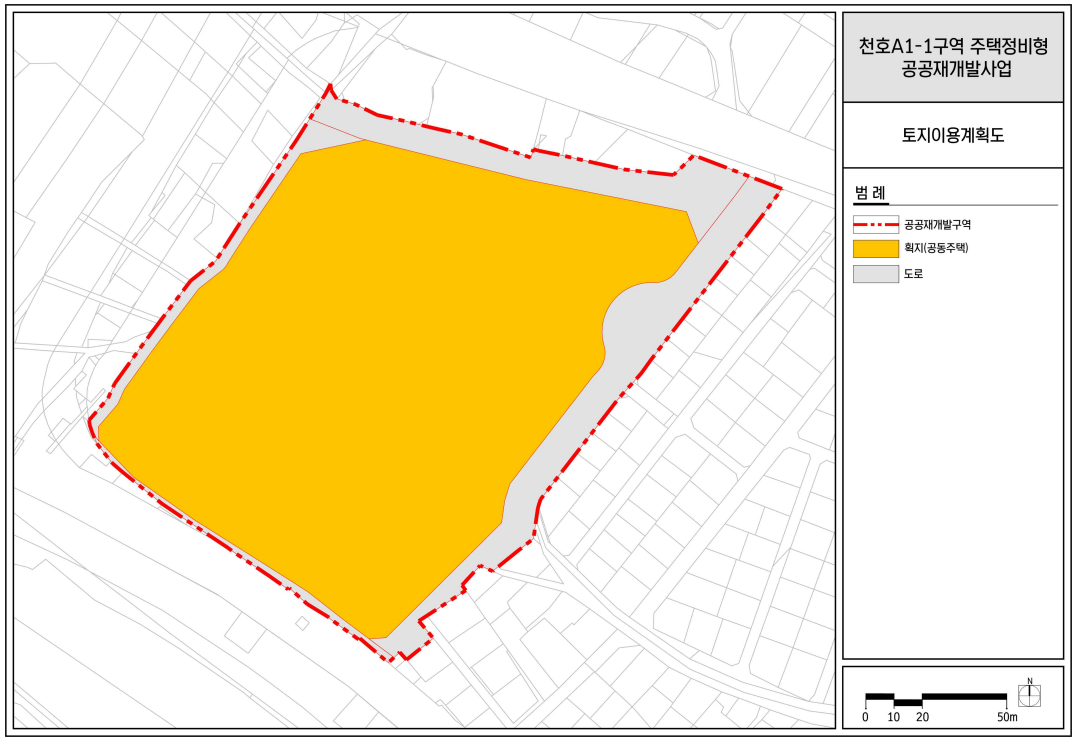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2),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9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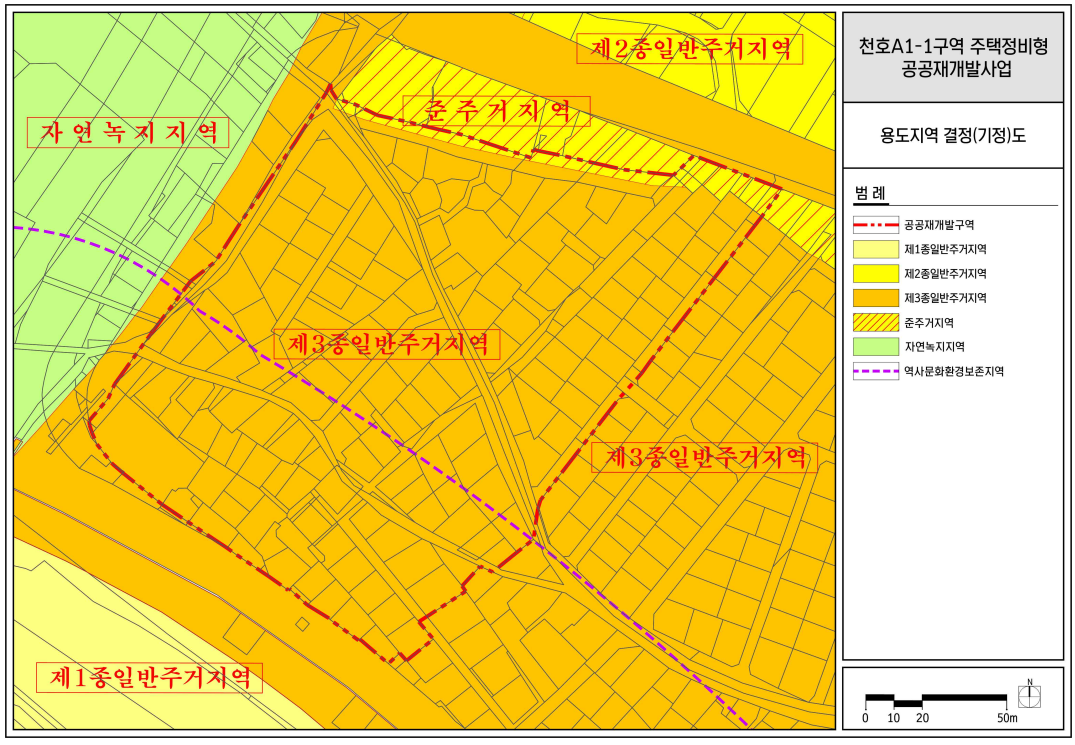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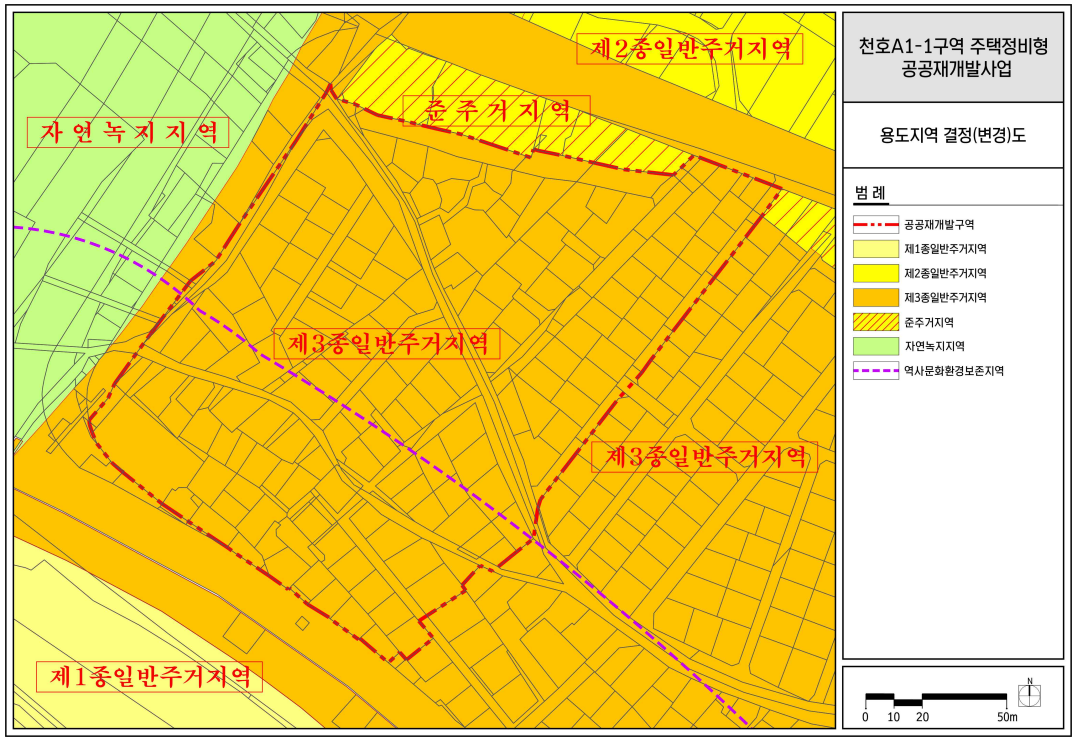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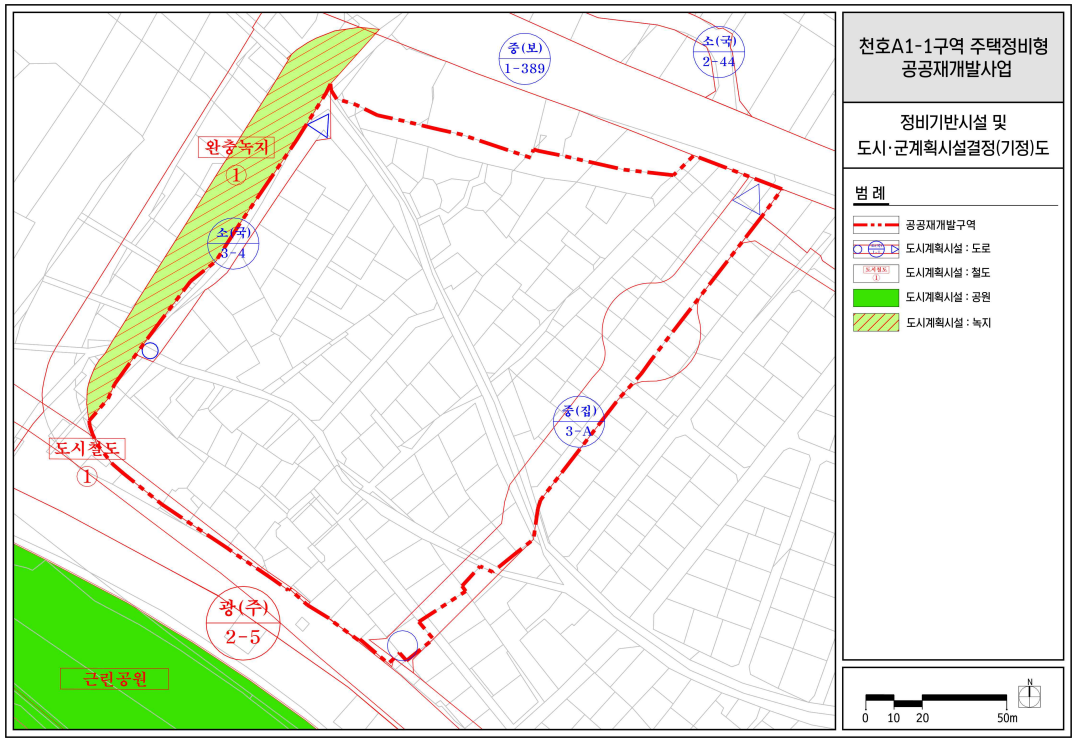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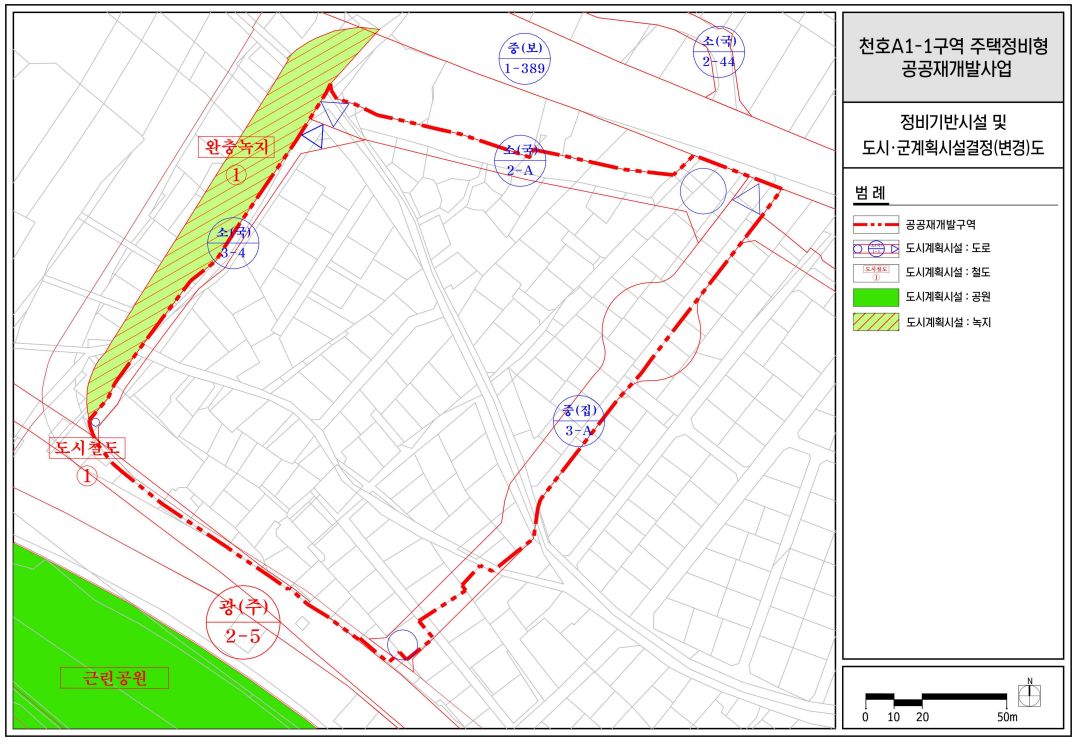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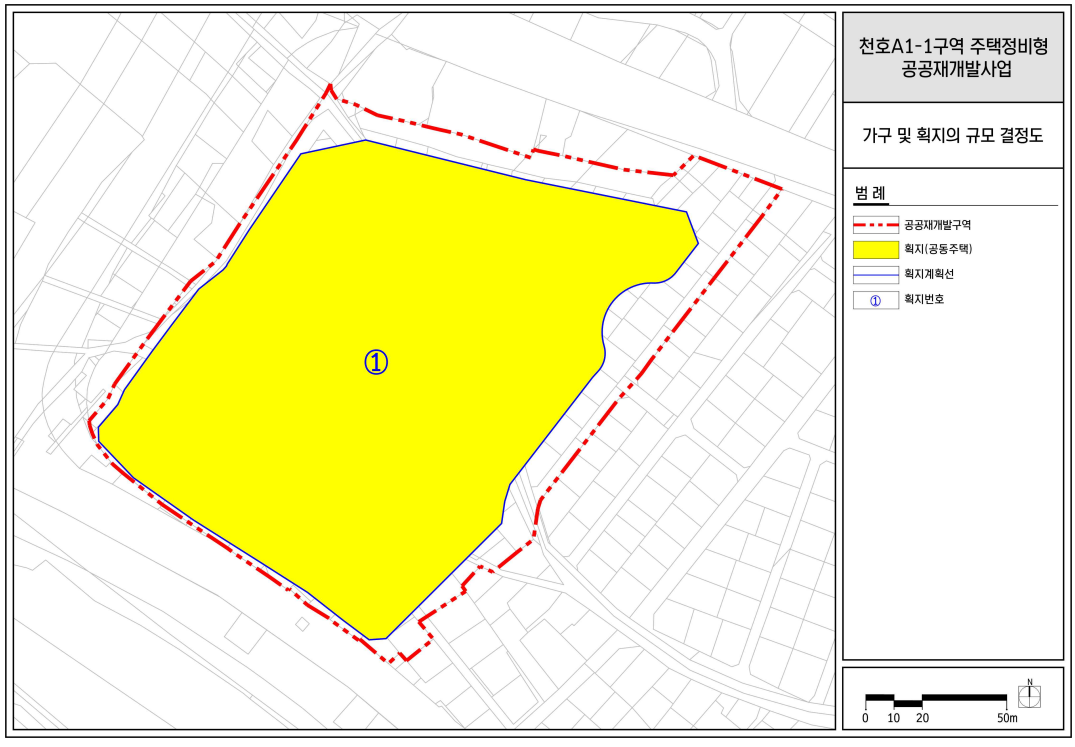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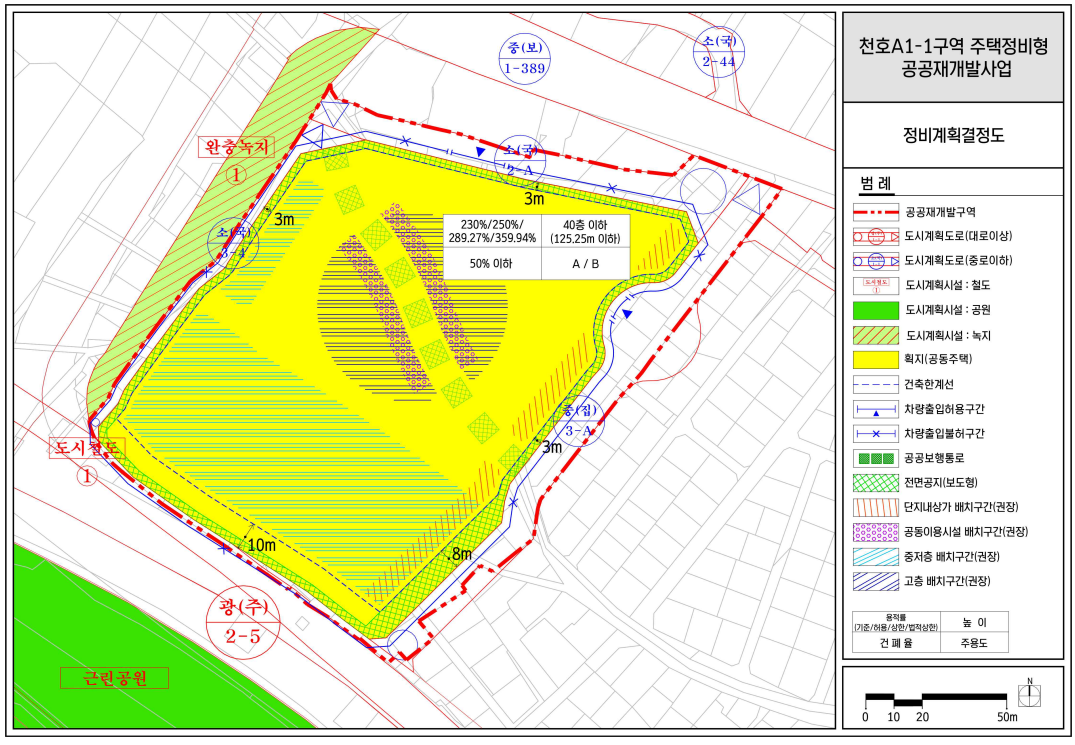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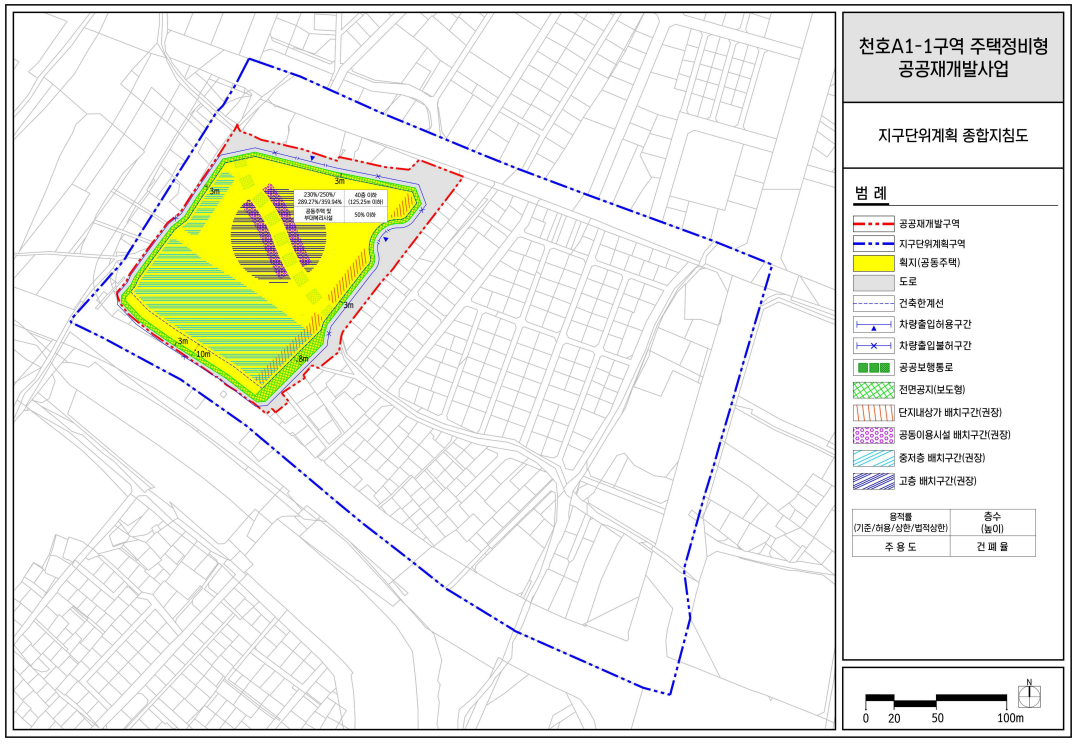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 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7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 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94,60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용산 철도차량정비창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용산을 글로벌 업무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고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예정자(제안자) :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8년 12월 31일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94,601	100.0	-
복합용지	계		296,335	59.9	-
	국제업무		88,557	17.9	4개 블록(A1~A4)
	업무복합		104,905	21.2	10개 블록(B1~B10)
	업무지원		95,239	19.3	5개 블록(C1~C5)
	복합문화		7,634	1.5	1개 블록(D1)
공공시설용지	계		198,266	40.1	-
	도 로		88,022	17.8	공원 · 녹지 · 철도 · 공동구 중복면적(43,458㎡) 및 문화복합용지(D1:1,686㎡) 입체적결정 면적 포함 시 전체 도로면적 133,166㎡
	공원녹지	소 계	110,244	22.3	
		문화공원	72,400	14.6	도로중복(34,272㎡), 철도중복(31,814㎡), 유수지(저류시설) 중복(5,000㎡)
		소공원	5,200	1.1	용산전자상가 전면공원
		경관녹지	32,644	6.6	도로중복(4,731㎡)

나. 기반시설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시설	도로	광역계획	• 강변북로와 이촌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신설 및 이촌고가 개선을 통해 접근성 강화 •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동서축 연계를 위해 한강대로와 연결되는 지하도로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부도로 계획	• 용산역 및 광역환승센터 중심으로 지상과 지하가 융합된 환상방사형 도로망 구축 • 내부 지하차도에서 국제업무용지로 직결되는 진출입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하여 사업대상지 내 지상부 교통량 최소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행 네트워크	• 차량동선과 분리된 선형녹지 계획으로 보차분리 • 공원 및 녹지 등을 활용하여 용산역, 선로덮개공원, 광역환승센터와 한강공원, 용산전자상가 등 주변과 공중 · 지상 · 지하로 연결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	-
	철 도		•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철도시설(역사시설)을 일부 제적하고 금회 문화공원①과 중복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차장		• 광역환승센터와 연계하여 국제업무용지(A2) 지하에 입체적으로 배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광역환승센터		• 사업대상지 내 국제업무용지(A2) 지하에 용산역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
공간시설	공 원		• 국제적 수준의 문화·업무 복합환경 조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지 중심부에 입체공원(문화공원①,②)을 조성 • 시민의 여가 및 휴게 공간으로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공원③ 조성 • 강변북로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잇고 한강으로 연결하는 문화공원④ 조성 • 사업대상지와 용산전자상가 일원의 연결을 위한 소공원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녹 지	• 대상지 내를 순환하여 연결하는 경관녹지④를 계획 • 경관녹지④로부터 용산전자상가, 성촌공원, 서부이촌동 및 한강공원으로 방사되어 인접 대지를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선형의 경관녹지①~③를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문화 체육시설	문화시설	• 국제업무용지(A1~A4블록) 저층부 포디엄 구간에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을 연계하는 서울아트밴드를 조성하여 국가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감성문화공간 및 문화벨트 구축	-
	교육시설	• 인접 초등학교의 노후시설개량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통해 주택공급계획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주변학교에 분산배치 유도 • 사업대상지 내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글로벌 교육연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 예정	-
	공공청사	• 용산구 내 시설면적 분석을 통해 복합시설 개념으로 도입여부 결정	-
	사회복지시설	• 공공복리 증진 및 생활편의성 제고를 위해 업무지원용지(C1~C5)내 입체복합화	-
유통및 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 사업대상지 내 기존 변전소는 이설하고 지중화(1개소 추가증설)하여 지상공간의 복합개발 유도	-
	열 공급계획	• 열 공급계획은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난방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지사)와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공동구	•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공동구 설치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시 수요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재 시설	유수지 (저류시설)	• 사업대상지 내 우수배제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공원④(성촌공원) 하부에 지하저류조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건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은 B3블록 내 업무시설 등과 복합화하여 '종합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 예정	-

7.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로 부문

구분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연장 (km)	차로수(왕복)		비고
				현황	계획	
A-1	서빙고로	• 동서방향 연결도로 신설 - 사업대상지와 동서방향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지하차도 개설	2.4	-	2~6	신설
A-2	이촌로	• 강변북로 연결도로 개설(구리방면) - 강변북로와 이촌로 연결 지하차도 신설 및 이촌고가 개선	1.5	-	2~4	신설
A-3	백범로	• 삼각지 고가차도 철거 지하화	0.7	2	4	운영개선
B-1	청파로	• 남북방향(청파로~사업대상지)연결 지하차도 개설	0.75	-	4	신설
B-2	전면도로	•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도로 신설	0.33	2	2~4	신설
C-1	교차로	• 원효대교 북단 교차로 및 교통체계 개선	-	4~6	6~8	운영개선
C-2	교차로	• 서측 연결 교차로 개선 - 기존 교차로 개선 및 4지 교차로 신설	-	4~6	6	운영개선

구분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연장(km)	차로수(왕복)		비고
				현황	계획	
C-3	진출입로	• 강변북로 원효로간 진출입체계 개선	-	-	-	운영개선
D-1	지하간선도로	• 장래발생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남-북 지하간선도로 신설	6	-	4	신설
D-2	지하간선도로	• 사업대상지와 연계방안 구축을 위한 서-북 지하간선도로 신설	9	-	4	신설

※ 세부사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에 따름

나. 대중교통 및 철도, 기타 부문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A	• 광역환승센터 신설	• 각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구축
B	• 용산역 환승체계 개선	• 이용객 편의성 확보를 위한 환승체계 개선
B-1	- 지하보행·환승통로 신설	• 용산역 지하보행통로 및 승강장 수직 환승통로 신설
B-2	- GTX-B 출입구 추가신설	• 수직구 추가 신설을 통한 신규 수요 수용
-	• 대중교통 운영 및 초기비용 지원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초기비용 지원
C	• 공항철도 용산역 직결운행	• 직결노선 운행으로 공항 접근성 향상
D	• 한강보행교(아트브릿지)신설	•사업지~노들섬~동작구 간 보행네트워크 구축
-	• 교통수요관리방안	•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수립

※ 세부사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에 따름

다. 한강수변공원 연결로 확장

구조물조성 면적	계단 등 횡단 구조물			비고
	상부구조물(계단 등)	상부구조물(녹지경사로)	상부수로시설	
A=12,200㎡	A=8,500㎡	A=1,500㎡	A=2,200㎡	

라. 인근 초등학교 증·개축 및 통학 보행환경 정비

•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생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

※ 학교장 등 협의를 통해 증·개축 및 통학로 정비계획 확정 예정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본 항(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중 아래의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를 제외한 모든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봄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	증) 494,601	494,601	-	-

•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494,601	•서울의 국제도시경쟁력 강화 및 용산을 글로벌 업무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부지에 도시개발구역 결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72,349.71	증) 6,260.85	3,478,610.56	서고 제1995-53호 (' 95.3.10.)	-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72,349.71㎡ → 3,478,610.56㎡ 증) 6,260.85㎡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4,601	-	494,601	100.0	
주거지역	소계	484,671	감) 424,913	59,758	12.1	
	제1종일반주거지역	2,758	-	2,758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13,664	감) 71	13,593	2.7	
	제3종일반주거지역	468,249	감) 431,687	36,562	7.4	
	준주거지역	-	증) 6,845	6,845	1.4	
상업지역	소계	7,072	증) 424,913	431,985	87.3	
	중심상업지역	-	증) 117,479	117,479	23.7	
	일반상업지역	7,072	증) 307,434	314,506	63.6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지역	소계	2,858	-	2,858	0.6	
	자연녹지지역	2,858	-	2,858	0.6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한강로3가 40-2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1	400%이하	•다기능 · 복합용도 실현을 위해 준주거지역 상향
-	한강로3가 40-1060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774	400%이하	•다기능 · 복합용도 실현을 위해 준주거지역 상향
-	한강로3가 40-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7,434	700%~ 800%이하	•업무복합 및 업무지원용지 계획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한강로3가 40-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117,479	900%~ 1,000%이하	•국제업무용지 계획에 따른 중심상업 지역으로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5	5,417	133,166	3	1,298	29,491	5	1,305	17,587	7	2,814	86,088
일반 도로	광로	1	286	13,995	-	-	-	-	-	-	1	286	13,995
	대로	10	3,768	101,189	2	371	14,878	2	869	14,218	6	2,528	72,093
	중로	2	1,109	16,378	1	927	14,613	1	182	1,765	-	-	-
	소로	1	96	911	-	-	-	1	96	911	-	-	-
보행자 우선 도로	소로	1	158	693	-	-	-	1	158	693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광로	3	1	48.6	보조간선	286	한강로3가 40-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	-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②:7,996㎡ •녹지 중복결정 -경관녹지④:987㎡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②:2,203㎡
신설	대로	1	1	35.5	보조간선	303	한강로3가 40-1059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	-	•공원 중복결정 :8,711㎡ -문화공원①:4,116㎡ -문화공원②:4,595㎡ •철도 중복결정 -철도ⓐ:3,643㎡ •도로 중복결정 :812㎡ -중로1-1:473㎡ -소로2-1:339㎡ •입체적결정 -D1복합문화:1,686㎡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②:985㎡
기정	대로	1	66	35~76	주간선도로	27,850 (68)	마포구 상암동 시계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일반도로	-	건고제12호 ('91.1.14.)	-
변경	대로	1	66	35~76	주간선도로	27,850 (68)	마포구 상암동 시계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일반도로	-	건고제12호 ('91.1.14.)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③:4,142㎡
신설	대로	2	1	32.5	보조간선	129	한강로3가 31-1	한강로3가 16-18	일반도로	-	-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②:982㎡
기정	중로	1	160	20.0	보조간선	1,300 (761)	한강교 북단	원효로4가	일반도로	-	내고제23호 ('52.3.25.)	•이촌동길
변경	대로	2	2	20~30.5	보조간선	1,279 (740)	한강교 북단 (한강로3가 40-1029)	원효로4가 (한강로3가 171-1)	일반도로	-	내고제23호 ('52.3.25.)	•녹지 중복결정 -경관녹지②:292㎡
기정	대로	3	A	20~25	집산도로	(67)	이촌동 395	용산동6가 69-11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3	A	20~25	집산도로	(67)	이촌동 395	용산동6가 69-11	일반도로	-	-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③:653㎡
신설	대로	3	1	28	집산도로	143	한강로3가 40-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2	28	집산도로	115	이촌동 1-1	한강로3가 40-957	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3	28	집산도로	617	한강로3가 40-957	한강로3가 40-1005	일반도로	-	-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②:10,802㎡ •녹지 중복결정 -경관녹지④:1,125㎡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②:2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3	4	28	집산도로	1,371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40-1026	일반도로	-	-	•녹지 중복결정 :1,680㎡ -경관녹지①:560㎡ -경관녹지②:560㎡ -경관녹지③:560㎡ •공동구 중복결정 :9,536㎡ -공동구①:9,300㎡ -공동구②:236㎡
신설	대로	3	5	28	보조간선	215	서울 용산구 이촌동 173-1	서울 용산구 이촌동 171-1	일반도로	-	-	•녹지 중복결정 -경관녹지②:647㎡
신설	중로	1	1	13.5~23.5	국지도로	927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40-999	일반도로	-	-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①:6,084㎡ •도로 중복결정 -대로1-1:473㎡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308 (182)	서울 용산구 이촌로 124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3-59	일반도로	-	서고 제2018-100호 ('18.4.5.)	-
신설	소로	2	1	9.3	국지도로	96	한강로3가 40-1059	한강로3가 40-1010	일반도로	-	-	•도로 중복결정 -대로1-1:339㎡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158	이촌동 (중1-160)	이촌동 198-2	일반도로	-	서고제423 ('05.12.29.)	-
변경	소로	2	26	8	국지도로	158	이촌동 (대2-2)	이촌동 198-2	보행자우선 도로	-	서고제423 ('05.12.29.)	-
폐지	소로	3	64	7.2	특수도로	145.1	한강대로 23길 55	한강로3가 40-1005	보행자전용 도로	-	용고 제2018-127호 ('18.10.5.)	•용산역3번출구 보행통로

※ 도로연장에서 ( )는 구역내 시설연장임

• 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도로 (대로1-1)	한강로3가 40-1일원	길이(m)	-	증) 48	48	-	•입체적결정 -위치:D1(복합문화) -면적:1,686㎡
				폭(m)	-	증) 35	35		
				높이(m) (해발고도기준)	-	-4 ~ +3	-4 ~ +3		
				면적(㎡)	-	증) 1,686	1,686		

※ 도로의 길이 및 폭, 높이, 면적 등은 추후 실시계획을 통해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로3-1	•도로 신설 - 폭원 48.6m, 연장 286m •공원 · 녹지 · 공동구 중복결정 - 문화공원② 면적 : 7,996㎡ - 경관녹지④ 면적 : 987㎡ - 공동구② 면적 : 2,203㎡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대로1-1	•도로 신설 - 폭원 35.5m, 연장 303m •공원·철도·도로·녹지·공동구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면적 : 4,116㎡ - 문화공원② 면적 : 4,595㎡ - 철도ⓐ 면적 : 3,643㎡ - 중로1-1 면적 : 473㎡ - 소로2-1 면적 : 339㎡ - 공동구② 면적 : 985㎡ •D1(복합문화) 입체적결정 - 위치 : 한강로3가 40-1 일원 - 폭원 35m, 연장 48m - 높이 : -4m~+3m(해발고도) - 면적 : 1,686㎡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복합문화용지 조성을 위해 도로 입체적결정
대로1-66	대로1-66	•공원 중복결정 - 문화공원③ 면적 : 4,142㎡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대로2-1	•도로 신설 - 폭원 32.5m, 연장 129m •공동구 중복결정 - 공동구② 면적 : 982㎡	•북측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중로1-160	대로2-2	•도로명, 폭원 및 연장 변경 - 도로명 : 중로1-160→대로2-2 - 폭원 : 20m→20~30.5m(증10.5m) - 연장 : 761m→740m •녹지 중복결정 - 경관녹지② 면적 : 292㎡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변경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대로3-A	대로3-A	•공원 중복결정 - 문화공원③ 면적 : 653㎡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대로3-1	•도로 신설 - 폭원 28.0m, 연장 143m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대로3-2	•도로 신설 - 폭원 28.0m, 연장 115m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3-3	•도로 신설 - 폭원 28.0m, 연장 617m •공원·녹지·공동구 중복결정 - 문화공원② 면적 : 10,802㎡ - 경관녹지④ 면적 :1,125㎡ - 공동구② 면적 : 226㎡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대로3-4	•도로 신설 - 폭원 28.0m, 연장 1,371m •공원·녹지·공동구 중복결정 - 경관녹지① 면적 : 560㎡ - 경관녹지② 면적 : 560㎡ - 경관녹지③ 면적 : 560㎡ - 공동구① 면적 : 9,300㎡ - 공동구② 면적 : 236㎡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대로3-5	•도로 신설 - 폭원 28m, 연장 215m •녹지 중복결정 - 경관녹지② 면적 : 647㎡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중로1-1	•도로 신설 - 폭원 13.5~23.5m, 연장 927m •공원·도로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면적 : 6,084㎡ - 대로1-1 면적 : 473㎡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소로2-1	•도로 신설 - 폭원 9.3m, 연장 96m •도로 중복결정 - 대로1-1 면적 : 339㎡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소로2-26	소로2-26	•도로 사용형태 및 기점부 명칭 변경 - 일반도로→보행자우선도로 - 기점 : 이촌동(중1-160)→이촌동(대2-2)	•한강덮개공원 연결도로의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
소로3-64	-	•폐지 - 폭원 7.2m, 연장 145.1m	•업무복합용지 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나) 철도

■ 철도(역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철도	일반철도 (용산역)	한강로3가 40-999	126,930.74 (48,505)	감) 38,615.74 감) (38,537)	88,315 (9,96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62호 ('01.1.6.)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① :9,968㎡

※ ( )는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면적으로 기입

• 철도(역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일반철도 (용산역)	•면적 변경 - 면적 126,930.74㎡(48,505㎡)→88,315㎡(9,968㎡) 감) 38,615.74㎡(38,537㎡) •공원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면적 : 9,968㎡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일부 철도시설(역사시설) 제척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철도(선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	철도	일반철도 (경부선)	한강로3가 40-1007	한강로3가 40-1007	한강로3가 40-1007	-	254	21,846	-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① :21,846㎡ •도로 중복결정 -대로1-1 :3,643㎡

※ ⓐ는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2.4>제1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미결정 시설)로 금회 문화공원①과 중복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신설

• 철도(선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일반철도 (경부선)	•철도(선로)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07 - 면적 : 21,846㎡ •공원·도로 중복결정 - 문화공원① 면적 : 21,846㎡ - 대로1-1 면적 : 3,643㎡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미결정 시설)로 철도(경부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다)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한강로3가 40-999 일원	-	증) 16,800	16,800	-	•입체적결정 -위치:A2(국제업무) -지하 3층

■ 주차장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주차장	한강로3가 40-999일원	길이(m)	-	-	-	-	•입체적 결정 -위치:A2(국제업무)
				폭(m)	-	-	-		
				높이(m) (해발고도기준)	-	-	-		
				층	-	지하3층	지하3층		

※ 주차장의 위치 및 높이, 면적 등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실시계획을 통해 결정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999일원(A2 국제업무) - 연면적 : 16,800㎡ •국제업무용지(A2)에 주차장 입체적결정 - 층 : 지하3층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 국제업무용지(A2)에 주차장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주차장 입체적 결정

2)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광장	교통 광장	원효로4가 113-29일대 (원효대교 북단광장)	86,540 (13,990)	감) 13,990 (감) 13,990)	72,550 (-)	건고제313호 (' 78.10.20.)	-

※ ( )는 구역내 시설 면적임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광장	•면적 변경 - 면적 86,540㎡(13,990㎡)→72,550㎡(-) 감) 13,990㎡(13,990㎡)	•사업구역 내 편입된 교통광장은 도로 및 공원 등으로 변경

나)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증) 77,600	77,600	-	-
신설	①	공원	문화 공원	한강로3가 40-1007 일대	-	증) 37,898	37,898	-	•철도 중복결정 :31,814㎡ -철도ⓐ:21,846㎡ -철도①:9,968㎡ •도로 중복결정 : 10,200㎡ -중로1-1:6,084㎡ -대로1-1:4,116㎡
신설	②	공원	문화 공원	한강로3가 40-1029 일대	-	증) 23,393	23,393	-	•도로 중복결정 :23,393㎡ -광로3-1:7,996㎡ -대로1-1:4,595㎡ -대로3-3:10,802㎡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②:2,476㎡
신설	③	공원	문화 공원	이촌동 173-1 일대	-	증) 4,885	4,885	-	•도로 중복결정 :4,795㎡ -대로1-66:4,142㎡ -대로3-A:653㎡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④	공원	문화공원	이촌동 173-1	-	증) 6,224	6,224	-	•유수지 중복결정 -유수지①(저류시설) :5,000㎡
신설	⑤	공원	소공원	한강로3가 40-1005	-	증) 5,200	5,200	-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문화공원①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07 일대 - 면적 : 37,898㎡ •철도·도로 중복결정 - 철도ⓐ 중복면적 : 21,846㎡ - 철도① 중복면적 : 9,968㎡ - 중로1-1 중복면적 : 6,084㎡ - 대로1-1 중복면적 : 4,116㎡	•용산역, 용산공원을 이어주는 녹지체계 조성을 위해 도로 및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공원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②	공원	•문화공원②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29 일대 - 면적 : 23,393㎡ •도로·공동구 중복결정 - 광로3-1 중복면적 : 7,996㎡ - 대로1-1 중복면적 : 4,595㎡ - 대로3-3 중복면적 : 10,802㎡ - 공동구② 중복면적 : 2,476㎡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녹지축 연계를 위해 도로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공원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③	공원	•문화공원③ 신설 - 위치 : 이촌동 173-1 일대 - 면적 : 4,885㎡ •도로 중복결정 - 대로1-66 중복면적 : 4,142㎡ - 대로3-A 중복면적 : 653㎡	•도로상부(강변북로) 덮개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④	공원	•문화공원④ 신설 - 위치 : 이촌동 173-1 - 면적 : 6,224㎡ •유수지 중복결정 - 유수지① 중복면적 : 5,000㎡	•당초 교통광장 내 토지이용현황(성촌공원)을 반영하여 문화공원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⑤	공원	•소공원⑤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05 - 면적 : 5,200㎡	•용산전자상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공원 신설

다)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증) 32,644	32,644	-	-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40-1029 일대	-	증) 5,060	5,060	-	•도로 중복결정 -대로3-4:560㎡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①:155㎡
신설	②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40-1 일대		증) 6,987	6,987	-	•도로 중복결정 :1,499㎡ -대로2-2:292㎡ -대로3-4:560㎡ -대로3-5:647㎡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①:155㎡
신설	③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40-1028	-	증) 2,291	2,291	-	•도로 중복결정 -대로3-4:560㎡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①:155㎡
신설	④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40-1	-	증) 18,306	18,306	-	•도로 중복결정 :2,112㎡ -광로3-1:987㎡ -대로3-3:1,125㎡ •공동구 중복결정 -공동구②:157㎡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경관녹지①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29 일대 - 면적 : 5,060㎡ •도로·공동구 중복결정 - 대로3-4 중복면적 : 560㎡ - 공동구① 중복면적 : 155㎡	•국제업무용지와 서부 이촌동 및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②	녹지	•경관녹지②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 일대 - 면적 6,987㎡ •도로·공동구 중복결정 - 대로2-2 중복면적 : 292㎡ - 대로3-4 중복면적 : 560㎡ - 대로3-5 중복면적 : 647㎡ - 공동구① 중복면적 : 155㎡	•국제업무용지와 문화공원④(성촌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③	녹지	•경관녹지③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28 - 면적 2,291㎡ •도로·공동구 중복결정 - 대로3-4 중복면적 : 560㎡ - 공동구① 중복면적 : 155㎡	•국제업무용지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녹지	•경관녹지④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 - 면적 18,306㎡ •도로·공동구 중복결정 - 광로3-1 중복면적 : 987㎡ - 대로3-3 중복면적 : 1,125㎡ - 공동구② 중복면적 : 157㎡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외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 조성을 위한 커브형 경관녹지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⑦	공공공지	한강로3가 16-117	420	감) 420	-	서고제438호 ('10.12.2.)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⑦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 위치 : 한강로3가 16-117 - 면적 : 420㎡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공공공지 폐지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공동구

■ 공동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계			-	-	-	1.8	13,932	-	-
신설	①	공동구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40-1005 일대	대로3-4	1.2	9,300	-	•도로 중복결정 -대로3-4:9,300㎡ •녹지 중복결정 :465㎡ -경관녹지①:155㎡ -경관녹지②:155㎡ -경관녹지③:155㎡
신설	②	공동구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16-12	광로3-1, 대로2-1, 대로3-4, 대로3-3, 대로1-1	0.6	4,632	-	•도로 중복결정 :4,632㎡ -광로3-1:2,203㎡ -대로1-1:985㎡ -대로2-1:982㎡ -대로3-3:226㎡ -대로3-4:236㎡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②:2,476㎡ •녹지 중복결정 -경관녹지④:157㎡

※ 공동구 설치계획은 실시계획인가 시 수요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공동구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동구	•공동구 신설 - 길이 1.2km, 면적 9,300㎡ •도로·녹지 중복결정 - 대로3-4 중복면적 : 9,300㎡ - 경관녹지① 중복면적 : 155㎡ - 경관녹지② 중복면적 : 155㎡ - 경관녹지③ 중복면적 : 155㎡	•지하매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지하공간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공동구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②	공동구	•공동구 신설 - 길이 0.6km, 면적 4,632㎡ •도로·공원·녹지 중복결정 - 광로3-1 중복면적 : 2,203㎡ - 대로1-1 중복면적 : 985㎡ - 대로2-1 중복면적 : 982㎡ - 대로3-3 중복면적 : 226㎡ - 대로3-4 중복면적 : 236㎡ - 문화공원② 중복면적 : 2,476㎡ - 경관녹지④ 중복면적 : 157㎡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이촌동 173-1	-	증) 5,000	5,000	-	•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④:5,000㎡

• 유수지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수지	•유수지 신설 - 위치 : 이촌동 173-1 - 면적 : 5,000㎡ •공원 중복결정 - 문화공원④ 중복면적 : 5,000㎡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의 안전한 우수 배제를 위하여 유수지 신설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융복합 국제업무지구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㉟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33,856.0	증) 60,745	494,601.0	서고 제2001-229호 ('01.7.10.)	-
변경	㉒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일대	118,138.5	감) 39,757	78,381.5	서고 제2001-229호 ('01.7.10.)	-
변경	㊴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일대	18,953.7	감) 382	18,571.7	서고 제2014-142호 ('14.4.17.)	-

※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결정(서울시고시 제2017-252호, 2017.07.13.)된 면적이며, 실시계획인가 전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결정(변경)사항(국토부고시 제2021-1317호, 2021.12.06.) 반영 예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㉟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 433,856.0㎡→494,601.0㎡ 증) 60,745㎡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변경
변경	㉒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일대	• 118,138.5㎡→78,381.5㎡ 감) 39,757㎡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일체화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변경
변경	㊴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일대	• 18,953.7㎡→18,571.7㎡ 감) 382㎡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일체화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변경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02-2133-9437)
- 용산구 도시계획과 (☎ 02-2199-7422)

[붙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별첨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별첨2]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결정도
[별첨3]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별첨4]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별첨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평면도

[붙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공유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산구 이촌동	1-67	대	10.4	10.4	국(기재부)					
2	용산구 이촌동	1-68	대	12.4	12.4	국(기재부)					
3	용산구 한강로3가	16-12	천	776.1	776.1	국(국토부)					
4	용산구 한강로3가	30-2	철	10.7	10.7	국(국토부)					
5	용산구 한강로3가	40-2	도	11,333.9	808.8	국(국토부)					
6	용산구 한강로3가	40-112	도	14,459.8	1,043.4	국(국토부)					
7	용산구 한강로3가	40-960	철	5.2	5.2	국(국토부)					
8	용산구 한강로3가	40-973	철	253.0	27.1	국(국토부)					
9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	116,403.0	37,633.3	국(국토부)					
10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5	철	11,416.7	11,004.6	국(국토부)					
11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7	철	57,208.3	20,562.0	국(국토부)					
12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9	철	1,913.5	1,913.5	국(국토부)					
13	용산구 한강로3가	40-1026	철	8,759.2	8,759.2	국(국토부)					
14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8	철	2,399.7	2,399.7	국(국토부)					
15	용산구 한강로3가	40-1061	철	219.1	219.1	국(국토부)					
16	용산구 원효로4가	113-29	도	5,192.5	1,122.3	국(국토부)					
17	용산구 이촌동	171-1	도	29,421.9	1,402.0	국(국토부)					
18	용산구 이촌동	172-1	도	40,595.7	5,352.6	국(환경부)					
19	용산구 이촌동	173-1	제	42,548.2	7,091.1	국(환경부)					
20	용산구 원효로4가	177	천	5,324.0	932.0	국(국토부)					
21	용산구 이촌동	379	천	622.6	412.1	국(환경부)					
22	용산구 이촌동	389-2	천	1,324.1	774.7	국(환경부)					
23	용산구 이촌동	393-4	천	7,081.8	480.6	국(환경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공유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용산구 이촌동	394	천	1,388.0	1,026.7	국(국토부)					
25	용산구 한강로3가	16-3	도	789.3	52.9	서울시					
26	용산구 한강로3가	16-95	천	544.5	336.3	서울시					
27	용산구 한강로3가	16-113	도	39.5	39.5	서울시					
28	용산구 한강로3가	16-117	대	429.8	429.8	용산구					
29	용산구 한강로3가	29-2	도	165.3	165.3	서울시					
30	용산구 한강로3가	37	대	368.3	368.3	서울시					
31	용산구 한강로3가	37-2	대	154.6	154.6	용산구					
32	용산구 한강로3가	40-917	도	4.6	4.6	서울시					
33	용산구 한강로3가	40-918	도	69.4	69.4	서울시					
34	용산구 한강로3가	76	도	206.3	74.7	서울시					
35	용산구 한강로3가	77-1	대	3.9	3.9	서울시					
36	용산구 한강로3가	77-3	대	5.4	5.4	서울시					
37	용산구 한강로3가	77-4	대	8.6	8.6	서울시					
38	용산구 한강로3가	80	도	102.5	102.5	용산구					
39	용산구 원효로4가	113-59	천	1,025.8	450.8	서울시					
40	용산구 이촌동	212-44	도	162.1	162.1	서울시					
41	용산구 이촌동	309-28	대	4.8	4.8	서울시					
42	용산구 이촌동	309-31	도	116.1	116.1	용산구					
43	용산구 이촌동	309-32	대	22.4	22.4	용산구					
44	용산구 이촌동	309-33	대	8.3	8.3	용산구					
45	용산구 이촌동	1-1	철	3,465.3	3,465.3	한국철도공사					
46	용산구 이촌동	1-3	철	9.9	9.9	한국철도공사					
47	용산구 이촌동	1-4	철	3.3	3.3	한국철도공사					
48	용산구 이촌동	1-20	대	2.8	2.8	한국철도공사					
49	용산구 이촌동	1-21	대	27.3	27.3	한국철도공사					
50	용산구 이촌동	1-22	대	22.1	22.1	한국철도공사					
51	용산구 이촌동	1-24	대	59.3	59.3	한국철도공사					
52	용산구 이촌동	1-36	대	42.0	42.0	한국철도공사					39.3/4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공유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최OO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2.7/42
53	용산구 이촌동	1-45	도	44.0	44.0	한국철도공사					
54	용산구 이촌동	1-58	철	5,056.0	5,056.0	한국철도공사					
55	용산구 이촌동	2	철	314.0	314.0	한국철도공사					
56	용산구 한강로3가	24-3	제	197.4	197.4	한국철도공사					
57	용산구 한강로3가	31-1	대	22,875.0	22,875.0	한국전력공사					
58	용산구 한강로3가	31-2	제	308.4	308.4	한국전력공사					
59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철	828.2	828.2	한국철도공사					
60	용산구 한강로3가	36-1	철	49.0	49.0	한국철도공사					
61	용산구 한강로3가	38-4	철	7.7	7.7	한국철도공사					
62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철	123,426.4	123,426.4	한국철도공사					
63	용산구 한강로3가	40-684	대	64.0	64.0	한국철도공사					
64	용산구 한강로3가	40-687	대	8.3	8.3	한국철도공사					
65	용산구 한강로3가	40-688	도	3.6	3.6	한국철도공사					
66	용산구 한강로3가	40-689	대	22.1	22.1	한국철도공사					
67	용산구 한강로3가	40-690	대	22.1	22.1	한국철도공사					
68	용산구 한강로3가	40-691	대	111.4	111.4	한국철도공사					
69	용산구 한강로3가	40-692	대	61.8	61.8	한국철도공사					
70	용산구 한강로3가	40-693	대	139.9	139.9	한국철도공사					
71	용산구 한강로3가	40-694	대	77.0	77.0	한국철도공사					
72	용산구 한강로3가	40-695	대	63.8	63.8	한국철도공사					
73	용산구 한강로3가	40-696	대	108.1	108.1	한국철도공사					
74	용산구 한강로3가	40-697	대	57.2	57.2	한국철도공사					
75	용산구 한강로3가	40-698	대	23.1	23.1	한국철도공사					
76	용산구 한강로3가	40-699	도	38.7	38.7	한국철도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공유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7	용산구 한강로3가	40-70 0	대	16.8	16.8	한국 철도공사					
78	용산구 한강로3가	40-70 1	대	5.3	5.3	한국 철도공사					
79	용산구 한강로3가	40-70 2	대	7.5	7.5	한국 철도공사					
80	용산구 한강로3가	40-70 3	대	12.2	12.2	한국 철도공사					
81	용산구 한강로3가	40-70 4	대	14.4	14.4	한국 철도공사					
82	용산구 한강로3가	40-95 7	철	18,494.5	18,494.5	한국 철도공사					
83	용산구 한강로3가	40-95 8	철	157.3	157.3	한국 철도공사					
84	용산구 한강로3가	40-96 1	철	33.0	33.0	한국 철도공사					
85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06	철	9,385.3	9,385.3	한국 철도공사					
86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10	철	1,735.5	1,735.5	한국 철도공사					
87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28	철	17,824.7	17,824.7	한국 철도공사					
88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29	철	97,406.2	97,406.2	한국 철도공사					
89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30	철	17,824.9	17,824.9	한국 철도공사					
90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31	철	13,037.6	13,037.6	한국 철도공사					
91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32	철	13,319.3	13,319.3	한국 철도공사					
92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33	철	14,683.1	14,683.1	한국 철도공사					
93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34	철	12,434.1	12,434.1	한국 철도공사					
94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59	철	4,251.0	4,251.0	한국 철도공사					
95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60	철	5,796.0	5,796.0	한국 철도공사					
96	용산구 한강로3가	78	제	59.5	59.5	한국 철도공사					
97	용산구 한강로3가	79-1	철	236.9	236.9	한국 철도공사					
98	용산구 한강로3가	79-2	도	9.2	9.2	한국 철도공사					
99	용산구 이촌동	1-7	대	233.7	233.7	이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100	용산구 이촌동	1-28	대	167.0	167.0	홍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근저당권	
101	용산구 이촌동	1-29	대	82.4	82.4	유OO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공유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2	용산구 이촌동	1-30	대	61.5	61.5	김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이촌 새마을금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2(이촌동)	근저당권	
103	용산구 이촌동	1-31	대	17.6	17.6	윤OO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				
104	용산구 이촌동	1-32	대	23.2	23.2	정OO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				
105	용산구 이촌동	1-33	대	39.7	39.7	장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37.3/39.7
						정OO	대전시 대덕구 계족산로 ***				2.4/39.7
106	용산구 이촌동	1-34	대	33.1	33.1	정OO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1/10
						정OO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9/10
107	용산구 이촌동	1-35	대	32.1	32.1	최OO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108	용산구 이촌동	1-37	대	57.3	57.3	우OO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				2/10
						양OO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				8/10
109	용산구 이촌동	1-38	대	73.5	73.5	김OO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				2/7
						함OO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				2/7
						함OO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				3/7
110	용산구 이촌동	1-39	대	66.4	66.4	최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				3/7
						이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				2/7
						이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				2/7
111	용산구 이촌동	1-40	대	35.4	35.4	이OO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				1/2
						이OO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5로 ***				1/2
112	용산구 이촌동	1-41	대	28.2	28.2	박OO	인천시 중구 은하수로 ***				500/1000
						박O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268/1000
						윤O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34/1000
						박O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66/1000
						박O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66/1000
						박OO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				66/1000
113	용산구 이촌동	1-42	대	53.8	53.8	박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114	용산구 이촌동	1-43	대	107.7	107.7	김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				1/3
						김OO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				1/3
						김OO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이촌 새마을금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2(이촌동)	근저당권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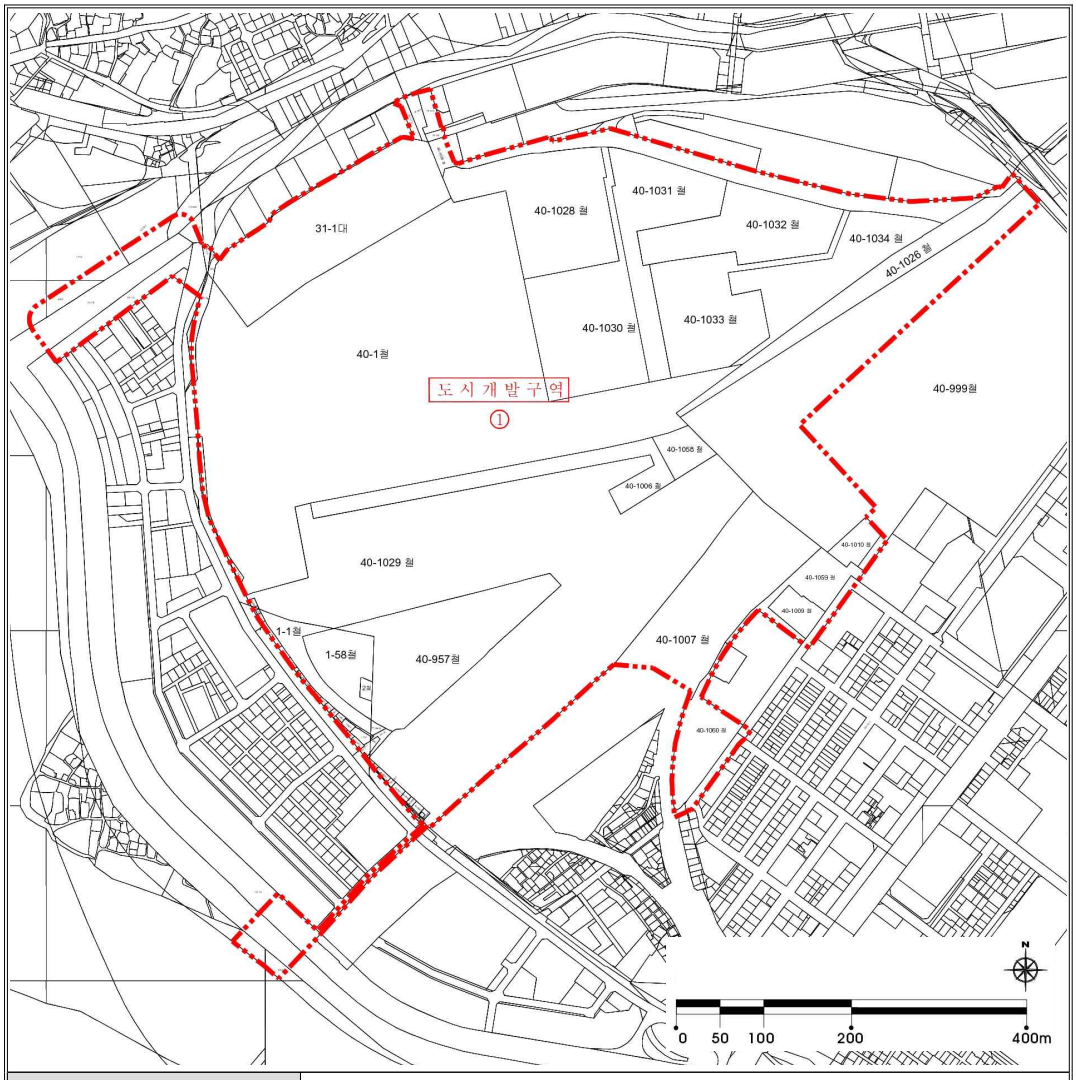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공유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5	용산구 이촌동	1-46	대	117.3	117.3	이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65가길 ***				
116	용산구 이촌동	1-48	대	63.8	63.8	이OO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				1/2
						이OO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5로 ***				1/2
117	용산구 한강로3가	16-18	대	615.2	615.2	이OO	경기도 양평군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	근저당권	50/100
						이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100
						이OO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				30/100
118	용산구 한강로3가	30	대	163.1	163.1	김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이촌 새마을금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2(이촌동)	근저당권	81.6/163.1
						최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이촌 새마을금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2(이촌동)	근저당권	81.5/163.1
119	용산구 한강로3가	30-1	대	54.2	54.2	김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이촌 새마을금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2(이촌동)	근저당권	51/54.2
						최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이촌 새마을금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2(이촌동)	근저당권	3.2/54.2
120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2	대	365.0	365.0	주식회사 OOOO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				
121	용산구 이촌동	309-21	대	1.3	1.3	최OO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122	용산구 이촌동	309-23	대	5.6	5.6	문OO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마포구독막길24 (염리동168-9)(광진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압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반곡동,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압류	
123	용산구 이촌동	309-46	대	5.1	5.1	이OO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				1/2
						이OO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5로 ***				1/2

※ 전체 494,601㎡은 캐드 구적면적이고, 토지세목조서상 면적(493,146.6㎡)은 공부상 면적 기준임

[별첨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별첨2]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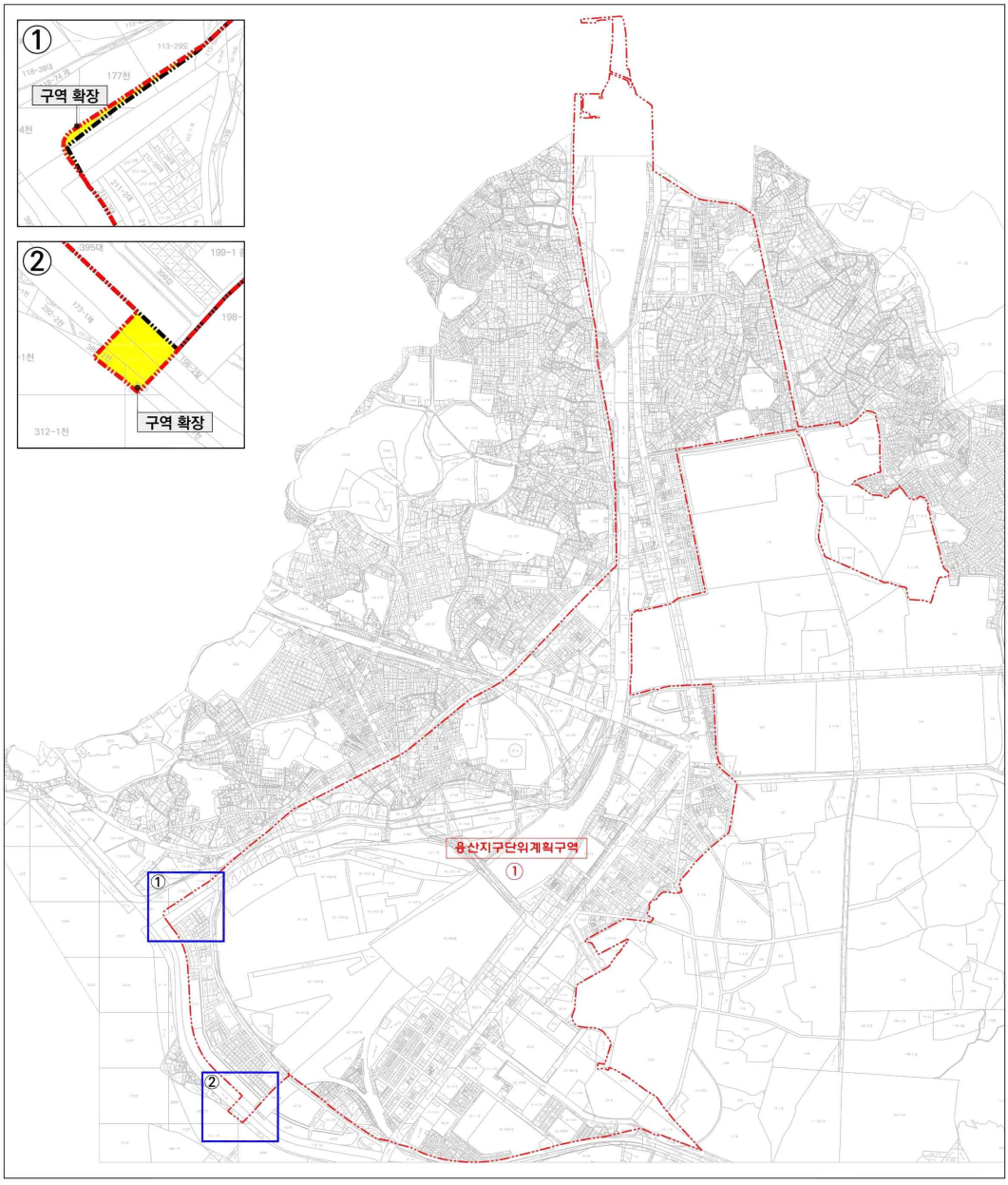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3]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3]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4]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총괄)



축 척 1 : 3,00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 - 577호
2024년 11월 28일
※ 금회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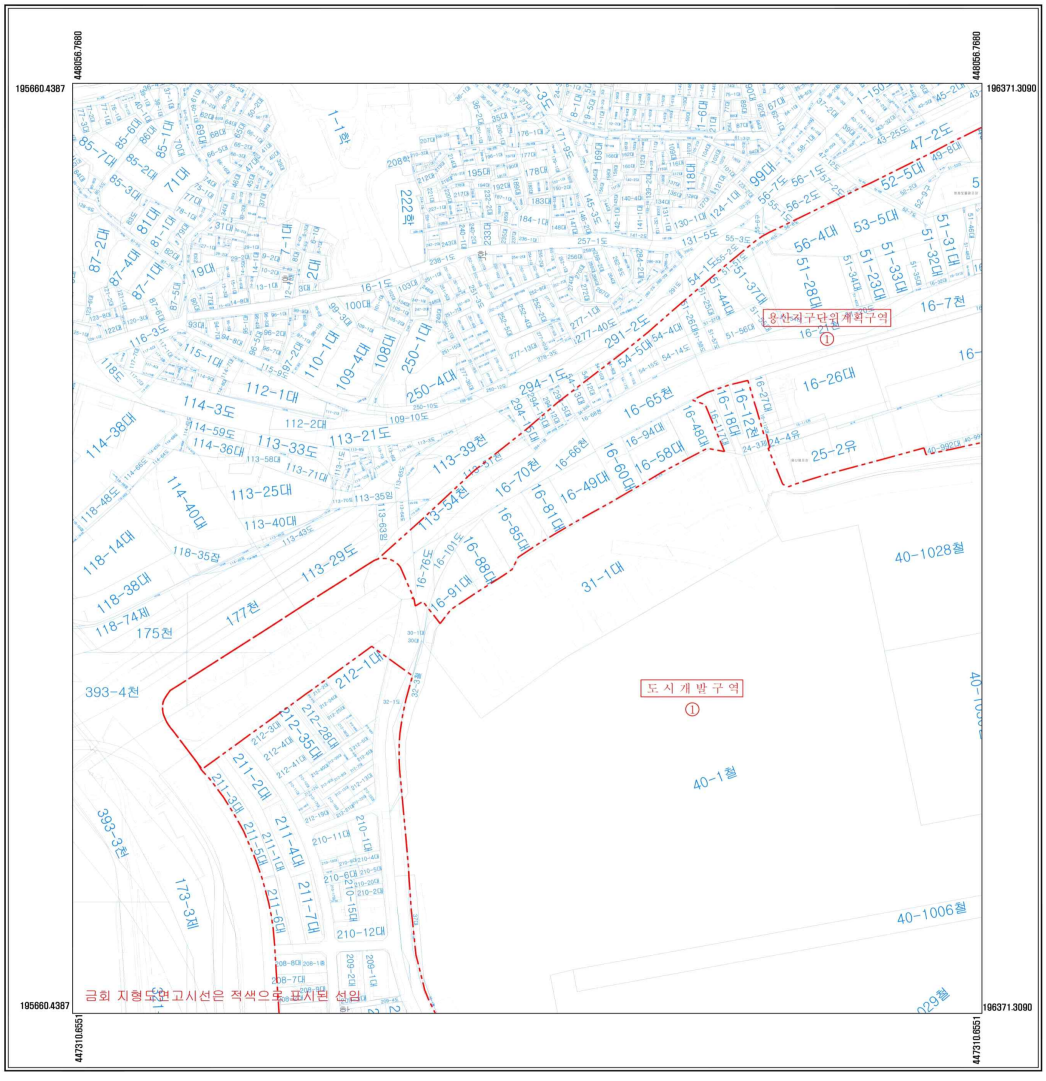
색인도

서 울 078	서 울 079	서 울 080
서 울 088	서 울 089	서 울 090
서 울 098	서 울 099	서 울 100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4]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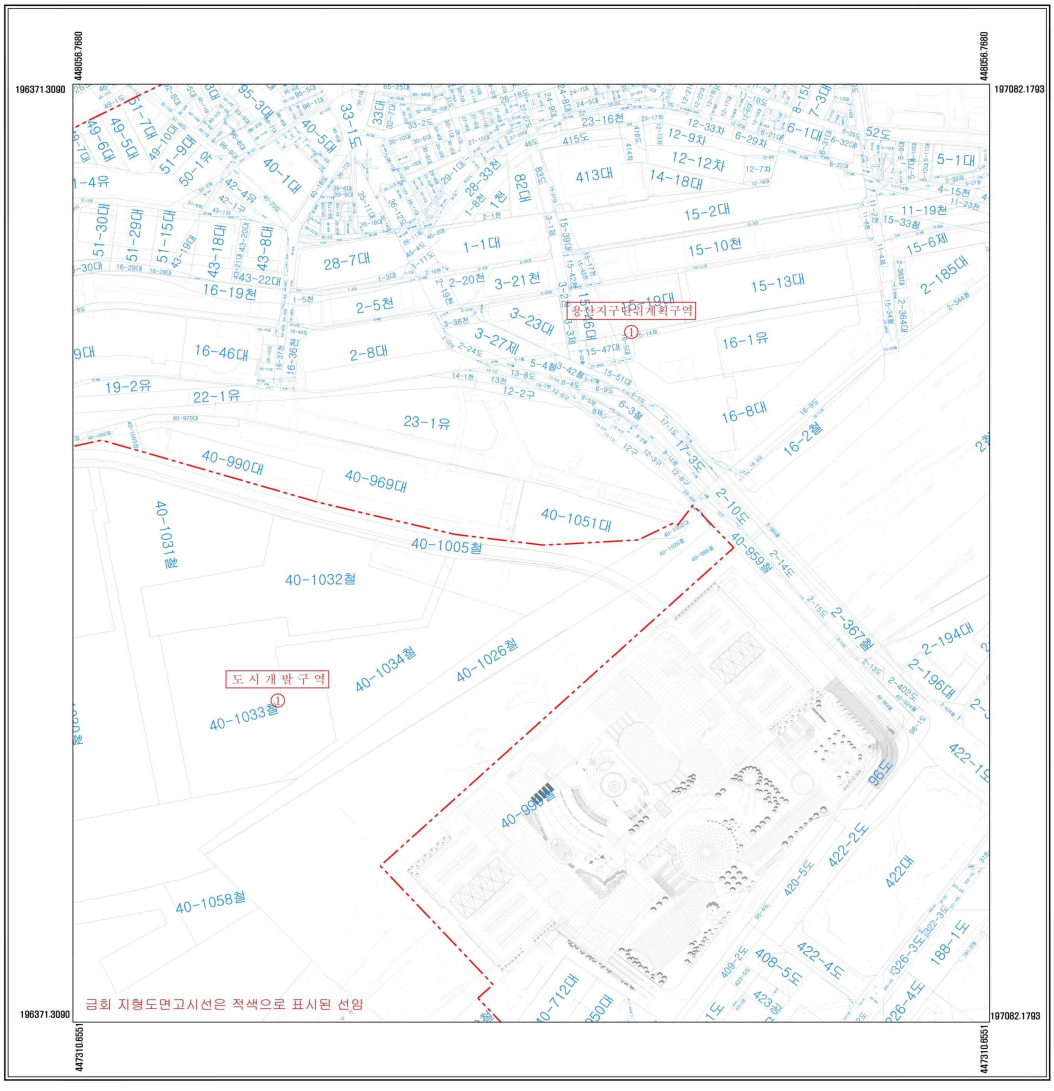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1 / 4)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4]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2 / 4)



축 척 1 : 1,50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 - 577호
2024년 11월 28일
※ 금회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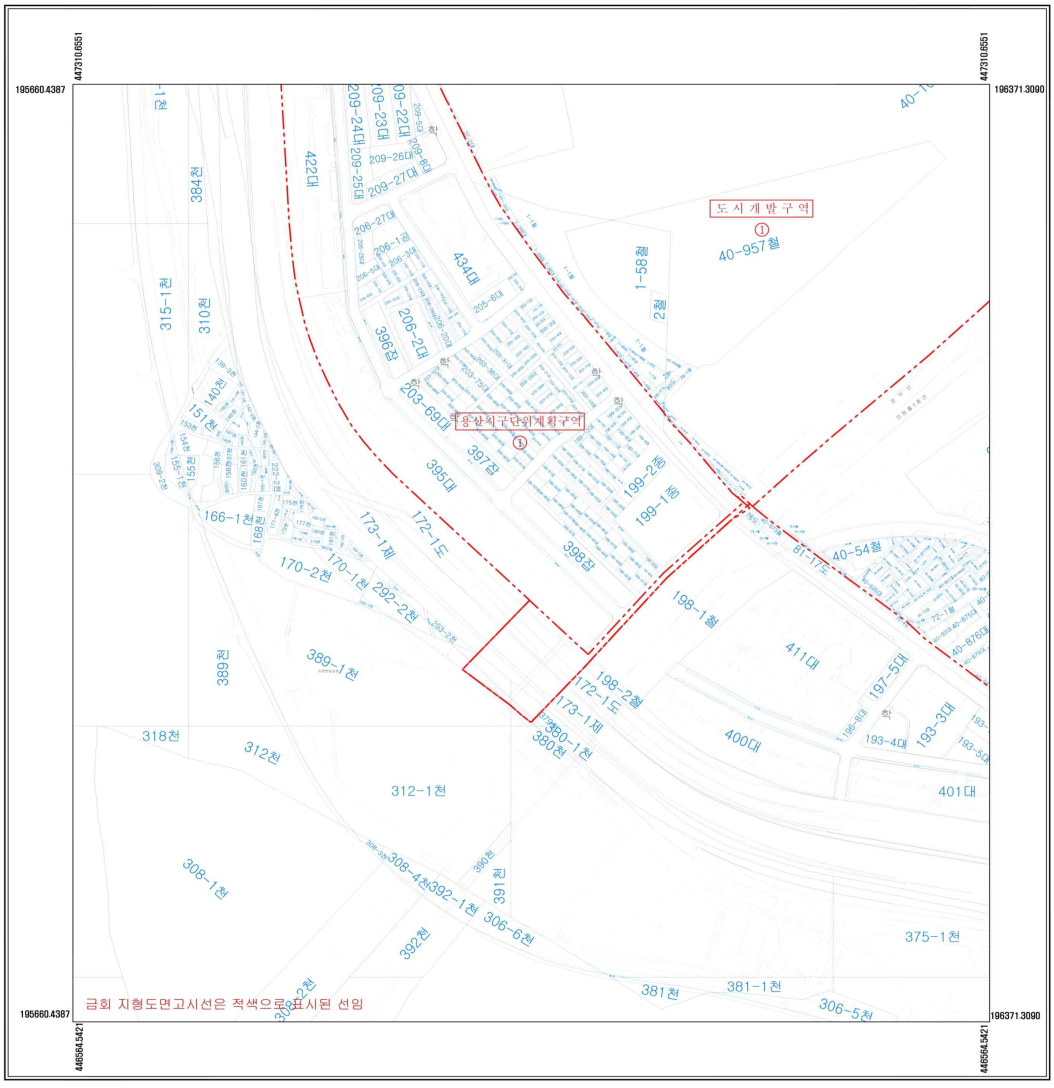
색인도

서 울 078	서 울 079	서 울 080
서 울 088	서 울 089	서 울 090
서 울 098	서 울 099	서 울 100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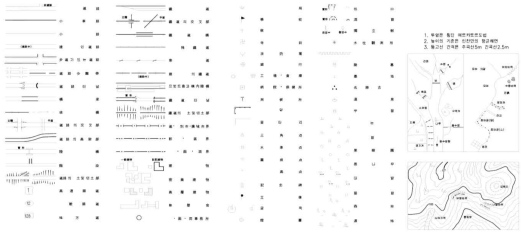
[별첨4]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3 / 4)



축척 1 : 1,50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 - 577호
2024년 11월 28일
※ 금회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색인도

서울 078	서울 079	서울 080
서울 088	서울 089	서울 090
서울 098	서울 099	서울 100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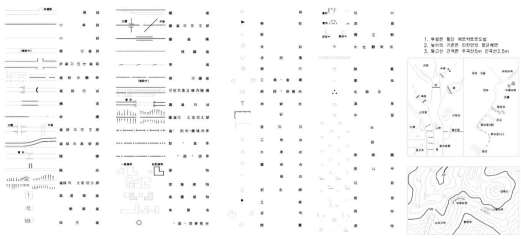
[별첨4]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4 / 4)



축 척 1 : 1,50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 - 577호
2024년 11월 28일
※ 금회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색인도

서 울 078	서 울 079	서 울 080
서 울 088	서 울 089	서 울 090
서 울 098	서 울 099	서 울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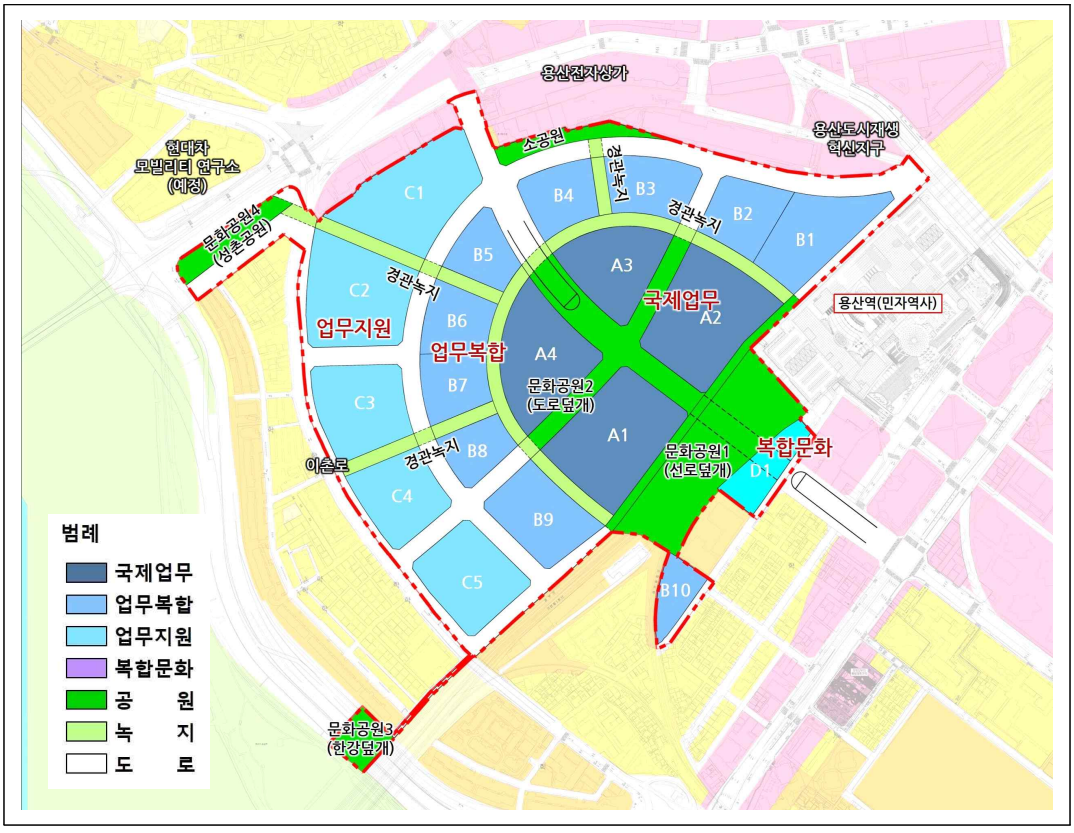
※ 해당 도면은 참고용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는 도면은 공람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평면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94,601	100.0	-
복합용지	계		296,335	59.9	-
	국제업무		88,557	17.9	4개 블록(A1~A4)
	업무복합		104,905	21.2	10개 블록(B1~B10)
	업무지원		95,239	19.3	5개 블록(C1~C5)
	복합문화		7,634	1.5	1개 블록(D1)
공공시설용지	계		198,266	40.1	-
	도 로		88,022	17.8	공원 · 녹지 · 철도 중복면적(43,458㎡) 및 문화복합용지(D1:1,686㎡) 입체적결정 면적 포함 시 전체 도로면적 133,166㎡
	공원녹지	소 계	110,244	22.3	
		문화공원	72,400	14.6	도로중복(34,272㎡), 철도중복(31,814㎡), 유수지(저류시설) 중복(5,000㎡)
		소공원	5,200	1.1	용산전자상가 전면공원
		경관녹지	32,644	6.6	도로중복(4,731㎡)

[토지이용계획도]


용산전자상가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예정)
소공원
경관녹지
용산도시재생
혁신지구
문화공원4
(성촌공원)
C1
B4
B3
B2
B1
B5
A3
국제업무
A2
용산역(민자역사)
C2
업무지원
B6
업무복합
A4
B7
문화공원2
(도로덮개)
C3
A1
문화공원1
(선로덮개)
복합문화
D1
이촌로
B8
C4
B9
C5
B10
문화공원3
(한강덮개)
범례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공 원
녹 지
도 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8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9호(2024.04.18.)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라.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1)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변경없음)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1) 사업시행 기간 : (기정) 2007년 12월 28일~2024년 12월 31일
(변경) 2007년 12월 28일~2026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계획변경 검토, 토지소유권 정리 등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필요
2)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바. 지구분할(변경없음)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공람방법

1) 시민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02) 2600-528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 (☎ 02) 3410-7683)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변경없음)

파. 기타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사항은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을 따른다.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라. 시행자(변경)
1)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마. 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 기간 : (기정) 2007년 12월 28일~2024년 12월 31일
(변경) 2007년 12월 28일~2026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계획변경 검토, 토지소유권 정리 등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필요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사. 지구분할(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변경)
1) 사업의 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없음)
3)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변경없음)
4)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5) 무상귀속 조서(변경없음)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02) 2600-528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 (☎ 02) 3410-7683)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변경)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가)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08년 12월 30일~2024년 12월 31일
(변경) 2008년 12월 30일~2026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계획변경 검토, 토지소유권 정리 등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필요
(나) 개발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나)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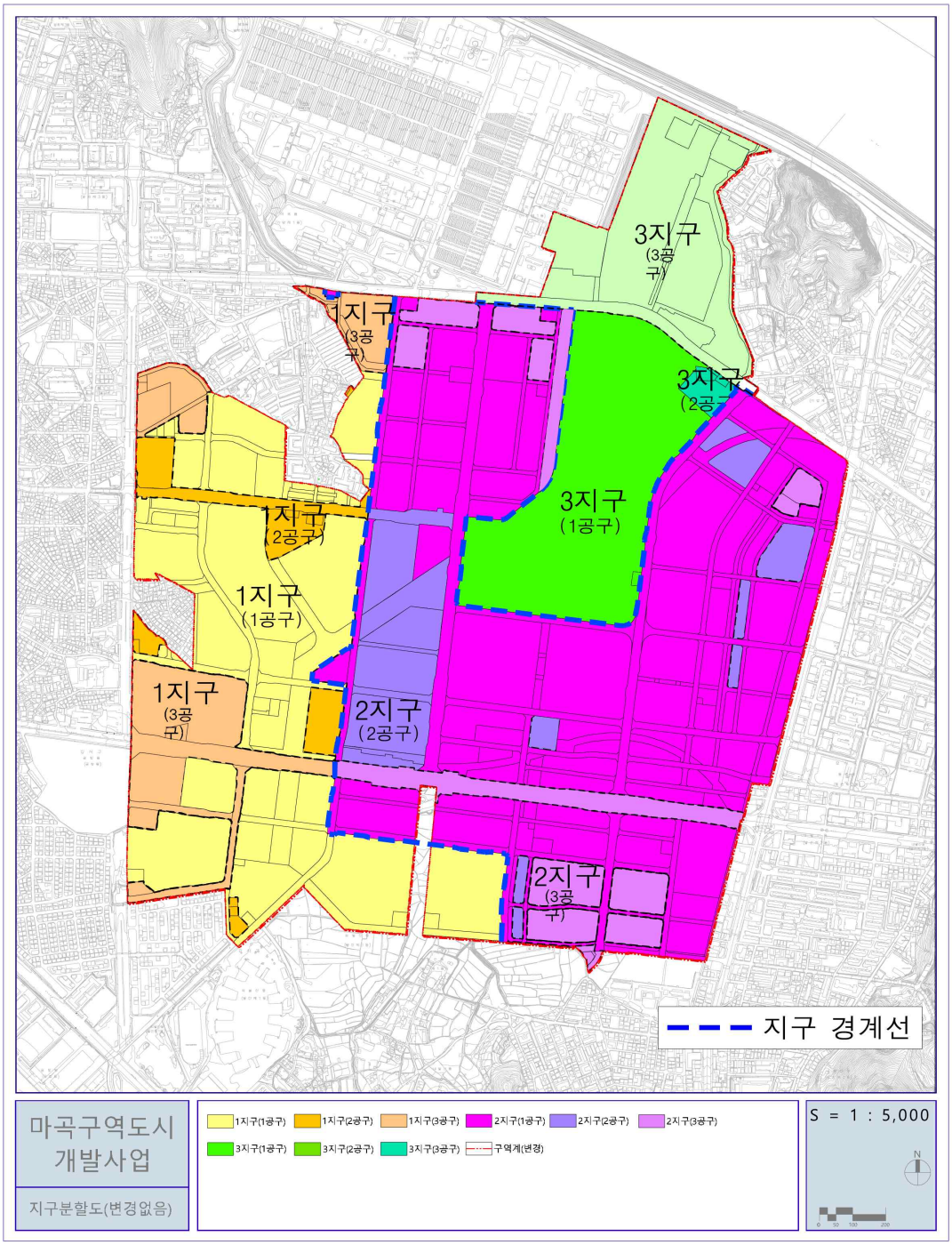
(1) 사업의 명칭 : 마곡 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2008년 12월 30일~2024년 12월 31일
(변경) 2008년 12월 30일~2026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계획변경 검토, 토지소유권 정리 등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필요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의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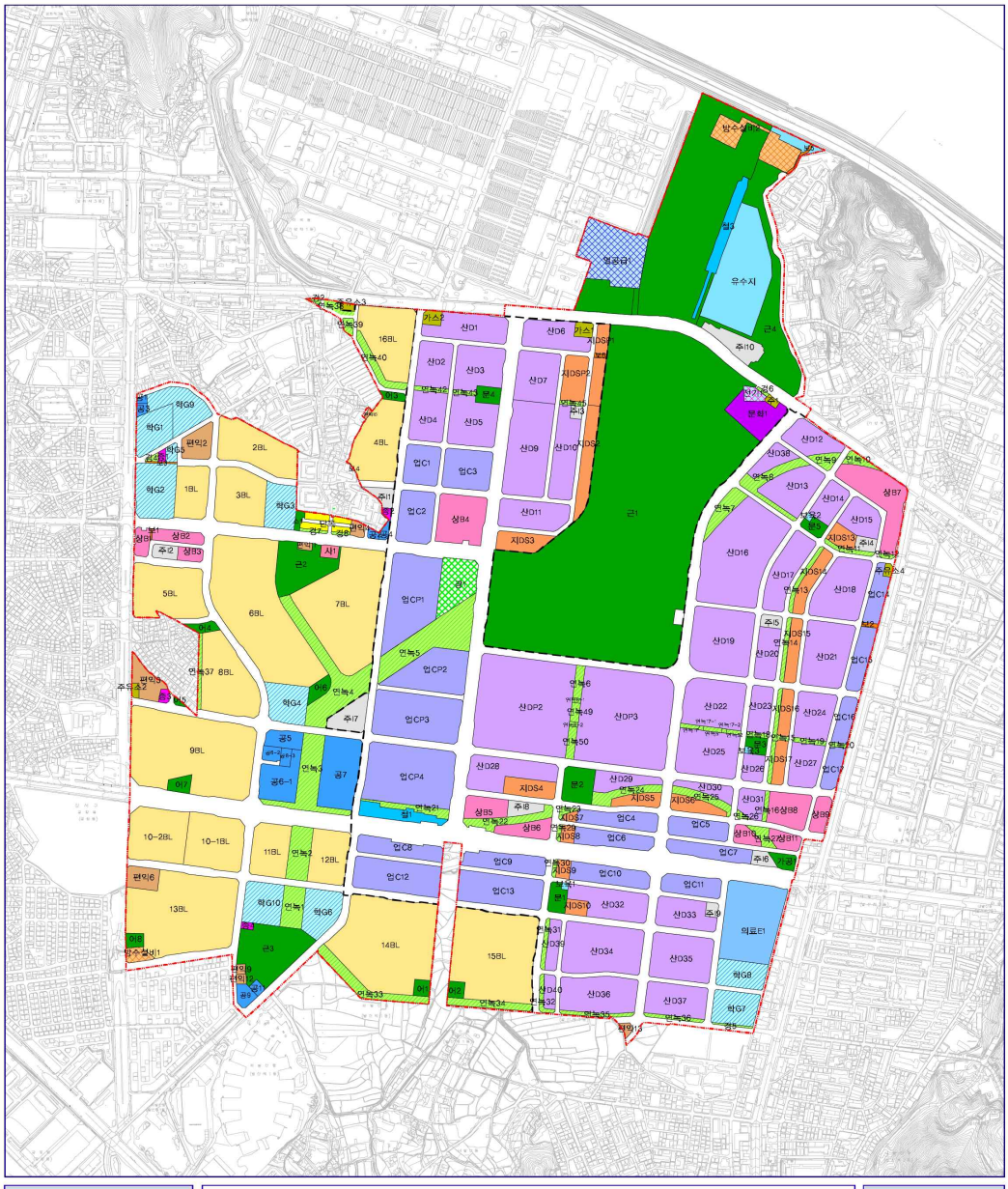
2)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변경없음)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변경없음)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변경없음)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변경없음)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없음)

■별첨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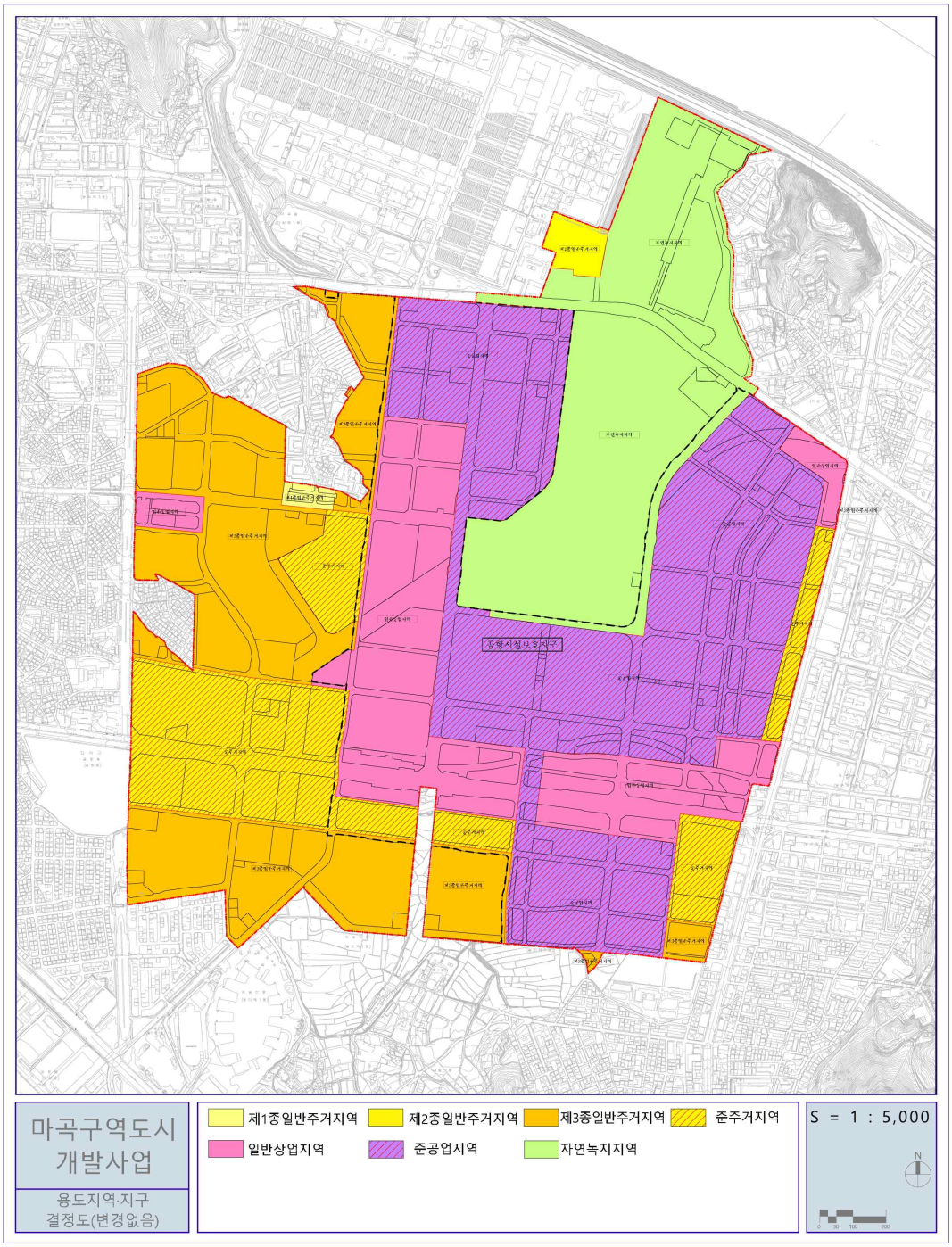
1. 지구분할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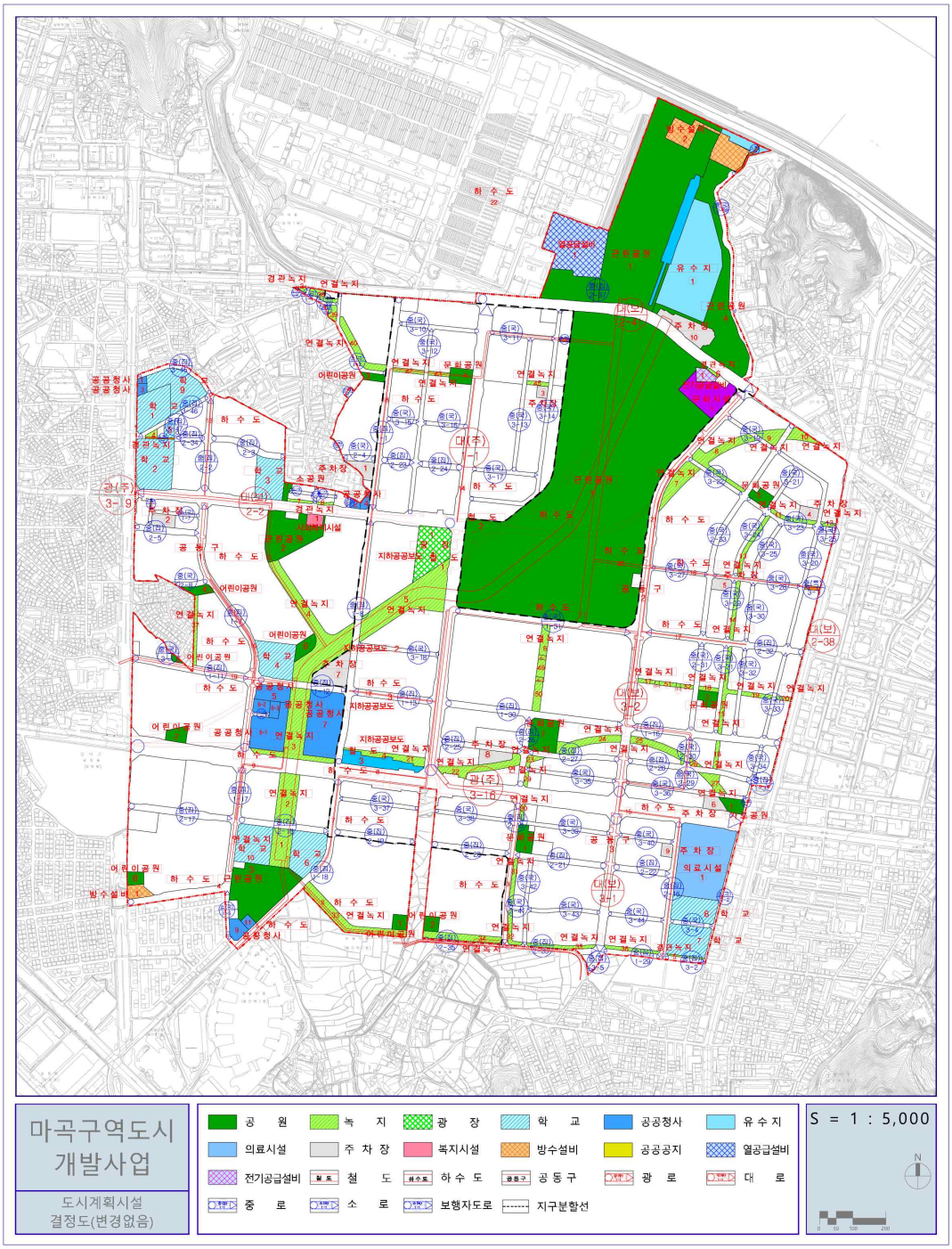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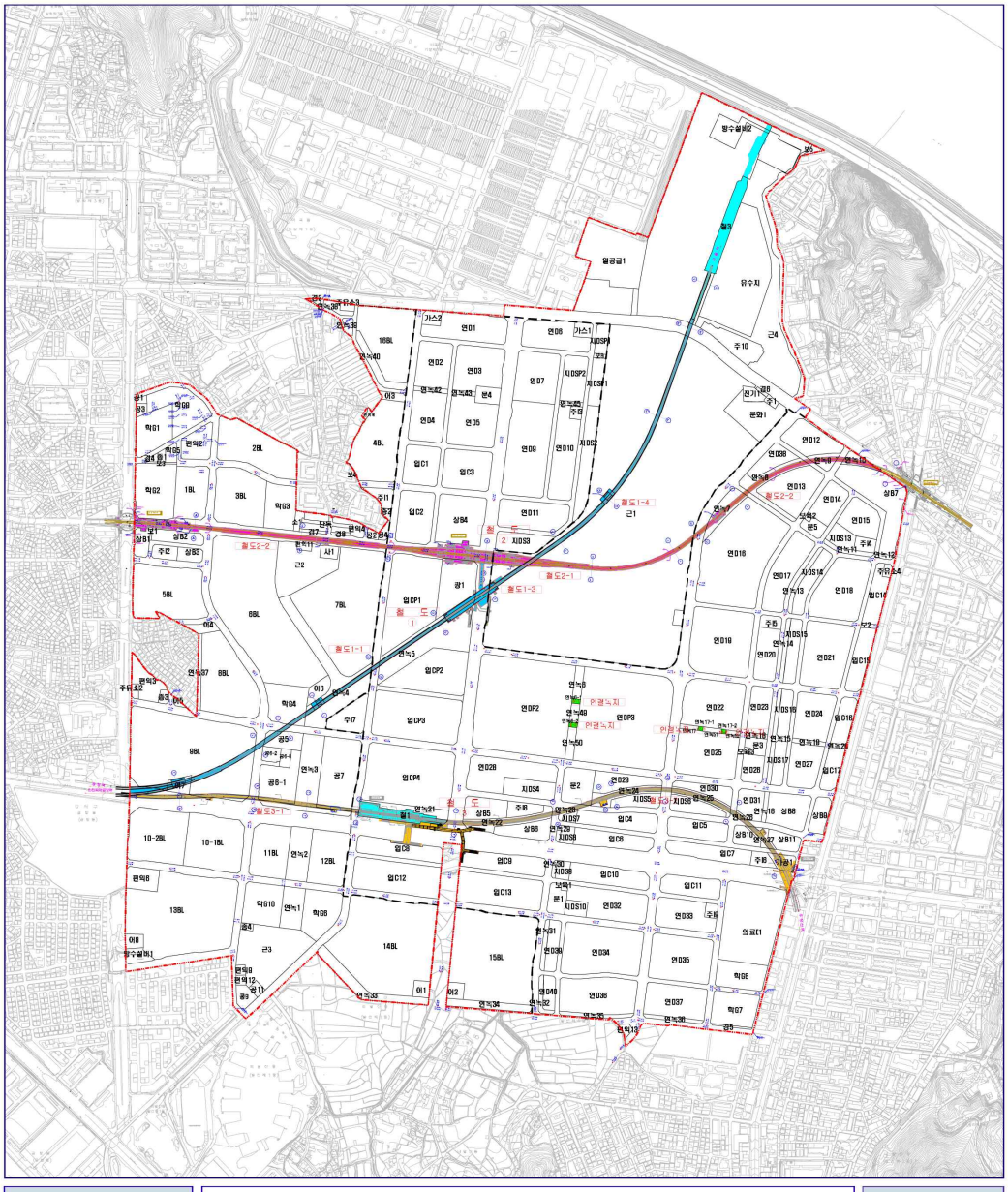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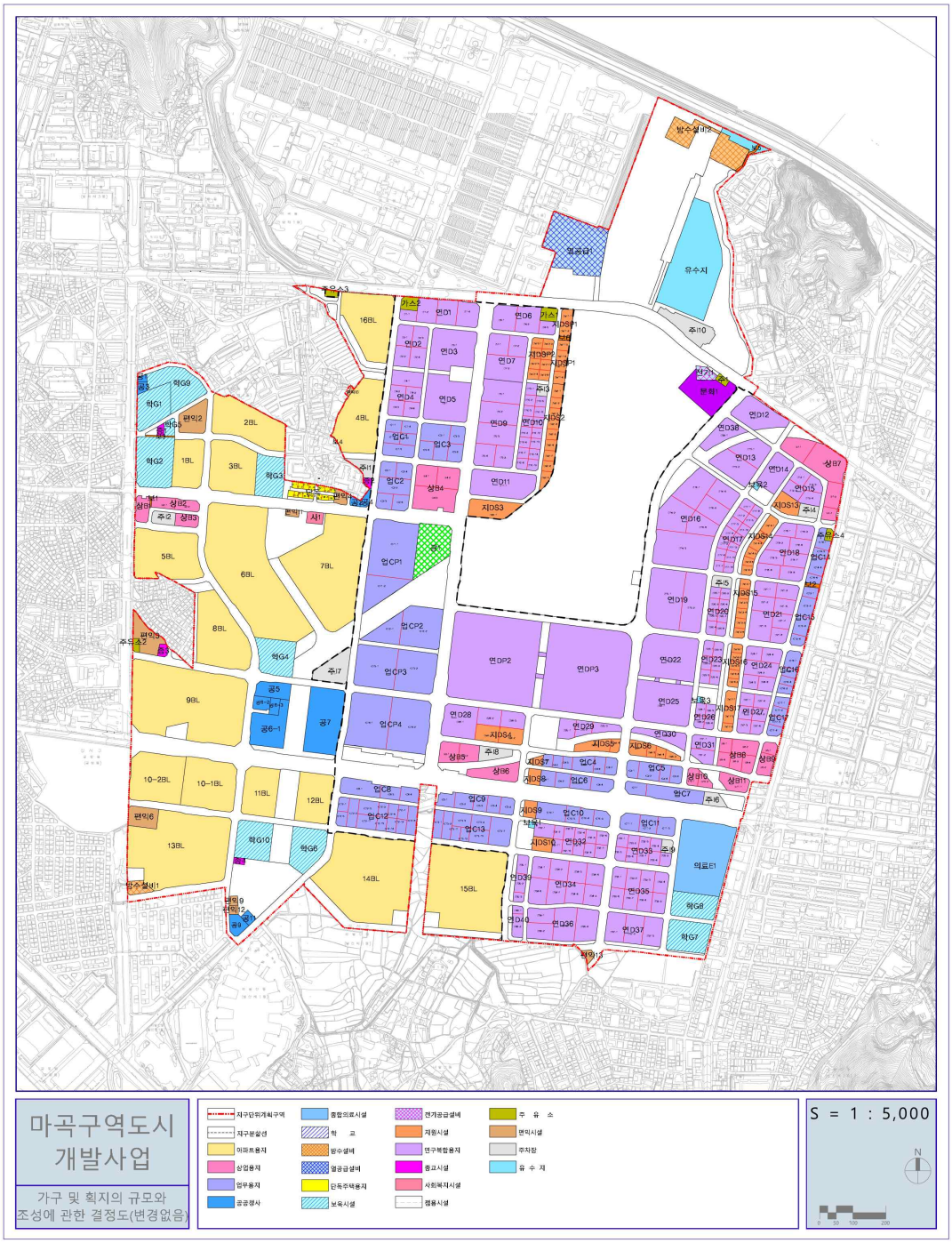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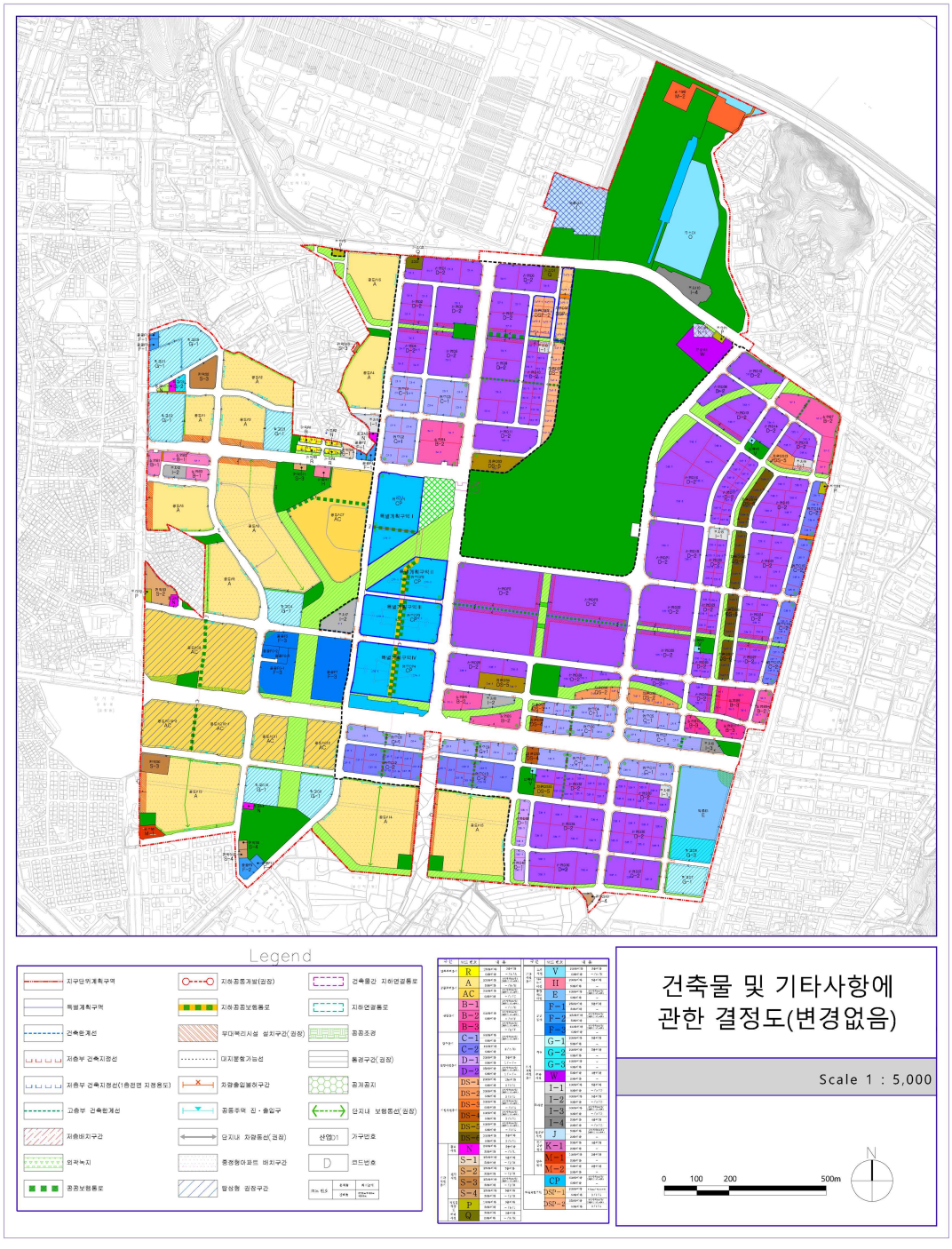
5.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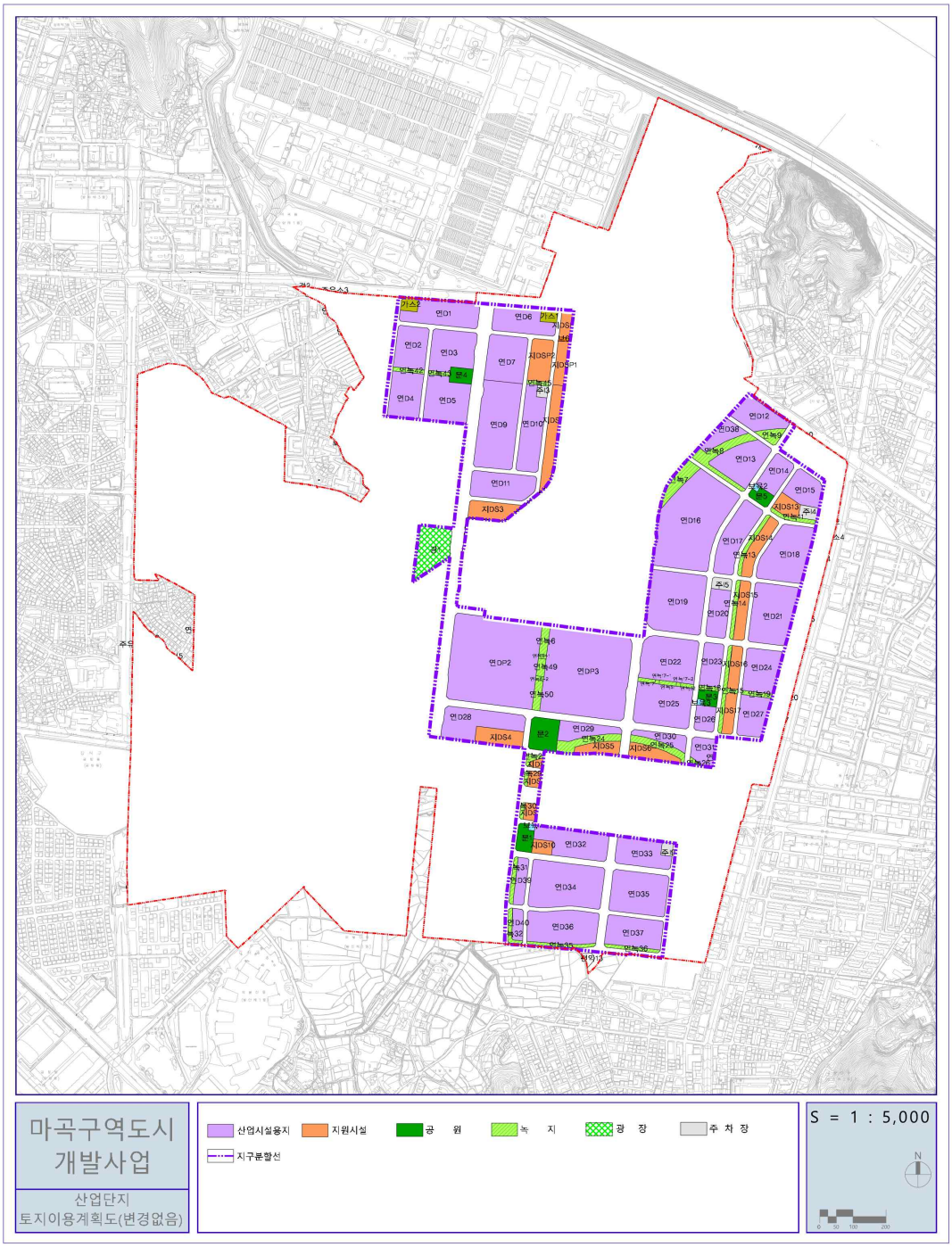
6. 가구 및 획지도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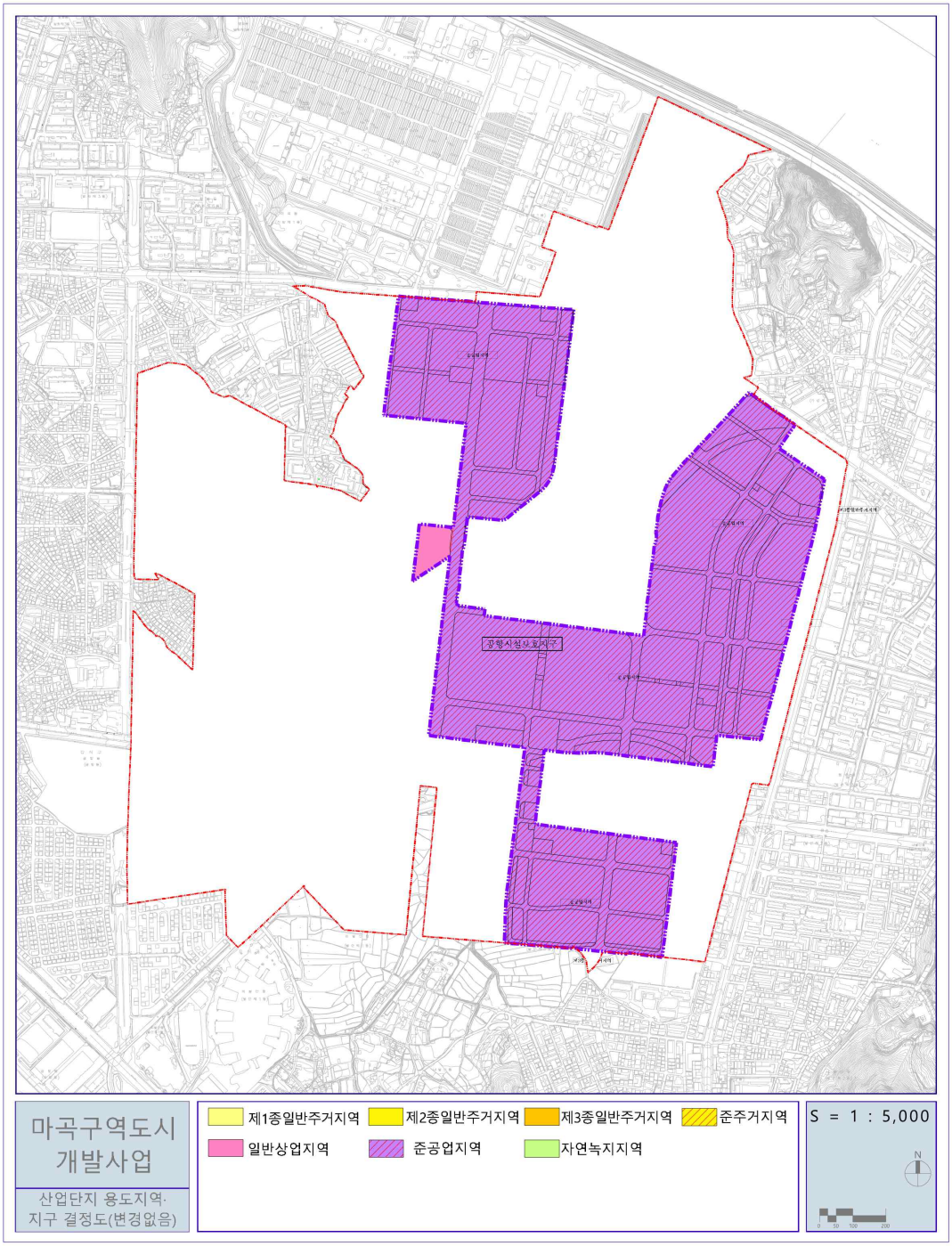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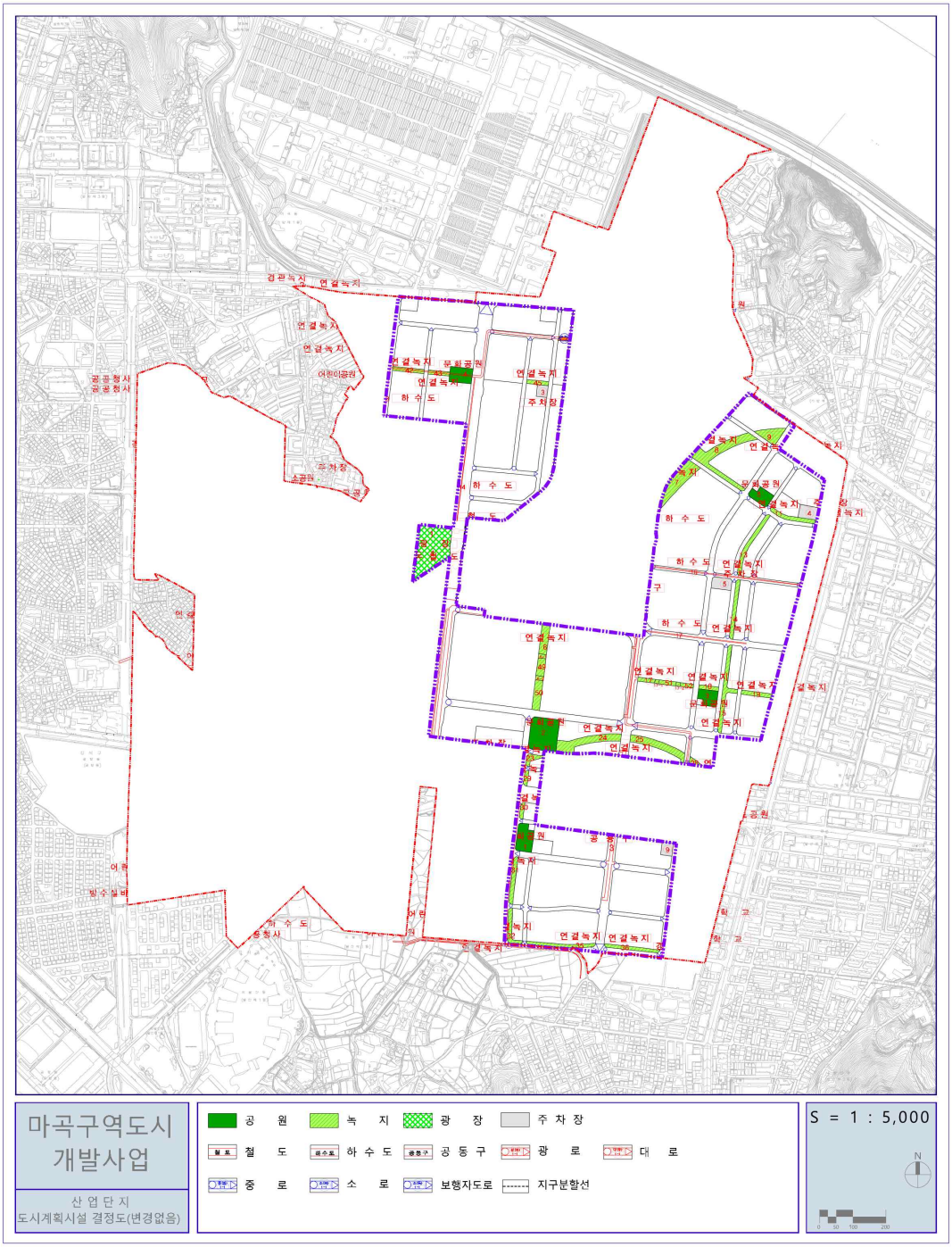
8.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9. 산업단지 용도지역지구도 -변경없음



10. 산업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9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개요

가. 지정 대상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01호	어사고풍(1792년) 御射古風 一七九二年	8점	오재순 어사고풍:112×82 이 갑 어사고풍:140.4×77.5 오재순 어사고풍:50.2×76 오재순 어사고풍:56×81 오재순 어사고풍:56×81 오의상 어사고풍:37.3×36.8 이해우 어사고풍첩(2점):46×30	1792년 (정조 16)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02호	백자연령군겻쥬방명 달항아리	1점	높이 38, 최대지름 41.5	조선 후기	종로구 (이호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03호	호압사 석불좌상(약사불) 虎壓寺 石佛坐像(藥師佛))	1점	전체 높이 104.5, 전체 너비 53.0 불상 높이 92.5 대좌 높이 12.0, 불상 무릎 너비 53.0 어깨 너비 37.0	조선 전기 15~16세기	금천구 (대한불교 조계종 호압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04 호	행구성군수 오일영 자수 만민송덕 병풍 行龜城郡守吳一泳 刺繡萬民頌德屛	2점 (20폭)	(전체)166.5×39.5×14.5	1898년 (광무 2)	종로구 (서울공예 박물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자료 제 95호	각황사 석조관음보살좌상 覺皇寺 石造觀音菩薩坐像	1건	상 높이 38.25, 밑면 20.8×15.7, 대좌 높이 12.5	20세기 초	은평구 (최상건)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으로 명칭을 변경함.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01(2024.9.26.)호 오기 정정
: 호압사 석불좌상(약사불) 수량 1점, 지정 명칭 <각황사 석조관음보살좌상>으로 함

나. 지정 사유

■ 유형문화유산

【어사고풍(1792년)】

「어사고풍(御射古風)」이란 왕이 사례(射禮)를 열어 활쏘기를 한 후 자신을 수행한 신하들에게 사은(賜恩)하는 풍습을 말한다. 주로 정조(正祖) 때 사례가 수시로 열렸다. 특히 정조는 사례를 열어 직접 활을 시험했고, 이때 정조의 성적을 규장각 각신이 고풍의 종이에 적어 올렸으며, 정조는 이를 받아 신하에게 내려줄 하사품의 종류를 써넣었다고 한다.

이런 경로로 작성된 '어사고풍' 은 정조 대의 사례(射禮) 풍습과 그에 수반된 물품 사은의 풍습을 잘 나타내며, 조선 후기 정치사, 군제사, 체육사 등 여러 분야의 좋은 자료이지만, 주로 관찬 사서와 『홍재전서』, 각종 문집을 통한 고증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물 고문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풍 및 어전 궁술기록책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조 대 등으로 작성 시기가 매우 짧고 제한적이며, 자료의 수량 또한 희소하다. 그럼에도 현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므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유물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연구 가치가 높은 편이므로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백자 연령군겻쥬방명 달항아리】

본 유물은 대형의 백자 원호(圓壺)로서 소위 '달항아리' 의 조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제작은 반구형의 큰 사발 두 개를 각각 따로 만든 후, 상하부를 맞붙여 만든 접동(接胴) 방식으로 하였으며 항아리 내부에 동체 접합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대체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전 전체적으로 매우 옅은 회청색이 감도는 백색을 나타내며, 전반적인 유약의 용융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구연부와 굽, 그리고 동체 일부에 수리된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원래의 형태는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굽 둘레의 한쪽에 '연령군겻쥬방' 이라는 한글 명문이 점 각 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명문에 보이는 연령군(延齡君, 1699~1719)은 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의 아들이며, 영조(英祖, 재위 1724~1776)의 이복동생이다. 따라서 명문을 통해 18세기 초 연령군 처소의 주방에서 쓰였던 그릇임을 알 수 있다. 이 유물은 조선 후기 대형 백자원호의 용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자료로 사료되며,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호압사 석불좌상(약사불)】

호압사 석조약사여래좌상(서울시 문화유산자료 제8호)은 서울시 문화유산자료에서 시유형 문화유산으로 승격한 건으로, 그동안 조선 후기로 알려져 왔으나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나, 명대 티베트 양식의 상대석 대좌의 모습에서 조성 시기가 이전 시대로 올라가는 특징이 확인된다. 또한, 머리의 반달형 중간계주, 가슴에 승각기를 묶은 띠 매듭, 왼쪽 팔뚝의 Ω모양으로 대의 자락이 접힌 모습 등은 조선 15~16세기 불상에 주로 등장하는 표현양식과 비교되며 또한 뒷면까지 섬세하게 옷 주름을 표현한 것은 고려 후기~조선 초기 불상들과 비교된다. 호압사 약사불상의 신체에 비해 큰 머리, 짧은 목, 좁은 어깨,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착용과 띠매듭의 표현, 선정인이나 뒷면의 사실적인 대의 주름 등은 조선 전기 석불상과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호압사 석조약사여래상은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제작된 여러 여래상과의 비교를 통해 석조로 제작된 선정인 약사여래상 도상의 이른 예로 고려의 전통을 이은 조선 전기 불상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기에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행구성군수 오일영 자수 만민 송덕 병풍】

본 유물<행구성군수(行龜城郡守) 오공일영(吳公一泳) 만민송덕병(萬民頌德屛)>은 19세기말 지방관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수 병풍으로 구성 군민이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언제 제작된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만든 것인지 등이 매우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평안도 구성군 사람들의 성씨와 이름, 관직자의 이름, 구성군지도를 통해 구성군의 구성원과 지형의 모습, 성의 구성 등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평안북도 구성에 오일영이 관직자로 군수로 파견되었고, 그의 행적을 칭송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당시 한양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평양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자 예술성 역시 돋보이는 자료이다.

더불어 만인산이나 만인첩과는 달리 병풍형태로 만든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본 자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자료를 서울시 유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영구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문화유산자료

【각황사 석조관음보살좌상】

각황사의 석조관음보살상은 얼굴에 부드러운 조형감이 있으며, 옷 주름 표현에서도 유려함이 돋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에서 20세기로 이어져 내려온 불교 조각의 전통을 이어온 양완호 스님의 작풍을 뚜렷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양완호 스님은 근대기 범어사 불화소에서 승려 장인들을 지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남북도에서 활동한 불모로, 근대 불교 미술사에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보살상은 현존하는 양완호 작作 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성이 커 주목되는 작품이다.

양완호 스님은 불화와 불상을 모두 제작한 불모로, 불화는 현재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편이나 불상은 남아 있는 작품이 4 ~ 5점에 불과하므로, 각황사에 소재한 이 관음보살상은 불상의 희소성 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문화유산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8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건축법』 제71조 제7항에 및 동 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동디자인(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고품격 공동(임대)주택 단지를 창출하고, 공동주택, 지역 커뮤니티시설을 도입,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사업면적 (대지면적)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2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8,785.30㎡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사 업 명	용 도	최고층수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9층

4.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구분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통합적 계획을 위해 공동주택 주동을 주변 도시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고 도시속 밀도조절을 통해 풍부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공동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특례적용 하고자 함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공사감리

-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업무 시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접 감독을 통하여 공사감리 추진

○공사시공 등의 발주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입찰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 – 2133–7072), 서울주택주택공사 건축설계부(전화 : 02–3410–796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81호

서울특별시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또는 필로티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및 실내에 조성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한 완화적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하 선큰형 공개공지
○ 지하 선큰형 공개공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완화적용

2.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완화적용

3. 실내 조성 공개공지
○ 실내에 조성된 공개공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완화적용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82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	36,642	2024. 10. 10.	2024년 제13차 전문가 자문회의 (2024.11.18.)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10. 10.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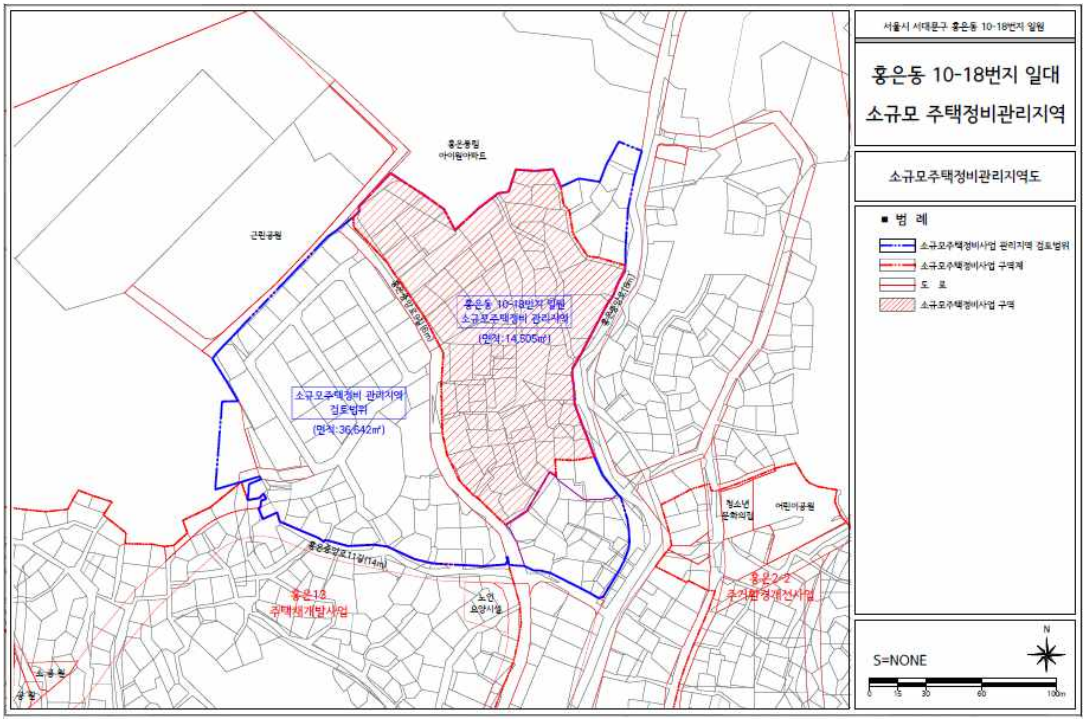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37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11. 28.~2024. 12. 11.(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티에이치종합건설 (대표 이규상)	건축 공사업 01-527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722호(동교동,엘지팰리스빌딩)(동교동)	○ 보증가능금액 실효 - 2024.6.4.담보권실행(출자좌수 일부 취득)	영업정지	2024.12.13.(금) 14: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주무관 박홍주	법 제83조 제3호
㈜창성이에프건설 (대표 유광문)	건축 공사업 01-3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5길 46, 비101호(중동)	○ 보증가능금액 실효 - 2024.7.25.담보권실행(출자좌수 일부 취득)	영업정지	2024.12.13.(금) 15: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주무관 박홍주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3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1. 28.~2024. 12. 11.(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아우라건설㈜ (강승기)	건축공사업 01-40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78, 1003호(장지동,센트라포레)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보완	법 제10조 제1호	등록말소 (2024.12.15.)	법 제83조 제3호의2
(주)신양건설산업 (신동휘)	건축공사업 11007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9길 32 ,4층 (등촌동)	사업자 국세청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221-81-17204 - 폐업일: 2024. 8.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9항	등록말소 (2024. 12. 13.)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3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39791569	용산구 백범로43길 14 남마빌라 402호 (용산구 효창동 5-263 남마빌라 402호)	수도요금	2023. 09. 30. 외 6납기	7회	5,998,300원	해당 내역은 2024. 11.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용산구 백범로43길 14 남마빌라 402호 (용산구 효창동 5-263 남마빌라 402호)	배*희	521228-2****** (등기번호1152101223470, 폐문부재)	용산구 백범로43길 14 남마빌라 402호		5,998,300원	2024. 12. 13.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41850119	중구 난계로13길 10-5, 205호 (황학동 970-205호)	수도요금	2024. 08. 31. 외 9납기	10회	725,310원	해당 내역은 2024. 11.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중구 난계로13길 10-5, 205호 (황학동 970-205호)	이*영	820201-2****** (등기번호1152101223468, 폐문부재)	중구 난계로13길 10-5, 205호		725,310원	2024. 12. 13.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6367386	용산구 효창원로 145-5 (효창동 5-513)	수도요금	2024. 09. 30. 외 10납기	11회	1,394,780원	해당 내역은 2024. 11.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용산구 효창원로 145-5 (효창동 5-513)	남*호	630205-2****** (등기번호1152101223473, 폐문부재)	용산구 효창원로 145-5		1,394,780원	2024. 12. 13.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6481053	용산구 우사단로4길 46 (보광동 265-189)	수도요금	2024. 09. 30. 외 11납기	12회	480,090원	해당 내역은 2024. 11.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용산구 우사단로4길 46 (보광동 265-189)	전*열	581002-1****** (등기번호1152101223474, 폐문부재)	용산구 우사단로4길 46		480,090원	2024. 12. 13.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6473532	용산구 우사단로4길 9 (보광동 265-836)	수도요금	2024. 09. 30. 외 9납기	10회	3,662,240원	해당 내역은 2024. 11.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용산구 우사단로4길 9 (보광동 265-836)	송*형, 주*경	741108-1****** (등기번호1152102220084, 폐문부재)	강남구 자곡로 101, 614동 503호		3,662,240원	2024. 12. 13.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수한 주무관(☎ 02-3146-20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48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3호(2021. 7.2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67호(2022.06.23.)로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8호(2023.06.01.)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경계부 재조성사업이 완료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9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가지구”) 경계부 재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지장건물 116㎡보상 및 공원 경계부 재조성
라.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4. 9.
마.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바. 관련도서 : 게재 생략
사.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02-2289-40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49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8.(목) ~ 2024. 12. 12.(목)

3. 통지사항
   1) 체 납 자: 전영식(660415-1******)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9번길 21, 501호(야탑동)
   3) 처분원인: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위반
      (소방자동차(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명세: 1,342,000원(과태료 1,000,000원, 가산금 342,000원)
      - 2024.11.28. 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은 다를 수 있음
   5) 압류물건: 자동차
      - 79고25**, 2009년식, 그랜드카** (2024.10.15.압류등기)
   6) 등기번호: 1101050591112(재산압류예고서), 1101002560265(재산압류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주소지 폐문부재

4.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압류예고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02-6981-7222),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5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정재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0-*, **3호(일동)	일시 : 2024-06-02 00:03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강신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번길 *4, **1동***7호(광명동)	일시 : 2024-06-07 14:50 장소 : 서울시 삼성동 테헤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최영길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 **5동 **4호(신인동)	일시 : 2024-06-25 23:35 장소 : 서울시 신사동 강남대로 내용 : 차량의 길이 제한 1.2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이영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슬*길 *0, *층(포승읍)	일시 : 2024-09-07 22:30 장소 : 서울시 일원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박윤흥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9, **3동 **1호(이화동)	일시 : 2024-09-09 20:40 장소 : 서울시 청담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이찬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2번길 *6-*, **9호(신북면)	일시 : 2024-09-10 01:40 장소 : 서울시 고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이찬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2번길 *6-*, **9호(신북면)	일시 : 2024-09-24 01:35 장소 : 서울시 고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정호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길 *2-*(회원동)	일시 : 2024-09-30 05:50 장소 : 서울시 도곡동 도곡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4.12.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53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주)주한이엔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주한이엔씨 (107-87-71108)	제서울(성동) 2024-2호 (2024.11.15.)	송혜숙 (1967.03.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5, 702호	02-2068-5 344

※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622-1692로 연락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56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공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4. 처분대상 : 공유재산 2개소
※ 영업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선·우편 등으로 연락 불가
※ 영업 사업장, 주소보정(자택) 우편등기 발송 결과 폐문부재(′ 24.11.19. ~ 20.)

연번	소재지	대표자	입점일자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6 1층 부대시설 1호	㈜두리마트 (대표 : 이*선)	2024-08-21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6 1층 부대시설 2호	이*선	2024-08-21

5.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14일간)

6. 청문일시 : 2024. 12. 23.(월) 14:00 ~ 16:00

7. 청문장소 : 서울시 중구 마장로22 디디피패션몰 4층 서울시설공단 회의실

8. 청문주재자 : 서울시설공단 법무팀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02-3405-4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59호

공인등록(청인)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등록(청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청인)

○ 공인등록 사유 : 2023. 4. 7.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의2(임용심사 위원회), 별지 제1호서식 신설에 따른 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자 : 2024.11.28.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송파소방서임용심사위원회인	3.6㎝×3.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63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독촉고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1. (14일간)
 - 과태료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금 3%가 부과되었으며, 중가산금 1.2%씩(최대 75%)이 매월 부과됩니다.
 -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4년 11월 독촉고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행위	위반일시
1	1078833704565	기타	2024-11-14 08:32	5902**-*******	이*식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50-6, 202호 (세원아트)	이동상인	2024-04-10 07:48
2	1078833704566	기타	2024-11-14 08:32	5902**-*******	이*식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50-6, 202호 (세원아트)	이동상인	2024-04-10 07:48
3	1078833704574	기타	2024-11-13 18:30	4810**-*******	한*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18, 103동 1116호	이동상인	2024-04-06 10:3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6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경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24 401동 130*호 (관양동)	위반일시: 2024-10-01 10:48 위반장소: 은평구 대조동 179-49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007나606*)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10-25 납기일: 2024-12-31
박근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22 107동 120*호 (사동)	위반일시: 2024-10-04 09:35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제동 457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9m, 초과값: 0.29m,경기86자449*)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10-25 납기일: 2024-12-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주용	경기도 시흥시 하상로 36 305동 160*호 (하상동)	위반일시: 2024-07-06 15:45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1536-3 위반내용: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 4.25m, 초과값: 0.25m,80너910*)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8-26 납기일: 2024-10-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석현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116 206동 180*호 (옥정동)	위반일시: 2024-07-13 13:51 위반장소: 은평구 불광동 355-3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m, 초과값: 0.2m,서울07나67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8-26 납기일: 2024-10-31
이상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640 130*호 (원흥동)	위반일시: 2024-07-15 11:01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제동 457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40.1t, 초과값: 8.1t,서울06거740*)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8-26 납기일: 2024-10-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8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다길 **-**(고척동)	일시: 2024-10-05 05:21 장소: 가양역사거리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10. 28.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12.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곽*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일시: 2024-07-13 06:45 장소: 마곡중앙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8.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10. 31.
권*웅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83번길 *, *동 ***호(가정동)	일시: 2024-08-01 14:36 장소: 광명5R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임차인등의 관리의 무) 위반	처분일: 2024. 8.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10. 31.

4. 공고기간: 2024. 11. 28.~2024. 12. 11.

5. 납부기한: 2024. 12.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85호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 관련, 청구인의 주소로 피청구인 답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및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및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3. 대상 및 내용
   - 대 상: 서행심 2024-1366 개별주택가격결정 등 취소청구 청구인 김○○ 외 1명
   - 내 용: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 사 유: 청구서 기재 주소(송달장소)등에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반송
4. 공고기간: 2024. 11. 28.(목)~2024. 12. 11.(수) (14일간)
5. 송달방법: 서울특별시 시보 게재
6.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 답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2133-66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8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이○환 등 439명
4.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 11. 28. ~ 2024. 12. 12.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사전통지서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67버95**	X*A*C*U*J*	서울특별시	2024-08-07 09:4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	179허10**	이*환	경기도 수원시	2024-08-23 20: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	120주83**	손*형	경기도 화성시	2024-09-01 10:18	경부 서초IC~반포IC 상행	50000
4	서울71바53**	이*옥	서울특별시	2024-09-03 13:15	양재ic~서초ic	60000
5	76마54**	최*오	서울특별시	2024-09-23 12:59	연희IC~연세대교차로	60000
6	13부51**	주*회*엠*라*	대전광역시	2024-09-24 17:3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7	133무63**	(*)*울*약	서울특별시	2024-09-25 14: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	서울31아16**	백*현	서울특별시	2024-09-26 08:16	녹번역~홍은사거리	50000
9	33머44**	고*종	경기도 고양시	2024-09-26 09:4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0	84노33**	김*욱	부산광역시	2024-09-26 17:1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	33소65**	민*숙	경기도 수원시	2024-09-26 17:5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2	66도54**	주*회*합*컨*팅	서울특별시	2024-09-26 20:0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3	서울31아52**	장*규	서울특별시	2024-09-26 20: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4	83버35**	장*호	경기도 시흥시	2024-09-27 09: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5	163어89**	주*회*케*앰*엔*	인천광역시	2024-09-27 19: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6	서울31사34**	김*천	서울특별시	2024-09-27 20:4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7	50거30**	애*아*엠*컴*니*주*	서울특별시	2024-09-28 08:2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8	45너52**	김*숙	광주광역시	2024-09-30 08: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9	60가54**	김*선	서울특별시	2024-09-30 09: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0	89저74**	임*국	서울특별시	2024-09-30 09:5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1	202어88**	우*석	경기도 시흥시	2024-09-30 17:1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2	14너49**	백*현	서울특별시	2024-09-30 17:29	동묘앞역~신설동역	50000
23	33도35**	황*혜	경기도 고양시	2024-09-30 18: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4	21모05**	이*훈	인천광역시	2024-09-30 19: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5	55호29**	이*용	서울특별시	2024-09-30 20:0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6	89조33**	이*태	경기도 파주시	2024-09-30 20:1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	116허70**	정*철	경기도 오산시	2024-10-02 16:2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8	176호37**	이*현	경상북도 안동시	2024-10-03 23:4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9	206보21**	주*회*갈*태*광*전*	서울특별시	2024-10-07 0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	서울36바18**	강*구	경기도 안산시	2024-10-07 19: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1	197호76**	주*회*워*라*크*W*T*R*I*E*ㅇ*.*	서울특별시	2024-10-08 09:01	국제금융로7길, 수정상가앞도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	172하71**	주*회*시*아*지	서울특별시	2024-10-08 09:51	매봉역~양재전화국교차로	50000
33	05부63**	명*연	서울특별시	2024-10-08 19: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4	49버52**	김*득	서울특별시	2024-10-08 19: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5	200러45**	주*회*하*에*앤*	서울특별시	2024-10-08 20: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6	서울31사80**	신*룡	서울특별시	2024-10-08 20:5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7	07루11**	주*회*아*콘	서울특별시	2024-10-11 16:5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8	07루11**	주*회*아*콘	서울특별시	2024-10-11 16:5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9	194하76**	황*하	서울특별시	2024-10-12 00:5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0	68호08**	(*)*르*	서울특별시	2024-10-12 08: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1	146호11**	이*석	경기도 부천시	2024-10-12 10:3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2	146호11**	이*석	경기도 부천시	2024-10-12 17: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	146호11**	이*석	경기도 부천시	2024-10-12 17: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4	101하16**	양*희	서울특별시	2024-10-13 18:5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5	07루11**	주*회*아*콘	서울특별시	2024-10-14 07: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6	194호19**	안*선	서울특별시	2024-10-14 07: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7	85나69**	주*회*상*형	경기도 화성시	2024-10-14 07:4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8	148하97**	주*회*예*파*너*	충청남도 아산시	2024-10-14 08:40	장지교교차로	50000
49	220하28**	(*)*포*틱*바*리*	서울특별시	2024-10-14 11: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0	183무96**	주*회*신*종*건*	서울특별시	2024-10-14 20: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1	381수88**	(*)*치*림	경기도 포천시	2024-10-14 20:4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52	281너35**	주*회*디*트	서울특별시	2024-10-15 07:37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53	160하13**	에*치*서*스*식*사	서울특별시	2024-10-15 0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4	122하25**	(*)*컬*토*	경기도 광주시	2024-10-15 09: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5	40나20**	곽*균	서울특별시	2024-10-16 08:31	온수골사거리~노원역교차로	50000
56	서울31아19**	정*인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16 09:17	상계백병원교차로~당현1교	50000
57	201러13**	(*)*무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16 09:3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58	192하21**	롯*지*에*주*회*	서울특별시	2024-10-16 10:38	올림픽로 잠실학생체육관앞	50000
59	195호56**	곽*식	서울특별시	2024-10-16 18: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0	363서33**	송*현	경기도 성남시	2024-10-16 19:1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61	48노65**	김*	서울특별시	2024-10-17 09: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2	197호53**	주*회*2*엘*퍼*	서울특별시	2024-10-17 10:3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63	197호53**	주*회*2*엘*퍼*	서울특별시	2024-10-17 10:4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4	222수50**	에*엠*탈*주*	경기도 김포시	2024-10-17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5	05로57**	차*엽	서울특별시	2024-10-17 18:0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6	43로54**	안*완	경기도 용인시	2024-10-17 20:2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7	서울31자28**	김*석	서울특별시	2024-10-18 07:21	올림픽로 잠실르엘아파트앞	50000
68	26가97**	윤*기	서울특별시	2024-10-18 09:1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69	145호50**	경*연	서울특별시	2024-10-18 12: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0	09나27**	안*일	서울특별시	2024-10-18 13:3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1	223우45**	주*회*스*셔	서울특별시	2024-10-18 14:4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72	130호59**	신*호	서울특별시	2024-10-18 15:20	압구정로 한양3차아파트	50000
73	815더44**	박*수	경기도 수원시	2024-10-18 15: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4	18버74**	김*종	경기도 김포시	2024-10-18 16: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5	840주60**	허*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18 17: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6	31라90**	이*선	경기도 고양시	2024-10-18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7	경기48바10**	미*운*주*회*	경기도 구리시	2024-10-18 17: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8	서울31사49**	문*조	서울특별시	2024-10-18 17: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9	22무23**	최*록	경기도 하남시	2024-10-18 17:2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0	817가89**	황*숙	서울특별시	2024-10-18 17: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81	서울89자71**	김*동	서울특별시	2024-10-18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2	304마89**	이*수	경기도 안양시	2024-10-18 17: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83	57더75**	정*영	서울특별시	2024-10-18 17:3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4	서울32사86**	송*식	서울특별시	2024-10-18 17: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85	39다63**	김*화	서울특별시	2024-10-18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6	서울31사12**	김*수	서울특별시	2024-10-18 17: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7	61마59**	서*배	서울특별시	2024-10-18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8	63저28**	박*훈	서울특별시	2024-10-18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9	160구79**	김*혜	경상북도 청도군	2024-10-18 18:04	동작역~흑석역	50000
90	255저27**	유*석	울산광역시	2024-10-18 18: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1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10-18 19: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2	15나08**	서*범	서울특별시	2024-10-18 19:28	수산시장입구교차로~노량진역	50000
93	92보24**	김*민	서울특별시	2024-10-18 20:0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4	36우75**	정*용	경기도 고양시	2024-10-18 20:14	압구정로 한양3차아파트앞	50000
95	169하8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4-10-19 08: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6	37어38**	김*길	경기도 화성시	2024-10-19 08: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7	서울31사15**	김*원	서울특별시	2024-10-19 08:3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8	62저02**	강*림	경기도 성남시	2024-10-19 08: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9	162나54**	김*용	충청남도 예산군	2024-10-19 08: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0	23마50**	(*)*스*파*	서울특별시	2024-10-19 08:4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1	09소55**	김*현	경기도 시흥시	2024-10-19 10: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2	164루42**	주*회*애*원	서울특별시	2024-10-19 10:5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03	40누30**	이*성	서울특별시	2024-10-19 10:5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4	264노67**	정*현	경기도 용인시	2024-10-19 11: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5	006가98**	강*구	경기도 양주시	2024-10-19 11: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106	823마56**	최*수	경기도 성남시	2024-10-19 16:0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07	서울38아83**	김*배	서울특별시	2024-10-19 16: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8	11버72**	박*한	경기도 광주시	2024-10-19 16:4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9	50머49**	이*리스틀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19 16: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0	43조98**	배*남	인천광역시	2024-10-19 16:4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1	43조98**	배*남	인천광역시	2024-10-19 16:5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2	84모53**	박*준	경기도 고양시	2024-10-19 17:0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3	311노91**	주*회*용*상*	서울특별시	2024-10-19 19: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4	서울31아80**	소*섭	서울특별시	2024-10-19 22: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5	21라53**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0 00:02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6	서울32자39**	최*원	서울특별시	2024-10-20 00: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17	184다82**	R*J*B*V*H*S*N*U*K*N*V*C*	경기도 안성시	2024-10-20 04:55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8	45저31**	정*우	부산광역시	2024-10-20 10:3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9	346부91**	S*N*T*I*O*G	서울특별시	2024-10-20 10: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0	52두97**	오*영	서울특별시	2024-10-20 14:5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21	43고26**	최*아	서울특별시	2024-10-20 15:2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22	26나09**	이*준	경기도 파주시	2024-10-20 17: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3	05다56**	손*표	경기도 구리시	2024-10-20 17:3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4	13수89**	김*수	인천광역시	2024-10-20 17:42	아차산역~아차산역사거리	50000
125	45루30**	김*빈	인천광역시	2024-10-20 20:55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6	43거69**	이*석	광주광역시	2024-10-20 21:1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27	서울32아38**	이*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0 21:2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28	광주86자18**	이*옥	광주광역시	2024-10-21 02: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29	06로58**	정*열	경기도 군포시	2024-10-21 07:2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0	67나54**	신*연	경기도 화성시	2024-10-21 07: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31	22나35**	이*문	대전광역시	2024-10-21 07:5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32	25나02**	배*용	서울특별시	2024-10-21 08:0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3	서울31사81**	이*명	경기도 구리시	2024-10-21 08:11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교차로	50000
134	97서61**	(*)*스*어	서울특별시	2024-10-21 08: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35	48누59**	남*연	서울특별시	2024-10-21 08:48	온수골사거리~노원역교차로	50000
136	112주67**	박*홍	경기도 하남시	2024-10-21 0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7	28두85**	양*승	서울특별시	2024-10-21 08: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38	30러65**	손*용	서울특별시	2024-10-21 09:04	봉천중앙시장앞	50000
139	87모73**	광*제*(*)	서울특별시	2024-10-21 09: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40	24누87**	이*문	서울특별시	2024-10-21 09: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1	서울31아62**	박*훈	서울특별시	2024-10-21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4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4-10-21 10:16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143	320오78**	H*N*I*G*I	경기도 평택시	2024-10-21 12:04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144	289누17**	주*회*더*포*코*레*션	경기도 파주시	2024-10-21 12: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5	08라06**	이*순	서울특별시	2024-10-21 12: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46	10마08**	K*A*I*O*	광주광역시	2024-10-21 13: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7	43러57**	곽*용	경기도 김포시	2024-10-21 13: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48	815더44**	박*수	경기도 수원시	2024-10-21 14: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9	23주80**	아*스*주*회*	서울특별시	2024-10-21 14:5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150	83오73**	김*근	경기도 시흥시	2024-10-21 16:0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151	20저56**	정*철	서울특별시	2024-10-21 16:0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52	141부59**	장*훈	충청북도 청주시	2024-10-21 16: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3	305누82**	유*분	서울특별시	2024-10-21 17: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54	108저67**	양*	서울특별시	2024-10-21 1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5	84누53**	안*용	서울특별시	2024-10-21 1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6	06다66**	오*환	충청북도 청주시	2024-10-21 18: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57	51마01**	김*숙	경기도 안산시	2024-10-21 18:2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58	서울31자45**	강*원	서울특별시	2024-10-21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9	33보09**	서*지	경기도 수원시	2024-10-21 18: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0	서울33바85**	비*이*택*주*회*	서울특별시	2024-10-21 18:3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1	서울84자86**	김*호	서울특별시	2024-10-21 18: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2	14너49**	백*현	서울특별시	2024-10-21 18:44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163	40무03**	김*태	서울특별시	2024-10-21 19:2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50000
164	16수07**	주*회*씨*이*에*엔*니*링	경기도 하남시	2024-10-21 19:5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5	316머23**	김*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10-21 19:5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66	56도46**	고*주	경기도 부천시	2024-10-21 20: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67	90로20**	권*구	서울특별시	2024-10-21 20: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8	14어71**	김*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1 20: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9	342버69**	(*)*진*	경상북도 안동시	2024-10-21 20: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0	12조32**	박*자	충청북도 청주시	2024-10-21 20: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71	381나12**	송*태	서울특별시	2024-10-21 20: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2	15수81**	주*회*중*냉*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1 20:2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3	21도41**	C*I*E*G*I	경기도 김포시	2024-10-22 07: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74	96구18**	박*순	충청남도 아산시	2024-10-22 07: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5	196부28**	주*회*윈*스*크*로*스	서울특별시	2024-10-22 07:47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76	서울32자10**	나*철	서울특별시	2024-10-22 07:49	현충로 한강현대아파트앞	50000
177	150버78**	박*인	경기도 이천시	2024-10-22 08: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8	경기93아84**	대*특*운*(*)	경기도 안성시	2024-10-22 08:32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50000
179	07다67**	정*화	서울특별시	2024-10-22 08: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0	51수79**	김*섭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2 08: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81	05루09**	안*주	경기도 양주시	2024-10-22 0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82	29노29**	강*식	서울특별시	2024-10-22 09:1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83	07나16**	채*상	충청남도 천안시	2024-10-22 09:1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84	16라01**	김*연	서울특별시	2024-10-22 09: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5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10-22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86	48부14**	박*정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2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87	109호67**	주*회*휴*스*빌*티	경기도 고양시	2024-10-22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8	260머56**	노*윤	경기도 시흥시	2024-10-22 10:4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89	146루99**	박*식	경기도 안성시	2024-10-22 10:4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0	151오38**	김*영	경기도 평택시	2024-10-22 11: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1	58라22**	심*우	경기도 고양시	2024-10-22 12:4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92	279고47**	K*N*E*G*N*Y	경기도 안산시	2024-10-22 13: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93	378오86**	안*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4-10-22 13: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94	17다57**	(*)*광*디*	경기도 양주시	2024-10-22 13: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5	285수80**	최*호	경기도 광주시	2024-10-22 13:3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196	25루52**	조*민	경상남도 김해시	2024-10-22 13: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7	42두09**	J*N*H*X*E	서울특별시	2024-10-22 14: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8	135가41**	전*영	경기도 평택시	2024-10-22 14:2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99	01누81**	이*상	서울특별시	2024-10-22 14:3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00	815더44**	박*수	경기도 수원시	2024-10-22 15:0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1	25가02**	S*N*H*N*X*	울산광역시	2024-10-22 15:0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02	251버38**	이*호	경상남도 창원시	2024-10-22 16:2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03	187우79**	이*숙	서울특별시	2024-10-22 16: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4	31고85**	박*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4-10-22 17:0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05	서울38아61**	김*배	서울특별시	2024-10-22 17: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06	14너49**	백*현	서울특별시	2024-10-22 17:0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07	69저20**	박*현	서울특별시	2024-10-22 17: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8	16어36**	김*훈	서울특별시	2024-10-22 1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9	04가71**	최*기	경기도 파주시	2024-10-22 17: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0	29나94**	김*해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2 17:47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50000
211	59누90**	김*택	전라남도 광양시	2024-10-22 17:5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2	57버61**	이*선	서울특별시	2024-10-22 18:0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213	57버61**	이*선	서울특별시	2024-10-22 18: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4	376모95**	김*용	서울특별시	2024-10-22 18:0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15	서울32사72**	임*식	서울특별시	2024-10-22 18: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6	93가69**	T*A*V*N*U*N*	서울특별시	2024-10-22 18:1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7	365노67**	정*수	경기도 용인시	2024-10-22 18: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18	68버94**	c*u*j*ㅁ*o*ㅣ	서울특별시	2024-10-22 18: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9	364로10**	이*철	대구광역시	2024-10-22 18:2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0	355거48**	구*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2 18: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21	03고87**	(*)*엠*지	서울특별시	2024-10-22 18: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2	서울31사41**	유*종	경기도 하남시	2024-10-22 18: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3	224우36**	김*정	충청남도 아산시	2024-10-22 18:4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24	233도97**	㈜*화*업	경기도 고양시	2024-10-22 18: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25	53라30**	이*표	서울특별시	2024-10-22 18: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6	20구41**	S*T*B*K*V*A*Y*B*K	경기도 김포시	2024-10-22 19: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7	39마28**	주*회*오*지*스*이*	서울특별시	2024-10-22 19: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8	321라45**	이*우	경기도 평택시	2024-10-22 19: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29	82로51**	대*산*개*주*회*	경상남도 창원시	2024-10-22 19: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30	12다67**	배*관	서울특별시	2024-10-22 20:0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31	서울38아35**	조*호	서울특별시	2024-10-22 20:1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32	서울38아55**	김*억	서울특별시	2024-10-22 20:1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33	30우74**	주*회*애*민*	경기도 성남시	2024-10-22 20:3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34	107부35**	조*솔	서울특별시	2024-10-22 20:38	서울 은평구 연서로 194-1 (대조동)	50000
235	24라98**	주*회*어*디*이*	서울특별시	2024-10-22 20: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36	398오78**	이*연	서울특별시	2024-10-22 21:3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37	경기93자77**	유*준	인천광역시	2024-10-22 23:1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38	333무45**	H*F*Z*O*A*A*I*J*N	경기도 용인시	2024-10-23 01:3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39	360다89**	유*상	서울특별시	2024-10-23 06: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40	147구95**	신*원	서울특별시	2024-10-23 0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1	96구18**	박*순	충청남도 아산시	2024-10-23 07:1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2	41고75**	유*회*천*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10-23 0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3	837수62**	오*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3 07:2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44	95조24**	주*회*삼*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4-10-23 07: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45	62두74**	정*미	경기도 파주시	2024-10-23 07:34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246	18더60**	김*완	서울특별시	2024-10-23 07:47	영등포역앞교차로 버스중앙차로	50000
247	58도09**	오*섭	경기도 가평군	2024-10-23 07: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248	104우78**	구*찬	서울특별시	2024-10-23 08:3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49	47하08**	(*)*경*트*	경상남도 진주시	2024-10-23 08:4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50	188더73**	홍*표	경기도 광명시	2024-10-23 09: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51	188더73**	홍*표	경기도 광명시	2024-10-23 09: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52	서울31아63**	이*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3 09:2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53	62너49**	김*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3 09:31	올림픽로 잠실르엘아파트앞	50000
254	81버25**	한*승	경기도 광주시	2024-10-23 09: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5	812저88**	고*민	경기도 포천시	2024-10-23 09: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6	서울86자87**	박*순	서울특별시	2024-10-23 09:4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57	24너77**	이*호	경기도 수원시	2024-10-23 10:1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58	서울91자43**	한*수	서울특별시	2024-10-23 10:38	복정역~장지역	50000
259	서울31아38**	이*철	서울특별시	2024-10-23 10:38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260	68러05**	장*주	서울특별시	2024-10-23 10:4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261	35다41**	이*한	서울특별시	2024-10-23 10:52	한신상가앞	50000
262	서울31자37**	김*대	서울특별시	2024-10-23 11:27	압구정역교차로~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263	164가59**	김*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3 11:3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64	89구97**	김*인	서울특별시	2024-10-23 11:4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50000
265	51마34**	진*언	서울특별시	2024-10-23 11: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66	313수56**	고*성	경기도 안양시	2024-10-23 12:4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7	82부56**	하*호	서울특별시	2024-10-23 12:5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268	49보05**	이*희	경기도 부천시	2024-10-23 13:1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69	92나78**	(*)*붕*	경기도 고양시	2024-10-23 13:2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70	165하41**	(*)*카	전라남도 순천시	2024-10-23 13:3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271	132구72**	김*섭	서울특별시	2024-10-23 14:0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272	815더44**	박*수	경기도 수원시	2024-10-23 14:5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73	815더44**	박*수	경기도 수원시	2024-10-23 14:5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74	128하97**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4-10-23 15:37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4-1	50000
275	108수96**	박*수	대전광역시	2024-10-23 15:5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76	108수96**	박*수	대전광역시	2024-10-23 16: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77	33부27**	김*주	서울특별시	2024-10-23 16:2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78	268보68**	김*희	울산광역시	2024-10-23 16:2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79	804두40**	이*근	경기도 평택시	2024-10-23 17: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80	804두40**	이*근	경기도 평택시	2024-10-23 17: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81	55모34**	조*주	서울특별시	2024-10-23 17:1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282	71거51**	Q*A*Y*N*H*	경기도 안산시	2024-10-23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283	67로59**	남*지	경기도 파주시	2024-10-23 17:2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84	267조83**	윤*현	경기도 성남시	2024-10-23 17:2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85	37두36**	김*영	서울특별시	2024-10-23 17:3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86	160하78**	주*회*우*카*	인천광역시	2024-10-23 17: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7	서울89자64**	정*근	서울특별시	2024-10-23 1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8	37조34**	정*성	서울특별시	2024-10-23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9	352두86**	유*옥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3 17:5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0	서울32자58**	박*수	서울특별시	2024-10-23 18:1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91	20너16**	강*권	서울특별시	2024-10-23 18:23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292	서울32바26**	한*민	서울특별시	2024-10-23 18: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3	181무38**	윤*상	서울특별시	2024-10-23 18: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94	18고01**	홍*자	경기도 안산시	2024-10-23 1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95	185두48**	여*미	경기도 수원시	2024-10-23 18: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96	66고89**	서*옥	경기도 시흥시	2024-10-23 1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97	177허15**	(*)*일*트*	인천광역시	2024-10-23 19:0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8	63조12**	Z*H*l*	경기도 부천시	2024-10-23 19: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99	57거70**	변*순	서울특별시	2024-10-23 19: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0	23두76**	한*열	인천광역시	2024-10-23 19:3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01	22무45**	김*원	서울특별시	2024-10-23 19: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02	서울32자43**	김*환	서울특별시	2024-10-23 19:55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303	344마97**	유*훈	경기도 성남시	2024-10-23 20: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04	91소22**	조*연	서울특별시	2024-10-23 20: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05	서울32아37**	구*환	서울특별시	2024-10-23 22: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06	58조83**	추*엽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3 23: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07	27보75**	윤*남	충청북도 충주시	2024-10-23 23:5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08	28보86**	영*사*십*번*유*회*	서울특별시	2024-10-24 03:1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09	59거88**	(*)*지*맵	경기도 고양시	2024-10-24 07:5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310	11고35**	나*채	경기도 하남시	2024-10-24 07:55	중계근린공원교차로~중계역	50000
311	29주09**	제*앤*이*주*	경기도 성남시	2024-10-24 07:56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고가차로	50000
312	16노91**	주*회*만*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4 08:0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13	88보69**	안*용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4 0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4	42더92**	이*표	서울특별시	2024-10-24 08: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5	서울40바13**	주*회*새*울*딜*	서울특별시	2024-10-24 08: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16	72가30**	이*균	서울특별시	2024-10-24 08: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60000
317	33오04**	(*)*려*장*	경기도 화성시	2024-10-24 08:4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18	외교1040**	l*l	서울특별시	2024-10-24 08:45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19	53다50**	씨*스*로*텍*식*사	서울특별시	2024-10-24 09:0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0	서울32바69**	박*욱	경기도 구리시	2024-10-24 09:1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21	인천85사44**	박*규	인천광역시	2024-10-24 09:37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2	17두18**	(*)*러*드*스*이*건*사*무*	서울특별시	2024-10-24 09: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3	006라89**	동*기*공*주*회*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4 09:42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60000
324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10-24 0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5	서울32바28**	박*태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4 09:4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26	서울86자61**	김*한	서울특별시	2024-10-24 09:56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교차로	50000
327	83부21**	조*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4 10:12	명동성당교차로~을지로2가교차로	50000
328	87구79**	주*회*우*솔*션	서울특별시	2024-10-24 12:0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329	서울31아36**	이*돌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4 13:00	반포역~논현역	50000
330	82마93**	우*호	서울특별시	2024-10-24 13:2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1	69어55**	김*진	경기도 이천시	2024-10-24 15:2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3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4-10-24 17:33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33	26주09**	(*)*온*업*발	경기도 안산시	2024-10-24 17:3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50000
334	106모78**	L*N*O*G*E*	경기도 시흥시	2024-10-24 17: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35	840모52**	김*경	서울특별시	2024-10-24 17: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36	32수86**	최*정	경기도 성남시	2024-10-24 17:5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37	27마29**	이*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4-10-24 18:0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38	30소88**	(*)*이*동*(*품*)	서울특별시	2024-10-24 18: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9	155마58**	주*회*후*퍼*	서울특별시	2024-10-24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40	19루96**	문*유	서울특별시	2024-10-24 1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41	180부20**	이*옥	경기도 양주시	2024-10-24 18:1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42	376거39**	임*민	경기도 오산시	2024-10-24 18: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43	59마73**	조*민	경기도 양주시	2024-10-24 18:28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344	191주59**	유*순	서울특별시	2024-10-24 18:2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45	156노76**	이*훈	인천광역시	2024-10-24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46	07로06**	정*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10-24 18: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47	93무02**	민*철	서울특별시	2024-10-24 18:5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48	14노96**	대*이*에*(*)	대전광역시	2024-10-24 19: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49	20루22**	임*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4 19: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50	04우38**	(*)*이*트	경기도 성남시	2024-10-24 19: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51	329저35**	(*)*비*	서울특별시	2024-10-24 19:4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52	282저52**	신*래	경기도 하남시	2024-10-24 19:5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53	05마83**	송*희	인천광역시	2024-10-24 19: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54	08머90**	최*영	서울특별시	2024-10-24 20: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55	100우28**	민*동	서울특별시	2024-10-24 20:0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356	840무91**	한*홍	서울특별시	2024-10-24 20: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57	35우53**	서*진	서울특별시	2024-10-24 20: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8	85어06**	정*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10-24 20:3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50000
359	50너21**	강*석	서울특별시	2024-10-24 20: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0	서울36바11**	정*현	서울특별시	2024-10-24 20: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1	378다65**	장*진	서울특별시	2024-10-24 21:2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362	서울31자54**	박*태	서울특별시	2024-10-24 23:5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63	78노91**	P*A*Y*N*G*A*G	서울특별시	2024-10-25 05: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364	821나84**	주*회*조*	경기도 과천시	2024-10-25 0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5	43러18**	김*	서울특별시	2024-10-25 07:11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366	152서50**	주*회*황*나*병*	경상북도 포항시	2024-10-25 0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67	209수40**	이*호	경기도 안성시	2024-10-25 07: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68	36노88**	김*성	서울특별시	2024-10-25 08:02	서초IC~반포IC	50000
369	93무02**	주*회*태*글*스	경기도 광주시	2024-10-25 08:5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370	392로10**	황*길	서울특별시	2024-10-25 09: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71	69버72**	최*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5 09:4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72	36노39**	조*묵	서울특별시	2024-10-25 0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3	서울32사59**	김*만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5 0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4	85나14**	해*영*조*법*	전라남도 완도군	2024-10-25 10:1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75	서울31아18**	정*섭	서울특별시	2024-10-25 10: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6	46부58**	김*훈	인천광역시	2024-10-25 11: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77	01로76**	손*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10-25 12:4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78	46부91**	엄*혜	인천광역시	2024-10-25 12: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9	302라69**	J*N*I*G*A*	경기도 김포시	2024-10-25 12:5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80	260수88**	권*식	경기도 시흥시	2024-10-25 13:5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81	262부10**	김*영	경기도 화성시	2024-10-25 14:2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82	27우21**	J*R*E*N*R*E*K*K*R*M*N*G*I	경상남도 고성군	2024-10-25 14: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83	55무12**	김*희	대전광역시	2024-10-25 15: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84	30버62**	최*실	경기도 과천시	2024-10-25 15:4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85	65모79**	김*경	서울특별시	2024-10-25 15:4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86	59저11**	M*R*H*,*A*A*D	경기도 동두천시	2024-10-25 16: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87	59저11**	M*R*H*,*A*A*D	경기도 동두천시	2024-10-25 16:2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88	서울32아36**	권*석	서울특별시	2024-10-25 17:1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89	340라53**	박*경	서울특별시	2024-10-25 17:3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90	서울31바38**	안*환	서울특별시	2024-10-25 17:34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391	40두40**	V*T*I*U*N*G*A*	경기도 고양시	2024-10-25 17: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92	43무86**	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10-25 17: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93	361거72**	박*구	서울특별시	2024-10-25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4	60구56**	오*선	충청북도 청주시	2024-10-25 1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5	53머48**	문*진	서울특별시	2024-10-25 18:3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50000
396	43두15**	박*식	서울특별시	2024-10-25 19: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97	340부10**	한*업	경기도 의정부시	2024-10-25 19:3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98	83버54**	주*회*태*유*	경기도 고양시	2024-10-25 19:5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99	167루26**	백*석	서울특별시	2024-10-25 19: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00	01모59**	나*주	경기도 안산시	2024-10-25 20:0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01	29노98**	하*현	인천광역시	2024-10-25 20:1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02	서울31사12**	양*근	서울특별시	2024-10-25 20: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3	25로69**	이*석	인천광역시	2024-10-25 22:3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04	265어22**	김*현	경기도 고양시	2024-10-26 04:2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05	49도07**	이*원	서울특별시	2024-10-26 07:1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6	49도07**	이*원	서울특별시	2024-10-26 07: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7	서울32자58**	김*규	서울특별시	2024-10-26 08:4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8	서울31바66**	강*태	서울특별시	2024-10-26 08:5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409	46로43**	이*	서울특별시	2024-10-26 09: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0	36주51**	홍*초	경기도 남양주시	2024-10-26 09: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11	69수35**	H*N*O*G*U*	경기도 성남시	2024-10-26 10: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2	346모55**	박*식	경기도 동두천시	2024-10-26 10:4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13	20머02**	서*건*주*회*	서울특별시	2024-10-26 11: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4	252소24**	C*O*J*Y*U*G*O	경기도 하남시	2024-10-26 11:4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5	51모84**	윤*나	경기도 수원시	2024-10-26 11:4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6	352가49**	D*O*G*G*C*A	경기도 평택시	2024-10-26 11:5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17	352가49**	D*O*G*G*C*A	경기도 평택시	2024-10-26 11:5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8	361거64**	전*옥	경상북도 성주군	2024-10-26 14:0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19	101러19**	설*은	서울특별시	2024-10-26 14:4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20	56오03**	진*현	경기도 김포시	2024-10-26 14: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1	56오03**	진*현	경기도 김포시	2024-10-26 14:4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22	08마73**	김*금	서울특별시	2024-10-26 14: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23	333머22**	누*티평	경기도 용인시	2024-10-26 18: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24	25우75**	김*규	부산광역시	2024-10-26 19:0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5	155하14**	(*)*피*어	서울특별시	2024-10-26 19: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26	42도25**	최*채	서울특별시	2024-10-26 21:17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427	09로55**	이*문	서울특별시	2024-10-26 21:2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42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4-10-27 10:33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429	128부28**	주*회*베*	경기도 하남시	2024-10-27 10:3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0	76고67**	조*훈	경기도 김포시	2024-10-27 10:42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431	240우61**	진*화	경기도 파주시	2024-10-27 11: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32	38우49**	정*호	서울특별시	2024-10-27 12: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33	65라66**	(*)*어*시*	서울특별시	2024-10-27 14:3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34	01도41**	배*성	서울특별시	2024-10-27 14:49	천호대교북단	50000
435	86오74**	이*형	경기도 용인시	2024-10-27 14:5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6	49도07**	이*원	서울특별시	2024-10-27 16:3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7	49도07**	이*원	서울특별시	2024-10-27 16:3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38	07나88**	송*국	충청남도 청양군	2024-10-27 18: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9	서울32바73**	윤*현	서울특별시	2024-10-27 23:23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88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5665)	㈜엠와이씨앤엠 (487-81-00400)	배영민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33길 5, 304호(용문동, 제이엘레지던스)	2024.11.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89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가.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 祥原郡 李用植 萬人傘	1건 2점	144×145×37.5	1891년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수첩 雲山郡守李用植萬人繡帖	1건1점	39.5×27.5×3.5	1893년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刺繡楊基薰筆蘆雁圖屛	1건1점 (10폭)	192×315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刺繡楊基薰筆蘆雁圖屛	1점1점 (12폭)	201×402×15	1905년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문화현령 이종태 만인산과 함 文化縣令李鍾泰萬人傘及函	1건 15점	만인산; 143.1×294.5 함; 95.0×21.5×24.2	1890년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靑畵雲龍文壺	1건1점	높이 41.0 입지름 16.7	조선 후기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1책 (권4~권7)	28.5×16.5	1477년 (성종 8)	은평구 (최상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인자수지 人子須知	15책	31.0×19.5	1742년이후	송파구 (박영숙)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백자청화육각병 白磁靑畵六角甁	1건1점	높이 14.2 입너비2.2×2.6	조선 후기	서초구 (이종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백자 각배 白磁角杯	1점	길이 16.8 입지름 5.0	조선 전기	서초구 (이종훈)

※「국가유산기본법」및「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예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함.

■ 유형문화유산

【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祥原郡李用植萬人傘)】

『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祥原郡李用植萬人傘)』은 1891년 12월 상원군수 이용식(李用植)에게 상원군 주민들이 헌정한 만인산으로, '光緖十七年十二月日 監董幼學吳學秀' 라는 제작 기록을 통해 제작 연대와 감독자의 이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이 유물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된 이용식의 상원군수 임명 시점(1891년 7월 26일)과 일치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당시 상원군의 행정과 사회적 실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제작에 관여한 사람과 상원군 구성원이 기록되어 있어 상원군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자료적 가치가 크며, 이용식 만인수첩과 함께 그의 행적을 조명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된다.

다만, 만인산은 현재 자루와 살이 없이 덮개와 휘장만 남아 있는 불완전한 상태로, 몇 차례의 보수 흔적과 손상이 발견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연대와 감독자가 명확히 기록된 사례는 드물며, 조선 후기 지방 관료와 주민 간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

물로 역사적 ·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수첩(雲山郡守李用植萬人繡帖)】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수첩(雲山郡守李用植萬人繡帖)』은 1893년 11월 평안도 운산군의 사람들이 군수 이용식을 위해 수를 놓아 만든 자수첩(繡帖)이다. 고을 군수 등 관원에게 공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로 만인산을 제작하였는데, 첩의 형태로 만든 것은 현재까지 본 유물이 유일하다. 만인수첩의 첫 면에는 제작일과 대상자인 '光緒十九年十一月日 雲山郡萬人繡帖'이 수놓아져 있으며, 이어지는 면에는 이용식의 선정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내용 중 이용식이 3년간 상원군수와 운산군수를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만인수첩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내용 또한 역사기록과 일치하여 조선 말기 지방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만인 자수첩으로 그 가치가 크며, 서울시 지정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刺繡楊基薰筆蘆雁圖屛】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은 양기훈이 1905년에서 1907년 사이 궁중에 신자관(臣字款)이 기명된 자수 병풍들을 헌상하며 명성을 얻은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풍은 양기훈의 수묵화를 무채색 채사를 활용해 원화의 분위기를 잘 재현한 작품으로, 제작자가 양기훈의 노안도 화풍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문화유산은 양기훈의 노안도 초본의 존재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어 학술적 및 자수사적 가치 또한 크다. 이는 본 유산과 동일한 초본을 사용한 다른 자수 병풍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양기훈이 남긴 40여 점의 노안도 작품 중 연폭식 자수 노안도 병풍의 유행에서 해당 초본의 선호도가 높았던 사실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문화유산은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刺繡楊基薰筆蘆雁圖屛】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자수 군안도 10폭 병풍>과 함께 원본과 모수본이 유일하게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로, 제작자와 제작 연대를 추적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산이다. 특히, 이 병풍은 근대 자수 병풍 제작 과정에서 10폭에서 12폭으로 확대된 구성을 보여주며, 신자관을 첨부해 대한제국 황실에 헌상한 새로운 의장 양식을 잘 보여준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안주수와 노안도의 유행이 근대 자수 양식으로 자리 잡아 제작된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법적으로는 오색견사와 다양한 자수 기법을 활용해 정형화된 양식을 구현했으며, 이러한 기법은 후대에도 하나의 표준으로 이어졌다. 이 병풍은 근대 자수사에서 안주수와 궁수가 만나는 접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예술적 역량 또한 충분히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은 근대의 사회상과 예술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문화현령 이종태 만인산과 함 文化縣令李鍾泰萬人傘及函】

『문화현령 이종태 만인산과 함』은 직물제 산개, 은제 보병 꼭지, 구리 합금제 살대로 구성된 만인산의 전형적인 구조를 온전히 갖추고 있으며, 보관함까지 함께 전해져 조형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정교한 직물 제작 기법과 보존 상태가 뛰어나, 19세기 말 만인산의 유행과 조형적 특징을 생생히 증명하며 원형을 거의 완벽히 유지하고 있다.

유물에 새겨진 기록은 1890년 2월 황해도 문화현(文化縣)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지방 사회와 관료를 기리는 송덕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만인산과 보관함이 함께 전해지는 희귀한 사례로, 당시의 제작과 관리 방식을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이 유물은 조선 후기 지방 사회의 조직적 연대와 송덕 문화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며, 역사적 · 조형적 · 학술적 가치를 갖춘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靑畵雲龍文壺】

『백자청화운룡문호(白磁靑畵雲龍文壺)』는 조선시대 운룡문호를 대표하는 형태 중 하나로, 문양 구성이 의례적 성격과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유물이다. 항아리의 형태와 문양 구성은 당시 시대적 양식을 충실히 보여주며,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백자청화운룡문호』는 백자의 형태와 품질이 우수하며, 유색과 청화 안료의 발색이 안정적이다. 문양 구성과 시문 기법 또한 뛰어나 예술적 가치가 돋보인다. 이 유물은 조선시대 국가 의례용 특수 기종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자기제(磁器製) 기명(器皿)에 해당하며, 당시 국가 의례에서 사용된 특수 기종의 특징과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백자청화운룡문호』는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묘법연화경』은 성삼문의 조부인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쓴 판하본(板下本)을 저본으로, 1443년 전라도 고산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된 후, 1477년에 화암사에서 다시 번각(飜刻)하여 간행된 판본이다. 이번 조사 대상본은 권 4에서 권 7까지로 구성된 1책의 결본이며, 5침의 선장 형태로 제본되었다. 표지는 갈색으로 염색된 격자능화문이 들어간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근래 새로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77년 화암사판과 동일한 판본은 총 7건이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완본은 3건, 결본은 4건이다. 조사 대상본은 권 4-7만 전하는 결본이지만, 인쇄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기존의 지정본보다 우수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자 약체 구결과 한글 훈독이 고르게 기입되어 있으며, 권 7의 권말제 아래에는 현토와 관련된 묵서가 남아 있어, 어느 시기와 장소에서 구결이 달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국어사와 불교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인자수지 人子須知】

『인자수지(人子須知)』는 16세기 중후반 중국 명나라에서 간행된 서적으로, 영조 대 관상감의 건의를 영조가 받아들여 조선에서 정식으로 간행된 중요한 학술서이다. 이 책은 조선 사회뿐만 아니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요약서나 해설서로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그 중요성을 입증해왔다.

『인자수지』는 국내에 책판과 간행된 서적이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으나, 대부분 일부만 남아 있는 낙질본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지정 신청본은 1책을 제외한 15책이 온전하게 전해져, 완질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존 상태 역시 일부 얼룩은 있으나, 마멸이나 멸실이 거의 없어 양호한 편에 속한다. 특히, 소장 경위가 명확하고, 영조 대 영의정이자 관상감 영사를 역임한 김상노(金尙魯)의 장서인(藏書印)이 확인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인자수지』는 학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탁월한 유물로, 시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백자청화육각병白磁靑畵六角甁】

『백자청화육각병』은 조선 후기 상류층의 문방청완(文房淸玩) 취향을 반영한 양질의 백자 문방구류로, 독창적인 형식과 높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경기도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조선 후기 관요의 전형적인 제작 기술과 공예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유물은 표면에 미세한 균열과 약간의 오염이 있으나, 파손된 부분 없이 원형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유물의 보존 상태와 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 대상은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백자 각배 白磁角杯】

『백자 각배』는 조선 왕실에서 대사례를 비롯한 군례에 사용되었던 의례용기로, 15세기에 제작된 양질의 백자이다. 이 유물은 전형적인 관요 백자 형식이 완성되기 이전 시기의 제작물로, 조선 초기 백자의 독특한 양식적 특징과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구연부에는 태토를 받쳤던 제작 흔적이 일부 남아 있으나, 제작 이후 별다른 파손이나 수리 · 복원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원형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보존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백자 각배』는 조선 초기 관요 백자의 형식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로, 의례용 백자의 활용과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보존 상태와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① 전화 : (02) 2133-2630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祥原郡李用植萬人傘)】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
수 량	1건	규 격 (㎝)	144×145×37.5㎝
재 료	사직	소유자	서울공예박물관
시 대	1891년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상원군(祥原郡)의 사람들이 군수 이용식(李用植)에게 바친 만인산(萬人傘)으로, ‘光緖十七年十二月日 監董幼學吳學秀’라는 기록을 통해 1891년 12월에 유학 오학수의 감독 아래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자루[竿]와 살[竹椽]은 손실되었으며 덮개와 휘장만 남아 있다.<도 1> 덮개와 휘장은 일반적인 만인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덮개는 팔각형이며 휘장은 2단으로 되어 있다. 덮개의 너비는 144~145㎝이며, 둘레는 약 435㎝ 정도이다. 덮개의 겉과 안감은 흰색 공단을 사용하였는데 겉감이 안감에 비해 약간 두꺼운 편이며, 안감<도 2>은 여러 폭을 이어 사용했는데 한 폭은 색이 다르며 다른 폭들도 색은 비슷하나 질감이 달라 후에 보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덮개의 가장자리는 끈목과 같은 둥근 것을 넣고 겉감으로 감싸 도톰하게 만드는 일종의 파이핑 기법으로 처리하였다.<도 3> 휘장의 위 상단도 파이핑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손상되어 헤어진 부분을 보면 안에 삼선(三線)을 심으로 넣은 것을 알 수 있다.<도 3> 삼선이란 3가닥의 가는 끈목을 꼬아서 만든 굵은 끈목을 뜻하는데 ‘세겹바[三甲所]’라고도 한다. 만인산의 삼선은 옅은 보라색 실로 짰는데 군데군데 옅은 분홍색과 탈색된 부분이 보인다. 휘장에 삼선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덮개의 가장자리 파이핑에도 삼선을 심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덮개의 가운데에는 팔각형 형태의 홍색과 청색 펠트를 이중으로 덧대었으며 중심부분에 자루를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있다. 펠트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팔각형의 구도로 녹색 꼰사를 사용하여 뇌문(雷紋)을 수놓고, 주황색 꼰사로 “行祥原郡守李公用植公廉慈惠萬人傘(행상원군수이공용식공렴자혜만인산)”을 평수로 수놓았다. 그 아래에는 주인공의 덕을 칭송하는 글과 직책과 성명을 4종류의 색실을 사용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수놓았다. 덮개의 끝부분에는 보라색 꼰사로 뇌문을 수놓았다. 덮개의 안쪽에는 팔각형의 각 모서리(꼭짓점)마다 작은 옷감을 덧대었는데 살대를 꽂는 부분이므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강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재 세 군데는 흑갈색 벨벳으로 되어 있고, 세 군데는 흑갈색 모직, 나머지 두 군데는 무명으로 남아있는데<도 5>, 원 제작에는 벨벳이 사용되었고, 그 후에 모직, 광목의	

	순서로 보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강천이 달린 모서리와 각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의 중간 부분에 보라색 연봉 매듭단추를 달아 휘장과 연결하였다.<도 6> 연봉매듭은 자주색 끈목으로 매듭지었는데 색이 다른 것도 있어 보수하면서 교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봉매듭 가운데 자주색 끈목으로 만든 것이 원 소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분홍색 무명실을 심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끈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끈목을 짤 때 사용했던 각 실의 굵기가 다르며 표면에 잔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명실로 추정된다.<도 7> 휘장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8~9> 청록색의 청록색 공단 4폭을 이어 만들었는데 총길이는 496㎝이며, 겉자락의 너비는 19㎝, 안자락의 너비는 37.5㎝이다.<도 10> 덮개를 둘렀을 때 약 61.5㎝ 정도 겹쳐진다. 겉자락은 공단 한 폭을 반으로 접어 파이핑 부분에서 뒤로 넘겨 안감으로 사용하였다. 안자락의 안감은 청색 도류불수문단(桃柳佛手紋緞)으로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도류단(桃柳緞)'으로 불리기도 했다. 도류불수문의 일완전무늬는 20×20.2㎝이며 포폭은 127㎝이다. 휘장은 7가지 색실로 구획을 지으며 만인산을 바친 군민들의 이름을 수놓았는데, 겉자락은 3행, 안자락은 5행으로 이루어졌다. 휘장에는 평안도 상원군의 8개 방 중에서 읍내방(邑內坊)을 제외한 홍암방(紅岩坊), 하도방(下道坊), 상도방(上道坊), 수산방(水山坊), 천곡방(天谷坊), 풍동방(楓洞坊), 배화방(培化坊)과 함께 만인산 제작에 참여한 각 방의 인명이 나열되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행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은 현재 덮개와 휘장만 남아있다. 덮개의 표면은 완형을 갖추고 있으나 작은 오염물이 많이 남아있어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덮개의 뒷면, 즉 안감으로 덧대어진 부분은 길게 찢겨있거나 조금씩 손상된 부분이 많다. 휘장은 덮개보다 손상이 더 심하다. 윗 상단 파이핑 부분에는 손상되어 헤어진 데가 많아 심으로 사용된 삼선이 드러난 곳이 많다. 2단으로 구성된 휘장은 겉자락의 곳곳에 직물의 올이 미어져 있거나 찢어진 부분이 많다. 유물의 상태로 보아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조사 결과	3. 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可 행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은 자루와 살은 없이 덮개와 휘장만 남아있어 온전한 상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몇 차례의 보수 흔적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곳곳에 있어 유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만인산이 몇 점이 있어 희귀한 유물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이용식이 1891년 7월 26일 상원군수(祥原郡守)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만인산에 이를 증명하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제작 감독자와 상원군의 구성원이 적혀있어 당시 상원군의 규모와 실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식 만인수첩과 함께 이용식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제언> －만인산의 덮개에 行祥原郡守李公用植公廉慈惠萬人傘(행상원군수이공용식공렴자혜만인산)”의 기록이 있으므로 유물명을 ‘행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언한다. －만인산과 만인수첩은 이용식의 1891년부터 1893년까지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다. 그러므로 만인산과 만인첩을 일습으로 하여 1건 2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수첩(雲山郡守李用植萬人繡帖)】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수첩
수 량	1	규 격 (㎝)	39.5×27.5×3.5㎝
재 료	사직	소유자	서울공예박물관
시 대	1893년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운산군수(雲山郡守) 이용식(李用植) 만인수첩<도 1>은 1893년 11월에 평안도 운산군의 사람들이 군수 이용식을 위해 수를 놓아 만든 수첩(繡帖)이다. 고을 군수 등 관원에게 공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로 만인산을 제작하였는데 첩의 형태로 만든 것은 현재까지 본 유물이 유일하다. 첩의 겉을 꾸민 회장(繪粧) 직물인 책의(冊衣)는 심청색 운보문단(雲寶紋緞)이며 표제 ‘雲山郡萬人繡帖’은 홍색 실로 수놓았다. 운보문은 사합여의 형태의 운두(雲頭)에 꼬리가 양쪽으로 사선으로 달려있으며 구름꼬리만 S자 형태로 흩어져 있기도 하고, 여백에는 화주(火珠), 만자(卍字), 방승(方勝), 서각(犀角), 폭보(幅寶) 등의 보문을 배치하였다. 운보문의 일완전무늬의 크기는 8×17.5㎝이다. 직물의 편년은 직물의 조직과 무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만인수첩의 운보문은 순종 황제(1852~1919)의 곤룡포(『우리나라 전통 무늬 1 직물』, pp. 378-379)와 1899년에 제작된 태조어책(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책003)의 무늬와 비슷하다. 따라서 만인수첩의 책의는 1893년 최초 제작에 사용된 직물이라고 여겨진다. 책등과 표지의 가장자리에는 줄무늬의 견으로 둘렀는데 후에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도 2, 3> 책의의 안쪽에는 쌍용이 둥근 원으로 표현된 소색 영초를 사용했으며<도 4>, 내면의 자수 바탕천으로는 흰색 공단이 사용되었다. 만인수첩의 첫 면에는 제작일과 만인수첩의 대상자인 ‘光緒十九年十一月日 雲山	

	郡萬人繡帖’를 수놓았으며, 다음에는 이용식의 선정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 중에는 이용식이 3년간 상원군수와 운산군수를 역임하였다고 기록이 있는데 이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과도 일치하며, 이용식이 상원군수로 재직하던 1891년에 제작된 만인산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둘째 면의 끝부분에는 ‘어찌 선정비와 만인산에 그치겠는가. 길이길이 책에 기록하여 전하네’라고 적어 이용식의 선정이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도 5> 3면부터는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해면(海面), 남면(南面), 위곡면(委曲面), 성면(城面), 고면(古面) 등 각 면에서 만인수첩의 제작에 참여한 633명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이용식 만인수첩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책등과 가장자리를 보수한 것을 제외하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도 많지 않다. 자수는 표제는 촘촘히 정갈하게 수를 놓았지만, 내면의 내용은 세심하게 수를 놓은 것은 아니다. 수실은 화학 염색한 실을 사용하였는데 이염된 부분은 거의 없다.
조사 결과	3.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 이용식 만인수첩은 보존 상태도 거의 완벽하고 내용도 역사의 기록과 같아 추후 조선 말기 지방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만인 자수첩으로 그 가치는 매우 높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다만 명칭은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 수첩’으로 하면 ‘수첩’을 일반인이 수첩(手帖)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 자수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아울러 만인산과 만인수첩은 이용식의 1891년부터 1893년까지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다. 따라서 만인산과 만인자수첩을 별개로 지정하는 것보다 일습으로 합쳤을 때 유물의 분류나 이용식이라는 인물을 연계하여 견주어 보기에 용이할 것으로 여겨져, 명칭은 <이용식 만인산과 만인자수첩>으로 하고 1건 2점을 지정하고, 그 하위에 가지번호를 두어 -1. ‘행상원군수 이용식 만인산’과 -2. ‘운산군수 이용식 만인 자수첩’을 넣는 것을 제안한다.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刺繡楊基薰筆蘆雁圖屛】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수 량	1건	규 격 (㎝)	192×315
재 료	비단, 비단실	소유자	서울공예박물관
시 대	19세기 말~20세기 초반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본 조사대상은 서울공예박물관 소장<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도1)이다. 이 유물은 병풍의 제10폭에 기명된 '鼓舞洞庭千百其羣(동정호(洞庭湖)에서 춤추는 새들의 무리가 수천이로구나)' 라는 관서와 그 옆에는 '浿上漁人 楊石然(패상어인 양석연)' 과 주문방인 '石然(석연)' 이라는 인장이 자수되어 있어(도 1-1), 석연(石然) 양기훈(楊基薰, 1843~1911)의 노안도를 초본으로 하여 민가의 주문으로 제작된 10폭 자수병풍임을 알 수 있다. 본 문화유산은 현재 미색으로 노화 된 무문단 바탕천에 물가에서 노니는 수십 마리 기러기 떼의 한때 다양한 모습을 열 폭에 나눠 대경(大景) 그대로를,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는 연폭식(連幅式) 장정을 하고 있다. 현재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화본 원래의 색감을 찾고 자수가 안정되었으며, 화본 상·하에는 청색의 비단으로 상·하선을 갖추었고 자색의 병풍 띠에 백태지, 황색의 색지를 내외협으로 새롭게 두르는 등 병풍 전체의 원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자수병풍의 화면 구도는 소략하게 측면에서 뻗어 나온 갈대 몇 대와 강가 둔치를 배경으로 화면을 상하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1폭부터 7폭 하단까지 이어지는 강가 둔치에는 노니는 기러기들을 배치하고 그 중앙에는 그들 사이로 낙하하는 수십 마리 기러기들이 아래에서 노니는 기러기들과 엉키는 찰나의 모습들을, 8폭에서 10폭까지는 물에서 노니는 기러기들까지, 모두 53마리의 기러기들이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기러기의 다양한 형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 크기를 다르게 하여 원근감과 생동감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서 양기훈의 노안도 양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양기훈이 그린 노안도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기러기 부리의 끝부분을 꼬아 뾰족하게 묘사하였으며, 이마를 제외하고 부리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하얗게 남겨두었다. 그리고 발의 갈퀴를 널찍하게 하지 않고 길고 얄팍하게 묘사하였고 담묵의 점들로 묘사한 둥근 갈대꽃과 둔치 가장자리를 따라 자란 강풀 등이 노안도의 정형이다. 본 문화유산을 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잘 구사되어 있어 양기훈의 노안도 화풍을 초본 그대로 충실하게 자수로 재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자수노안도병풍 과학적 조사분석 보고서」(2019)를 보면 10폭 모두 적외선 촬영 시 별도의 먹선 혹은 초로 추정되는 기타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있었다. 이로 보아 자수 제작자는 양기훈의 노안도에 대한 높은 명성에 걸맞게 그의 화풍을 잘 이해한 후 각 특징들을 적절하게 재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상세히 보자면 우선 기러기의 날개와 몸통, 다리 부분은 무채색 계열의 채사로 평수와 산투침을 중심으로 사선평수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러기의 날개와			

	같은 작은 면적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에는 검정, 백색, 회색사를 배치하고 그 경계를 무연사로 부드럽게 구획하였다. 그리고 목덜미에서 배로 흐르는 윤곽면과 선 그리고 잎맥, 수풀, 수파 등 장식적이고 선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는 검정색이나 회색을 반복하거나 Z꼬임의 연사(좌연사)를 사용하여 실의 조건과 색의 배치를 달리하여 분명한 경계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또한 강 둔치와 갈대 및 강풀들은 평수와 장단의 선수로 구사하였고, 유일하게 분홍색과 주홍색 채사를 사용한 장녹수로 추정되는 꽃과 그 마디와 잎사귀의 잎맥, 기러기의 발톱 등의 묘사적인 부분에는 길고 짧은 선수로 재현하여 단조로움을 깨는 포인트로 표현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조사대상인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작된 양기훈의 노안도를 초본삼아 자수로 제작한 것이다. 보존처리를 통해 원래의 색감을 찾고 당시의 원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양기훈의 노안도에 대한 높은 명성에 걸맞게 자수를 재현한 제작자도 양기훈의 화풍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일 정도로 그 특징들을 잘 잡아 나타내었다. 특히 원화의 도상을 변형없이 잘 재현하였고, 무채색 계열의 검정색, 회색, 흰실 등의 배치와 사용이 노련하며 양기훈 노안도의 수묵 맛을 잘 재현하였다.
조사 결과	3.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조사 대상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도 1)은 대략 양기훈이 1905~07년 사이에 궁중에 신자관(臣字款)이 기명된 자수 병풍들을 헌상하면서 사회에서 명성을 얻게 된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기훈의 수묵화를 무채색의 채사로 적절히 구사하여 원화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 특히 자수 제작자는 양기훈의 노안도 화풍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각 특징들을 적절하게 재현하여 그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문화유산은 사회에서 선호하는 양기훈의 노안도 초본의 존재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어 학술적, 자수사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본 문화유산과 같은 초본이 사용된 다른 자수병풍(도 2)과 사진(도 3)이 전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40여 점의 노안도를 남긴 양기훈의 작품 중에서 연폭식 자수 노안도 병풍의 유행에 있어 이 초본의 선호가 높았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한 결과 문화유산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刺繡楊基薰筆蘆雁圖屛】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
수 량	1건	규 격 (㎝)	전체 201×402×15㎝ (화면 148.5×395㎝)
재 료	비단, 비단실	소유자	서울공예박물관
시 대	1905년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 본 조사대상은 서울공예박물관 소장의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도 1)이다. 이 유물은 병풍의 12폭째에 남긴 제발의 제시(題詩), 신자관((臣字款), 인장의 내용을 통해 1905년에 제작된 양기훈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즉 초본인 석연(石然) 양기훈(楊基薰, 1843~1911)의 노안도를 12폭 자수 병풍으로 장정한 것이었다. 현재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은 진행되지 않아 자수실의 결손과 이염, 열화의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나 대체로 원형을 파악하고 세부를 조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 본 문화유산은 미색의 무문단 바탕천에 둥근 보름달이 비치는 강 둔덕을 전경으로 하여 45마리의 기러기와 갈대, 제발까지 오색견사로 조화롭게 자수한 것이다. 장황은 그림 상·하에 청색 화문단으로 짧은 회장(繪粧) 즉 상·하선을 갖추었고, 자색(紫色)의 병풍띠[回粧]를 둘렀다. 띠의 내협(內狹)으로 홍협(紅狹)과 백협(白狹)을, 외협(外狹)으로 백협(白狹)을 갖추었다. 병풍 원화의 바탕면과 병풍의에 변색, 오염 및 탈락이 진행되고 있다. ○ 우선 작가인 양기훈과 노안도 중심의 활동 내력과 자수노안도의 시대적 명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다. 양기훈의 본관은 중화 양씨(中和 楊氏)이고, 자는 치남(雉南), 호는 석연(石然)이다. 화조·화훼, 산수, 어해 등 다양한 화목의 작품을 남기는 등 전통적인 소재와 양식을 계승하면서 그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드러내었고, 근대기 평양화단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40여 점의 노안도를 남겨 '노안도의 화가'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지방 출신 화가로는 유일하게 궁중에 신자관을 기명한 작품을 헌상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평양과 서울, 일본에서도 활발한 그림 활동을 하였으며, 1907년에는 도쿄권업박람회에서 그의 자수노안도 병풍이 출품되기도 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7. 6. 6). 그리고 1911년 그의 사후 이후에도 자수노안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1915년 평양의 유지들은 평양에 재직한 관리들에게 그들의 공무를 치하하기 위해 안주의 명물로서 '자수안진도(刺繡雁陳圖)'를 증정하기도 하였다(『매일신보』 1915. 9. 16)고 한다. 이런 이력으로 보아 자수 노안도 병풍은 당시 사회 각 계층에서 인기가 높은 안주수가 상품으로 유행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더욱이 본 문화유산은 초본이 되는 원화 <군안도(群雁圖) 10곡병(曲屛)>(도 2, 국립고궁박물관)이 함께 전하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군안도 10곡 병풍>은 수묵담채로 그린 10폭 병풍으로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의 제발 내용과 필치(도 1-1, 도 2-1) 그리고 대부분의 도상이 일치하고 있다. 제시는 진대(晋代) 양호(羊祜, 221~278)의 〈안부(鴈賦)〉와 손초(孫楚, 221~294)의 〈안부(鴈賦)〉에서 각각 일부분을 차용하여 적은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賦曰 鳴則相和 行則接式 前不絶貫 後不越序 齊力不期而並至 同趣不要而自聚 侯天時以動靜 隨寒署而汚隆 颯同集於曠野 紛群翔於雲中. 時維光武九年乙巳花 不臣楊基薰敬寫'
(울면 서로 화합하고 날면 나란히 가서 앞으로는 끊임없고 뒤로는 순서를 넘어서지 않는다. 힘을 합하여 기약하지 않아도 함께 이르며, 한 번에 나아갈 때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인다. 하늘의 때를 살펴 나가도 멈추며, 추위와 더위에 따라 높고 낮게 난다. 바람과 함께 광야에 모이고 무리지어 구름 속을 난다. 동정호(洞庭湖)에서 춤추는 새들의 무리가 수천이로구나. 때는 광무 9년 을사년(1905) 꽃이 핌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양기훈이 공경히 그려 바칩니다)

○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과 <군안도 10곡병>의 두 병풍 크기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군안도 10곡병>은 10폭의 화면 안에 50마리의 기러기를 공간 가득 배치한 것에 비해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은 그중 반복되는 기러기의 도상 일부를 삭제하여 구도를 크게 변경하지 않은 채 12폭 안에 45마리의 기러기를 배치하여 공간을 재배치하였다. 그래서 기러기를 줄인 공간을 활용하여 비상 또는 낙하하거나 노니는 기러기들이 한층 여유롭게 배치되었고, 화면의 상하좌우를 가르는 긴 갈대 무더기를 배치하여 기러기들의 노니는 공간을 무대처럼 재구성하였다. 즉 1단에서 2, 3단에 걸쳐 펼쳐진 긴 갈대가 만든 근경의 공간 하나와 9단에서 양 갈래로 펼쳐진 갈대가 만드는 원경의 공간, 두 장소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있다.

○ 12폭 병풍의 장황 양식을 보자면, 고종 대에는 왕권 및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 병풍을 높게 제작하거나 폭 수도 늘리는 의장양식으로 변모되었다. 특히 병풍의 배설될 공간이 창덕궁이어서 기존 궁정과 높이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로 폭의 치수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긴 병풍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1폭의 너비가 31~36㎝ 정도로 좁아지면서 병풍 폭이 12폭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본 문화유산이 높이가 2m가 넘어가고 길이가 4m에 한 폭의 너비가 33㎝되는 화면 12폭으로 장황된 것으로 보아 이런 변모된 황실 소용의 의장을 따랐다고 추정된다.

○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의 작풍은 <군안도 10곡병>의 수묵담채의 담담함을 달빛 아래 전개되는 자연 공간을 난색 계열의 오색견사로 구현한 것이다. 비상 또는 낙하하거나 노니는 기러기들과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갈대, 무대 장

	치와 같은 강 둔치와 수풀 그리고 마지막 제시까지 모두 달빛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 주황색 채사와 갈색 혼색사를 사용하였다. 갈색혼색사는 합사는 아니지만, 갈색사에 먹의 검정색을 착색한 듯한 혼색사로 추정된다. 이 부분은 추후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판명될 것이다. 갈색혼색사가 사용된 부분은 제발부분과 기러기의 꼬리와 첫째날개와 둘째날개 부분이며 독특한 색감으로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작가의 재량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러기의 둥근 정수리에는 보묵(補墨) 흔적이 있다. 보묵은 고대부터 있던 회수(繪繡)기법으로 자수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던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사용되던 기법이다. 이처럼 황실의 헌상을 위해 전통적인 기법들을 두루 시도한 표현력으로 보아 예술성이 뛰어난 문화유산이라 말할 수 있다. ○ 자수기법은 전체적으로 꼰사를 사용하여 평수, 사선평수, 산투침(散套針), 선수(線繡), 가름이음수, 징금수를 구사하였다. 평수는 기러기의 꽁치 깃털과 첫째날개와 첫째 날개덮깃에 사용되었다. 등과 배 그리고 작은 날개 깃털의 경우, 산투침으로 전체 면을 채운 뒤, 원경의 작은 기러기의 것은 징금수나 선수로 깃털 모양을 구획하거나 문양을 구사했다. 근경의 몸집이 큰 기러기 것은 가름이음수로 깃털 모양을 구획하거나 문양을 구사하는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기러기의 눈 표현에 있어 원경의 것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근경의 것은 선수로 각기 표정을 짓고 있는 눈을 표현하였다. 기러기의 주둥이는 선수로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긴 갈대의 자연스런 전절과 흐드러진 갈대꽃은 산투침으로 한 쪽 방향으로 면을 정리하면서 자유롭게 채워나갔다. 둔덕의 풀들은 장단(長短)의 선수로 단조로움을 깨듯이 채사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본 조사대상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은 1905년에 궁에 헌상한 양기훈의 노안도 10폭 병풍을 초본삼아 2폭을 더 부가하여 12폭 자수병풍으로 장정한 것이다. 보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일부 각 결손과 탈락, 이염, 자수면과 바탕천 사이에 열화가 진행되어 있어 보존처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 자수병풍은 원화의 수묵담채로 구사된 담담한 분위기를, 난색계열의 채사들을 사용하여 달빛이 전체 화면을 감싸고 있는 운치있는 분위기를 감각있게 연출하였다. 주황색의 채사는 흐드러진 갈대와 기러기의 주둥이와 발에, 갈색혼색사는 기러기의 꼬리와 첫째날개와 둘째날개에, 회색사는 가운데날개덮깃과 몸통에, 흰색사는 가슴과 배에 사용하였다. 자수기법은 꼰사를 사용하여 평수, 산투침, 선수, 가름이음수 등 색사의 배치와 자수기법의 사용을 원경과 근경에 배치된 기러기에 따라 각각 정형화하였다. 자수 제작자는 초본의 전체적인 구도와 양식을 바탕으로 황실의 헌상품으로서 격을 갖추었으며, 시대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개성적인 재량도 잘 표현하였다.
조사 결과	3.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자수 양기훈필 노안도 병풍>(도 1)은 원화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자수 군안도 10폭 병풍>의 존재로 원본과 모수본이 유일하게 함께 전하고 있으며 제작자와 제작

	연대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유산으로 판명됨에 따라 학술사적 의의가 큰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문화유산의 용례와 자수 재현력에 대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지정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내보겠다. ① 근대 자수 병풍의 제작 상 10폭에서 12폭으로 증폭하였으며, 신자관을 첨부하여 헌상하는 대한제국 황실의 새로운 의장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②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안주수와 노안도의 유행이 자수의 근대적 가치와 어울리면서 오랫동안 유행되면서 제작되었다 ③ 작가의 역량에 의해 실이 선택되고 도안이 증폭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④ 오색견사와 다양한 기법으로 만든 정형화된 양식이 표현되었는데 후대에도 하나의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근대기 자수사에서 부각되는 안주수와 궁수와의 접점을 보여주는 예술적 역량도 충분히 담고 있다 등의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근대의 사회상과 예술성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과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판단되어 지정 가치가 높다고 상정하고자 한다.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靑畵雲龍文壺】

검토종별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명	백자 청화 운룡문 호 (白磁靑畵雲龍文壺)
수 량	1건 1점	규 격 (cm)	높이 41.0cm, 구연부 높이 3.2~3.3cm, 입지름 16.7~16.9cm, 밑지름 15.7~16.2cm
재 료	자기(磁器)	소유자	서울공예박물관
시 대	조선 후기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서울공예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조사대상은 약 3cm 정도 높이로 곧게 세운 주둥이에 둥글게 벌어진 어깨가 아래쪽으로 곡면을 이루며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항아리(立壺)이다(도1). 상부와 하부를 따로 만든 후 양감이 가장 풍부한 부분에서 이어 붙여 만들었다[接胴法]. 비교적 정선(精選)된 백토(白土)로 만들어 표면에 잡티가 많지 않고, 산화 코발트 안료[回回靑, 回靑]의 발색도 안정적이다. 다만 안료의 입자가 균일하지 않아 안료 덩어리가 뭉친 점(點) 같은 것이 표면 곳곳에서 확인된다(도2). 유면(釉面)은 전반적으로 고른 편인데, 주둥이 안쪽으로는 유약이 뭉쳐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



(도1) 조사대상 정면



(도2) 조사대상 안료 발색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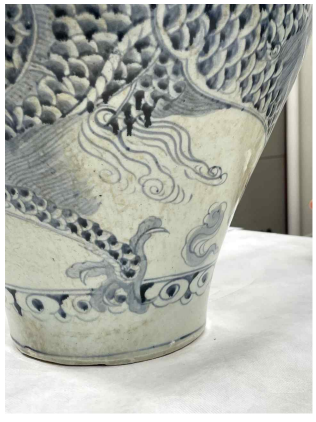
어깨와 저부에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두른 후 몸체에 주문양으로 용과 구름, 여의주(如意珠)를 그려 넣었다. 목에는 다섯 개의 당초문(唐草文)을 간격을 두고 시문(施文)하였다. 다리를 앞뒤로 뻗어 진행 방향 위쪽의 여의주를 향해 구름 속을 나는 두 마리의 용을(雙龍) 묘사하였다(도3). 긴 얼굴에 눈동자와 코는 여의주를 향해 있고, 콧수염은 앞으로 턱수염은 뒤로 날리는 모습이며, 머리와 갈기도 뒤로 날리고 있다(도4). 네 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며(四爪龍), 다리가 몸통과 만나는 지점에 털이 뒤로 날려 속도감을 더해 주고 있다[도3 참고]. 몸을 덮고 있는 비늘은 음영을 주어 물고기 비늘처럼 묘사하였고, 뿔은 앞쪽은 완전하게 뒤쪽은 끝부분만 그려 넣었다. 얼굴은 매화 반점 없이 안료로 채워 마무리했다. 주문양인 운룡문을 먼저 그린 후 보조문양인 여의두문 등을 시문해, 저부 여의두문은 용의 발톱을 피해 시문하였다(도5).



(도3) 문양구성 세부



(도4) 용문양의 세부①



(도5) 용문양의 세부②



(도6) 조사대상 굽부분

번조(燔造) 중 몸체가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항아리의 형태가 심하게 일그러지지는 않았다. 몸체 중앙 부분은 고온에서 환원(還元) 번조가 잘 이루어졌지만, 저부는 온도가 낮아 색과 광택이 중앙부분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1 참고). 굽은 외면에서 보이지 않게 들여 깎았고, 항아리 전체에 유약(釉藥) 씌운 후 굽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도6). 굽바닥에도 1/3 정도 모래가 묻어 있다. 구연부는 훼손되어 수리한 흔적이 있다(도7).

2.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은 조선시대 국가의례(國家儀禮)에서 술을 담아두는 주기(酒器)나 꽃을 꽂아 장식하는 화기(花器)로 사용된 용준(龍樽)의 한 유형이다. 조사대상과 같은 항아리는 용준(龍樽)·화룡준(畫龍樽)·화룡사준(畵龍沙樽)·사준(沙樽)·청자준(靑磁樽)·백자청화주해(白磁靑華酒海)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조선시대 국가전례서(國家典禮書)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례(嘉禮)와 길례(吉禮), 흉례(凶禮) 등에 사용되었다.

용준은 사용된 의례에 따라 양식적 특징과 크기 등이 의례서에 규정되어 있었으며(도8), 제작된 시기·사용된 의례의 격(格)·사용자의 신분(계층) 등에 따라 세부적인 양식에 차등을 두었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에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인 관요(官窯)가 설치되면서, 용준은 관요에서 제작되어 왕실로 진상(進上)되었다.



(도7) 조사대상 수리 부분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백자청화운룡문호>는 가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식의 용준이다(도9). 높이 50cm 이상으로 전세품 운룡문호 중 크기가 가장 큰 유형이며, 다섯 개의 발톱[五爪龍]을 가진 용 두 마리[雙龍]가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다. 저부의 산형연판문(山形蓮瓣文, 혹은 變形蓮瓣文, 圭形文)이 특징적이며, 용문은 제작시기에 따라 얼굴의 형태 · 머리카락과 수염이 날리는 방향 · 발톱의 수 등 세부적인 변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도8) 『國朝喪禮補編』(1752) 「圖說」 返虞 靑磁尊



(도9) <백자청화운룡문호>,
조선18세기
높이55.2, 입지름21.2cm
밑지름 19.8, 몸통지름 43.8cm
일본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길례는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의례를 의미하는데, 왕실의 오례 중 가장 먼저 등장하며 제일 많은 의례가 행해진다. 길례용 운룡문호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길례(吉禮)」 제기(祭器) 준(尊)으로 도설이 실려 있는데, 속제(俗祭)에 사용되는 화룡사준(畫龍沙樽)으로 설명되어 있다(도10). 주문양인 운룡문을 제외한 보조문양이 거의 사라진 특징을 보인다. 전세품 중에는 길례의 도설과 유사하게 입호(立壺)와 원호(圓壺)에 산화철 안료로 운룡문(주문양)만을 시문한 것이 있는데, 이들 철화운룡문호는 17세기와 18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

길례 속제에 사용된 용준은 제작시기에 따라 세부적인 변화가 진행되는데, 조사대상도 변화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항아리의 어깨 부분과 저부에 여의두문을 두른 후 몸체 대부분은 주문양인 운룡문으로 채워 장식한 것이다. 전세품 중에도 조사대상과 같은 유형이 있는데, 용의 크기와 세부 묘사 등 조금 다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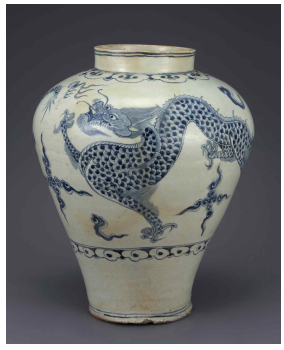
(도10) 『國朝五禮儀序例』 「吉禮」 祭器 尊

도 있지만 여의두문대 사이에 운룡문을 크게 장식한 기본 구성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11 · 도12 · 도13). 이와 같은 유형은 사망한 국왕이나 왕후를 애도하는 상례인 흉례 중 반우(返虞)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며, 혼전(魂殿)에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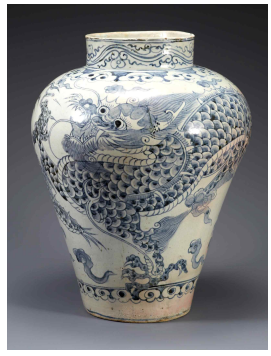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은 조선시대 운룡문호의 대표적 형태 중 하나로, 문양 구성이 의례의 성격과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도11) 〈백자청화운룡문호〉
높이42.8,
몸통지름34.4cm
국립중앙박물관
(남산3235)



(도11) 〈백자청화운룡문호〉
높이41.5,
입지름15.0,
밑지름16.2cm
국립중앙박물관
(구3117)



(도12) 〈백자청화운룡문호〉
높이44.0,
입지름16.0,
밑지름16.6cm
국립중앙박물관
(동원466)

조사대상은 백자의 형태와 질(質)이 좋고, 유색과 청화 안료의 발색(發色)이 안정적이다. 문양의 구성과 시문한 기량이 뛰어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국가의례용 특수기종(特殊器種) 중에서도 수량이 매우 적은 자기제(磁器製) 기명(器皿) 중 하나로, 조선시대 용준의 특징과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조사 결과	3. 시울시 문화유산 지정 여부 : 可 조사대상은 조선시대 운룡문호의 대표적 형태 중 하나로, 항아리의 형태 및 문양의 구성 등이 시대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 조사대상은 국가의례용 특수기종(特殊器種) 중 자기제(磁器製) 용준의 특징과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다.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 · 관리 ·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명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수 량	1책(권4-권7)	규 격 (㎝)	28.5㎝×16.5 cm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최○건
시 대	1477(성종 8)년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조사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이 책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묘법연화경』에 송나라 계환의 요해(要解)를 붙인 것을 1477년(성종 8)에 전라도 고산의 불명산 화암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판하본은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썼다. 『묘법연화경』은 화엄경, 금강경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으로 일 반적으로 '법화경(法華經)'이라 약칭한다. 법화경의 성립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대략 기원 후 2세기 중엽까지는 소품 단위로 결집되어 이후 역시 소품 단위로 중국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406년에 구마라집이 28품으로 한역(漢譯)을 하였고 이것이 널리 유통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전래되었는바 사경 및 판본이 거의 모두 이 책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한국본은 대부분 7권으로 장축(裝軸) 또는 장황(裝潢)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화경은 불갑사에서 발견된 권3의 일부로 고려 초기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은 계환(戒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출현하였는데 170여 종 이상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성달생본계, 초주갑인자본계, 을해자본계, 대자본계, 화암사본 계통으로 구분된다. 조사 대상본은 성삼문의 조부인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쓴 판하본(板下本)을 전라도 고산 화암사(花岩寺)에서 1443년에 간행한 책을 저본으로 1477년에 화암사에서 다시 번각(飜刻)하여 간행한 것인데 권4에서 권7까지의 1책으로 결본이다. 5침의 선장이며 표지는 갈색으로 염색한 종이에 격자능화문이 들어 있는데 근래 새로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크기는 28.5×16.5cm이다. - 변란은 사주단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19.8×13.5cm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10행 20자이고 판심에 어미는 없이 판심제만 '法'이라 되어 있으며 아래로 권차 및 장차 표시가 새겨져 있다.

【인자수지 人子須知】

검토종별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유산	문화유산명	인자수지(人子須知)
수 량	15책(冊)	규 격 (㎝)	31.0×19.5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박○숙
시 대	1742년 이후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 『인자수지(人子須知)』는 명나라 서선계(徐善繼) · 서선술(徐善述) 형제가 쓴 풍수지리서로 1564년에 초간(初刊)된 책이다. 사람의 자식 된 도리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효성이고, 효성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좋은 혈(穴)을 잡는 방안을 익혀야 한다는 논리로 이루어진 저술이다.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 책이 중간(重刊)된 1583년 이후로도 수십 년 후인 17세기 중후반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종 대 이후 왕릉의 간산(看山)에 활용되었고 점차 사대부가의 분산(墳山)을 정하는 데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꾸준히 활용되었다. 간행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풍수지리 문헌, 이와 관련한 유교 경전을 망라하여 재구성한 풍수지리 종합안내서의 성격을 갖는 서적이라 할 수 있다. ○ 지정신청 한 『인자수지(人子須知)』는 총 16책 중 제2책이 결본 된 15책이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5책 49권이며, 결본 된 제2책은 3권~6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남아있는 15책 중 14책은 목판본이고, 마지막 1책(48권~53권)은 필사본이다. 표제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이다. 목판본의 권수제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이고, 필사본의 권수제는 '중간인자수지자효지리심학통종(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이다. 관상감에서 『인자수지』 총 53권 중 47권까지의 책판을 만들어 초쇄본(初刷本)을 인쇄하고, 지정신청한 본 자료의 47권 마지막 장에 첨지하여 이후 추가할 내용을 밝혀 놓았다. 즉 이후 「음양묘용(陰陽妙用)」5권을 실어 권48부터 권52까지로 하고, 또 권53을 싣되 마땅히 1책 또는 2책이 될 것이라 써 놓았다. 이 부분이 필사본으로 된 『인자수지』 제16책에 해당 된다. ○ 1742년(영조 18) 관상감(觀象監)에서 『인자수지(人子須知)』, 『탁옥부(琢玉斧)』, 『정문침나경해(頂門鍼羅經解』 3책을 목판으로 간행할 것을 계청(啓請)하여 영조가 재가한 기록이 『승정원일기』 등에서 보인다. 1745년(영조 21)에 『탁옥부』의 간행이 완료되었으나 『인자수지』는 언제 간행이 완료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중국판 『인자수지』는 총 39권으로 되어 있으나 관상		

	감에서 간행한『인자수지』는 총 53권으로서 그 내용이 더 세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심제로 보면 1권~47권은 수지(須知), 48권~52권은 묘용(妙用), 53권은 만년도(萬年圖)이다. ○ 영조대에 간행된 조선의『인자수지』는 형기론을 위주로 한 풍수서인 동시에 이기론과 택일 내용 등에 담긴 유교적 이론을 수용한 이론서로서의 의미를 가진 서책이다. 결과 풍수서 중 가장 분량이 방대한 책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내용이 풍성하며, 그 내용을 도표와 그림을 첨부하여 설명한 책이다. 이는『인자수지』에 수록된 수많은 산도(山圖)가 입증하는 부분이다. ○ 지정 신청한 자료는 소장자의 5대조 박우형(朴遇衡)이 1849년에 입수하여 집안에 전래되었다고 한다. 5대조가 이 책을 입수하고 그 경위를 기록하여 제1책 뒤표지 안쪽 면에 붙여놓았다. 이 기록에 道光己酉(1849)에 인쇄된 책 1본(本)을 구해보았다는 내용과 함께, 만두(灣頭)만 쓰여 있고 천성(天星)은 빠져있으므로 그 빠진 부분을 적으니 후손들이 별도의 책자로 만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지정신청한『인자수지』에는 각 책의 권수제면(卷首題面) 우측 하단에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각 장서인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부분만 남아있으나 영조대 영의정이며 관상감 영사를 겸임했던 김상로(金尙魯)의 장서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 영조 때 관상감에서『인자수지』를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책판 중 100여장이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관상감에서 간행한『인자수지』 중 지금 남아있는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다. 그 외 목판본, 석판본, 필사본 등 형태로 여러 종류의『인자수지』가 국내외 도서관과 개인에게 소장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본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1책을 제외한 15책이 남아있는 것은 완질에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2. 원형 유지 정도 지정신청한『인자수지』는 보관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물론 일부 얼룩이 있거나 종이가 변색된 부분이 있으나, 마멸 또는 멸실한 부분은 없는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 전래경위가 명확하고 내용상 · 형태상 변형이 거의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可 ○ 16세기 중후반 중국 명나라에서 간행된『인자수지』는 영조대 관상감의 주청을 영조가 받아들이면서 정식 간행된 서책으로, 간행 이후 조선 사회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 요약서나 해설서가 출간될 정도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친 책이다. ○ 『인자수지』는 국내에 그 책판과 간행된 책자가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으나 대체로 낙질이 많은 편이다. 그에 비해 지정신청한 자료는 1책을 제외하고 15책이 보존되어 있어 완질에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보관 상태는 일부 얼룩이 있으나 마멸 또는 멸실은 없는 양호한 상태이다. 또한 소장자의 선대(先代)로부터 전래된 경위가 명확하며, 영조 대 영의정으로 관상감 영사였던 김상노(金尙魯)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서인(藏書印)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백자청화육각병 白磁靑畵六角甁】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명	백자청화 육각병
수 량	1건 1점	규 격	입너비 2.2×2.6㎝ 굽너비 7.8×9.1cm, 높이 14.2㎝
재 료	자기(磁器)	소유자	이○훈
시 대	조선 후기	소재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상기 유물은 높이 14cm가량의 작은 백자 육각병이다(사진 1, 2). 입자가 곱고 치밀하지만 이물질이 다소 섞여 회청색을 띠는 태토를 사용하여 성형(成形)하였는데, 내시경과 CT촬영 사진 등을 참고하면 몸체는 외형을 육면으로 깎고[面取] 밑면을 통해서 속을 파낸 다음 굽과 목을 붙여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3, 4, 5, 6). 형태는 여섯 개의 다리가 있는 상형(床形)의 굽 위로 역시 육면을 지닌 몸체와 짧은 목을 조성하였는데, 상부가 팽창된 몸체의 어깨와 모서리에는 마치 끈으로 묶어 고정한 듯 덧띠를 붙여 장식하였다. 구연은 밖으로 도톰하게 마감하고 굽 측면 아래 가장자리에는 청화 안료로 가늘게 선을 그어 강조하였는데, 청화 발색은 푸르고 선명하다. 굽을 포함한 전면(全面)에 투명도 높은 담청색 백자유약을 고르게 입혔는데 유면에 빙열(氷裂)이 거의 없고 광택이 은은하다. 굽 안바닥은 거칠게 깎아내고 세 줄의 음각선을 '一二' 모양으로 새겼으며, 접지면 6곳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가는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7). 목과 몸체의 접합부, 몸체와 굽의 접합부에 미세한 오염과 균열이 있으나 파손 및 복원된 곳 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사진 8).		



(사진 1) 백자청화 육각병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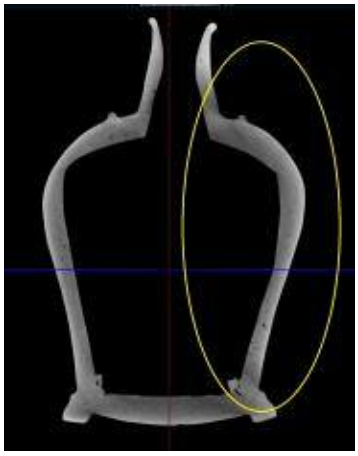
(사진 2) 백자청화 육각병 윗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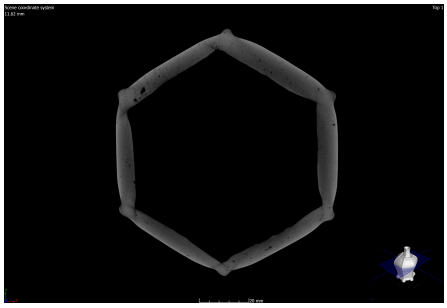
(사진 3) 백자청화 육각병 내면(내시경)



(사진 4) 백자청화 육각병 내면



(사진 5) 백자청화 육각병
수직단면(CT)



(사진 6) 백자청화 육각병 수평단면(CT)



(사진 7) 백자청화 육각병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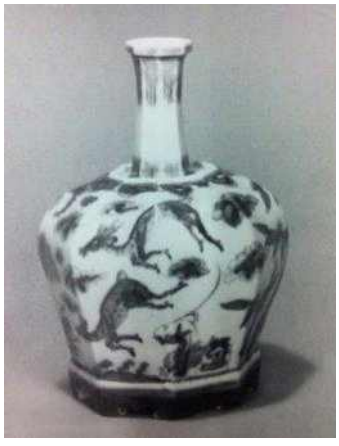


(사진 8) 백자청화 육각병 목접합부

2. 내용 및 특징

상기 <백자청화 육각병>은 유태의 품질이나 제작수법, 청화문양, 굽 안바닥의 음각기호 등을 고려할 때 조선후기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유태(釉胎)의 품질이 최상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백자병과 같은 크기와 형태를 지닌 유물은 그 유례(類例)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각형 백자류는 조선시대 18~19세기에 관요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특히, 6각의 횡단면을 지닌 기물은 19세기에 병이나 향로, 주자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상기 육각병과 형식이 유사한 유물로는 리움 소장의 <백자청화 장생문 팔각병>(사진 9), 호림박물관의 <백자청화 수복문 육각병>(사진 10)이 있다. 조사대상 유물의 형태는 리움의 팔각병과 유사하나 육각병이라는 점에서는 호림박물관의 유물과 비교되는데, 그 크기는 주병(酒甁)인 리움 팔각병이나 호림박물관 육각병보다 작아 연적(硯滴) 등 다른 용도의 기물로 판단된다.



(사진 9) 백자청화 장생문 팔각병
높이 22.5cm, 리움



(사진 10) 백자청화 수복문 육각병
높이 24.1cm, 호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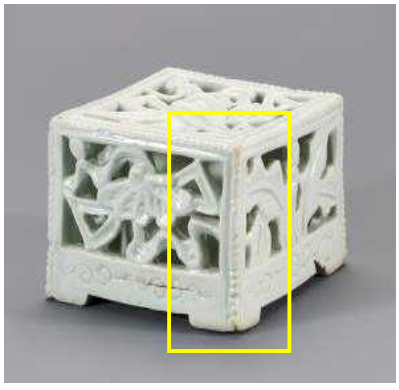
조사대상 유물과 유사하게 몸체 모서리에 덧띠를 장식한 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자투각 연환문 필통>(사진 11), <백자투각 파초문 사각연적>(사진 12)와 같은 문방구류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덧띠는 섬유나 금속으로 몸체를 보강하고 장식한 듯 한 모습인데 대체로 19세기 관요의 문방구류에서 종종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 유물은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속파기 수법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는 개인 소장의 <백자청화 산수문 육각주자>(사진 13)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자청화 산수문 사각병>(사진 14)과 같이 조선후기 관요백자의 대부분 각형 기물에서 발견되는 기법상 특징으로서 외형틀로 찍어내거나 판성형을 주로 사용한 당시 중국, 일본의 백자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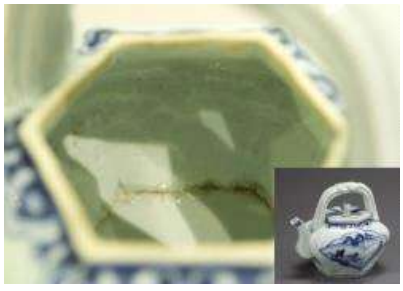
이와같은 내용과 특징을 종합하면 조사대상 <백자청화 육각병>은 청화 및 덧띠가 장식된 양질백자 문방구로서 19세기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1) 백자투각 연환문 필통
높이 12.0c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2) 백자투각 파초문 사각연적
높이 8.4c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3) 백자청화 산수문 육각주자
(속파기),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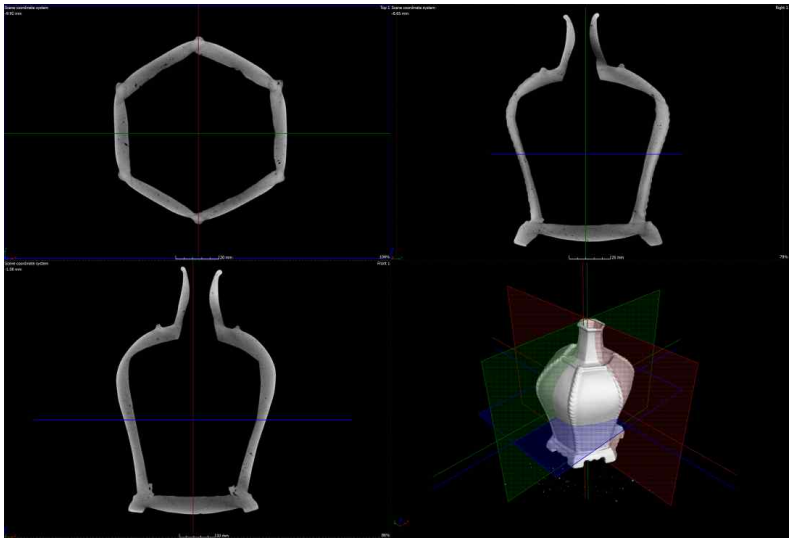


(사진 14) 백자청화 산수문 사각병(속파기)
국립중앙박물관, 고적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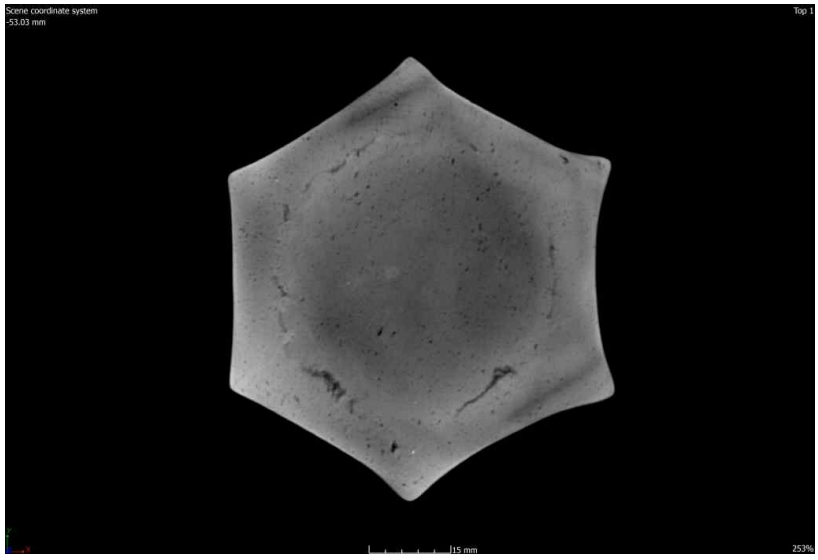
[보존과학적 조사]

CT 촬영 결과 화병 목부분과 몸체, 몸체와 굽 바닥 부분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화병 내부 바닥 부분에 흙물로 접착하면서 삐져나온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몸체와 목 부분을 먼저 붙여서 내부를 정리한 후 바닥 부분을 마지막에 접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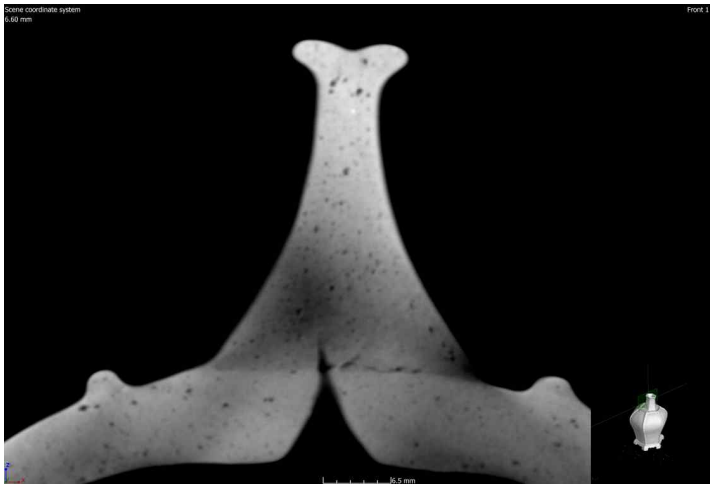
□ CT 촬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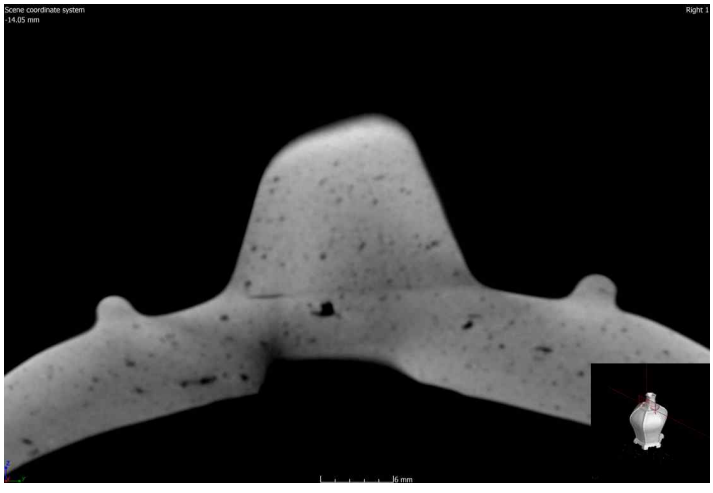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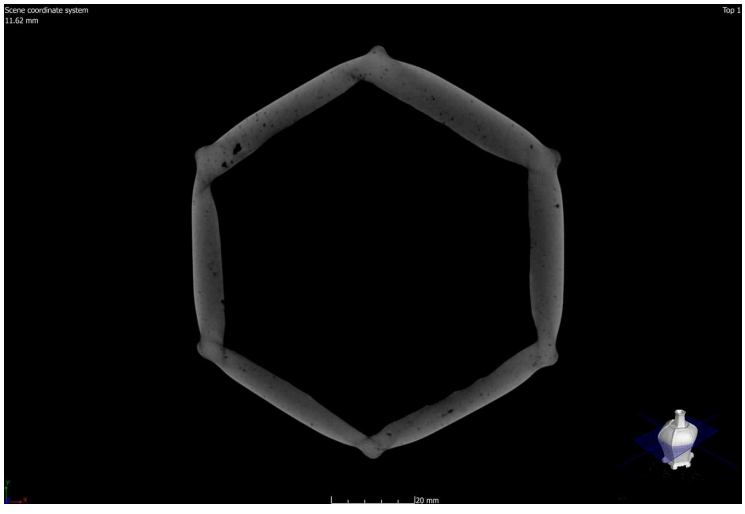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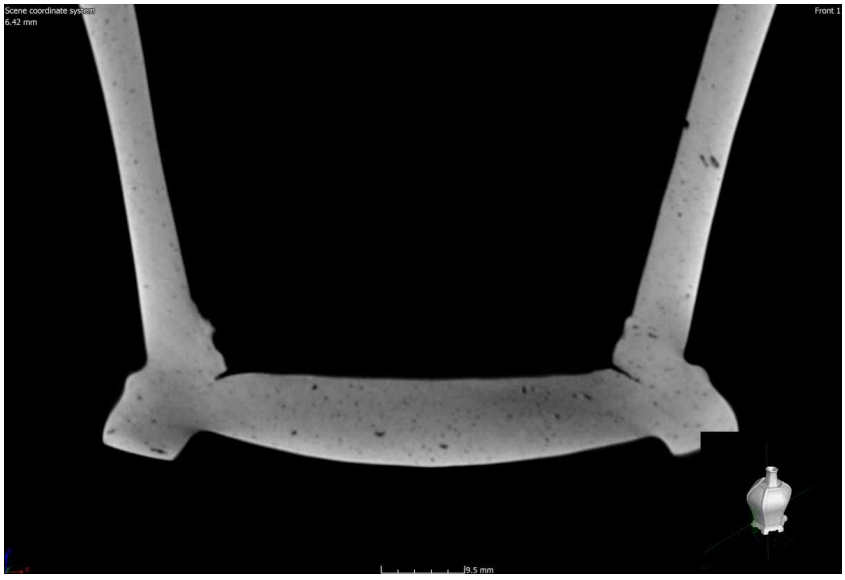

Scene coordinate system
-53.03 mm
Top 1
15 mm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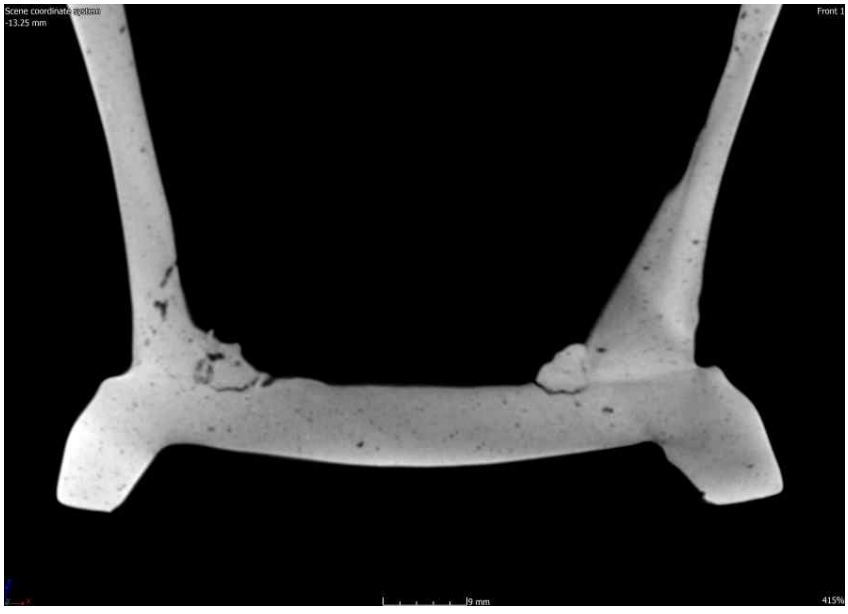

Scene coordinate system
-8.15 mm
Right 1
10 mm


Scene coordinate system
6.60 mm
Front 1
6.5 mm


Scene coordinate system
-14.05 mm
Right 1
6 mm


Scene coordinate system
11.62 mm
Top 1
20 mm


Scene coordinate system
6.42 mm
Front 1
9.5 mm


Scene coordinate system
-13.25 mm
Front 1
9 mm
415%

조사 결과	3. 서울시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 조사대상품은 조선후기 상류층의 문방청완 취향을 반영한 양질백자 문방구류로 그 형식이 독특하고 희소성이 있음. – 19세기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전형적인 조선후기 관요의 제작기술을 잘 보여줌 – 표면에 미세한 균열과 오염이 있으나 파손된 곳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태가 양호함. – 따라서 조사대상품은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유물의 명칭은 신청서에 명기된 <청화백자육각화병> 대신 <백자청화 육각병>으로 정리하도록 함.

【백자 각배 白磁角杯】

검토종별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명	백자 각배
수 량	1건 1점	규 격	입지름 5.0㎝, 길이 16.8㎝
재 료	자기(磁器)	소유자	이○훈
시 대	조선 전기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상기 유물은 소뿔의 형태로 만든 백자 뿔잔[角杯]이다(사진 1). 비교적 입자가 곱고 이물질이 적은 치밀질 백토로 성형하였는데 표면에 아무런 문양이 없다. 잔의 내측면에는 희미한 물레 자국이 남아 있으나, 외면은 매끄럽게 정면(整面)하고 그릇 전체에 담녹색(淡綠色)이 도는 반투명 유약을 입혔다(사진 2). 유면에는 미세한 빙렬(氷裂)이 가득한데 유약의 용융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유색이 고르고 표면에 은은한 광택이 있다. 잔의 구연부를 바닥에 놓고 뒤집어 번조하여 구연에 태토 빚음 등을 받쳤던 자국이 4곳에 남아 있는데 그중 3곳은 유약이 박락·결손되었다(사진 3). 표면의 군데군데에 오염 및 세척으로 인한 UV 라이트 형광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수리된 곳 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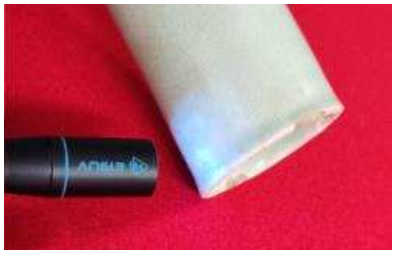
(사진 1) 〈백자 각배〉



(사진 2) 〈백자 각배〉 내부



(사진 3) 〈백자 각배〉 받침자국



(사진 4) 〈백자 각배〉 UV라이트 조사

2. 내용 및 특징

소뿔을 모티브로 한 각배는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제작되는데 조선시대에도 분청사기나 백자로 만든 유물이 여러 점 알려져 있다(사진 5~8 참조).



(사진 5) 〈백자철채 각배〉 보물
길이 17.0cm 입지름 5.3cm
조선 전기,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6) 〈백자 각배〉
길이 18.8cm, 조선 15세기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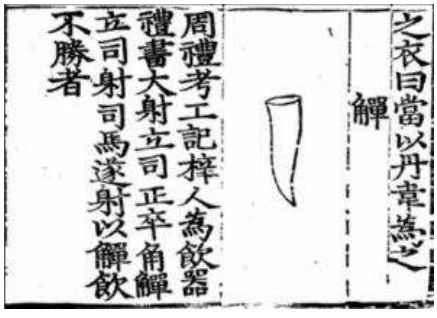
(사진 7) 〈분청사기상감 연화문 각배〉
길이 22.3cm, 조선 15세기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사진 8) 〈백자 각배〉
길이 15.0cm, 조선 15세기 전반
광주 번천리 21호 가마터 출토
경기도자박물관

『세종실록』「오례」와『국조오례의』「서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선시대 각배는 군례(軍禮)의 하나인 대사례(大射禮)에 쓰이는 술잔인 '치(觶)' 임을 알 수 있는데(사진 9 참조), 임금이 신하와 함께 활을 쏘는 대사례에서 실제로 백자 각배가 사용된 사실은 1743년 대사례를 기록한 <대사례도권(大射禮圖卷)>에 잘 묘사되어 있다(사진 10, 11). 여기에서 '치' 는 활쏘기에서 패한 신하가 벌주를 마시는데 사용되었다(사진 10).

이처럼 조선시대 각배는 국가의 군사의례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 의례용기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현전하는 백자 각배들은 (사진 5, 6)의 <백자 각배>와 같이 관요에서 격식을 갖추어 제작되었다.


周禮考工記梓人爲飮器
禮書大射立司正卒角觶
立司射司馬遂射以觶飮
不勝者
觶
之衣曰當以丹韋爲之

(사진 9)『국조오례의』「서례」 군례 '치'
1474년 간행



(사진 10) 〈대사례도권〉 의 벌주 마시는 장면
1743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사진 11) 〈대사례도권〉, 1743년, 가로 262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

조사대상 각배는 길이가 16.8cm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자철채 각배>(사진 5)와 규모가 유사하나 몸통이 조금 더 가늘고 길어 전체적인 형태는 (사진 7)의 <분청사기상감 연화문 각배>와 가깝다. 조선 전기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백자 각배>(사진 5, 6)와 비교하면 유태(釉胎)의 품질이 다소 미흡한데 특히, 담녹색을 띠는 유약은 양질 관요백자의 얇고 투명도 낮은 백색계열 유약과 색상과 질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유태의 품질은 15세기 전반에 운영된 광주 번천리 21호 가마터에서 발굴된 <백자 각배>와 비교된다(사진 8). 번천리 출토 <백자 각배>는 조사대상 각배와 유사하게 백토 위에 투명도 높고 빙렬이 많은 황녹색 반투명유를 입혔는데,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관요백자 형식이 완성되기 이전 광주지역 양질백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내용과 특징을 종합하면 조사대상 <백자 각배>는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철채 각배>에 비해 그 품질과 조형성은 미흡하지만 15세기 조선왕실의 군례에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제작된 의례용기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3.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 조사대상 <백자 각배>는 조선왕실의 대사례 등 군례에 사용되는 의례용기임.
- 15세기에 제작된 양질백자로 전형적인 관요백자 형식이 완성되기 이전 조선 초기백자의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구연부에 굽받침이 떨어진 자국을 제외하고 제작이후 파손 및 수리복원된 흔적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함.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품은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상기 유물은 백토에 청자계 유약을 입혔으나 기존 백태청유자에 비해 유색이 밝아 백자에 가까움. 소위 백태청유자 역시 백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양식적으로 백자에 포함됨. 따라서 유물의 명칭은 신청서의 <백태청유자 각배> 대신 <백자 각배(白磁角杯)> 또는 <백자 뿔잔>을 건의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300호

도시관리계획(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06호(2024.5.23.)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2024. 11. 29. ~ 12. 1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02-2133-1556)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3),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3)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3번지 일원, 마포구 상암동 1195번지 일원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3번지 일원, 마포구 상암동 1049번지, 1195번지 일원	310,025.3	증) 139,346	449,3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 (2002.7.2.)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확대 - 310,025.3㎡ ⇒ 449,371.3㎡ 증) 139,346㎡	• 면적변경 증) 139,346㎡ - 수색 차량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철도시설 이전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 상암동 1049번지 일대 139,346㎡ 증가 : 철도시설 이전부지 포함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제출
바.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02-2133-1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8425호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유산 지정 해제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유산의 지정 해제를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제13조 제 1항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0조 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해제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해제 계획

가. 문화유산 지정해제 개요

종별	명칭	지정번호	수량	소재지(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보제존자삼종가	제397호	1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개인소유 : 조○영)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4	제400호	1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개인소유 : 조○영)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반야바라밀다심경집해	제427호	1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개인소유 : 조○영)
서울시 문화유산자료	경국대전	제72호	1	서울 강남구 도곡1동 (개인소유 : 한○수)

나.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다. 지정 해제 사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변경에 따른 영구 시외 반출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① 전화 : (02) 2133-2630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8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2024.8.23.)

소속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직위	(전)대표이사		성명	정연정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188,000	0	5,000	1,183,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건물 59.76㎡	870,000	0	0	870,000	가액변동 없음
모	아파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건물 84.91㎡	318,000	0	5,000	313,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30,140	0	0	30,14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올뉴아반떼1.6(7세대, CN7) 배기량(1,598cc)	17,670	0	0	17,670	가액변동 없음
부	자동차	2018년식 SM6 배기량(1,461cc)	6,235	0	0	6,235	가액변동 없음
모	자동차	2018년식 SM6 배기량(1,461cc)	6,235	0	0	6,235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133,676	15,886	36,824	112,738	
본인		DB손해보험(주) 10,664(826 증가), MG손해보험(주) 2,457(285 증가), 국민은행 7,768(7,468 증가), 농협은행 20,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571(707 증가), 신한은행 930(930 증가), 토스뱅크(주) 1, 한국교직원공제회 7,945(246 증가), 한화손해보험 2,751(305 증가)	30,340	10,767	0	41,107	예금 변동 사항
부		국민은행 81, 신한은행 66,092(33,016 감소), 우리은행 100	99,289	3,808	36,824	66,273	
모		국민은행 7, 신한은행 5,281(1,311 증가), 우리은행 70	4,047	1,311	0	5,358	
▶ 채무(소계)			146,531	0	7,326	139,205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133,487(4,143 감소), 신한은행 0(1,349 감소), 현대캐피탈 5,718(1,834 감소)	146,531	0	7,326	139,205	채무변제
총 계			1,205,285	15,886	34,498	1,186,673	증감액: -18,612천원 (가액변동: -5,000천원)

○ 퇴직(2024.9.1.)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직위	(전)대표이사		성명	김상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30,696	31,003	0	261,699	
본인	임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산 46-1번지 0.00㎡ 중 0.00㎡ (총면적 0.00㎡ 감소, 지분면적 0.00㎡ 감소)	0	0	0 (0)	0	
본인	임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산 46번지 199,949.00㎡ 중 6,649.00㎡	12,034	732	0	12,766	
부	답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420번지 0.00㎡ (0.00㎡ 감소)	0	0	0 (0)	0	
부	답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420번지 1,758.00㎡	218,662	30,271	0	248,933	
▶ 건물(소계)			527,290	0	0	527,290	
본인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건물 114.00㎡	238,290	0	0	238,290	
부	단독주택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대지 247.00㎡ 건물 187.00㎡	289,000	0	0	289,000	
▶ 예금(소계)			126,911	12,986	13,994	125,903	
본인		국민은행 21,958(582 감소), 농협생명보험 48,000(2,400 증가), 유안타증권 5,672(674 증가),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0(7,860 감소), 중소기업은행	84,576	3,874	11,292	77,158	자녀학자금 사용

		1,528(2,050 감소)					
배우자		DB손해보험(주) 6,601(595 증가), NH투자증권 141(7 증가), 농협중앙회 34,219(7,499 증가)	32,860	8,102	1	40,961	
부		NH투자증권 7(163 감소), 농협중앙회 404(93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518(54 증가), 아이엠뱅크 215	1,160	147	163	1,144	
모		농협중앙회 186(63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5,000	5,123	63	0	5,186	
장녀		신한은행 260(256 감소)	516	0	256	260	
차녀		NH투자증권 1(999 감소), 우리은행 920(70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73(1,183 감소)	2,676	800	2,282	1,194	
▶ 증권(소계)			**119,211**	**74,758**	**87,106**	**106,863**	
본인	상장주식	SK바이오사이언스 2주	144	0	33	111	
배우자	상장주식	SK바이오사이언스 1주	72	0	17	55	
부	상장주식	LG화학우 100주(74주 감소), NAVER 60주(126주 감소), 두산에너빌리티 1,536주(1,536주 증가), 두산퓨얼셀1우 7,967주(7,967주 증가), 케이씨텍 0주(861주 감소)	118,852	74,726	87,056	106,522	주식거래
장녀	상장주식	테슬라 0.009주	2	0	0	2	
차녀	상장주식	SK하이닉스 1주	141	32	0	173	
총 계			**1,004,108**	**118,747**	**101,100**	**1,021,755**	**증감액: 17,647천원 (가액변동: 30,985천원)**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4-136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2004.4.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호(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5호(2021.6.3.)로 결정(변경)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암동 261-9번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중복결정(신설)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건축물의 배치 및 교통처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0.24.) 심의결과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종 로 구 청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없음
2)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⑤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암동 261-9	-	증)3,193	3,193	-	중복결정 - 주 차 장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⑤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부암동 261-9 - 면적 : 3,193㎡	• 부암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방문 편의증진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⑤	주차장	노외 주차장	50% 이하	100% 이하	24m 이하 (지상 3층 이하)	-

3)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1) 문화시설 :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문화 시설	미술관	부암동 261-9	3,193	감) 3,193	-	2021.6.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5호)	학고재 미술관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②	문화시설	미술관	• 문화시설 폐지 - 위치: 부암동 261-9 - 면적: 감) 3,193㎡	•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폐지	-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②	문화시설	미술관	-	-	-	-

▶ 문화시설 조성 지침 : 폐지

2)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부암동 261-9	-	증) 3,193	3,193	-	중복결정 - 주 차 장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부암동 261-9 - 면적: 증) 3,193㎡	• 동 청사 신설을 통해 개선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노후 동 청사 이전설치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	50% 이하	100% 이하	24m 이하 (지상 3층 이하)	-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노인 복지센터	부암동 261-9	-	증)3,193	3,193	-	• 중복결정 - 주 차 장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1항에 따른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사회 복지시설	노인 복지센터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위치: 부암동 261-9 - 면적: 증) 3,193㎡	• 부암동, 평창동 일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공간 마련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100% 이하	24m 이하 (지상 3층 이하)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 결정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건축물의 배치 : 변경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구역			적용기준	계획내용	변경사유
벽면 한계선	인왕 구역	기정	261-9번지 문화시설	10m	• 정연한 가로경관 관리 • 필지경계선 기준 고층부 벽면한계선 10m	• 문화시설 : 폐지 •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신설
		변경	261-9번지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 교통처리계획 변경(주차출입구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변경사유
주차 출입구	부암동 261-9	기정	• 창의문로 변 차량진출입구 폭원 6m이하 조성 •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한 차량 진출입구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 주차 동선계획에 따른 주차출입구 위치 및 폭원 변경 ※ 결정도 참고
		변경	• 창의문로 변 차량진출입구 폭원 8m이하 조성 •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한 차량 진출입구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라. 경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적용의 완화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라. 관련 도서 : 생략(종로구청 건축과 및 주차관리과 비치 도서와 같음)

마.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 및 주차관리과(☎02-2148-3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기정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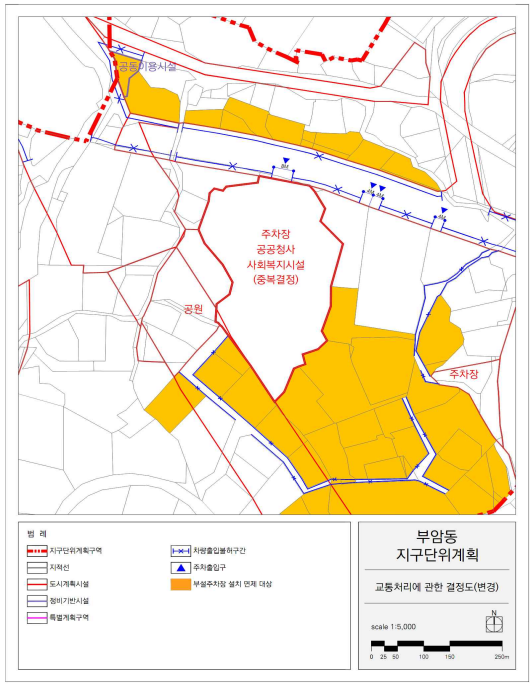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교통처리계획)

기정



변경(안)



◈ 성북구고시 제2024-153호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110호(2024.02.29.)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관련하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성 북 구 청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위 생활권 시민들의 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9~36번지 일원

3. 면적 : 5,941.00㎡

4. 조성계획결정도 및 결정조서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02-2241-2834)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성북구 장위동 69-36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5,941.00	4,233.95	1동	1,042.00	3,530.00	50개소	시설율 71.27%
기반시설	소 계	2,005.45	2,005.45					
	도 로	918.41	918.41				8개소	
	광 장	1,087.04	1,087.04					
조경시설		540.34	540.34				21개소	
휴양시설		355.25	355.25				18개소	
운동시설		66.13	66.13				3개소	
교양시설		1,266.78	1,266.78	1동	1,042.00	3,530.00		건폐율 18.24%
녹지 . 기타		1,707.05						녹지율 28.73%
시설률 (제한없음)		(4,233.95㎡ / 5,941.00㎡) x 100% = 71.27%						
건폐율 (법정 20%)		(1,042.00㎡ / 5,941.00㎡) x 100% = 1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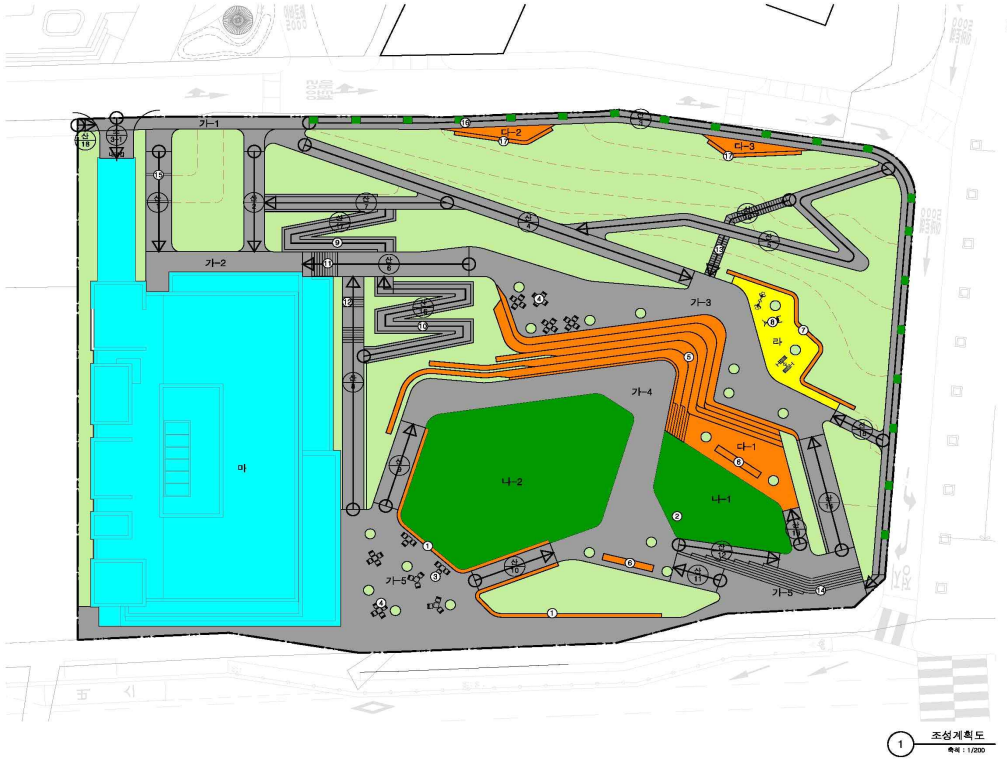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5,941.00	4,233.95		1동	1,042.00	3,530.00	50개소	시설율 71.27%
기반 시설	소계			2,005.45	2,005.45					8개소	33.76%
	도로			918.41	918.41						
	진입광장-1	가-1		55.66	55.66						
	진입광장-2	가-2		51.86	51.86						
	진입광장-3	가-3		257.40	257.40						
	광장	가-4		259.78	259.78						
	진입광장-4	가-5		462.34	462.34						
	램프A	⑨								1개소	
	램프B	⑩								1개소	
	계단A	⑪								1개소	
	계단B	⑫								1개소	
	계단C	⑬								1개소	
	계단D	⑭								1개소	
	계단E	⑮								2개소	
조경 시설	소계			540.34	540.34					21개소	9.10%
	미러폰드	나-1		134.88	134.88						
	잔디광장	나-2		405.46	405.46						
	캐스케이드	②								1개소	
	수목보호대	⑯								20개소	
휴양 시설	소계			355.25	355.25					18개소	5.98%
	휴게쉼터1	다-1		67.07	67.07						
	휴게쉼터2	다-2		18.23	18.23						
	휴게쉼터3	다-3		17.47	17.47						
	앉음벽A	①		29.04	29.04					2개소	
	야외테이블세트A	③								4개소	
	야외테이블세트B	④								6개소	
	스탠드	⑤		211.04	211.04					1개소	
	앉음벽B	⑥								2개소	
	앉음벽C	⑦		12.40	12.40					1개소	
	앉음벽D	⑰								2개소	
운동 시설	소계			66.13	66.13					3개소	1.11%
	운동공간	라		66.13	66.13						
	체력단련시설	⑧								3개소	
교양	소계			1,266.78	1,266.78					-	21.32%
	도서관	마		1,266.78	1,266.78		1동	1,042.00	3,530.00		
녹지 및 기타				1,707.05							녹지율 28.73%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472.04	918.41	진입로 연결로			
신설	소계				4.9	20.43				
	소로	3류	1	4.17	4.9	20.43	진입로	부지경계	도서관	
	소계				467.14	897.98				
	산책로		1	3.0	12.20	36.6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산책로		2	2.4	12.20	29.28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산책로		3	1.5	121.20	181.8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4	
	산책로		4	2.0	47.75	95.5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3	
	산책로		5	1.5	56.70	85.05	연결로	산책로-3	산책로-4	
	산책로		6	3.1	19.27	59.74	연결로	진입광장-3	진입광장-2	
	산책로		7	1.5	21.48	32.22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2	
	산책로		8	2.5	28.30	70.75	연결로	진입광장-4	산책로-6	
	산책로		9	3.0	10.45	31.35	연결로	진입광장-4	광장	
	산책로		10	2.5	9.72	24.30	연결로	진입광장-4	광장	
	산책로		11	3.3	5.65	18.64	연결로	진입광장-4	광장	
	산책로		12	1.65	11.75	19.39	연결로	광장	진입광장-4	
	산책로		13	2.0	4.36	8.72	연결로	진입광장-4	휴게쉼터-1	
	산책로		14	3.3	14.18	46.79	연결로	진입광장-4	진입광장-3	
	산책로		15	1.5	6.67	10.01	연결로	산책로-3	진입광장-3	
	산책로		16	1.84	45.07	82.93	연결로	산책로-8	산책로-6	
	산책로		17	1.84	25.07	46.13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산책로		18	1.5	2.12	3.18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3-1	
	산책로		19	1.2	13.00	15.60	연결로	산책로-5	진입광장-3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최초)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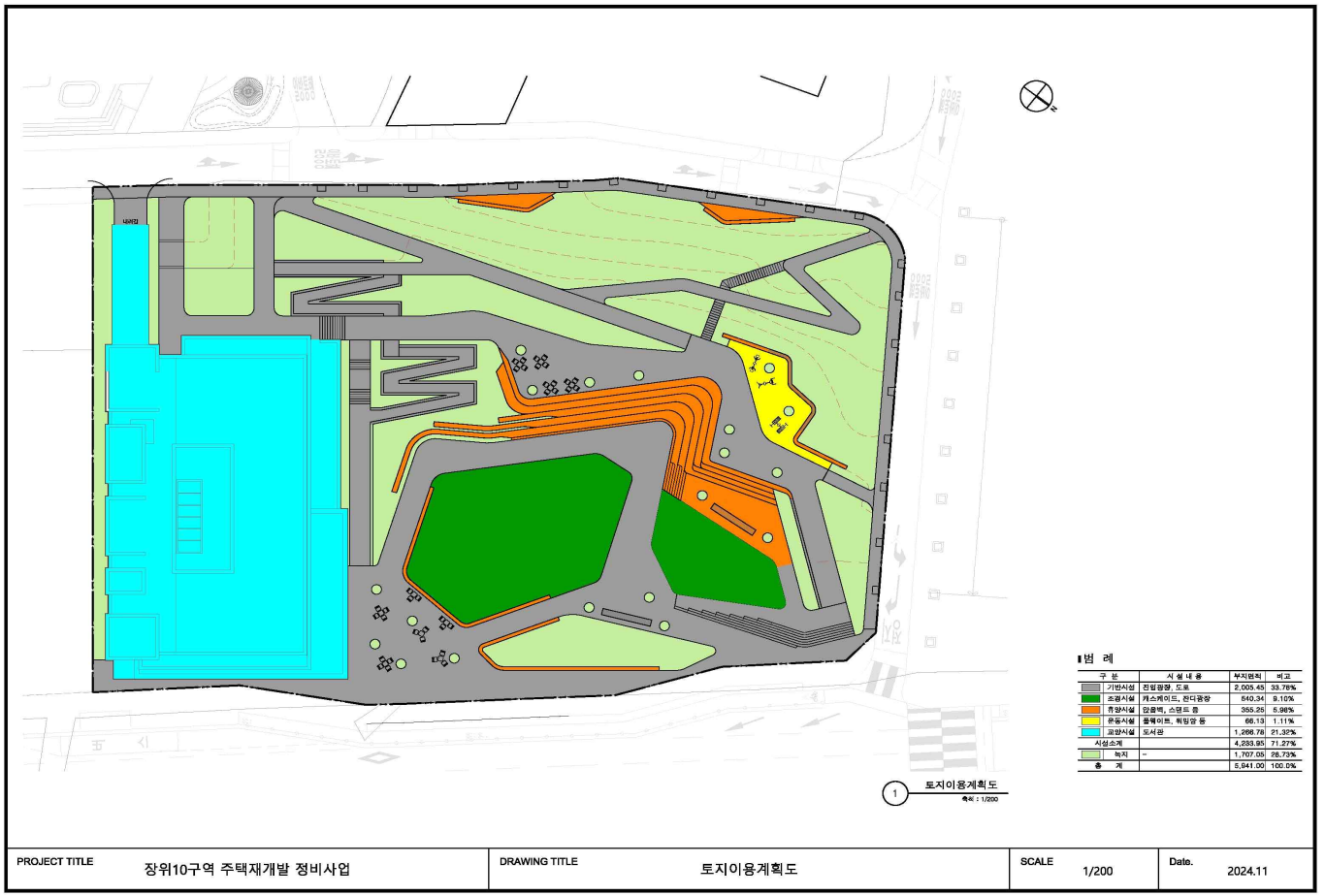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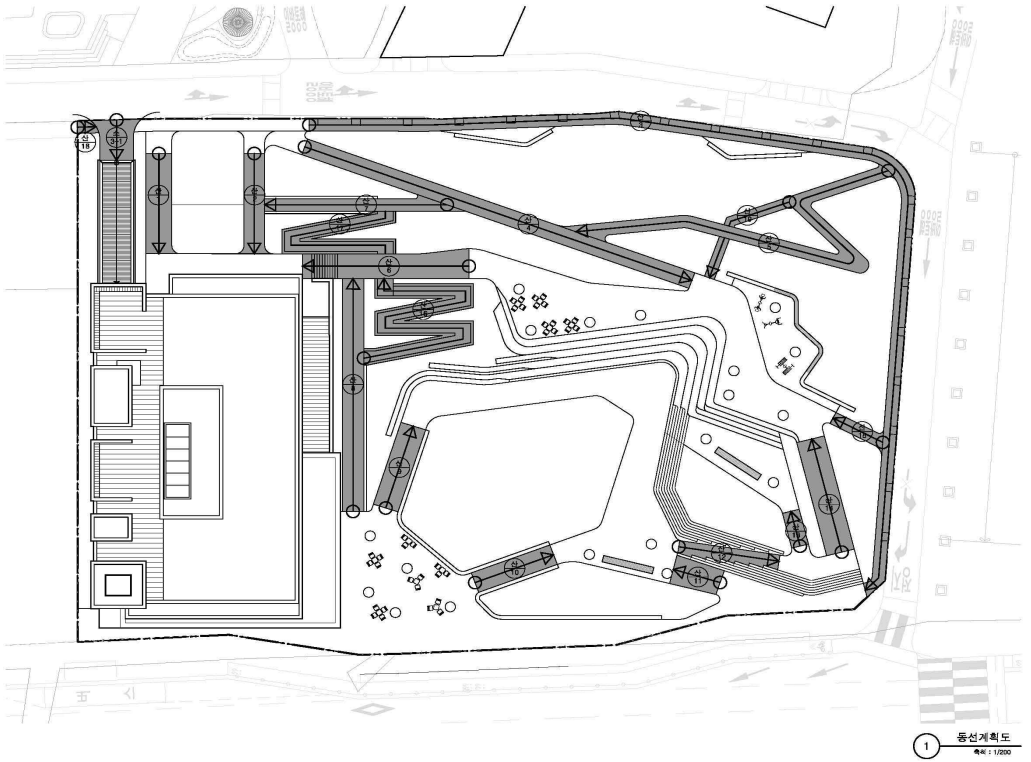
시설구분	기호	번호		시 설 명	면 적(㎡) 부지면적	면 적(㎡) 연면적	공작물	비 고
총 계					5,941.00	3,530.00	50개소	
기반시설				소 계	2,005.45		8개소	
				도로	916.41			
		가	1	진입광장-1	55.86			
			2	진입광장-2	51.86			
			3	진입광장-3	257.40			
			4	광장	259.78			
			5	진입광장-4	462.34			
			⑨	맵프A			1개소	
			⑩	맵프B			1개소	
			⑪	게더A			1개소	
			⑫	게더B			1개소	
			⑬	게더C			1개소	
			⑭	게더D			1개소	
			⑮	게더E			2개소	
조경시설				소 계	540.34		21개소	
		나-1	1	미러폰드	134.88			
		나-2	2	잔디광장	405.46			
			②	캐스케이드			1개소	
			⑰	수목보호대			20개소	
휴양시설				소 계	355.25		18개소	
		다-1	1	휴게쉼터1	67.07			
		다-2	1	휴게쉼터2	18.33			
		다-3	1	휴게쉼터3	17.47			
			①	암석A	29.04		2개소	
			③	아레테이블세트A			4개소	
			④	아레테이블세트B			6개소	
			⑤	스텐드	211.04		1개소	
			⑧	암석B			2개소	
			⑦	암석C	12.40		1개소	
			⑥	암석D			2개소	
운동시설				소 계	66.13		3개소	
		라		운동공간	66.13			
			⑯	체력단련시설			3개소	
교양시설				소 계	1,266.78	3,530.00		
		마		도서관	1,266.78	3,530.00		
녹지					1,707.05			28.73%

PROJECT TITLE	DRAWING TITLE	SCALE	Date.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성계획도	1/200	2024.10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토지이용계획(최초) 도면



장위10구역 문화공원(가칭) 동선계획(최초) 도면



1 동선계획도
축척 : 1/200

▮범 례

등 급	유 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비 고
합 계				472.04	918.41		
소 계				4.9	20.43		
소 로	3류	1	4.17	4.9	20.43	진입로	
소 계				467.14	897.98		
산책로		1	3.0	12.20	36.60	연결로	
산책로		2	2.4	12.20	29.28	연결로	
산책로		3	1.5	121.20	181.80	연결로	
산책로		4	2.0	47.75	95.50	연결로	
산책로		5	1.5	56.70	85.05	연결로	
산책로		6	3.1	19.27	59.74	연결로	
산책로		7	1.5	21.48	32.22	연결로	
산책로		8	2.5	28.30	70.75	연결로	
산책로		9	3.0	10.45	31.35	연결로	
산책로		10	2.5	9.72	24.30	연결로	
산책로		11	3.3	5.65	18.64	연결로	
산책로		12	1.65	11.75	19.39	연결로	
산책로		13	2.0	4.36	8.72	연결로	
산책로		14	3.3	14.18	46.79	연결로	
산책로		15	1.5	6.67	10.01	연결로	
산책로		16	1.84	45.07	82.93	연결로	
산책로		17	1.84	25.07	46.13	연결로	
산책로		18	1.5	2.12	3.18	연결로	
산책로		19	1.2	13.00	15.60	연결로	

PROJECT TITLE	DRAWING TITLE	SCALE	Date.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선계획도	1/200	2024.11

◈ 구로구고시 제2024-212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65호(2005.6. 2.)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1호(2008. 5. 29.)로 계획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구 로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	8~15	국지도로	172	온수동 41-4	온수동 45-22	일반도로	-	서고 제93-77호 (93.3.18.)	
변경	중로	2	12	15	국지도로	172	온수동 41-4	온수동 45-22	일반도로	-	서고 제93-77호 (93.3.18.)	

- 변경사유서

기정	변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2	중로 2-12	폭원 : 8~15m → 15m	• 장기미집행으로 부분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2)에 대하여 온수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및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경인로~온수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효된 당초 폭원으로 재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⑩	공원2	소공원	온수동 44-1	1,333	감)2	1,331	서울시고시 제2014-211호 (14.6.5)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⑩	공원2	• 면적 축소 - 1,333㎡ → 1,331㎡ (감 2㎡)	• 중로2-12 확폭에 따라 시설 저촉 부분 일부 축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⑬	전기공급 설비	온수동 산17-4일대	16,730	감)14	16,716	서울시고시 제180호 (75.11.4)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⑬	전기공급설비	• 면적 축소 - 16,730㎡ → 16,716㎡ (감 14㎡)	• 중로2-12 확폭에 따라 시설 저촉 부분 일부 축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

-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3	B3	120 418 63 46	115 418 63 46	온수동 45대 온수동 47-1대 온수동 47-2대 온수동 47-3대	648	643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 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따른 과소필지 해소 · 중로2-12 확폭에 따른 대지면적 축소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1	온수동 47-5도					
B4	B4	292 13	248 13	온수동 45-51대 온수동 109-26임	305	261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동개발(권장) 면적 축소 - 648㎡ → 643㎡	•중로2-12 확폭에 따른 대지면적 축소
2	•공동개발(권장) 면적 축소 - 305㎡ → 261㎡	•중로2-12 확폭에 따른 대지면적 축소

2)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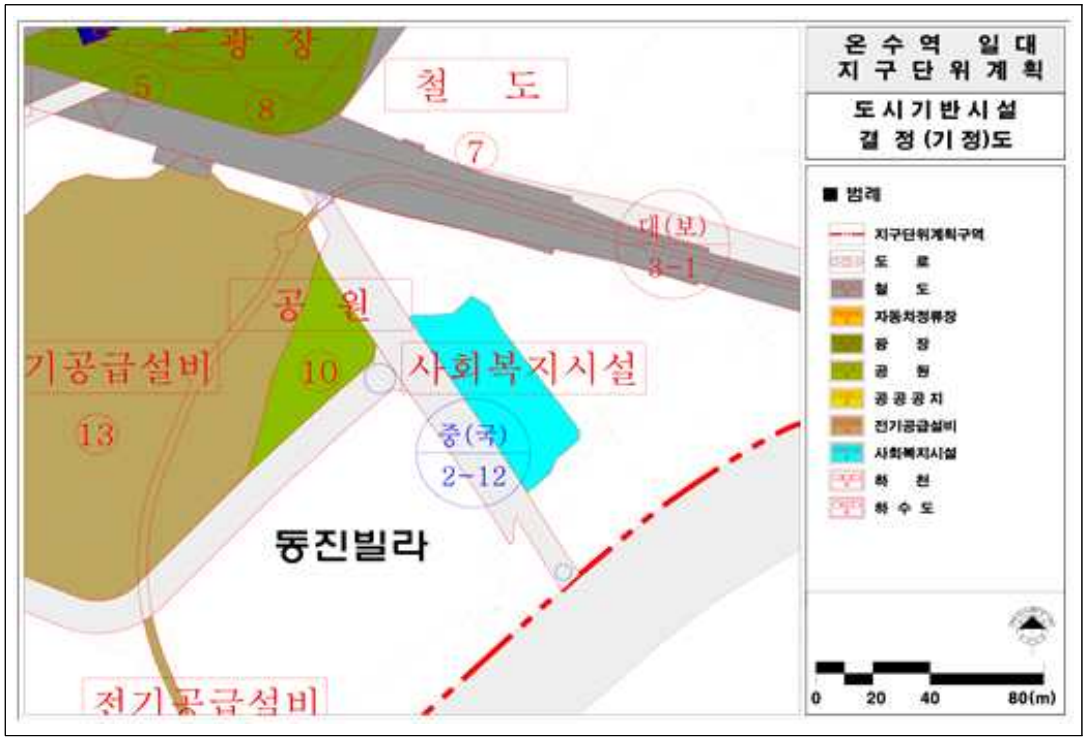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25m이상)	간선도로변(25m이상) 중로2-12 서측변	3m	• 주요 가로변 쾌적한 보행공간조성, 가로의 연속성 확보
	온수역 진입도로변	온수역 진입도로변	2m	
	이면도로변	온수역 진입도로변	2m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온수역세권 이면도로변1)	온수역 진입도로변	1m~2m	• 보행의 안정성 및 편의성 제공
벽면한계선	온수동 23-27번지 부일로변(전층)	온수역 진입도로변	6m	• 지하철 출입구 시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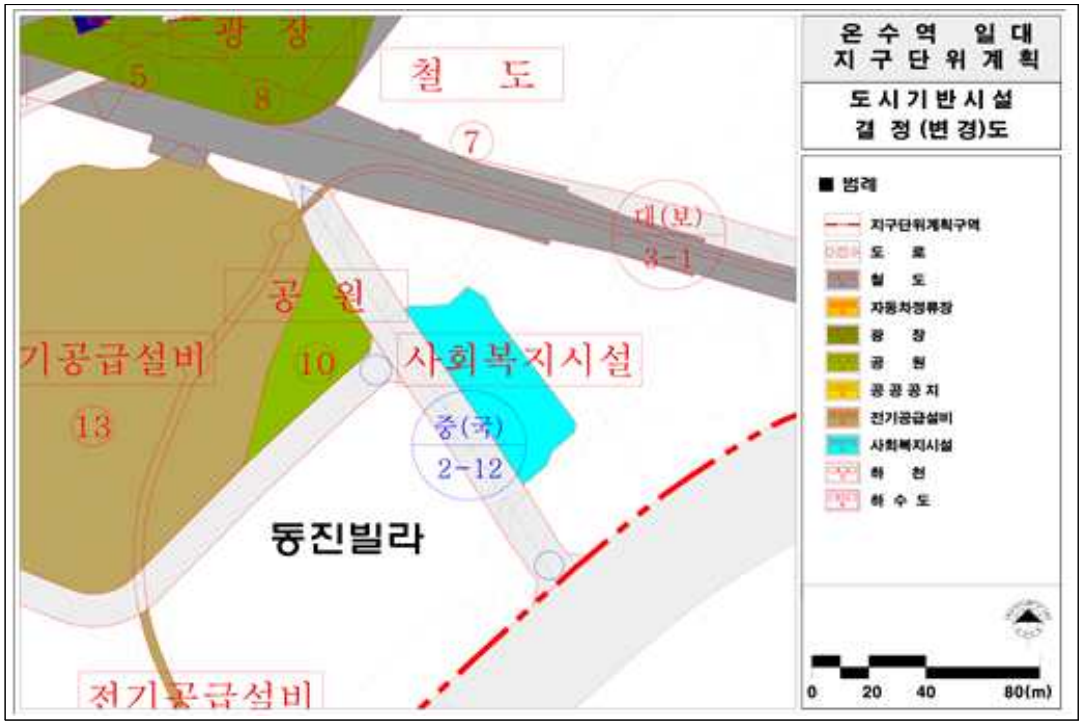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중로2-12 좌측변 건축한계선 확대 - 2m → 3m	•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한 재건축구역의 건축한계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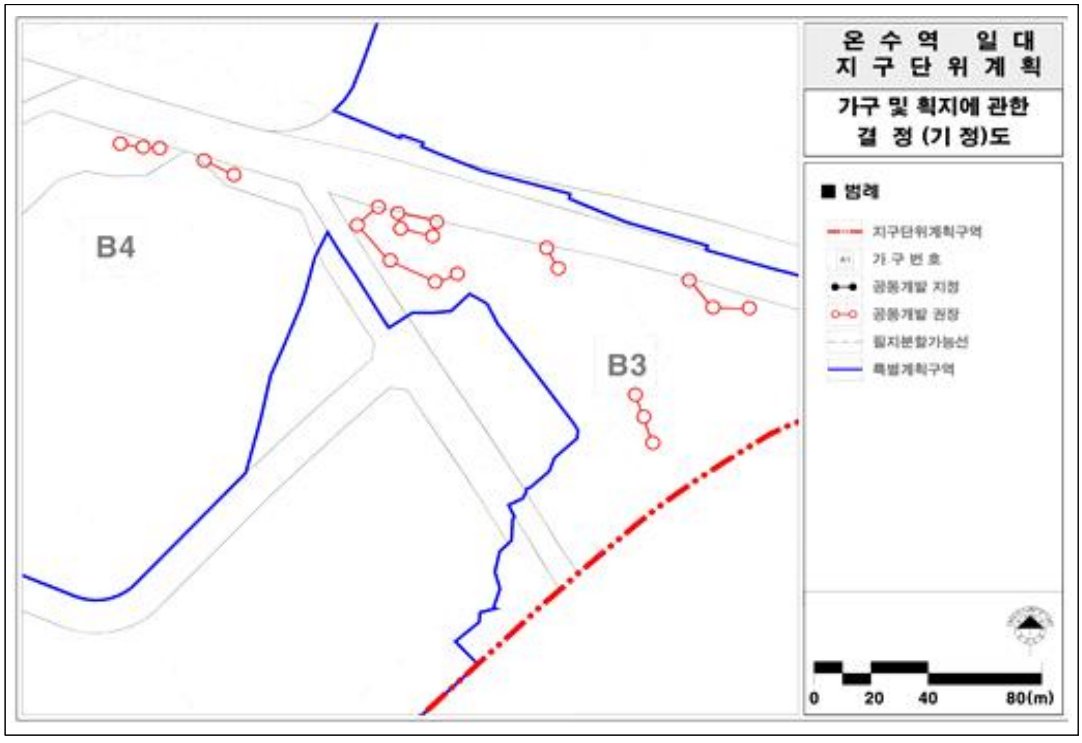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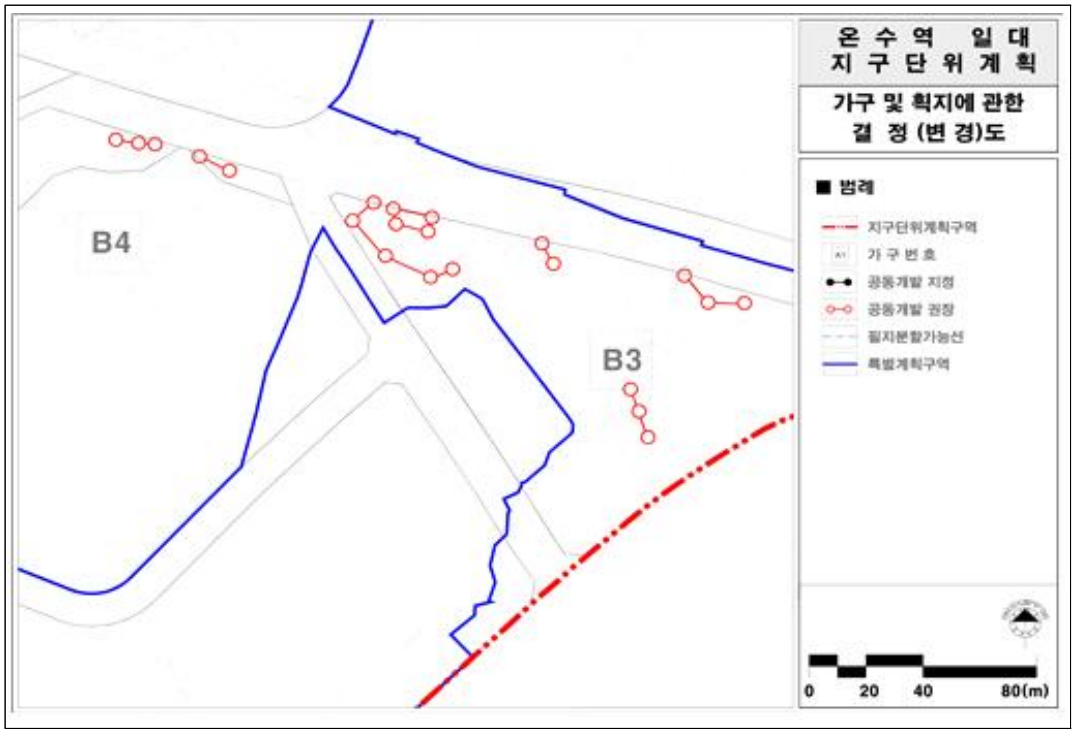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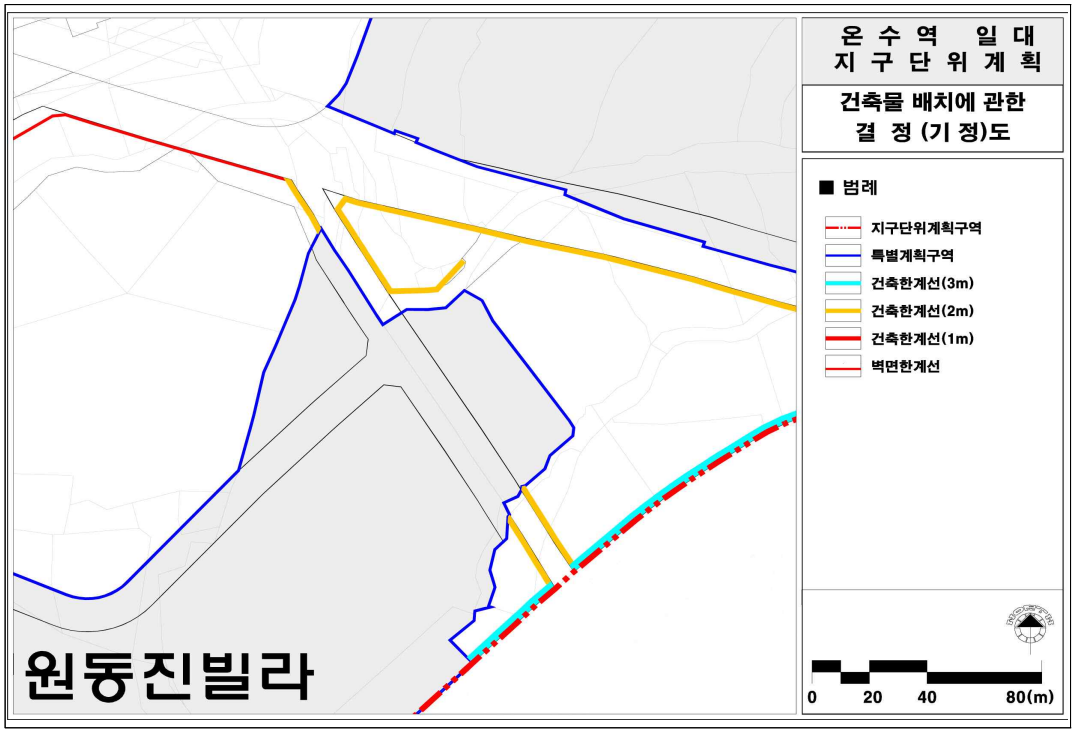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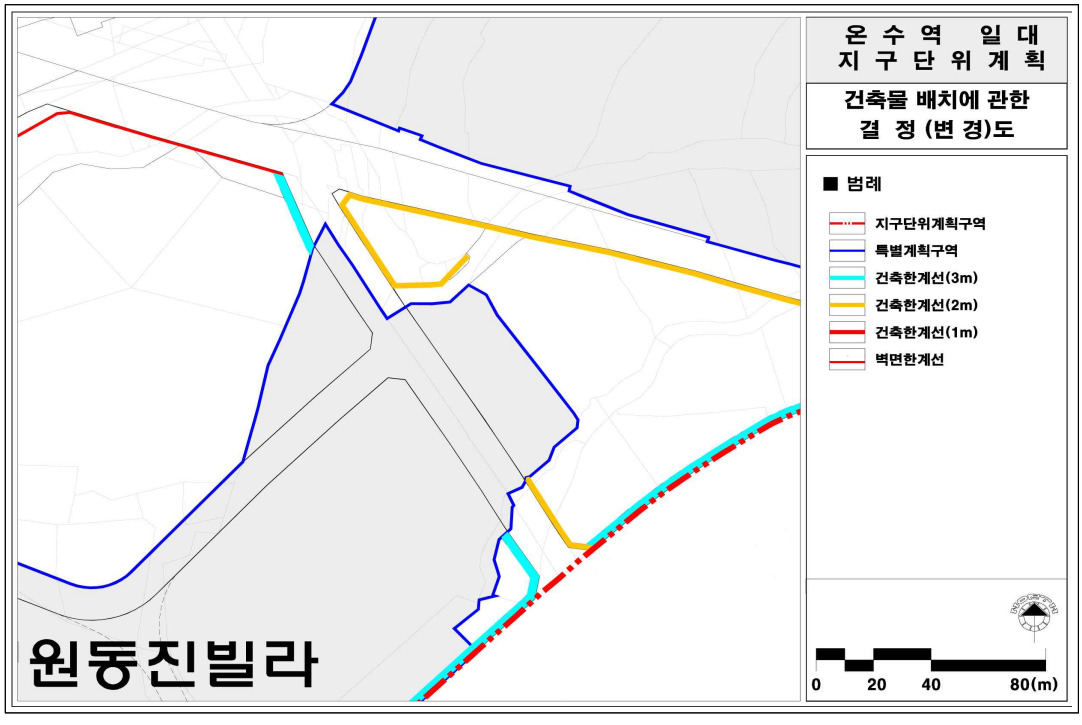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도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도



◈ 구로구고시 제2024-213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65호(2005.6. 2.)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1호(2008. 5. 29.)로 계획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구 로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25m이상)	3m	• 주요 가로변 쾌적한 보행공간조성, 가로의 연속성 확보
	온수역 진입도로변	2m	
	이면도로변	2m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온수역세권 이면도로변1)	1m~2m	• 보행의 안정성 및 편의성 제공
벽면한계선	온수동 23-27번지 부일로변(전층)	6m	• 지하철 출입구 시인성 확보

1) 일부 필지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를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계획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25m이상)	3m	• 주요 가로변 쾌적한 보행공간조성, 가로의 연속성 확보
	온수역 진입도로변	2m	
	이면도로변	2m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온수역세권 이면도로변1)	1m~2m	• 보행의 안정성 및 편의성 제공
벽면한계선	온수동 23-27번지 부일로변(전층)	6m	• 지하철 출입구 시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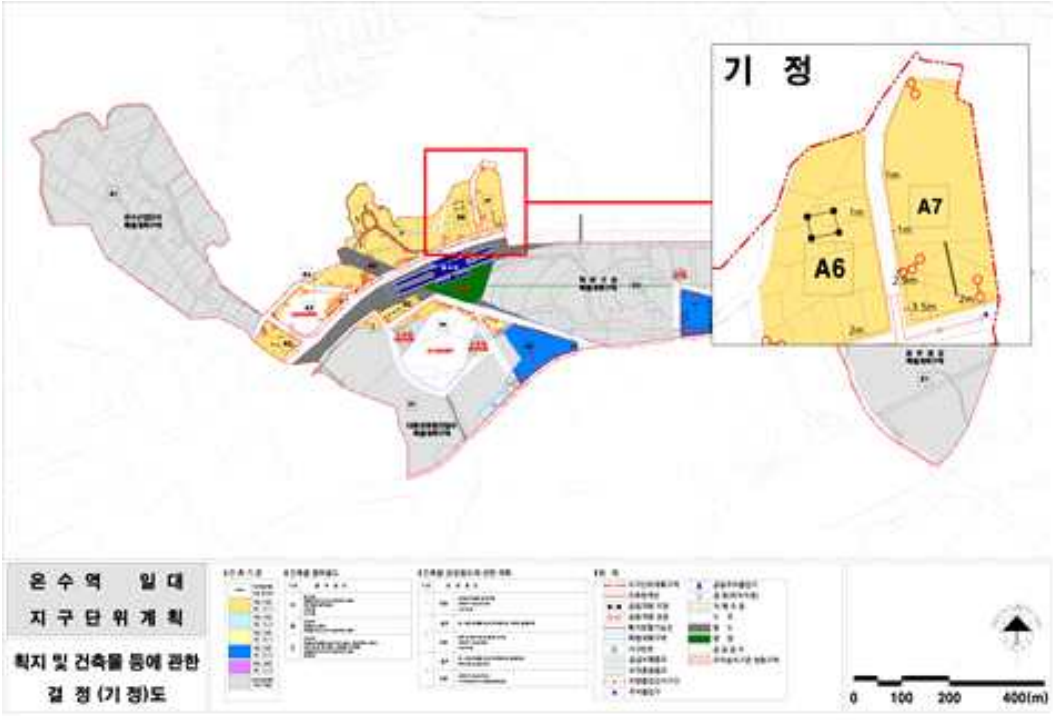
1) 일부 필지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를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계획

2) 신설 : 온수동 9-6번지 일원은 건축한계선 2.4m~2.5m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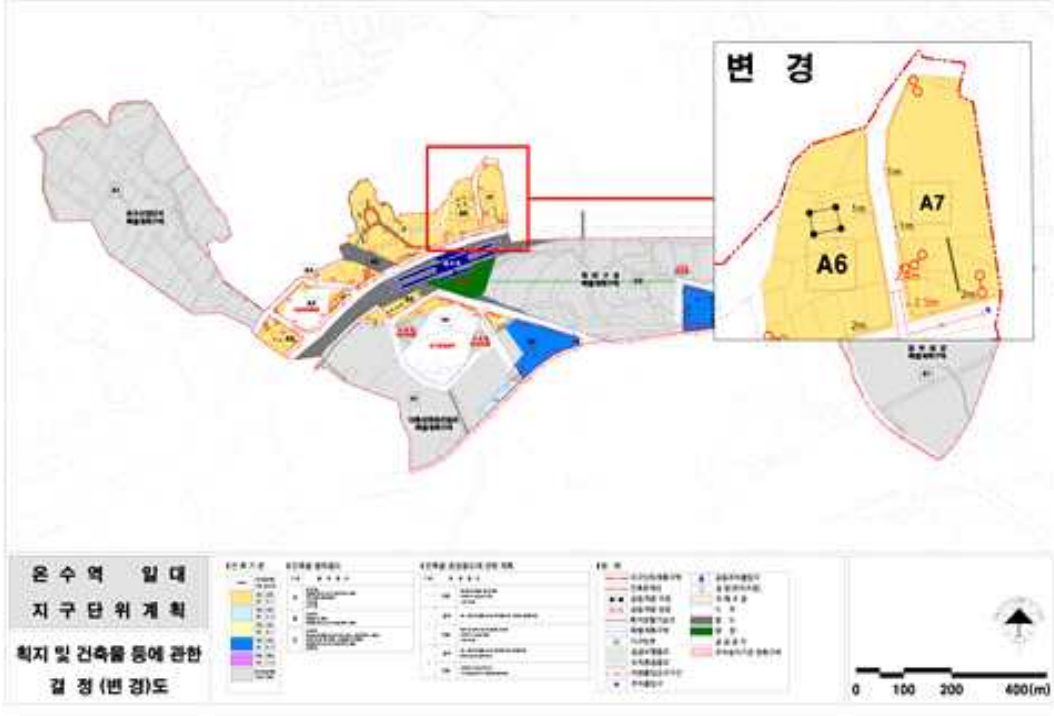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온수동 9-6 일원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 기정 : 2.9m ~ 3.5m - 변경 : 2.4m ~ 2.5m	• 인접 필지들보다 과도한 건축한계선 계획 축소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도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도



◈ 관악구고시 제2024-12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배치계획” 결정 변경]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관악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1.19.)를 통하여 의결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2023년 하반기 이후 재정비 고시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등 3개 구역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축물 배치계획(가설건축물 관련)’에 대해 다른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 결정
○ 관악구 지구단위계획 중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구역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1	은천생활권중심	양녕로 49일대	12,062	-	12,062	서고시 제2008-274호 (2008.08.07.)
2	남부순환로(시흥IC) 주변	남부순환로1369일대	44,172	-	44,172	서고시 제2013-437 (2013.12.19.)
3	사당·이수	남부순환로2080일대	72,757	-	72,757	서고시 제2015-335호 (2015.10.29.)
4	대림지역중심	시흥대로578일대	20,100	-	20,100	관악구고시 제2017-99호 (2017.12.21.)
5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신림로23길17일대	219,517	-	219,517	서고시 제2021-695호 (2021.12.16.)
6	낙성대	남부순환로1932일대	189,640	-	189,640	서고시 제2023-197호 (2023.05.25.)
7	봉천지역중심	남부순환로1820일대	573,347	-	573,347	서고시 제2016-202호 (2016.07.14.)

2 건축물의 배치계획 결정(변경)

○ 건축한계선 계획 내용에 주석 추가

- 주) 본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전 허가 및 신고된 기존 가설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3. 관계도서는 구민 편의를 위해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고시 제2024-128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6호(2024.04.11.)로 결정 고시된 우리 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관악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1.19.) 의결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관 악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민간부문시행지침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 해소 및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관된 지침 수립·운영을 위함

2.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제 17조 용적률 ② 본 지구단위계획 최초결정 이후, 당시 규정에 적합하게 신축된 건축물이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 경우로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립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본다.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은 추가된 인센티브 항목·계수변경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삭제

   ○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 경우에 따라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 삭제로 합리적 지침 정비 및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일관성·형평성 고려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변경 없음)

4. 열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61)
   ※ 고시문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24-25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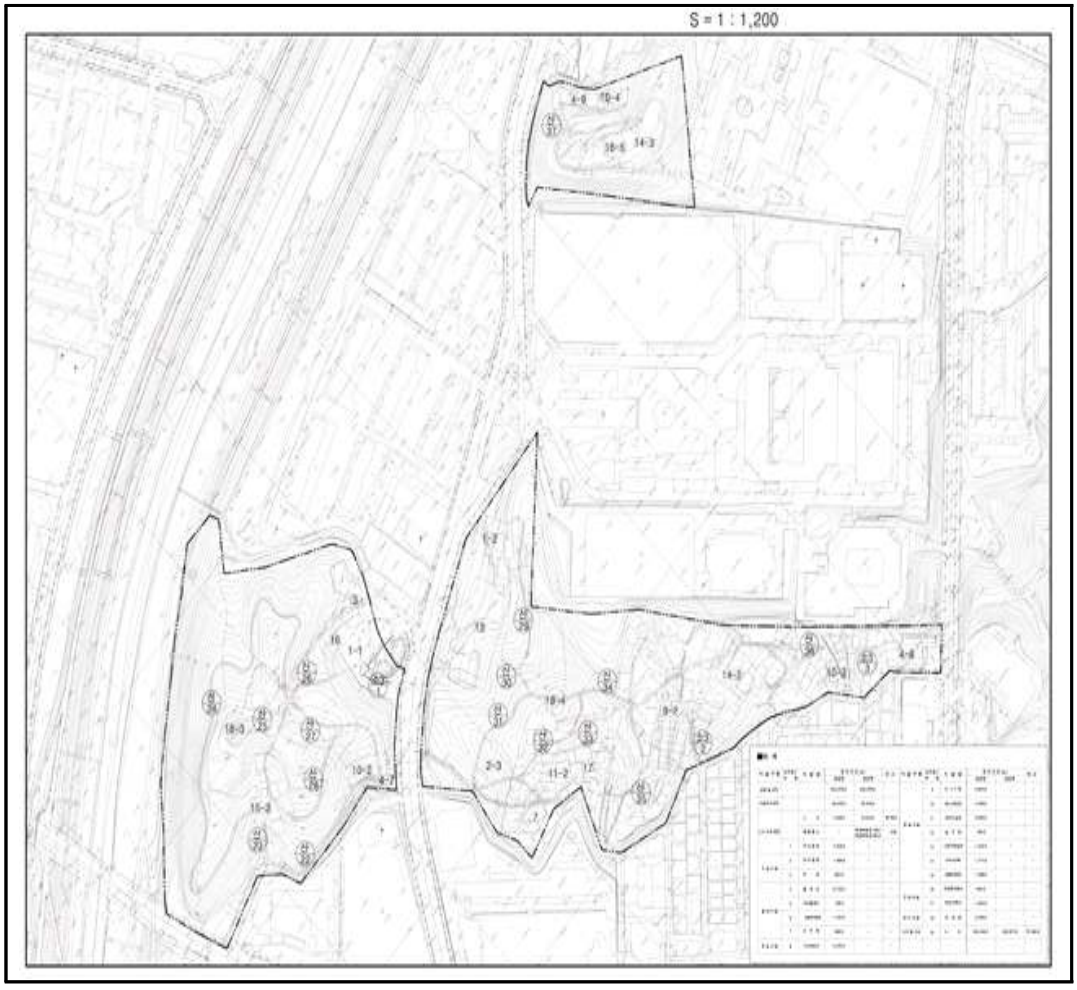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34호(1983.9.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호(2012.1.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강남구 고시 제2022-13호(2022.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강남구 공고 제2024-2509(2024.10.31.)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 작성을 위해 열람공고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일대 달터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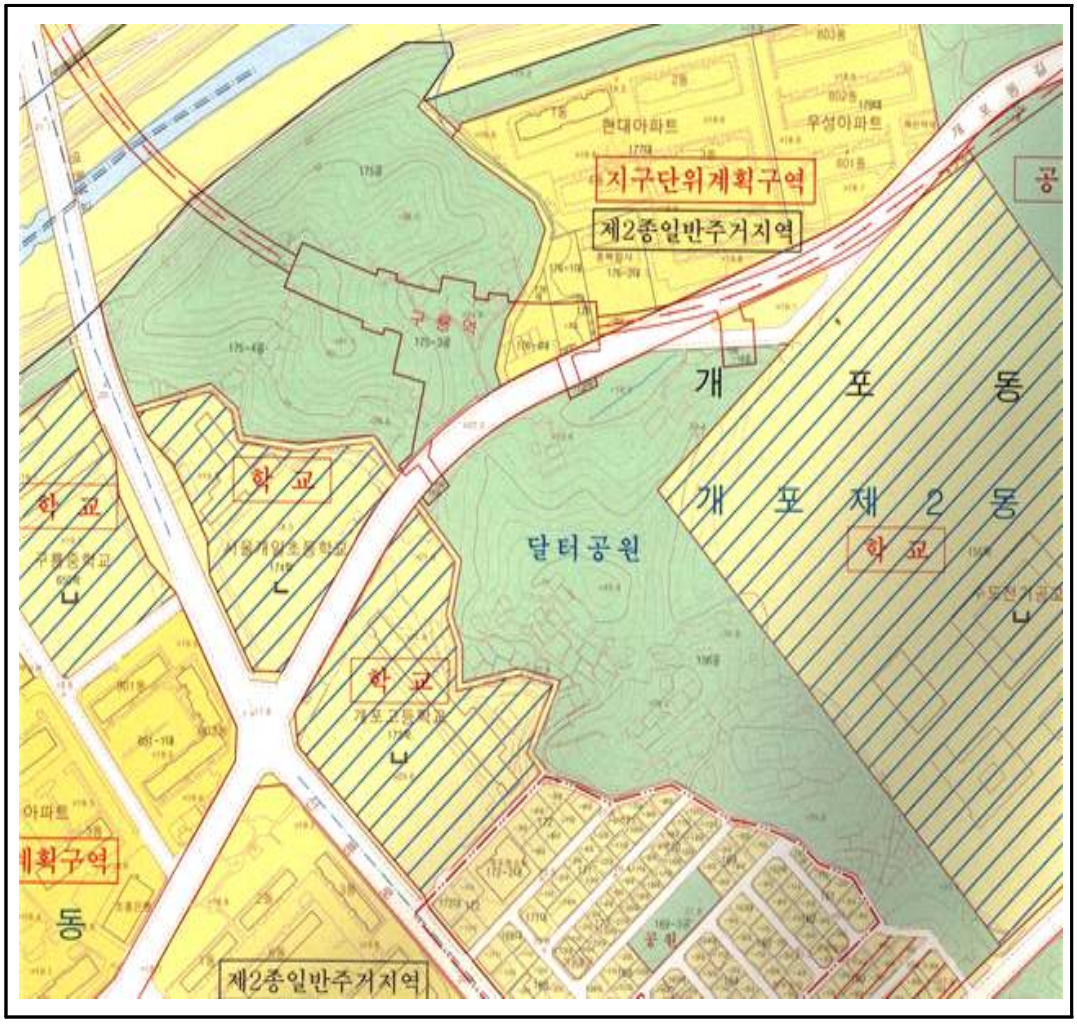
2024년 11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달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없음) : 13,373㎡
라.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 강남구청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기간(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사유 : 지장물 소유자와 보상협의 미완료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지장물) 조서(변경없음)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아. 설계도서(변경없음)
자.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변경없음)
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해당없음
카.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변경없음)
: 해당없음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간개발(☎ 02-3423-6885)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동구고시 제2024-2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3.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7.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1호(2018.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2019.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1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34호(2021.12.30.)로 결정(변경)된 천호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소로 2-16) 사업으로 결정, 강동구 공고 제2023-1084호(2023.5.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2024년 제6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심의(2024.2.15.)를 완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35호(2024.3.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천호재정비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있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67-18~397-46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천호재정비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개설(소로2-16)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폭 8~10m, 연장 550m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강동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 별도 첨부(금회 변경사항)

○ 변경사유 : 토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수용 조서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됨

8) 조합 소유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됨

9) 위치도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1)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과(☎02-3425-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천호재정비 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소로2-16) 개설 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조합명: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연번	구분	소재지	건물					이해관계인			비고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연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362-41	연와조	124.43	17.7	이*환 유*숙	서울시 중랑구영원역로 18 1**동 11**호(망우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변경				16.5						
2	변경없음	362-42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부록조	155.60	53.0	안*섭	서울시 강동구올림픽로 **길 11-29, 8**호(천호동,다***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을지**가) (본점)	채무자 안**
3	변경없음	362-47	연와조, 세멘부록조	137.12	77.0	김*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 **아파트 87-9**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 (압***앙지점)	채무자 김**
4	당초	362-48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345.30	236.0	최*정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회***가 2**(**동지점)	채무자 김**
	변경				292.0	최*정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회***가 2**(**동지점)	채무자 김**
5	당초	382-13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벽돌조	252.54	157.0	선*규	부천시 원미구 상동 2**-** 3층				
						김*이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				
						장*호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로 200, 1**동 22**호				
	변경				196.0	선*규	부천시 원미구 상동 2**-** 3층				
						김*이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				

연번	구분	소재지	건 물					이해관계인			비 고
			구조 및 규격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연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장*호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로 200, 1**동 22**호				
6	당초	382-12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244.02	180.0	김*화 임*섭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7길 8*-**, 1*호 (명일동, **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회현**가) (명**지점)	채무자 임**
	변경				233.0	김*화 임*섭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7길 8*-**, 1*호 (명일동, **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회현**가) (명**지점)	채무자 임**
7	변경없음	382-8	세멘벽돌조, 연와조	145.45	53.0	이*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길 **(천호동)				
8	변경없음	382-7	세멘벽돌조, 연와조, 경량철골조	199.24	44.0	조*운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1, 1**동 3***호 (암사동,강동롯******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대로9길 2* (태평**가) (*동지점)	채무자 조**
9	변경없음	382-1	세멘벽돌조, 연와조	163.21	42.0	김*화	서울시 강동구 길동1-1 삼****쇤 5**-1**				
10	당초	386-19	철근콘크리트조	365.41	32.0	강*모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동 1***호 (방이동,올*****자촌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태평**가) (**동지점)	채무자 강**
	변경				50.0						
11	변경없음	386-11	철근콘크리트조	245.46	2.0	강*모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동 1***호 (방이동,올*****자촌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태평**가) (**동지점)	채무자 강**
12	당초	387-6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174.86	41.0	황*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0길 15-**, 2**호(방이동, ****빌라)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길 26 (여**동) (강***역지점)	채무자 김**
						김*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번길 67,7411동 2***호 (다산동,다산******타운2.0)				
	변경				54.0	황*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0길 15-**, 2**호(방이동, ****빌라)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길 26 (여**동)	채무자 김**

연번	구분	소재지	건 물					이해관계인			비 고
			구조 및 규격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연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김*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번길 67,7411동 2***호 (다산동,다산******타운2.0)			(강***역지점)	
13	당초	387-26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421.57	64.0	김*성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 4**호				
	변경				83.0			근저당권설정	**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2**, *층, *층	채무자 주식****
14	당초	387-27	철근콘크리트조	145.30	32.0	이*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2**동 6**호 (호성동1가,호성동진흥더******아파트)				
	변경				48.0	이*수	세종시 다정북로 1**, 2**동 1801호(다정동, 가**을2단지)				
15	당초	387-24	철근콘크리트조	350.93	32.0	이*호 이*자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 (천호동)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 (을지**가) (**역지점)	채무자 이**
	변경				18.0						
16	변경없음	393-8	연와조	29.24	14.0	오*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6*(천호동)				
17	변경없음	393-20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부록조	329.22	37.0	한국** 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구*동)				
18	변경없음	397-3	철근콘크리트조	1731.22	58.0	고*천 곽*애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 웨***동 18**호(삼성동, 아***삼성동)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 (을지**가) (압**금융센터지점)	채무자 고**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천호재정비 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소로2-16) 개설 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조합명: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358	대	652.5	29.3	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 1**동 9**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 (을지**가) (**동지점)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지**가) (**동지점)	
									주식회사 **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 16층 (**동) (동***전문출장소)	
									김*영	구리시 체육관로 6* 2**동 14**호(교문동 **아파트)	
	변경				0	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 1**동 9**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 (을지**가) (**동지점)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지**가) (**동지점)	
									주식회사 **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테헤란로1**, 16층 (**동) 동***전문출장소)	
									김*영	구리시 체육관로 6* 2**동 14**호(교문동 **아파트)	
2	당초	367-1	도	2,900.4	1,493.9	강동구					
	변경	367-18		1493.9	1,493.9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변경없음	375	도	378.1	378.1	서울시					
4	당초	362-37	대	196.1	1.1	윤*종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 1**길 1*-*				
						김*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2**동 203호(역*동,역***파크)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2* (여**동)(**역지점)	
	변경	362-71	대	1.1	1.1	주식회사**** *니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 *동 429호 (망*동, 마********스)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가)(**동지점)	
5	당초	362-40	대	227.1	5.1	이*우	서울시 강동구 **길 6*, *층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2* (여**동)	
	변경	362-72		5.1	5.1						
6	당초	362-69	대	127.2	0.7	강*인	서울시 강*****픽로 8*길 11, 3**호(**동,삼****우스)	근저당권설정	천* **금고	서울시 강동구 구**로 2** (**동)	
	변경	362-78		0.7	0.7			(없음)			
7	당초	362-41	대	76.4	17.5	이*환	서울시 중****역로 18 1**동 1***호(**동, 금*****파트)				
						유*숙	서울시 중랑구영원역로 18 1**동 1***호(**동, 금****아파트)				
	변경	362-73		17.5	17.5	이*환	서울시 중****역로 18 1**동 1***호(**동, 금*****파트)				
						유*숙	서울시 중랑구영원역로 18 1**동 1***호(**동, 금****아파트)				
8	당초	362-42	대	143.7	39.8	안*섭	서울시 강동****로 7*길 11-**, 8**호(천호동,다**티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을*로 6* (을***가) (본점)	
	변경	362-74		39.8	39.8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	당초	362-46	도	219.7	16.5	강동구					
	변경	362-75		16.5	16.5						
10	당초	362-47	대	147.2	55.1	김*식	서울시 강남구 압**동 4** 현**파트 8*-9**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태***가 1** (압***앙지점)	
	변경	362-76		55.1	55.1						
11	당초	362-48	대	154.8	86.5	최*정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김*성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회***가 2** (**동지점)	
	변경	362-77		86.5	86.5	최*정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회***가 2** (**동지점)	
						김*성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회***가 2** (**동지점)	
12	당초	382-30	도	227.0	47.0	강동구					
	변경	382-44		47.0	47.0						
13	당초	382-31	도	57.0	40.0	서울시					
	변경	382-45		40.0	40.0						
14	당초	382-13	대	99.0	61.0	선*규	서울시 강동구 구**로 3*길 4*				
						김*이	천호동 3**-1*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장*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순환로 2*0, 1**동 22**호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순환로 2*0, 1**동 22**호				
	변경	382-43		61.0	61.0	선*규	서울시 강동구 구**로 3*길 4*				
						김*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1*				
						장*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순환로 2*0, 1**동 22**호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순환로 2*0, 1**동 22**호				
15	당초	382-12	대	129.0	72.0	김*화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길 8*-1*, 1**호 (**동, **아파트)				
						임*섭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길 8*-1*, 1**호 (**동, **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소*로 5* (회***가) (**동지점)	
	변경	382-42		72.0	72.0	김*화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길 8*-1*, 1**호 (**동, **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소*로 5* (회***가) (**동지점)	
						임*섭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길 8*-1*, 1**호 (**동, **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소*로 5* (회***가) (**동지점)	
16	당초	382-35	잡	292.0	114.0	김*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 , 덕****대흠타운 1**-60*				
	변경	382-46		114.0	114.0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당초	382-8	대	132.0	36.0	이*운	천호동 3*-*				
	변경	382-41		36.0	36.0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				
18	당초	382-7	대	142.0	28.0	조*운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 10*동 3***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길 20 (태***가) (*동지점)	
	변경	382-40		28.0	28.0						
19	당초	382-1	대	165.0	35.0	김*화	서울시 강동구 길동1-1 삼****쇤 5**-1**				
	변경	382-39		35.0	35.0						
20	당초	386-19	대	238.0	31.0	강*모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동 1***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길 2* (태***가) (**동지점)	
	변경	386-27		31.0	31.0						
21	당초	386-22	도	474.0	22.0	강동구					
	변경	386-28		22.0	22.0						
22	당초	386-11	잡	165.0	20.0	강*모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 2**동 1***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길 20 (태***가) (**동지점)	
	변경	386-26		20.0	20.0						
23	당초	386-2	대	331.0	27.0	윤*호	경기도 광명시 기****번길 8, *동 지***호				
	변경	386-25		27.0	27.0						
24	당초	387-6	대	99.0	23.0	황*희	서울시 송파구 가*로 4*길 15-**, 2**호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김*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로14*번길 67,7***동 2***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26(여**동)(강**청역지점)	
	변경	387-54		23.0	23.0	황*희	서울시 송파구 가*로 4*길 15-**, 2**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26(여**동)(강**청역지점)	
						김*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로14*번길 67,7***동 2***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26(여**동)(강**청역지점)	
25	당초	387-7	도	205.0	6.0	최*영	종로구 청진동 1**				
	변경	387-55		6.0	6.0						
26	당초	387-26	대	116.0	23.0	김*성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리 4**				
	변경	387-58		23.0	23.0			근저당권설정	**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2**, *층, *층	
27	당초	387-40	대	112.0	26.0	김*성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리 4**				
	변경	387-60		26.0	26.0			근저당권설정	**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2**, *층, *층	
28	당초	387-11	도	278.0	6.0	최*영	종로구 청진동 1**				
	변경	387-56		6.0	6.0						
29	당초	387-27	대	116.0	37.0	이*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6,2**동 6**호				
						이*수	세종시 다정북로 1**, 2**동 18**호(다*동, 가온***단지)				
	변경	387-59		37.0	37.0	이*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6,2**동 6**호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수	세종시 다정북로 1**, 2**동 18**호(다*동, 가온***단지)				
30	당초	387-24	대	231.0	47.0	이*호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천호동)				
						이*자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천호동)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가) (**역지점)	
	변경	387-57		47.0	47.0	이*호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천호동)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가) (**역지점)	
						이*자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천호동)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가) (**역지점)	
31	당초	393-8	대	225.0	23.0	오*일	천호동 3**-*				
	변경	393-50		23.0	23.0						
32	당초	393-20	대	178.0	19.0	한국 **기술원	대전광역시 유*구 대*로 2**(구*동)				
	변경	393-51		19.0	19.0						
33	당초	393-2	도	1,279.0	31.0	국					
	변경	393-49	도	31.0	31.0						
34	변경없음	359-7	대	238.6	3.7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35	변경없음	374	도	1,130.5	36.3	강동구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36	변경없음	438-1	대	142.0	48.5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천***운지점)	채무자 김**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7	변경없음	375-54	도	28.1	28.1	서울시					
38	변경없음	423-19	대	268.0	54.4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39	변경없음	423-262	도	29.0	29.0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40	변경없음	423-56	대	69.0	6.7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41	변경없음	423-263	도	66.0	21.3	강동구					
42	변경없음	423-247	도	2.0	2.0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43	변경없음	423-78	대	130.0	35.4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44	변경없음	423-145	대	221.0	86.9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근저당권설정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동 4**-3* (**지점)	채무자 전**
45	변경없음	423-1	도	193.0	12.7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46	변경없음	423-3	대	93.0	51.3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근저당권설정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로 3**(**동) (***지점)	채무자 신**
47	변경없음	423-118	대	149.0	32.5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근저당권설정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로 3**(**동) (***지점)	채무자 임**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8	변경없음	423-85	도	210.0	3.0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49	당초	422-1	대	356.0	22.6	김*담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 9*6, 4**동 3**호				
						최*혜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 9*6, 4**동 3**호				
						박*대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2*길 6*, 10**호(**동)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변경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층				
50	변경없음	423-250	도	56.0	23.9	강동구					
51	변경없음	382-37	도	13.0	2.4	강동구					
52	당초	423-297	도	48.0	44.0	강동구					
	변경	423-305		44.0	44.0						
53	당초	405-1	도	60.0	28.0	김*호	성동구 용*동 4*-*				
						정*성	강동구 **동 2**-*				
						권*정	경기도 파주시 마**길 1**, 2**동 4**호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변경	405-10	도	28	28	김*호	성동구 용*동 4*-*				
						정*성	강동구 **동 2**-*				
						권*정	경기도 파주시 마**길 1**, 2**동 4**호				
54	변경없음	397-402	도	5,427.0	1,030.0	강동구					
55	당초	399-47	도	755.0	4.0	서울시					
	변경	399-62		4.0	4.0						
56	당초	398-1	도	132.0	119.0	조*수	강서구 화*동 5*-6**	가압류	국	처분청 : **세무서장	
						조*수	미합중국인디애나주포***시크로 바가2***				
						조*희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북미***드시웨***우가 4***번지				
						조*수	강서구 화*동 1***-*				
						조*수	미합중국인***주포테****무엘슨가2***				
	변경	398-12		119.0	119.0	조*수	강서구 화*동 5*-6**	가압류	국	처분청 : **세무서장	
						조*수	미합중국인디애나주포***시크로 바가2***				
						조*희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북미***드시웨***우가 4***번지				
						조*수	강서구 화*동 1***-*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조*수	미합중국인***주포테****무엘슨가2***				
57	당초	398-4	도	106.0	93.0	김*창	중랑구 망*동 5**-**				
						채*남	천호동 1**-2*				
						채*남	천호동 1**-2*				
						문*곤	경기도 광주시 중*면 산*리 1***-* 지***호				
	변경	398-13		93.0	93.0	김*창	중랑구 망*동 5**-**				
						채*남	경기도 남양주시 **읍 덕소로*번길 **, 1**동 1**3호(덕소강변삼익아파트)				
						문*곤	경기도 광주시 중*면 산*리 1***-* 지***호				
58	당초	397-3	대	350.0	16.0	고*천	서울시 강남구 영**로 6**, 웨**윙동 1***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가) (***금융센터지점)	
	변경	397-469		16.0	16.0	고*천	서울시 강남구 영**로 6**, 웨**윙동 1***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가) (***금융센터지점)	
						곽*애	서울시 강남구 영**로 6**, 웨**윙동 1***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을***가) (***금융센터지점)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24-1474호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09.07.)로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15) 및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853,744.4 (3,76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 (2023.09.07.)	-

※ ( )는 금회 변경 대상지 면적임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53,744.4	-	853,744.4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3,771.2	-	73,771.2	8.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2,288.4	-	42,288.4	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736,835.7	감) 3,769.0	733,066.7	85.9	-
	준주거지역	-	증) 3,769.0	3,769.0	0.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49.1	-	849.1	0.1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3,769	500% 이하	• 서빙고역세권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함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원	114,584.8	-	건설부고시 제1976-131호	신동아 아파트

※ 당초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7호(2024.06.27.)로 폐지되었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변경없음, 기재생략)

2)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07	20~25	보조간선	288	용산동6가 69-11	서빙고동 271-88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5호 (1979.07.12.)	이촌로

※ 상기 도로 외 기재 생략

나. 공간시설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기재생략)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신설)

가. 획지1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계획

구 분	계획기준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 주거용도전환비율 (80%)의 5%	4%	부지면적의 22.75% 이상	•공공기여율 : 총 67.11%(2,529.4㎡) ① 지역필요시설 : 2.98%(112.6㎡) ② 기반시설 : 64.12%(2,416.8㎡)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증가용적률(400% -250%)의 1/2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18.75%			

구 분	계획기준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 증가용적률(500% - 400%)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확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50%p 이상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50.04%p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886.04㎡)	-

□ 공공기여시설 세부계획

구분	공공기여 면적				연면적	위치 및 규모	비고 (관리청)
	계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기여율			
지역필요시설 (데이케어센터)	112.6㎡	87.4㎡	25.2㎡	2.98%	808.59㎡	지상1층	용산구
기반시설 (미집행 도로)	2,416.8㎡	2,416.8㎡	-	64.12%	-	용산구 6가 69-166번지 외 2필지/ 3,86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349.8㎡	349.8㎡	-	9.28%	3,236.39㎡	18세대	서울시

주1) 공공기여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용도계획 상 '[별표1] 입지여건별 비주거시설 비율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 적용함

주2)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로 매입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건축물)은 토지, 건축물 모두 기부채납함

주3) 공공기여량은 탁상감정가액(43,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하였으며, 건축심의 전 공공시설등 부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여 계획을 확정하여야 함

주4) 지역필요시설 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23-794호, ' 23.12.21)' 및 '분양가상한제 지하층 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24-497호, ' 24.9.13)' 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후 적용

※ 도로(용산동6가 69-166번지, 69-168번지, 서빙고동 271-105번지) 기부채납 면적(3,867㎡)은 획지와 도로 용도지역 가중치(0.625) 적용하여 2,416.8㎡로 공공기여율 산정

※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변경)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가구	-	• 6m 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25개소
계획단위	특별계획구역	• 정비사업 추진단지(추진위 승인 ~ 준공전) • 미추진 단지 중 부지면적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10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 계획적으로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도입이 필요하나 다수의 이해 관계자로 구성되어 주민의 동의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구역	2개소
	(신설) 획지	• 계획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획지선으로 구획된 일단의 지역	1개소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과소필지)	2개소
	(변경) 공동개발(권장)	• 기 건축된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 ※ 도로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연접된 필지간 통합적 공동개발 가능	22개소 → 21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 2필지 이상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함 •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개발,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시 RA-3코드 기준 적용 가능 - 연접된 아파트단지와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공동개발을 권장함	舊 개발 잔여지

※ 특별계획가능구역1 해제 시 각 필지별 주거전환에 대한 공공기여는 가구(H) 내 도로 확보를 우선하도록 함 (공공기여 면적외 미확보 되는 도로부지는 공공에서 확보하도록 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 분	변경내용
-	획지계획 신설	•계획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획지선으로 구획된 일단의 지역에 대한 개발단위 기준 신설
-	공동개발(권장) 변경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개발(권장) 변경

2)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기재생략)

3) 공동개발(지정) (변경없음, 기재생략)

4) 공동개발(권장)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대지면적(㎡)	비고
폐지	X	3,769.0	용산동6가 69-167	3,390.0	• 신동아쇼핑
			서빙고동 271-106	379.0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지 외 기재 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 분	변경내용
-	공동개발 폐지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획지 신설에 따른 공동개발(권장) 폐지

5)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없음, 기재생략)

6)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신설)

구분	가구번호	획지 번호	면 적(㎡)	위 치	대지면적(㎡)	비고
신설	X	1	3,769.0	용산동6가 69-167	3,390.0	• 신동아쇼핑
				서빙고동 271-106	379.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획지 신설	• 동일 소유자 토지인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획지 신설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1) 권장용도 (변경없음, 기재생략)

2) 허용용도 (변경없음, 기재생략)

3) 불허용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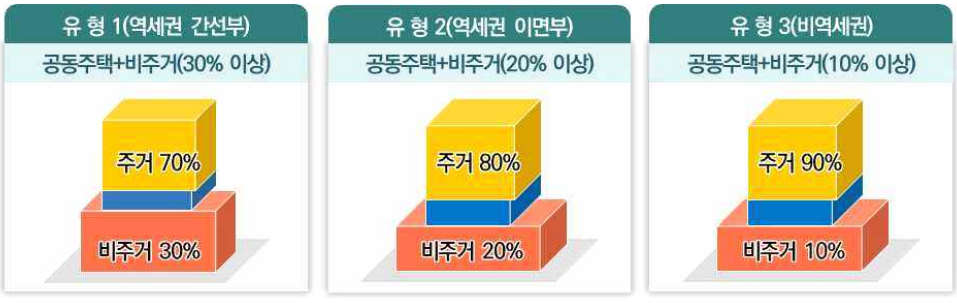
□ 기정

구 분	도면표시	전층 불허용도	비고
불허용도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지목상 "종" 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6. 종교시설 이외 용도	-
	B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C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불허용도	D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이외 용도	-

※ 허용용도 가 / 불허용도 B 용도계획은 사업부지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외 경우는 불허용도 A 적용 가능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 [별표 1] 입지여건별 비주거시설 비율 가이드라인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공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천㎡ 미만 5%, 1만㎡ 이상 10% ※ 도시계획시설(시장) 해제기준 준용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불허용도 C에 해당하는 필지 또는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변경

구 분	도면표시	전층 불허용도	비고
불허용도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지목상 "종" 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6. 종교시설 이외 용도	-
	B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C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
	D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이외 용도	-

※ 허용용도 가 / 불허용도 B 용도계획은 사업부지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외 경우는 불허용도 A 적용 가능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불허용도 A, C 적용)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의 '[별표1] 입지여건별 비주거시설 비율 가이드라인' 준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C	• 불허용도 변경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허용

4) 지정용도 (신설)

구 분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1	저층부 (1~2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서점, 사진관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획지1

※ 저층부(1~2층) 지정용도는 각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확보한 경우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봄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분 면적 제외)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지정용도 신설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한하여 가로활성화 및 기존 업무기능 도입 유도를 위해 저층부(1~2층) 지정용도 지정

나.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1) 건폐율 계획 (변경)

구 분	건 폐 율		코드구분
	기 정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CN-1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50% 이하	RA-3, RA-(3), RG-3, CG-3, CG-(3), CN-3, CN-3(이면부), CN-(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적용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적용	RA-3(정비계획 결정)
준주거지역	-	60% 이하	획지1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변경없음, 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변경 - 기정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변경 : 준주거지역 60% 이하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된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계획 신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2) 용적률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용적률			비고	코드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CN-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RA-(3)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	RA-3

구 분	용적률			비고	코드구분
	기준	허용	상한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 RA-3을 적용	RG-3
					CG-3
					CN-3
					CN-3 (이면부)
	200%이하	230%이하	250%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 RA-(3)을 적용	CG-(3)
					CN-(3)
	-	-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적용	RA-3 (정비계획 결정)

※ 기준용적률 200%,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20%(코드 RA-(3)의 경우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위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준공된 단지(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기존 중심시설용지 및 개발잔여지는 역세권 사업 충족시 해당사업별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 가능하며,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까지만 용도지역 상향 가능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2006년 용도지역 상향부지(RA-(3), CG-(3), CN-(3))는 재건축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10% 별도 이행

※ RA-3, RA-(3) 중 사업부지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RG-3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단, 2006년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기준/허용/상한 용적률은 200%/230%/250%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 변경

구 분	용적률			비고	코드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CN-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300%이하	-	RA-(3)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	RA-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 RA-3을 적용	RG-3
					CG-3
					CN-3

구 분	용적률			비고	코드구분
	기준	허용	상한		
					CN-3 (이면부)
	200%이하	230%이하	250%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 RA-(3)을 적용	CG-(3)
					CN-(3)
	-	-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적용	RA-3 (정비계획 결정)
준주거지역	250%이하		500%이하	-	획지 1

※ 상기 신설 규정 외 변경없음, 기재 생략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변경없음, 기재생략)

□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변경없음, 기재생략)

□ 허용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 기정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 250%/250%/법적용적률 2배이하 - 변경 : 획지1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한해 준주거지역 기준(허용)/상한 250%/500% 이하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 계획 신설

□ 획지1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	공공 기여율	•주거용도 전환 4%[주1)]	부지면적의 22.75%	•부지면적의 67.11% - 지역필요시설 : 2.98% - 미집행 도로 : 64.12%주2)	기준 (허용)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5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한함
		•부지면적의 18.75%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조례에 따른 임대 주택 확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50%p 이상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주3))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50.04%p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886.04㎡)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지상 용적률 10% 이상	•주거 79.91%, 비주거 20.01%		
		•전체 연면적 20% 이상주1)	•주거 74.25%, 비주거 25.75%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 59㎡, 84㎡ 계획		
		•민간분양주택 : 기준 없음	•민간주택 - 59㎡, 84㎡ 계획		
		•공공주택과 민간분양주택 상호간의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분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합을 고려한 건축계획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민간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차별없는 공급 계획		
건축물 형태		•3가지 사항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보전(해당 시)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적용 •친환경 건축물:적용 •역사문화보전:해당없음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주민공동시설 461.14㎡계획 - 피트니스, 도서관 등 계획		
공개공지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면적 의무 설치 : 대지면적의 10% 이상	•공개공지 380㎡ 설치 (10.08%)		

주1) 건축물 용도계획 상 [별표1] 입지여건별 비주거시설 비율 가이드라인 준용
- 주거용도 전환 비율(80%) X 5% = 4%

주2) 도로(용산동6가 69-166번지, 69-168번지, 서빙고동 271-105번지) 기부채납 면적(3,867㎡)은 획지와 도로 용도지역 가중치(0.625) 적용하여 2,416.8㎡로 공공기여율 산정

주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적률의 완화) 제2항제3호 적용
-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적용

※ 향후, 건축설계 결과에 따라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획지1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등에 따라 용적률 적용기준 (의무사항) 마련

다.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

1) 높이 계획 (변경)

구 분	높 이				코드구분
	기 정		변 경		
	기준	최고	기준	최고	
재건축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RA-3 RA-(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적용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적용		RA-3 (정비계획 결정)
舊 중심시설 및 개발잔여지	32m 이하	40m 이하	32m 이하	40m 이하	RG-3 CG-3 CG-(3) CN-3
	24m 이하	30m 이하	24m 이하	30m 이하	CN-3 (이면부)
	-	4층 이하	-	4층 이하	CN-1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	-	-	145m 이하	획지 1

※ 최고높이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5. 높이계획에 따른 최고높이 설정 프로세스 적용하여 산정
- 최소 20m, 최대 40m 이하로 결정 (기준높이는 최고높이의 0.8배 적용)
- 최대 4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접도조건 및 대지여건 등에 따라 유연한 적용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RA-3, RA-(3) 중 사업부지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RA-3의 높이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최고높이 변경 - 기정 : 舊 중심시설 및 개발잔여지 기준 32m, 최고 40m 이하 - 변경 : 최고 145m 이하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하여 높이기준 변경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변경없음, 기재생략)

□ 기준높이 완화 인센티브 계획 (변경없음, 기재생략)

3.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통로 (변경)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 정</th><th colspan="2">변 경</th><th rowspan="2">비고</th></tr>
<tr><th colspan="2">적용지역</th><th>계획내용</th><th>적용지역</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8">건축선</td><td rowspan="7">건축
한계선</td><td colspan="2">강변북로</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d rowspan="7">(좌동)</td><td rowspan="7">(좌동)</td><td rowspan="7">조성
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 colspan="2">서빙고로(한강변)</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6m</td></tr>
<tr><td>광역
통경축</td><td>동작대로</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td></tr>
<tr><td rowspan="3">지구
통경축</td><td>이촌로71길, 72길</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5m</td></tr>
<tr><td>이촌로87길, 88길</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5m</td></tr>
<tr><td>신동아아파트 단지 내 남북 통과도로</td><td>• 하수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m</td></tr>
<tr><td colspan="2">이촌로, 이촌로65길, 이촌로75길,이촌로77길이촌로54길 등</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m</td></tr>
<tr><td rowspan="3">건축선</td><td rowspan="2">건축
한계선</td><td colspan="2">이촌로58길, 이촌로62길 등</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3m</td><td rowspan="2">(좌동)</td><td rowspan="2">(좌동)</td><td rowspan="3">조성
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 colspan="2">특별계획구역</td><td>•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30m</td></tr>
<tr><td>벽면
한계선</td><td colspan="2">-</td><td>-</td><td>획지1</td><td>• 도로변 3m, 공원변 2m</td></tr>
<tr><td rowspan="2">대지내
공지</td><td>전면
공지</td><td colspan="2">건축한계선 지정구간</td><td>•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td><td>(좌동)</td><td>(좌동)</td><td rowspan="2">조성
위치는
결정도를 따름</td></tr>
<tr><td>공개
공지</td><td colspan="2">-</td><td>-</td><td>획지1</td><td>• 북측 도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td></tr>
<tr><td rowspan="2">대지내
통로</td><td>공공보행
통로</td><td colspan="6">(변경없음, 기재 생략)</td></tr>
<tr><td>보차혼용
통로</td><td colspan="6">(변경없음, 기재 생략)</td></tr>
</table>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축한계선 변경 - 기정 : 도로변 2m - 변경 : 도로변 3m, 공원변 2m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라 보행환경 제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 공개공지 신설 - 북측 도로변 위치 지정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라 주요 보행동선변 지역주민 휴게·휴식공간 확보 위한 공개공지 위치 지정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변경)

□ 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공동주택	(앞에 이어서)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통해 열린공간으로 계획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부대 및 복리시설	• 간선가로변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 이하, 1층부 층고는 4m 이상으로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정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확보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이촌로변 - 저층부(1~2층)에 연도형상가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단, 한강맨션과 한강삼익아파트는 정비계획에 따름)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수변특화 주동 배치구간		• 한강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 한강변에 중저층형(15~20층) 주동을 배치하여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 유도	
	기타 외관 요소	옥외 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담장의 설치	• 담장설치 시 식재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공동주택	(상동)	-
		부대 및 복리시설	(상동)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상동)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배치 및 형태	수변특화 주동 배치구간		• 한강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 한강변에 중저층형(15~20층) 주동을 배치하여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 유도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금회 획지1 내 신설)
	수변 전망공간		• 수변 전망공간 확보 - 일반에 한강 조망 기회 제공 및 가로변 접근 가능한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설치 - 개방위치 및 규모 : 지상3층 이상, 전용면적 60㎡ 이상 - 개방시간 : 최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획지1
	기타 외관 요소	옥외 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담장의 설치	• 담장설치 시 식재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옥외 구조물	• 가로변에 면하고 주건축물과 독립된 승강기, 계단 등의 구조물 벽면은 2분의 1이상 투시형으로 처리하고,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과의 조화 유지 (전체 페인트 도색 금지)	획지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변경 - 수변특화 주동 배치구간 추가 - 수변 전망공간, 옥외구조물 기준 신설	• 획지1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라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 유도를 위해 수변특화 주동 배치구간 설정하고, 일반에게 다양한 한강 조망 기회 제공을 위한 수변 전망공간 확보,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옥외구조물 지침 마련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기재생략)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기재생략)
6. 리모델링 사업 추진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기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사항

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교통 처리계획	아파트지구 내 사업 시행지역	• 주변가로 및 교차로 교통개선대책 수립(사업계획 승인 전 관련부서 협의 후 시행) - 서빙고나들목 이설 등 신동아쇼핑앞 교차로의 한강공원 연결로 개선 검토 - 신동아 쇼핑앞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207 재지정 구간 도로 확보 ※ 설치 및 비용부담은 아파트지구 내 사업 시행과 연계 검토	-

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제4항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구역 내 공동개발(권장)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대지내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6.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7. (신설)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계획 중 지역필요시설의 세부 용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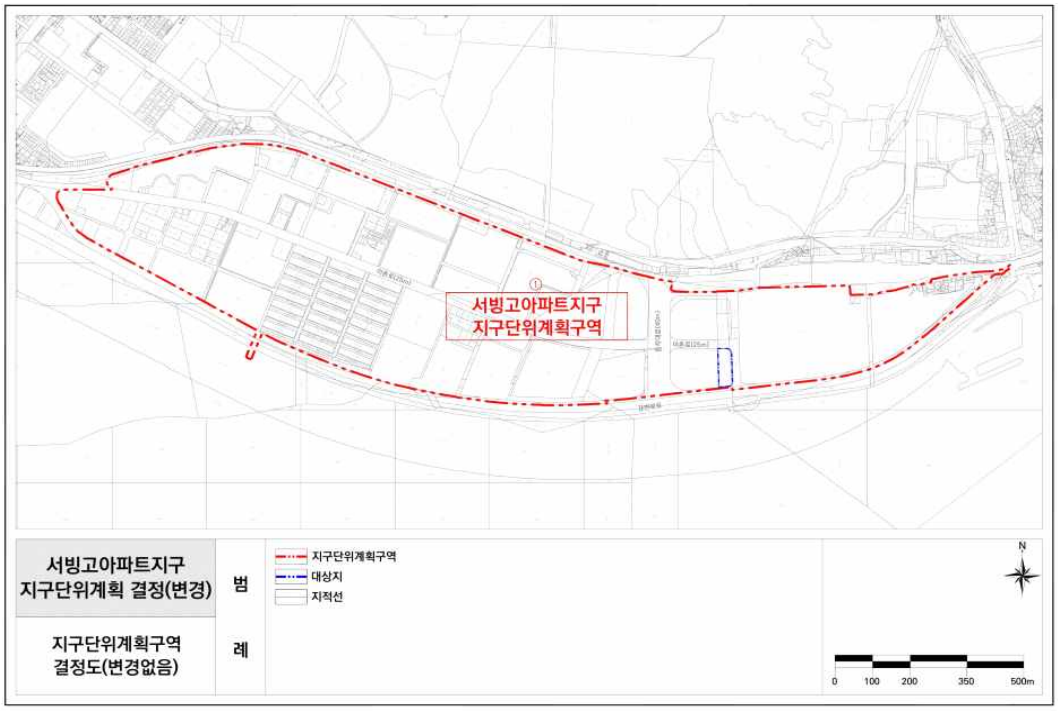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참조)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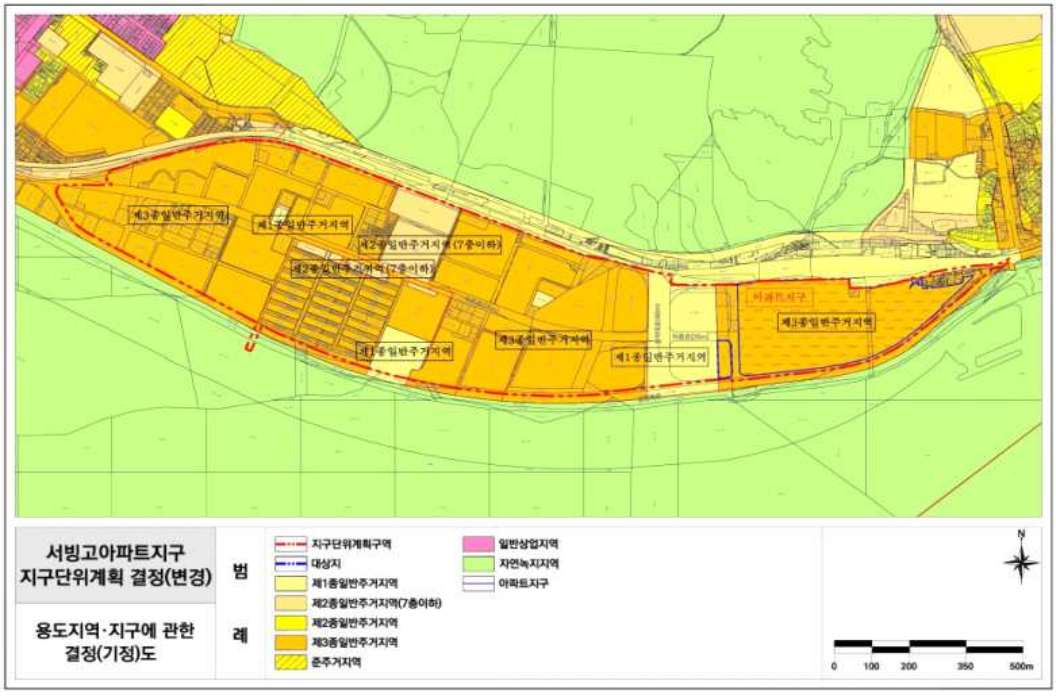
※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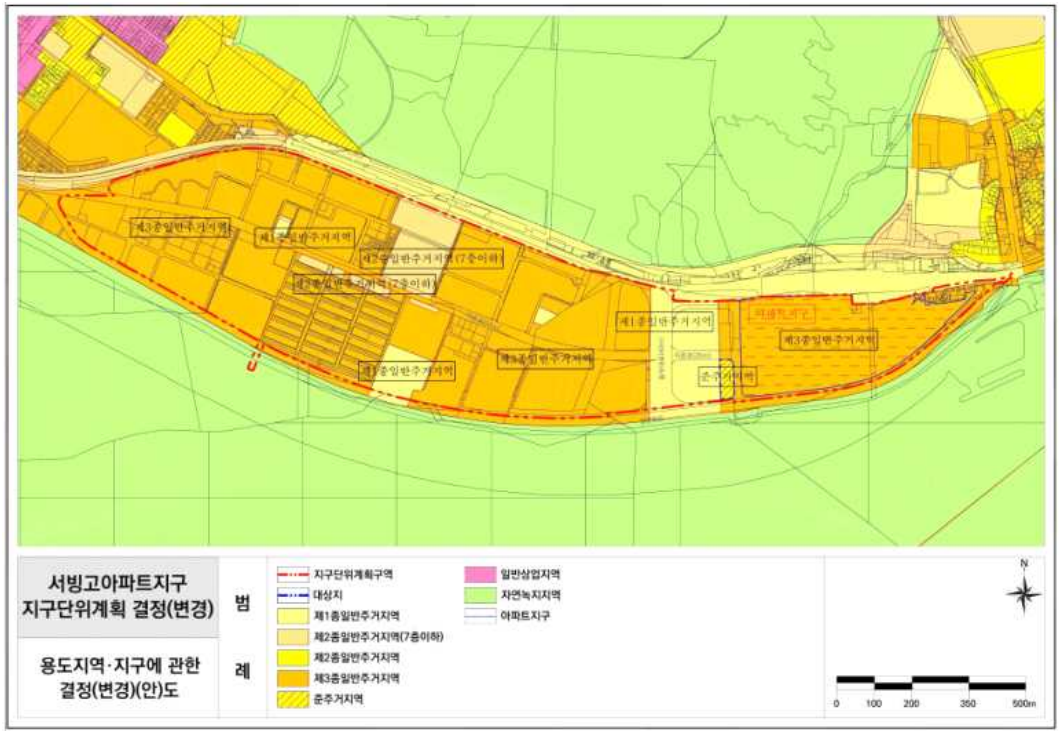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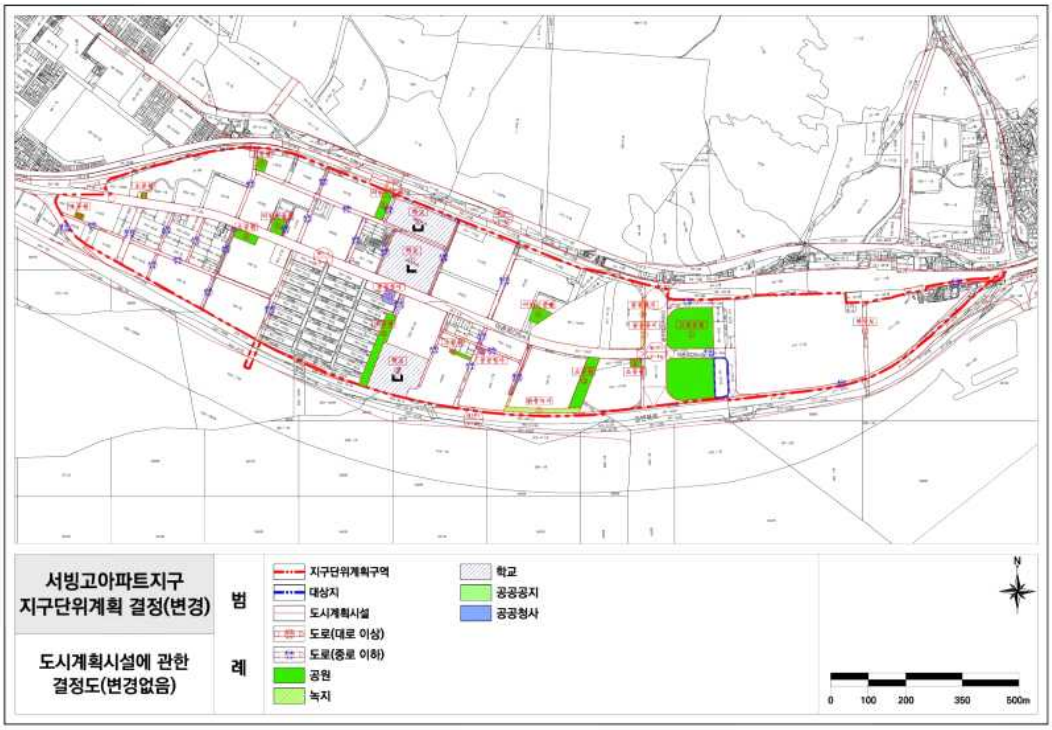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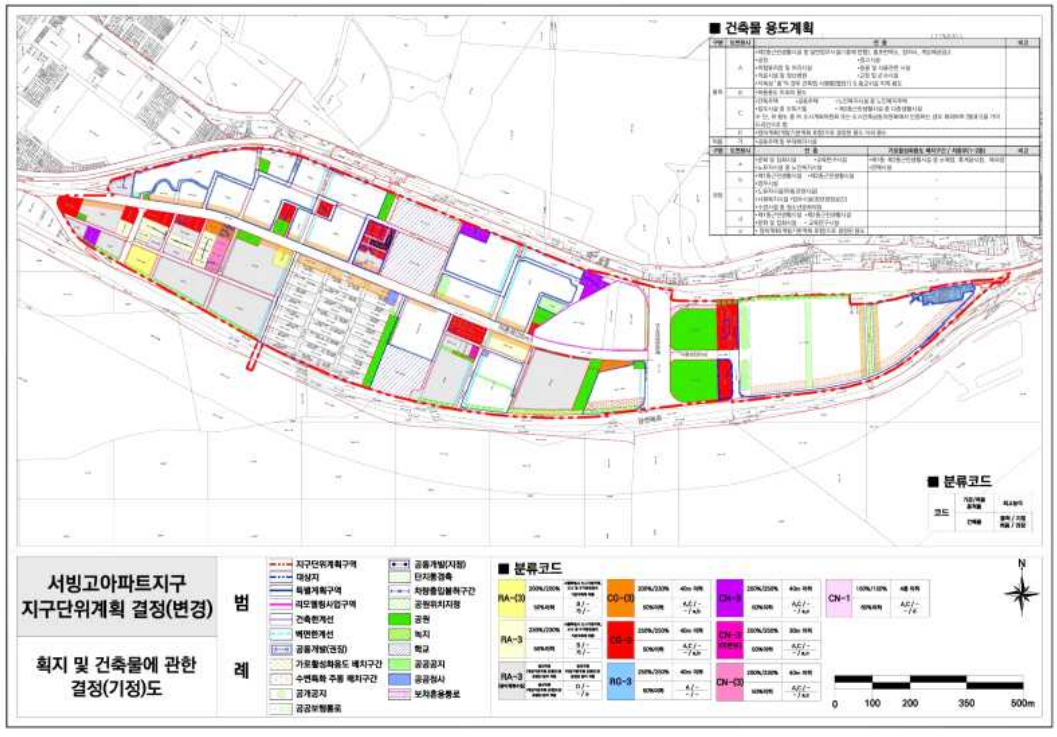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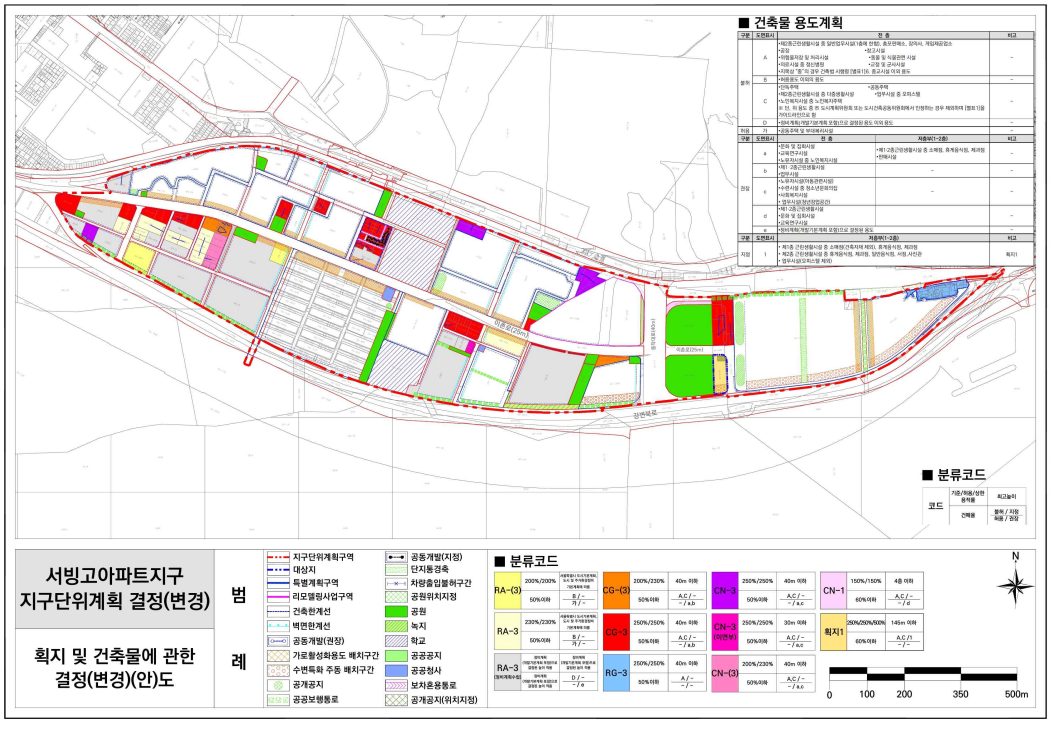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확대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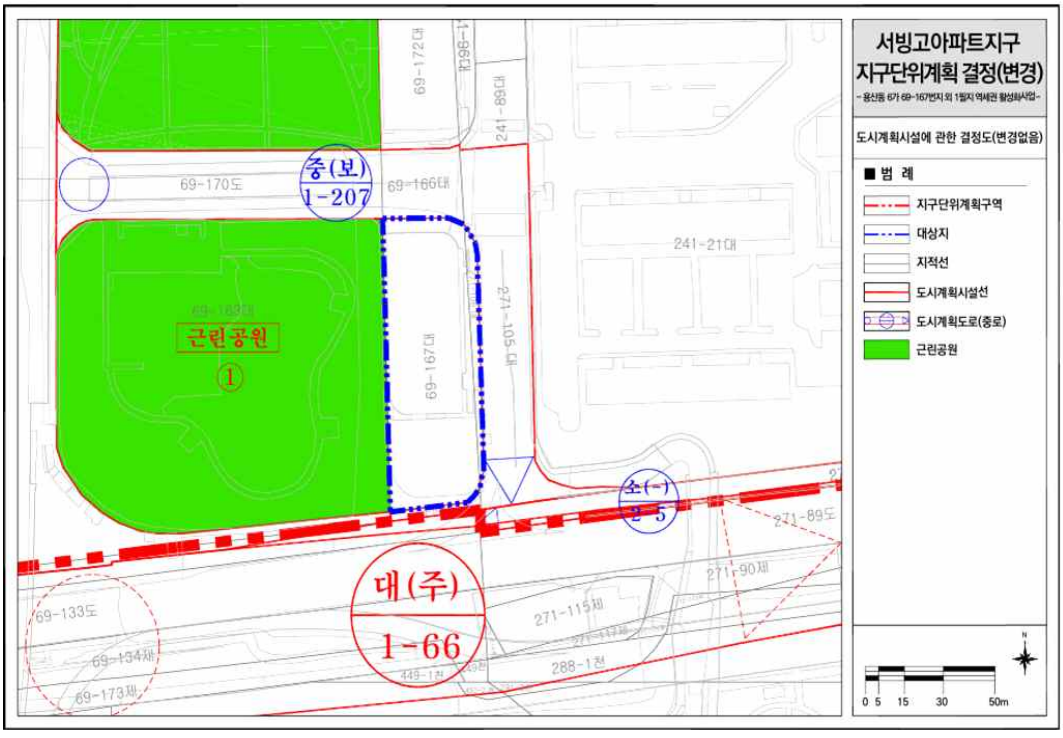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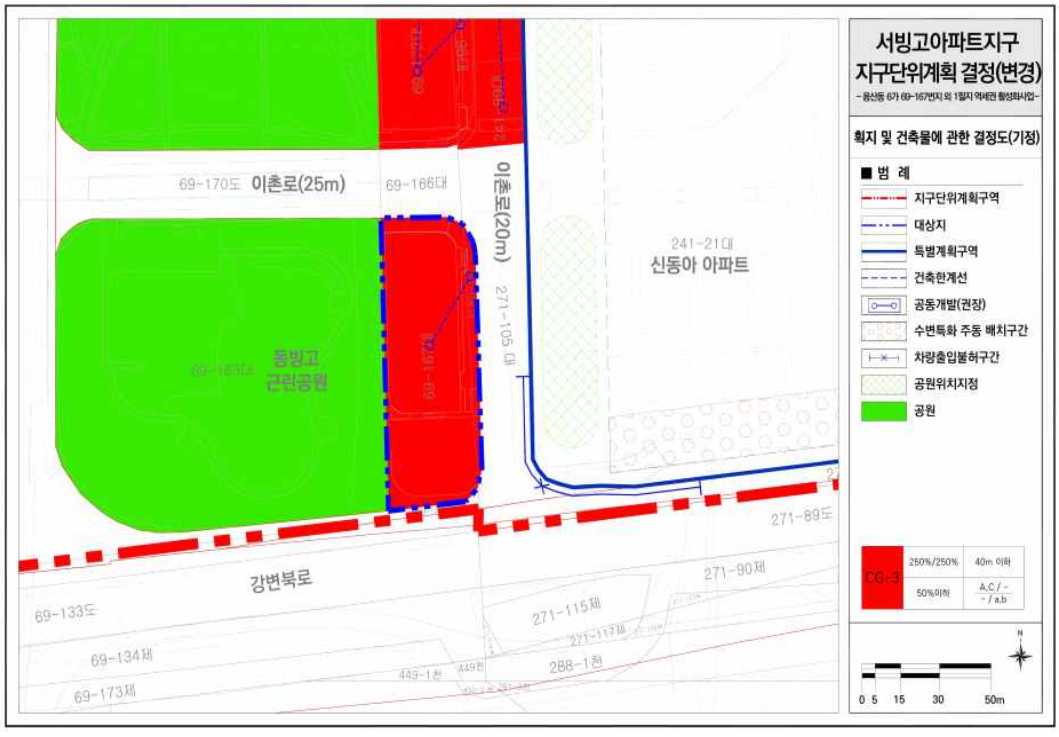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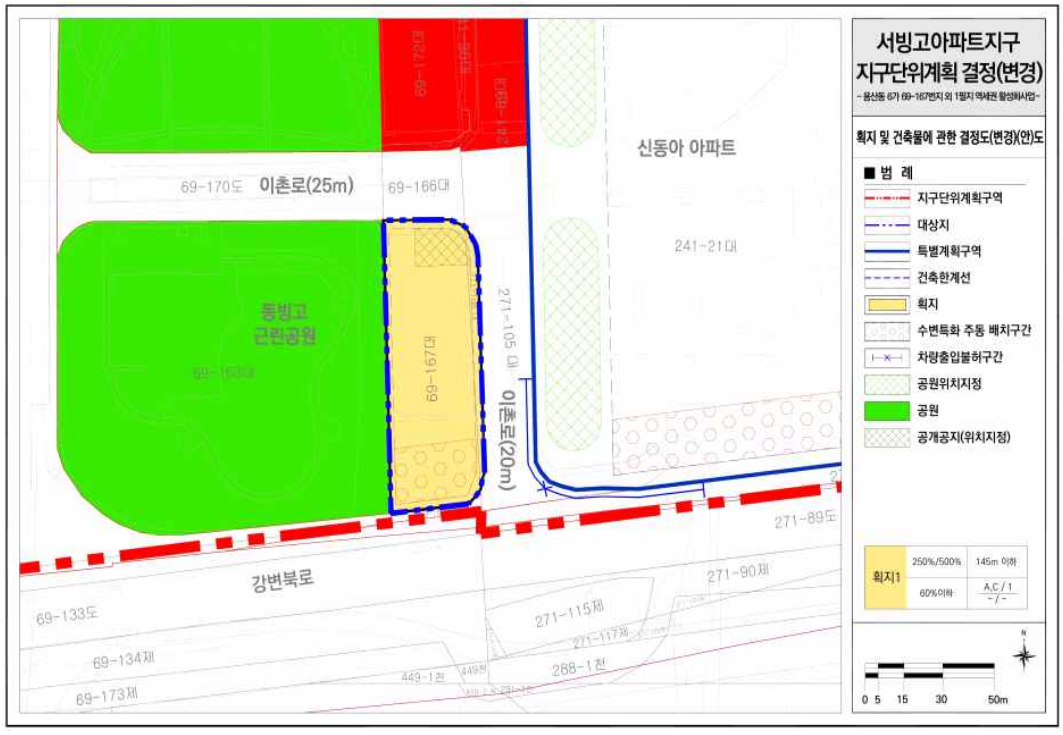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안)도



– 이 하 여 백 –

◈ 성동구공고 제2024-17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18-8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변경사항(사업기간)이 있어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9-1호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응봉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약4,000㎡(※ 보상 외 주변대상지 포함)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성동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당 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변 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사. 공고방법: 성동구보 및 서울시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아.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성동구청 10층 공원녹지과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2286-5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응봉근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1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66.116	80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권**	권**	박**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2	화장실					
		수수꽃다리	H5.0*R30	1주						권**	
		담장	H2.5*L25m	1개소							
		대문	H1.8*W1.7m	1개소						권**	
		화단	-	6㎡							
2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82.645	89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박**	박**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10	창고					
			세멘블럭조		8	화장실				김**	
		꽃사과나무	H2.0*R4	1주							
		담장	H2.5*L1.5m	1개소							
		대문	H1.9*W1.7m	1개소						이**	이**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화단	-	4㎡							
3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59.5044	46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김**	이**	김**	
					24	주거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5	창고			이**		
		대문	H1.9*W1.3m	1개소							
									이**		
		계단	W1.1*L1.1m	1개소							
4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82.645	84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민**	민**	장**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4	창고					
		대문	H1.9*W1.5m	1개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주소	성명			
		화단	-	42㎡						민**	
		계단1	W1.0*L3.0m	1개소							
		계단2	W1.0*L1.0m	1개소							
		계단3	W1.5*L0.7m	1개소							
		연탄광	-	2㎡							
		장독대		2㎡							
		담장(석축)	H2.0*L15.0m	1개소							
		담장	H1.5*L12.0m	1개소							
5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36.3638	49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오**	오**	임**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4	창고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대문	H2.0*W1.3m	1개소							
		계단	W1.4*L1.6m	1개소							
		옥상텃밭	-	4㎡							
		장독대	-	7㎡							
		담장(석축)	H1.5*L8.0m	1개소							
6	금호동2가 산9-1	건 물	세멘블럭조	42.9754	53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이**	박**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9	창고					
		대문	H2.0*W1.0m	1개소							
		계단	W2.0*L3.0m	1개소					이**	김**	
		담장(석축)	H1.5*L8.0m	1개소							

◈ 은평구공고 제2024-20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77호(2024.02.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고양지축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공사(대로1-A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0-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공사(대로1-A호선)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신설(왕복6차로), L=115.9m, B=3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용현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조서 참조

사. 열람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아.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 02-6908-9022~3)
은평구 도로과(☏02- 351-7903)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	하천	3,954.7	357.5	공	서울특별시				
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4	공원	569.6	17.0	공	은평구 (서울특별시)				
3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5	하천	1,349.3	1,349.3	공	서울특별시				
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6	도로	3,527.0	198.0	공	서울특별시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2	전	253.0	37.0	국	국토교통부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8-9	전	189.0	137.0	국	국토교통부				
7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2	하천	76,230.0	1,903.2	국	환경부				
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33	하천	953.0	45.0	국	건설부				
합계				87,025.6	4,044.0						

◈ 동작구공고 제2024-21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고시 제2020-60호(2020.6.4.), 제2020-172호(2020.11.19.), 제2022-181호(2022.12.08.), 제2023-150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명 칭 :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 ○ 면 적 : 15,964㎡
- ○ 내 용 : 공원조성(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장물 1동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4-215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02호(2021.7.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45호(2019.6.27.), 제2019-69호(2019.8.16.), 제2020-70호(2020.6.18.), 제2021-283호(2021.12.2.), 제2023-145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16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ㅇ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2지역)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ㅇ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123 등 12필지
- ㅇ 면 적 : 60,553㎡
- ㅇ 내 용 : 토지보상 60,553㎡, 지장물 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ㅇ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ㅇ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02-820-1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4-21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54호(2020.5.21.), 제2020-127호(2020.9.10.), 제2021-293호(2021.12.9.), 제2023-149호(2023.12.21.)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된 용봉정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용봉정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2-27 등 2필지
  ○ 면 적 : 189.8㎡
  ○ 내 용 : 토지보상 189.8㎡,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경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게재생략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게재생략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4-217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열람 공고

1. 동작구 노량진동 168-2번지 일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saiyajin@dongjak.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1)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168-2번지 일대
2) 면 적: 약 150,000㎡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행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2)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제한 대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목적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허가(신고)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 제한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거나, 타 법에 의해 동일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가능할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함
※ 법적 제한 기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3년 이내(2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마.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동작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02-820-9596)
사. 관련도서: 생략(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아. 기타사항: 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4-25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1-396호(2021. 7. 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3-385호(2023. 9. 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번지 일대의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고시 제2019-112호(2019. 6. 20.), 서초구 고시 제2020-33호(2020. 2. 27.), 서초구 고시 제2021-279호(2021. 12. 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되어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1) 변 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 등 36필지
  2)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2 등 38필지
  3) 변경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과정에서 필지 분할 발생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132,020.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 경 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변 경 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공원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시일 소요
사.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4. 11. 28. ~ 12. 12.)
아.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02-2155-6870)
자. 공원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에 관한 사항: 별첨(공원토지조서) 참조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세빛섬 계류시설	수상레저사업 종료에 따른 단순 계류	동력선 7대	2024.12.01. ~ 2025.2.28.	2024. 11.27.
			마리나사업 종료에 따른 단순 계류	동력선 4척	2025.1.1. ~ 2025.2.28.	2024. 11.27.
		행주대교 ~ 잠실대교	마리나사업 연장	동력선 4척	2024.12.01. ~ 2024.12.31.	2024. 11.27.
㈜은예 반포지점 (대표 양미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세빛섬 내 가빛섬~예빛섬 사이 수상 구역	수상레저사업 종료에 따른 단순 류	무동력선 (튜브스터) 16척	2024.12.01. ~ 2025.2.28.	2024. 11.2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94	1,508.9㎡	수난구조대 청사 계류 및 수난인명구조와 소방활동을 위한 구조정 등 계류	2025. 1. 1. ~ 2027. 12. 31.	2024. 1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35-1	2,266.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160	1,112.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3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주용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	뚝섬 및 이촌, 망원한강공원	총 : 1,758㎡ -이촌수상훈련장 : 504㎡ -뚝섬수상훈련장 : 750㎡ -망원수상훈련장 : 504㎡	청소년 수상훈련 및 교육	2023.6.1.~ 2026.5.31.	2024. 05.24.

사업소공고

◈ 금천소방서공고 제2024-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금 천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한양소방	제 서울(금천)-2024-0004호 (2024.11.19.)	서병열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610호	02-894-2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64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소방서공고 제2024-5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금 천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윤영방재엔지니어링	제 서울(금천)-2024-0005호 (2024.11.19.)	김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1505호	02-522-006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64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소방서공고 제2024-6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 봉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 및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제 서울(도봉)2024-0001호 (2024.11.18.)	㈜서울소방원 (110111-9072515)	손주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91길 88-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815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24-40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영등포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비티엠써비스(주)	제서울(영등포)-2024 -0006호 (2024.11.25.)	박상앙, 박규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02-3483-20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시설업담당(☎02-6981-7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9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장(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719-12번지 외 6필지
  - 면 적 : 1,2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제방연결로 설치
  - 내 역 : 데크로드(B=2.0m, L=375m) 설치 1식
    야자매트(B=2.0m, L=270m) 설치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9.09.23. ~ 2024.09.22.
    (변경) 2024.09.23. ~ 2029.09.2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용산구청장(홍보담당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215번지
   - 면 적 : 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조형물 설치
   - 내 역 : 용산 상징조형물 설치 1개소, LED 안내사인 시설물 1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9.10.18. ~ 2024.06.30.
   (변경) 2024.07.01. ~ 2029.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9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스케이텔레콤(주)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5길1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671,671-7번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1-24번지
 - 면 적 : 1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통신주 설치
 - 내 역 : - 이동통신용 통신주(H=25.0m) 1개소, 콘크리트패드(T=250mm) 15㎡,
 방부목휀스(H=1.8m) 8경간, ELP관(D100mm) L=5m
 - 소나무평 통신주(H=13.5m) 1개소

※ 서울 제1563호, 제1564호를 서울 제1564-1호로 통합 연장하여 관리하고자 함

5. 점용기간 : (당초) 2019.08.06. ~ 2024.08.05.
 (변경) 2024.08.06. ~ 2029.08.0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9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아리수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암사동~잠실대교 일원
   - 면　적 : 16,459㎡ (일시) 6,8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송배수관로 이설

5. 점용기간 :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24.1.3. ~ 2024.12.1. (변경) 2024.1.3. ~ 2025.2.28.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0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서울 지하도로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2공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72 외 2필지
 (4공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3 외 4필지
 - 면 적 : (2공구) 일시 3,411㎡ (4공구) 일시 5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가적치장 조성
 - 내 역 : (2공구) 임시 야적장 1개소, U형측구 L=270m, EGI휀스+분진망 H=4m
 (4공구) 임시 야적장 1개소, EGI휀스 H=3m, 수로형측구 B=0.3m

5. 점용기간 : 2024.11.05. ~ 2029.09.0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82번지 ~ 구로구 구로동 681-16번지,
구로구 구로동 631-2번지 ~ 6528-5번지
(추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71-23 외 3필지
- 면 적 : (당초) 3,242.5㎡ (변경) 3,589.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배관 매설
- 내 역 : (당초)가스관로(D500) L=5,973m (변경)가스관(D500) L=6,657m

5. 점용기간 : 2024.10.16. ~ 2029.10.1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04
   - 면　적 : 일시 1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용 열수공관 확인 굴착

5. 점용기간 : (당초) 2024.10.7.~2024.10.24. (변경) 2024.10.24.~2024.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용산구 일원(당인동 중앙열원 ~ 서빙고 가압장까지)
- 면 적 : (당초) 영구 17,051.21㎡, 일시 58,074.6㎡
(변경) 영구 17,051.21㎡, 일시 64,365.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중앙~서빙고 연계 열수송관 매설 공사
- 내 역 : 열수송관로(L=8.561㎞×2열), 맨홀 19개소, 임시야적장(4곳)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 ~ 영구(허가일로부터 2026.03.09.까지)
※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15.~10.15.) 중 공사 불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1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2-9번지
   - 면 적 : 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물이용부담금 홍보 조형물 설치
   - 내 역 : 홍보 조형물(H=6m, D=600mm) 설치 1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9.12.0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18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영등포구 양화동, 양천구 목동 일원
  - 면 적 : (당초) 영구 52,087㎡, 일시 70,639㎡
    (변경) 영구 71,691㎡

4. 점용의 목적
  - 목 적 : 교량(월드컵대교) 설치

5. 공사기간 : 2019.5.28. ~ 2024.11.30.

정 정

◈ 강동구고시 제2024-2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취소 고시[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009. 2. 12.)호로 집단취락지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7(2013. 5. 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4-117(2024. 7. 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4-146(2024. 9. 12.)호, 제2024-148(2024. 9. 19.)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해당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제2024-146(2024. 9. 12.)호, 제2024-148(2024. 9. 19.)호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향후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의제) 협의 후 다시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강동구 암사동 281-4~281-6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양지2마을 도로개설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도로개설 폭 4m, 연장 57m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강동구청장(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기간(변경없음):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자. 취소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절차 선행 이후 실시계획변경 재고시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양지2마을 도로개설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변경없음	암사동 280-1	909	3.7	도	1	강동구청	서울특별시 성내로 25				
2	당초	암사동 281-4	271	63	전	1	오*길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길 *,1**-60*	영등포****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	근저당	
	변경	암사동 281-11	63	63								
3	당초	암사동 281-3	291	50	대	4/10	박*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9*-**				
	변경	암사동 281-10	50	50		6/10	최*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 8**-8**				
4	당초	암사동 281-7	241	2	대	52/73	윤*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가길**, 60*				
	변경	암사동 281-13	2	2		21/73	윤*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10, 20*				
5	당초	암사동 281-2	423	84	답	1	이*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5, **				
	변경	암사동 281-9	84	84								
6	당초	암사동 281-6	515	87	전	1	구*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9*	강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	근저당	
	변경	암사동 281-12	87	87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양지2마을 도로개설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암사동 281-10	담장	20*1.8m	1		1	최*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9*-**				
		담장	1.52*0.89m	1		1						
		대문	2.7*2.2m	1		1						
		오가피나무		2	주	1						
		목단		1	주	1						
		아사이베리나무		3	주	1						
		철쭉나무		1	주	1						
		사철나무		2	주	1						
		주목		1	주	1						
		단풍나무		1	주	1						
		엄나무		1	주	1						
2	암사동 281-13	담장	4*1.8m	1		1	윤*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가길**,60*				
		담장	1.02*0.76m	1		1						
		조립식건물	0.6㎡	1		1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	암사동 281-9	농막	20㎡	1		1	이*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농막	22㎡	1		1						
		고욤나무		1	주	1						
		매실나무		1	주	1						
		산수유나무		1	주	1						
		산사나무		1	주	1						
		하늘타리 넝쿨		1	주	1						
		오미자나무		1	주	1						
4	암사동 281-12	철제문	0.98*1.96m	1		1	구*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9*-**				
		철제벽	1.5*1.36m	1		1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